

캘리포니아 주 총선거

2008년 11월 4일 화요일

★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

정확성 증명서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인 본인 Debra Bowen은 이 안내서에 포함된 법안들이
2008년 11월 4일에 주 전체에서 실시될 총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에게 제출되고,
이 안내서가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에 증명합니다.

2008년 8월 11일에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의 대문장을 날인합니다.



Debra Bowen
총무처장관



총무처장관

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은 유권자 등록을 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총무처장관실은 여러분의 결정을 돕기 위해 이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제작했으며, 이 안내서에는 Edmund G. Brown Jr. 법무장관이 작성한 법안 명칭과 요약, 법률 분석가인 Elizabeth G. Hill이 작성한 법률에 대한 공정한 분석과 납세자에 대한 잠재적 비용,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작성한 모든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법제 전문가인 Diane F. Boyer-Vine 이 교열한 발의 법안 전문,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주 인쇄국장인 Geoff Brandt의 감수를 받아 인쇄되었습니다.

우리는 2008년 11월 4일에 차기 미국 대통령과 연방의회 및 주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들과 일반대중들이 투표에 회부한 많은 법안들의 통과 여부도 결정할 것입니다. 일부 지역사회에는 지방정부 공직 입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할 것입니다.

투표는 쉽게 할 수 있고, 모든 등록 유권자는 우편을 통해서, 또는 투표소에 가서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용지 신청 마감일은 10월 28일입니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데는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 선거일에 선거 관리인이 되어 모든 유자격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전화, 브로셔, 포스터를 통해서 유권자 등록 마감일과 투표권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 토의 그룹을 조직하거나 친구, 가족,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입후보자와 쟁점에 대해 다른 유권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과 투표 장소, 그리고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866-575-1558로 전화하거나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선택권과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든 또는 우편투표를 하든,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 정보 안내서에 들어있는 투표에 대한 권리와 각 법안을 주의해서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이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간편 참조 안내서	6
<hr/>	
발의안	
1 고속철도 공채. 의회 발의 개정안.	12
2 농장 동물을 가두는 기준. 주민 발의 법안.	16
3 아동병원 공채법. 보조금 프로그램. 주민 발의 법안.	20
4 미성년자에 대한 임신 중절 전의 대기 기간 및 부모에 대한 통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24
5 비폭력적 마약 범죄. 신고, 가석방 및 재활. 주민 발의 법안.	30
6 경찰 및 법집행에 대한 자금 제공. 형사 처벌 및 법률. 주민 발의 법안.	40
7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 주민 발의 법안.	46
8 동성 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54
9 형사사법제도. 피해자의 권리. 가석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58
10 대체 연료 차량과 재생가능 에너지. 공채. 주민 발의 법안.	64
11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70
12 2008년 재향군인 공채법.	74
<hr/>	
주정부 공채 채무 개관	78
<hr/>	
법안 전문	80
<hr/>	
유권자의 권리	143
<hr/>	
정보 페이지	
투표 장소.....	4
잠정투표용지 정보.....	4
연방 및 주의 유권자 신원 확인 요건	4
우편투표.....	4
미국 대통령 입후보자 정견발표문 정보	5
의원직 입후보자 정견발표문 정보	5
보충 유권자 정보	5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로 제작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	142
선거관리인으로 봉사하기.....	142
유권자 등록 정보	142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 주 전체 법안에 대한 정보를 보십시오: www.voterguide.sos.ca.gov
- 선거운동 기부금과 로비 활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http://cal-access.sos.ca.gov/campaign>
- 선거일에 투표할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ppl.htm
- 우편투표용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m.htm
- 선거일의 투표 결과를 라이브로 보십시오: <http://vote.sos.ca.gov>

투표 장소

선거일 몇 주 전에 해당 카운티의 투표용지 견본 책자를 받으시면 책자의 뒷표지에서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투표용지 견본 책자를 받지 못하시면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또한 투표소는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1-866-575-1558로 전화하거나 www.sos.ca.gov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견본 책자에는 장애인 유권자가 비밀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에는 국제 접근 가능성 심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잠정투표용지

잠정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은 유권자를 위한 투표용지입니다.

-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확신하나 공식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유권자
 - 공식 유권자 등록 리스트에 정당 가입 항목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유권자, 또는
 - 우편투표 유권자이나, 우편투표용지를 찾을 수 없어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유권자
-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이 유자격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인정한 모든 유효한 잠정투표용지는 집계되고 공식 선거 결과에 포함됩니다. 선거 관리 담당관은 이러한 확인 과정을 28일(“공식 확인” 기간이라고 함)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선거일로부터 3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의 유권자 신원 확인 요건

대부분의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기 전에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으로 등록한 후 처음으로 투표를 하고, 등록 카드에 운전면허증 번호,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릿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에 갈 때 어떤 종류의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투표소에 가지고 가고, 우편투표를 하시는 경우에는 우편투표용지에 신분증 사본을 동봉하십시오. 30여 개의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리스트를 확인하시려면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로 연락하거나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regs.htm에서 “HAVA ID Regulations” (“HAVA ID 규정”)을 찾아보십시오.

우편투표

우편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우편으로 발송
2. 선거일에 카운티 내에 있는 투표소나 선거 관리 사무소로 직접 제출, 또는
3. 법으로 허용되는 제3자(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자매, 또는 본인과 같은 가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해서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카운티 내에 있는 투표소나 선거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위임

우편투표용지는 제출하는 방법에 상관 없이 반드시 선거일에 투표소를 폐장하는 시간(오후 8시)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늦게 도착한 우편투표용지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이 유자격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인정한 모든 유효한 우편투표용지는 집계되고 공식 선거 결과에 포함됩니다. 선거 관리 담당관은 이러한 확인 과정을 28일(“공식 확인” 기간이라고 함)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선거일로부터 3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입후보자 정견발표문

미국 대통령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시려면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 www.voterguide.sos.ca.gov를 방문하고, 이러한 정보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1-866-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의원직 입후보자 정견발표문

이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는 주 전체 투표 법안이 들어 있습니다. 각 주 상원 및 하원 공직은 단지 한 개 또는 몇 개의 카운티와 관련이 있으므로, 일부 입후보자의 정견발표문은 카운티 투표용지 견본 책자에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11월에 유권자에 의해 통과된 발의안 제34호에는 주 의회 의원직 입후보자에 대한 자발적인 지출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을 이러한 규정된 달러 금액보다 적게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의원직 입후보자는 카운티 투표용지 견본에 공간을 구입하여 250 단어 이내의 입후보자 정견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직에 대한 선거운동에서 비용 지출을 제한하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724,000, 그리고 총선거에서 \$1,086,000 이하의 금액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원직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483,000, 그리고 총선거에서 \$845,000 이하의 금액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수락한 의원직 입후보자의 명단을 보시려면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cand_stat.htm을 방문하십시오.

보충 유권자 정보

이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는 인쇄일까지의 최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주 전체 법안이 추가로 투표에 회부할 자격을 얻는 경우에는 보충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제작하여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이 보충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www.voterguide.sos.ca.gov에서 그러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또는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1-866-575-1558로 전화하여 추가 안내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서는 지역 도서관과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서든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해당 카운티의 투표용지 견본은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서도 제공됩니다.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고속철도 공채. 의회 발의 개정안. 제1호

요약 **주의회에 의해 투표에 회부**

이 법안은 21세기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고속여객열차 공채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통행량을 줄이고, 통근교통수단을 개선하고,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주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항의 체증을 완화시키고, 공기 오염을 줄이고, 이 주의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주정부 자금으로 30년의 공채 상환 기간 동안 매년 평균 육역 사천 칠백만 달러(6억 4,700만)를 지불하고 모든 지출에 대해 독립 감사를 받는 총 99억 5,000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할 철도신탁자금을 설립하여 이 주의 주요 인구 중심지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열차 시스템을 건설하고 기존의 여객철도를 개선해야 합니까? 재정적인 영향: 공채 원금과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정부에 30년에 걸쳐 194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년 약 6억 4,7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아마도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알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비용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여객 운임으로 상계될 것입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주 고속철도 시스템 건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자금 조달, 그리고 주 및 지방 철도 서비스에 대한 자본적 개량을 위해 99억 5,000만 달러의 일반보조공채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정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99억 5,000만 달러의 일반보조공채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캘리포니아 주의 수송 시스템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휘발유 가격은 치솟고, 고속도로와 공항은 정체로 빙글고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수송 방법입니다. 고속열차는 새 고속도로, 공항 및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새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이 정치적인 무익한 낭비는 납세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로 19,200,000,000 달러의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금을 학교, 의료 및 공공안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료주의자들은 우리가 1 인치의 궤도를 보기도 전에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최악의 예산 위기를 겪고 있는 동안에는 허황된 계획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여유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Robert Pence
Californians For High Speed
Trains - Yes on Proposition 1
455 Capitol Mall, Suite 801
Sacramento, CA 95814
(916) 551-2513
www.californiahighspeedtrains.com

반대
Jon Coupal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921 11th Street, Suite 1201
Sacramento, CA 95814
(916) 444-9950
info@hjta.org
www.hjta.org

발의안 농장 동물을 가두는 기준. 주민 발의 법안. 제2호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특정한 농장 동물들은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다리나 날개를 완전히 뻗고, 눕고, 일어서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가둘 것을 요구합니다.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알 수는 없으나, 농장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세 및 지방세 수입이 아마도 연간 수백만 달러 범위 내에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집행 및 기소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경미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중 일부는 벌금 수입의 증가에 의해 상계될 것입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법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5년부터 농장에서 새끼를 뺀 돼지, 송아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육되는 송아지, 알을 낳는 암탉에 대해 이러한 동물들이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고, 눕고, 일어서고, 다리와 날개를 완전히 뻗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두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법에 새끼를 뺀 돼지, 송아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육되는 송아지, 알을 낳는 암탉을 가두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2호에 찬성하시면 동물, 소비자, 가족 농장주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방향을 바꾸거나 사지를 뻗을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 발의안의 지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California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Center for Food Safety. www.YesOnProp2.org.

반대 발의안 제2호는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안전하고, 현지에서 생산되고, 가격이 저렴한 달걀들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UC Davis의 연구에 의하면 발의안 제2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달걀 생산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면 달걀을 타주와 멕시코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이 살모넬라와 조류 독감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발의안 제2호에 반대합니다.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Jennifer Fearing
Yes on Prop. 2 - Californians
for Humane Farms
1700 L Street
Sacramento, CA 95814
(323) 896-1126
info@YesOnProp2.org
www.YesOnProp2.org

반대
Californians for SAFE Food
P.O. Box 71541
Los Angeles, CA 90071
(213) 362-9539
www.safecaliforniafood.org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아동병원 공채법.
제3호 보조금 프로그램.
주민 발의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적격 아동 병원의 건설, 확장, 개축, 보수, 가구 비치 및 장비 설치를 위해 9억 8,000만 달러의 일반 보증 공채 발행을 승인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공채 원금(9억 8,000만 달러)과 이자(9억 3,300만 달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정부에 30년에 걸쳐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년 약 6,4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정부는 아동 병원의 건설, 확장, 개축, 보수, 가구 비치, 장비 설치, 금융 또는 재금융을 위해 9억 8,000만 달러의 일반보증공채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정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제안된 9억 8,000만 달러의 일반보증공채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병원들은 매일 백혈병, 암, 낭포성 섬유증, 심장질환, 외상성 상해와 같은 질환이 있는 아동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백혈병이 있는 아동의 80%는 생존합니다.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심장수술을 받는 아동의 90%는 치유됩니다. 발의안 제3호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이 발의안은 가장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이 주는 혜택을 상상해 보십시오.

반대 거의 20억 달러(원금과 이자)에 달하는 유권자의 세금이 이 공채를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의료 특수이익집단에게 제공되나, 이와 유사한 2004년 법안에 의해 제공된 막대한 자금이 아직 지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아동을 위한 공채"라고 부추기지만, 부채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더 이상 빚을 질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Charity Bracy
California Children's Hospital
Association
1215 K Street, Suite 1930
Sacramento, CA 95814
(916) 552-7111
cbracy@ccha.org
www.imaginewithus.org

반대
National Tax Limitation
Committee
151 N. Sunrise Ave. #901
Roseville, CA 95661
(916) 786-9400
NTLC@Surewest.net
www.Limittaxes.org

발의안 미성년자에 대한 임신 중절 전의
제4호 대기 기간 및 부모에 대한 통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의사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 또는 불가피한 경우, 이들을 대신할 성인 친척에게 통지한 후 48시간이 될 때까지 그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합니다. 의료 응급상황이나 부모의 권리 포기 등에 대한 통지 예외의 조항을 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보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비용, 법원 행정 비용 및 주정부 보건기관 행정 비용을 합쳐서 주정부에 수백만 달러의 알 수 없는 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의사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하기 최소한 48시간 전에 그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합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미성년자들은 계속 성인과 같은 정도로 낙태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통지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

찬성 의사, 간호사, 교사 및 법집행관들은 발의안 제4호(Sarah 법)를 지지합니다. 다른 30개 주의 통지법은 십대 임신과 성병을 줄이고 어린 소녀들이 나이가 많은 남자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범행을 방지하십시오.* 발의안 제4호에 찬성 투표를 하라고 권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지방검사들에 동참하십시오.

반대 발의안 제4호는 위험합니다. 의무 보고법은 두려움에 떠는 임신한 십대가 억지로 부모에게 말하게 할 수 없으나,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더 나쁜 상태로 물고 갈 수는 있습니다. 발의안 제4호는 성범죄자로부터 십대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발의안 제4호는 효과가 없고, 더 많은 소송을 조장하고, 십대를 위협에 처하게 합니다. 십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www.NoonProposition4.org)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Friends of Sarah
YES on 4 / Child and Teen
Safety and Stop Predator
Act: Sarah's Law
1703 India Street
San Diego, CA 92101
(866) 828-8355
info@YESon4.net
www.YESon4.net

반대
Campaign for Teen Safety
555 Capitol Mall, Suite 510
Sacramento, CA 95814
(916) 804-4456
www.NoonProposition4.org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5호 비폭력적 마약 범죄, 선고, 가석방 및 재활, 주민 발의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마약 치료 프로그램을 개선 및 확대하기 위해 연간 4억 6,000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특정한 마약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치료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가석방을 위반하는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로 마약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해 주정부의 비용이 연간 10억 달러가 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도소 운영에 대한 주정부의 비용이 연간 10억 달러가 넘게 절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대한 자본 지출 비용과 관련된 주정부의 1회 순결감 금액이 25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로 비폭력적인 마약 소지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입니다. 일부 가석방 위반자들은 주 교도소로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가석방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출감하기 전후에 새 재활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될 것입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5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경우에는 현행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앞으로 기존의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주 교도관들은 다양한 종류의 가석방 위반자들을 주 교도소에 재수감하는 것에 대해 계속 재량권을 보유할 것이고, 가석방 기간은 대부분의 가석방자에 대해 3년을 유지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수감자, 가석방자 및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도소 복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감자에게 크레딧을 주는 현재의 규정은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28.5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5호는 교도소의 과밀을 안전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마약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비폭력적인 범죄자와 가석방자를 위해서는 재활을 확대합니다. 발의안 제5호는 유권자가 승인한 성공적인 법안인 발의안 제36호(2000년)를 확대하고, 철저한 감독과 엄격한 책임 하에서 비폭력적인 마약 범죄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5호는 25억 달러를 절약합니다.

반대 메탐페타민 거래자에 대한 가석방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합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운전자 과실치사 및 다른 범죄로 입건된 피고자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기소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 음전을 반대하는 어머니회(MADD)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새로운 관료주의를 추가합니다. 책임을 줄입니다. 지방정부의 비용과 세금이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NORA Campaign - Yes on 5
c/o Drug Policy Alliance
Network
3470 Wilshire Blvd. #618
Los Angeles, CA 90010
(213) 382-6400
prop5@drugpolicy.org
www.Prop5yes.com

반대
Tim Rosales
People Against the Proposition
5 Deception
2150 River Plaza Drive #150
Sacramento, CA 95833
info@NoOnProposition5.com
www.NoOnProposition5.com

발의안 제6호 경찰 및 법집행에 대한 자금 제공, 형사 처벌 및 법률, 주민 발의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경찰 및 지방의 법집행을 위해 최소한 매년 9억 6,500만 달러의 주정부 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형법에 대해 약 30건을 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로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최소한 9억 6,500만 달러로 증가하고 교도소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주정부의 비용이 연간 5억 달러가 넘게 순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대한 주정부의 1회 자본 지출 비용이 5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정부는 지정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2009-10년도에 3억 6,500만 달러가 증가한 9억 6,50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하고, 이러한 비용은 그 후의 연도들에 대해서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폭력집단, 메탐페타민 판매, 차량 절도와 같은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증가하여 더 많은 범죄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가석방 집행관의 담당 건수 및 전문 증거(hearsay evidence)의 사용과 같은 사안들과 관련된 다른 다양한 형사 사법 프로그램을 변경할 것입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의회와 주지사는 지정된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의 자금 제공 수준을 결정하는 현재의 권한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형사 처벌은 강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석방 처리 건수와 전문 증거의 사용에 대한 사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

찬성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보안관들은 발의안 제6호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우리의 거리에 더 많은 경찰관을 제공하고 안전을 증가시키는 종합적인 갠단 활동 방지 및 범죄 감소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지역 법집행 기관에 제공합니다.

반대 발의안 제6호는 학교, 의료, 소방 및 효과가 증명된 공공안전 프로그램으로부터 1,000,000,000 달러를 삭감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6호는 더 많은 경찰관이 거리에 투입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고 효과가 증명된 갠단 활동 방지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6호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6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Prop. 6 - Safe
Neighborhoods Act
925 University Ave.
Sacramento, CA 95825
(916) 214-5709
info@safeneighborhoodsact.com
www.safeneighborhoodsact.com

반대
Richard Rios
No on Propositions 6 & 9
555 Capitol Mall, Suite 1425
Sacramento, CA 95814
(916) 442-2952
www.votenoprop6.com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7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 주민 발의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정부 소유 공익사업체에 2010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은 현재 민간 전기회사들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모든 공익사업체에 대한 요건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50%로 증가시킵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의 행정 비용이 연간 최대 340만 달러 증가할 것이나, 요금 수입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소매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공급회사들은 태양열 및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 발전되는 전기의 비용을 2010년까지 20 퍼센트로 증가시킨다는 현재의 요건에 추가하여, 2020년까지 40 퍼센트, 2025년까지 50퍼센트로 증가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간 소유 전기 공급회사가 재생 가능 전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요건은 이러한 전기의 가격이 전기에 대해 규정된 시장 가격보다 10 퍼센트 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에 한해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비용 상한선에 의해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재생가능 자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기 공급회사는 법률에 규정된 킬로와트시 당 1 센트의 벌금 요율을 총 연간 벌금 금액에 대한 상한선 없이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설 재생가능 전기 플랜트를 승인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단축될 것입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공급회사들(공공 회사 제외)은 계속해서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 발전되는 전기의 비용을 2010년까지 20퍼센트로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간 소유 공익사업체가 재생가능 전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현행 요건은 계속 총 구매 금액에 대한 연간 비용 상한선의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전기 공급회사들은 계속 벌금 요율(현재 킬로와트시 당 5센트)과 총 연간 벌금 상한선(현재 공회회사 당 2,500만 달러)을 행정적으로 규정한 기존의 벌금 집행 절차를 적용 받을 것입니다. 신설 재생가능 전기 플랜트를 승인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단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

찬성 모든 공익사업체가 2025년까지 50%의 재생가능 전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발의안 제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과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열, 풍력, 지열력의 개발을 지원하십시오. 발의안 제7호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값비싼 화석연료와 위험한 해상 시추보다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반대 주도적인 환경 단체, 재생가능 전력 제공사, 납세자, 기업체 및 근로자는 발의안 제7호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제7호는 부실하게 작성되어, 재생가능 전력의 생산을 줄이고,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다른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의안 제7호는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 회사들을 캘리포니아 주의 시장에서 축출합니다. 전력 제공사들은 언제든 시장 요금보다 10%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www.NoProp7.com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Jim Gonzalez
Californians for Solar and Clean Energy
18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1
(916) 444-2425 / 449-6190
jim@jimgonzalez.com
www.Yeson7.net

반대
Californians Against Another Costly Energy Scheme
(866) 811-9255
www.NoProp7.com

발의안 제8호 **동성 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동성 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하도록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을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향후 수년간, 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판매세 수입이 합계 수천만 달러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거의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을 받는다고 규정할 것입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동성인 사람 사이의 결혼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계속 유효하거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8호는 유권자들의 61%가 이미 승인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인정된다는 법 규정을 복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판사 4명이 주민들의 투표를 번복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제8호는 전통적인 결혼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으나, 동성 동거 파트너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반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상관없이, 특정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발의안 제8호는 우리의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의해 다른 대우를 받고, 법에 의한 공평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ww.NoProp8.com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ProtectMarriage.com - Yes on Proposition 8
915 L Street #C-259
Sacramento, CA 95814
(916) 446-2956
www.protectmarriage.com

반대
Equality for ALL
NO on Proposition 8
921 11th Street, 10th Floor
Sacramento, CA 95814
(916) 717-1411
www.NoProp8.com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9호
형사사법제도.
피해자의 권리. 가석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보석, 탄원, 신고, 가석방을 포함하는 형사 사법 과정의 각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석이나 가석방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할 것을 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가 교도소 운영에 대한 미래의 절약 금액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카운티 구치소 운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모두 합치면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절차의 변경으로 연간 수천만 달러의 순결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범죄 피해자들은 공공 형사 소송 절차에 참석할 권리와 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을 부여 받을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은 예외 없이 지불해야 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범죄자로부터 징수한 자금은 다른 모든 채무에 앞서서 이러한 배상 채무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가석방이 거부된 종신형 수감자들은 보통 가석방에 대한 재심을 받기 전에 더 오래 대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석방이 취소되어 교도소로 돌아가는 일부 가석방자는 더 이상 변호사의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의 과밀을 줄이기 위해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피해자는 신고 및 가석방 절차와 같은 특정한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해 통지 받을 법적인 권리를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은 계속 판사의 재량권에 속하고, 피고로부터 징수한 자금을 분배하는 방법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석방 취소 심리와 가석방 심사에 대한 현재의 대기 기간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가석방자는 가석방 심리에서 법률 대리를 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을 줄이기 위해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

찬성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이와 유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발의안 제9호는 피해자들에게 집행 가능한 헌법상의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안전과 사법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막대한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고, 정치인들이 교도소의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석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 법집행관, 공화당원 및 민주당원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반대 발의안 제9호는 이미 주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원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빠져나가는 수억 달러의 자금은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더 많은 교도소를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안은 복잡하고 중복되는 법률들을 헌법에 추가하여 현대화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Randle Communications
925 L Street, Suite 1275
Sacramento, CA 95814
(916) 448-5802
Yesonprop9@gmail.com

반대
Richard Rios
No on Propositions 6 & 9
555 Capitol Mall, Suite 1425
Sacramento, CA 95814
(916) 442-2952
www.votenoprop9.com

발의안 제10호
대체 연료 차량과 재생가능 에너지.
공채. 주민 발의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소비자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와 대체 연료 차량 연구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주정부의 일반기금으로 상환하는 50억 달러의 공채 발행을 승인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주정부에 30년에 걸쳐 약 1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019년까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이 증가하고, 총액이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정부에 연간 약 1,000만 달러 미만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정부는 다양한 재생가능 에너지, 대체 연료, 에너지 효율, 대기 배출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50억 달러의 일반보조공채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정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50억 달러의 일반보조공채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에너지 자립과 청정 공기를 달성하기 위한 발의안 제10호에 찬성하십시오. 태양열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청정 대체 연료 차량을 구입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오염을 일으키는 디젤을 도로에서 제거합니다. 휘발유를 대체하는 더 값싼 연료를 개발 중인 캘리포니아 주 대학들에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엄격한 책임/감사를 요구합니다. 새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대 발의안 제10호는 책임이 거의 없고 환경적 이익에 대한 보장도 없이 주로 한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100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넘겨주는 특수이익집단의 법안입니다. 예산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때, 학교와 다른 서비스에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10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Californians for Energy
Independence - Yes on
Prop. 10
1415 L Street, Suite 430
Sacramento, CA 95814
info@prop10yes.com
www.prop10yes.com

반대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
520 S. El Camino Real, Suite 340
San Mateo, CA 94402
(650) 375-7840
www.votenooprop10.com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11호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주 공직 선거구를 정하는 권한을 의회에서 위원회로 변경합니다. 등록 유권자로 구성된 전체 신청인 중에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다단계 과정을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민주당원, 공화당원, 그리고 양당에 속하지 않은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2개의 조직체가 선거구 재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주정부의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아마도 상당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 하원, 상원 및 조세형평국의 선거구를 캘리포니아 주의 등록 유권자로 구성된 새 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연방 하원 선거구는 계속 주의회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 하원, 상원, 조세형평국 및 연방 하원 선거구를 계속 주의회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이해의 상충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1호는 명확한 규칙에 따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주민 위원회가 경계를 정하는 공정한 선거구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정치인들에게 휘발유 가격, 의료, 교육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책임을 부과합니다.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여 새크라멘토를 변화시킵시다.

반대 정치인들은 헌법을 개정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새 관료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에서 선출된 적도 없고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발의안 제11호를 투표에 부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 법안을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투표권을 지키십시오!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Prop. 11
(916) 325-0056
info@yesprop11.org
www.yesprop11.org

반대
Renée Sanku
Citizens for Accountability.
No on Prop. 11
555 Capitol Mall, Suite 1425
Sacramento, CA 95814
(916) 443-5900
Stopthepowergrab@yahoo.com
www.noonprop11.org

발의안 제12호 2008년 재향군인 공채법.

요약 *주의회에 의해 투표에 회부*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재향군인들에게 농장과 주택을 구입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역 달러(900,000,000달러)의 공채를 발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공채 원금(9억 달러)과 이자(8억 5,600만 달러)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 약 18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향군인들이 지불합니다. 30년 간 매년 평균 약 5,900만 달러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정부가 퇴역 군인 농장 및 주택 구입 (Cal-Vet) 프로그램에 용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9억 달러의 일반 보충 공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정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온 Cal-Vet 주택 용자 프로그램은 재향군인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공채를 발행하여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러한 공채와 모든 프로그램 비용은 용자를 받은 재향군인들이 상환합니다. 이 법안은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바랍니다.

반대 발의안 제12호는 “재향군인”에게 저이자의 주택(및 농장) 구입 용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9억 달러의 추가 공채를 승인합니다. 유권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이러한 용자금의 제공을 가장 빈곤하고 수혜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재향군인과 같은)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JP Tremblay 또는 Jerry Jones
California Dept. of Veterans
Affairs
1227 O Street
Sacramento, CA 95814
(916) 653-2192
www.cdva.ca.gov

반대
Gary Wesley
Attorney at Law
707 Continental Circle
Mountain View, CA 94040
(408) 882-5070
gwesley00@yahoo.com

발의안 제 1호

고속철도 공채. 의회 발의 개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고속철도 공채. 의회 발의 개정안.

-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사이에 새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90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 자금 사정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철도를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 고속철도에 대한 연결과 궤도, 신호기, 구조물, 시설, 차량을 포함하는 여객 철도 서비스의 수리, 현대화 및 개선을 위해 9억 5,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 총 99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일반 보증 공채를 발행하여 조달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운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공채 원금(99억 5,000만 달러)과 이자(95억 달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정부에 30년에 걸쳐 약 194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년 약 6억 4,7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 고속철도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아마도 연간 10억 달러가 넘을 알 수 없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고속철도 이용자 수에 따라 여객 운임 수입으로 최소한 부분적으로 상계될 것입니다.

SB 1856(발의안 제1호)에 대한 주의회의 최종 투표 결과

상원:	찬성 27	반대 6
하원:	찬성 59	반대 16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도시 철도, 통근 철도, 도시간 철도. 캘리포니아 주는 도시 철도, 통근 철도, 도시간 철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여객 철도 서비스들이 여객 수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시 철도와 통근 철도 서비스는 주로 지역과 지방에 필요한 여객 수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예에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Bay Area Rapid Transit, Sacramento Regional Transit 경철도, 남부 캘리포니아 주의 Metrolink, San Diego Trolley 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통 지역 또는 지방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연방, 주, 지방의 자금을 혼합하여 재원을 조달합니다.

도시간 철도 서비스는 주로 비즈니스 및 위락 여객에게 도시 사이는 물론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과 미국의 다른 부분 사이에 비교적 장거리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주정부는 Amtrak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시속 약 90 마일의 최고속도로 달리는 열차를 운행하여 도시간

철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시간 철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3곳의 주요 루트를 통해서 운행됩니다: 산호세와 오번을 연결하는 Capitol Corridor 서비스, 오클랜드와 베이커스필드를 연결하는 San Joaquin 서비스, 샌디에고와 샌루이스오비스포를 연결하는 Pacific Surfliner 서비스. 주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기존의 도시간 철도 서비스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속 철도.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는 시속 200 마일 이상의 유지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간 고속 여객 철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주정부는 시속 200마일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북부와 남부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간 철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1996년에 캘리포니아 주 고속철도국(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을 설립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고속철도국은 지난 12년에 걸쳐 환경 연구 및 계획과 같은 고속 철도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공 전 활동을 위해 약 6,0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고속철도국이 제안한 시스템은 전기열차를 사용하여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의 주요 도시권에서 시작하여 센트럴 밸리를 통해서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엠파이어(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디에고로 연결됩니다. 고속철도국은 2006년에 전체 고속 철도 시스템을 개발 및 건설하는 총비용은 약 4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고속철도국은 연방, 민간, 지방 및 주의 자금을 혼합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건설 자금을 제공할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 어떤 자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이 법안은 주정부가 (1) 캘리포니아 주 고속 여객 철도 시스템과 관련된 시공 전 활동과 시공, 그리고 (2) 수송 능력을 확대하고 열차 여객들을 고속 철도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여객 철도 시스템에 대한 자본적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99억 5,000만 달러의 일반보증공채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공채 자금은 주의회가 지출을 승인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증공채는 주정부가 보증하며, 이것은 주정부가 이러한 공채의 원금과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보증공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투표 팜플렛의 “주정부 공채 채무 개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고속 철도 시스템. 총 공채 금액 중에서 90억 달러는 사용 가능한 모든 연방 자금과 다른 자금원들이 제공하는 자금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트랜스베이 터미널과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역 구간의 개발 및 건설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의해 조달하는 공채 수입금은 우선 통행권, 열차 및 이와 관련된 장치를 구매하고, 궤도, 구조물, 전력 시스템,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채 수입금은 궤도와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총비용의 절반 이하만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고속철도국이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자금 및 다른 공공 자금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구간 공사에 대한 자금을 완전히 제공한 후에는 나머지 공채 자금을 다음의 추가 구간에 대한 계획과 공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클랜드와 산호세
- 새크라멘토와 머시드
- 로스앤젤레스와 인랜드 엠파이어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 인랜드 엠파이어와 샌디에고
- 로스앤젤레스와 어바인

기타 여객 철도 시스템. 나머지 9억 5,000만 달러의 공채 자금은 수송 능력을 증가시키고 여객들을 고속 철도 시스템에 연결하는 기타 여객 철도 시스템을 개량하는 자본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9억 5,000만 달러 중 1억 9,000만 달러는 주의 도시간 철도 서비스를 개량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정됩니다. 나머지 7억 6,000만 달러는 도시 철도 및 통근 철도를 포함하는 기타 여객 철도 서비스에 사용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영향

공채 상환 비용. 이 공채를 상환하는 비용은 공채를 판매할 당시의 유효한 이자율과 공채를 상환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정부는 약 30년에 걸쳐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것입니다. 공채가 5퍼센트의 평균 이자율로 판매되는 경우, 원금(99억 5,000만 달러)과 이자(95억 달러)를 상환하기 위한 비용은 약 194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평균 지불금은 연간 약 6억 4,70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운영 비용. 고속 철도 시스템이 완공된 후에는 알 수 없는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 비용은 아마도 연간 10억 달러가 넘을 것입니다. 여객들의 이용 수준에 달려 있으나, 이 비용은 최소한 여객들이 지불하는 요금 수입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계될 것입니다.

★ 발의안 제1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1호는 치솟는 휘발유 가격, 고속도로 정체, 인상되는 항공요금, 저하되는 항공사 서비스, 감소하는 항공편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석유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것입니다.

발의안 제1호는 현재 정제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고속도로와 공항으로부터 연간 7,000만 명의 여행 승객을 덜어줄 800마일 거리의 고속열차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 99억 5,000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는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유럽과 아시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고속열차의 혜택을 받을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1호는 캘리포니아 주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철로를 따라 설치되고 다른 교통량과 안전하게 분리되는 현대식 궤도 위에서 시속 220마일로 달리는 전동 고속열차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프레즈노,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의 시내 중심가 역을 연결하고 그 사이의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노선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엠파이어, 샌호아킨밸리, 사우스베이 주요 도시로 연결되는 고속열차 서비스

—고속열차에 연결되는 통근열차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

발의안 제1호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1인 당 약 50달러의 요금으로 약 2½시간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적용할 때, 갠던 당 20마일을 주행하는 자동차로 이러한 여행을 하면 약 87달러를 지출해야 하고 6시간이 걸립니다.

10년에 걸쳐 연구와 계획을 한 끝에, 인기 있고, 신뢰성 있고, 성공적인 유럽과 아시아의 시스템을 모델로 한 캘리포니아 주 환관열차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속열차는 서비스와 절약을 제공합니다.

현재 항공 여행자는 하늘보다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1호는 우리의 주요 공항의 상태를 개선할 새로운 수송 방법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활주로를 건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고속열차는 이러한 수요를 완화합니다.

전동 고속열차는 거의 100만 대의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오염과 맞먹는 120억 파운드의 CO₂와 온실가스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열차는 항공 여행의 3분의 1, 자동차 여행의 5분의 1에 불과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발의안 제1호는 다음과 같이 납세자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수행한 2건의 독립적인 승차율과 수입 예측은 같은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엄격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기존 고속열차 시스템의 운행 기사가들이 캘리포니아 주 시스템 설계의 감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새 시스템은 주지사, 주의회, 법무장관 및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부터 법적, 재무적 감독을 받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1호의 공채 자금은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 90억 달러의 연방정부 자금과 민간 투자를 추가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동 능력을 개선하고, 거의 160,000개에 달하는 건설 관련 일자리, 그리고 관광과 같은 관련 산업에서 450,000개의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의안 제1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이것은 외국에서 조달할 수 없는 미국인의 일자리입니다.

발의안 제1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californiahighspeedtrains.com

MICHAEL TURNIPSEED, 집행 디렉터
 Kern County Taxpayers Association
GLEN CRAIG, 커미셔너(은퇴)
 California Highway Patrol
JIM EARP, 집행 디렉터
 California Alliance for Jobs

★ 발의안 제1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정치적인 무익한 낭비인 발의안 제1호에 반대하십시오.

우리의 예산 위기, 의료 또는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발의안 제1호를 투표에 회부했습니다. 그들이 인정했듯이, 이 열차에는 최소한 4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공채는 단지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일부 금액”에 불과하므로, 새 고속열차 시스템이 완공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컨설턴트, 연구, 유럽 출장, 화려한 브로셔에 대한 비용으로 이미 5,800만 달러를 낭비했습니다. 발의안 제1호는 1인치의 궤도를 설치하기도 전에 관리와 정치인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1호를 지지하는 특수이익집단은 책정된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 사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19,200,000,000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발의안 제1호에 반대하십시오.

정치인들은 공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들이 30년 동안 매년 6억 4,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공채를 어떻게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학교와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할까요? **오도되지 마십시오. 납세자들은 19,200,000,000달러의 전체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1호에 반대하고, 그 대신에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을 확장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문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직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의 자금을 지역 대중교통수단과 고속도로 체증 완화에 투자하면 공해와 외국인 석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1호에 반대하십시오. 책임을 묻지도 않고, 고통 받는 통근자들을 위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TOM McCLINTOCK, 주 상원의원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RICHARD TOLMACH, 회장
 California Rail Foundation

★ 발의안 제1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납세자들에게 20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발의안 제1호에 반대하십시오.

발의안 제1호는 공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20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무익한 낭비입니다.

납세자들은 이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이것은 “공돈”이 아닙니다. 이 법안(제3절 2704.10조)에 의하면, “. . .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한의 성실성과 신용으로 공채 원금과 이자를 정시에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이 법안은 공채 상환 기간 동안 일반 기금에서 2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균 4인 가정 당 2,000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발의안 제1호에 반대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들은 더 많은 예산 적자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적자로 인해 의료, 빈곤층, 공원, 학교에 대한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예산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지금은 주정부에 200억 달러의 부채와 이자를 추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는 이미 유권자들이 승인한 1,000억 달러가 넘는 공채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의 공채 등급은 이미 미국에서 최하위에 속하므로, 이러한 공채를 발행하면 등급이 더 낮아질 것입니다.

발의안 제1호에 반대하십시오. 납세자의 세금을 더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 200억 달러의 무익한 낭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 이 200억 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22,000명의 새 교사, 소방대원 또는 법집행관을 10년 간 고용
- 이 주의 모든 아동에게 수년 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
-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주의 상수도 시스템을 개선 및 개량
-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기존의 교통 시스템을 개량 및 확장 (그러면 교통 체증과 배기가스 배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1호에 반대하십시오. 이 법안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자금을 관리합니다.

새 “재무위원회”에는 주민 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정치인과 관료들입니다.

보고 요건이 없으므로 일반대중은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호에 반대하십시오. 납세자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비용은 4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어떤 전문가들은 1,000억 달러(평균 4인 가정 당 10,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법안의 제1(d)조에는 공채 자금을 대해서는 “. . .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이 건설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 .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권장”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연방정부나 민간부문에서 1센트도 받지 못하는 것에 상관없이, 납세자의 세금을 지출할 것”이라는 관료주의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5,800만 달러의 납세자 세금이 이미 이 프로젝트에 지출되었으나, 아직 단 1피트의 궤도도 설치되지 않았습니. 이제 그들은 1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발의안 제1호에 반대하십시오. 특수이익집단이 특수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고속열차 협회가 이 무익한 낭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의 이사회는 타국 및 타주(프랑스, 펜실베이니아 주, 뉴저지 주, 메릴랜드 주, 뉴욕 시, 텍사스 주, 일리노이 주)의 특수이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동참하여 발의안 제1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이 법안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www.DerailHSR.com을 방문하여 직접 읽어보십시오.

TOM McCLINTOCK, 주 상원의원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BOB DUTTON, 주 상원의원

★ 발의안 제1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캘리포니아 주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는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고 엄격한 재무 감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이 법안은 간단하고 공정합니다. 시스템이 완공되면 사용자가 시스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납세자 감시 단체가 발의안 제1호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진기 고속열차는 급등하는 휘발유 가격과 외국산 석유 의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일 것입니다. 고속철도의 건설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고속도로, 공항 및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비행 및 장거리 자동차 여행은 정체와 번거로움으로 매우 귀찮은 일이 되었습니다. 발의안 제1호는 시간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도시 중심지 사이를 고속열차로 여행하는 것은 자동차나 항공기 여행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통 시스템은 노후되었고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관리된 도로, 붐비는 활주로, 막히는 간선도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대부분의 문명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고속철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국 및 타주보다 너무나 뒤쳐져서, 와해되고 있는 기반시설이 우리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속 220마일로 달리는 주 전체 철도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여행과 상업에 위한 더 빠르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1호는 법집행 전문가, 기업 경영자, 환경주의자, 그리고 안전하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찾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1호에 대한 반대 의견의 서명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교통 개선을 습관적으로 반대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롭고,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수단에 투자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1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californiahighspeedtrains.com

MICHAEL TURNIPSEED, 집행 디렉터

Kern County Taxpayers Association

JIM EARP, 집행 디렉터

California Alliance for Jobs

TIMOTHY McCALLION, 이사회 의장

Los Angeles Area Chamber of Commerce

발의안 제2호

농장 동물을 가두는 기준. 주민 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농장 동물을 가두는 기준. 주민 발의 법안.

- 송아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육되는 송아지, 알을 낳는 암탉과 새끼를 밴 돼지는 이러한 동물들이 눕고, 일어서고, 다리와 날개를 완전히 뻗고, 자유롭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가둘 것을 요구합니다.
- 수송, 로테오 경기, 품평회, 4-H 프로그램, 합법적인 도살, 연구 및 수의학적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및/또는 180일 미만의 징역에 해당되는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알 수는 없으나, 농장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세 및 지방세 수입이 아마도 연간 수백만 달러 범위 내에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집행 및 기소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경미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중 일부는 벌금 수입의 증가에 의해 상계될 것입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축산업은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산업입니다. 4,000여 만 마리의 동물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농장과 목장에서 상업용으로 사육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가축 생산품은 우유와 기타 유제품, 소, 닭 등입니다.

최근 수년 간, 농장 동물 사육 방법과 이러한 방법이 동물의 취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특정한 동물들을 우리 또는 다른 제한된 구역과 같은 폐쇄 공간에 가두어두는 것을 포함하는 일부 동물 사육 방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다양한 동물 사육 업계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우려에 부응하여 사육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업계에서는 부분적으로 농장 동물의 관리와 취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이드라인과 최선의 관행을 개발했습니다.

주법은 동물들을 잔인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 의하면 동물들을 제한된 구역에 가두어두는 사람은 적절한 운동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한 수용 시설, 사료 및 물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농장 동물들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인도적인 운송과 도살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법률들에 대해 특정한 위반을 하는 사람은 벌금, 징역 또는 2가지를 병과하는 중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의안

이 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새끼를 밴 돼지, 송아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육되는 송아지, 알을 낳는 암탉을 이러한 동물들이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고, 눕고, 일어서고, 다리와 날개를 완전히 뻗을 수 없는 방법으로 농장에 가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은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및/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농장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재의 관행에 비해, 이 법안은 새끼를 밴 돼지, 송아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육되는 송아지, 알을 낳는 암탉을 가둘 때 더 넓은 공간 및/또는 대체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이러한 농장주들의 일부에 대해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일부 농장주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전체적인 생산과 수익성이 감소하는 경우, 주세와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영향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연간 수백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동물을 가두는 방법을 규정한 새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법집행 및 기소와 관련하여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경미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벌금 징수로부터 얻는 수입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계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2호 **농장 동물을 가두는 기준.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2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2호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동물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발의안 제2호는 동물들을 가혹하고 비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막고, 농장 동물들을 방향을 바꾸거나 다리나 날개를 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우리에 뺨뺨하게 가두는 관행을 종료시키기 위한 온건한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2호에 찬성 투표를 하시면 동물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가족 농장주들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농업 이해 집단은 발의안 제2호에 반대합니다—이러한 집단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안전한 식품”이라는 가식적인 이름을 사용하고—일반대중을 속이고,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며,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발의안 제2호에 찬성 투표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동물을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송아지 고기를 제공하는 송아지, 새끼를 뺨 패지, 알을 낳는 암탉을 몸체보다 조금 큰 작은 우리에 가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송아지들은 목에 밧줄을 매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 좁은 곳에 가둔 패지들은 쇠막대를 물어뜯고, 암탉들은 완전히 갇힌 상태에서 철사로 만든 닭장에 찢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 더럽고, 비좁은 우리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됩니다.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을 포함하는 모든 동물들은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우리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금년에 치노 도살 공장 조사에서 드러난 가혹한 대우를 받아 병들고 걷지 못하는 소들을 목격했고, 당국은 학교 식단에서 소고기를 제외시키고 전국적인 리콜을 실시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장 농장주들은 이처럼 동물들을 심하게 학대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태롭게 했으면서도, 여전히 동물들을 과밀하고 비인도적인 상태로 가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동물들은 작은 우리에 뺨뺨하게 가두어 키우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물 질병들이 확산됩니다. 발의안 제2호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가족 농장주들을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족 농장주들은 동물을 사육하는 방법을 개선하면 식품의 품질과 안전이 향상된다고 믿기 때문에 발의안 제2호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농장주들은 세이프웨이와 버거킹 같은 주류 소매업체들에게 점점 더 많은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장 농장들은 동물의 복지와 사람의 건강보다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을 택하고, 가족 농장주들의 폐업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공기와 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합니다. 미국 공중보건협회와 공장 농장 사업이 주변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농장에 대한 신규 허가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장 농장들은 종종 처리하지 않은 배설물들을 땅 위에 방치하여 우리의 수로, 호수, 지하수, 토양,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발의안 제2호는 동물을 가두는 최악의 관행을 단계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귀중한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 청정수 활동 단체와 캘리포니아 주 시에라 클럽이 발의안 제2호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 합리적이고 상식에 입각한 개혁입니다. 발의안 제2호는 공장 농장주들이 이러한 가혹하게 가두는 방법을 보다 인도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시간(2015년까지)을 제공합니다. 애리조나 주, 콜로라도 주, 플로리다 주, 오레곤 주는 이와 유사한 법률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수의사, 가족 농장주, 공중 이익 과학 센터와 축산업에 대한 권위 있는 조언을 제공하는 회중 위원회, 공화당 및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성공회 및 감리교 교회 지도자, 전미 가톨릭 농촌 생활 컨퍼런스, 미국 소비자 연맹과 다른 단체들이 발의안 제2호에 찬성 투표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www.YesOnProp2.org를 방문하십시오.

WAYNE PACELLE, 회장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DR. KATE HURLEY, D.V.M., M.P.V.M., 임상교수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ANDREW KIMBRELL, 집행 디렉터
Center for Food Safety

★ 발의안 제2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캘리포니아 주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발의안 제2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고, 달걀 가격이 급등하여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UC 데이비스의 연구에 의하면, 발의안 제2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하고, 가격이 저렴한 달걀의 공급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멕시코를 포함하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트럭으로 실어온 달걀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식품의 안전, 그리고 동물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발의안 제2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권위 있는 식품 안전, 수의학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발의안 제2호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알을 낳는 암탉을 사육하는 현대적인 닭장 시스템이 안전하고, 건전하고, 인도적이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시스템은 암탉들을 적절하게 돌보고 대우하도록 설계되었고, 충분한 공간, 사료, 물, 조명, 위생을 제공하며, 암탉들이 일어서고, 날개를 펴고, 방향을 바꾸고 눕는 것을 허용합니다. 암탉들은 철새와 야생동물(조류독감을 일으킬 수 있는)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배설물(살모넬라 균이 들어 있을 수 있는) 위에서 생활하고 알을 낳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발의안 제2호는 현대적인 닭장 시설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알을 낳는 암탉들에게 해를 끼치고, 동물 복지를 손상시키고,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발의안 제2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온건”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매우 극단적이며, 과학에 근거한 식품 안전과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가정의 건강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동물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법이 오랫동안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요구해 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의 식품 안전을 지키십시오.

DEAN CLIVER, 식품안전학 명예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MIKE KARLE, DVM, 회장
Association of California Veterinarians
HECTOR CERVANTES, DVM, 회장
American College of Poultry Veterinarians

★ 발의안 제2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발의안 제2호는 불필요하고, 위험하고, 극단적입니다. 이 발의안은 워싱턴 D.C.에 근거지를 둔 자금이 풍부한 특수이익집단이 후원하며, 캘리포니아 주에 위험하고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2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조류독감, 살모넬라 균 오염, 다른 질병에 대한 위협에 처하게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농장주들은 현대적인 닭장 시스템(발의안 제2호가 효과적으로 금지하려고 하는 닭장 시스템)을 사용하여 조류 독감과 다른 질병들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지나치게 극단적이어서 “닭장이 아닌” 축사에서 생산하는 달걀도 효과적으로 금지하므로, 암탉들은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축사 밖에서 보내야 합니다.

“암탉들을 야외에서 사육하는 것은 철새, 야생 조류 및 다른 동물들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을 증가시켜 조류독감, 외래 뉴캐슬병 및 다른 질병들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 미국동물건강협회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가금류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조류독감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고 “전세계에 전파(유행성)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거의 모든 농장주들은 캘리포니아 주 식품농업부의 달걀 품질 보장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식품 안전 및 공중보건에 대한 최고의 표준에 따라 생산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의 달걀에서 살모넬라와 같은 식품 매개 질병을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식품농업부에 의하면, 거의 10년간 캘리포니아 주의 달걀 생산 과정에서 살모넬라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타주와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트럭으로 운송되는 달걀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달걀과 같은 높은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호는 가족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하고, 가격이 저렴한 달걀을 구입하는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소비자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타주와 멕시코에서 트럭으로 운송하는 달걀을 구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족 농장주들은 폐업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경제 활동을 6억 달러 이상 위축시켜 주 및 지역의 경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달걀 가격이 더 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휘발유, 주택 및 기본적인 식료품 비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으므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식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여유가 없습니다.

발의안 제2호는 몇 가지 농장 동물들의 **대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두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어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로 알을 낳는 암탉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식품 안전 담당 공무원, 공중보건 전문가, 의사, 동물 복지 옹호자들은 암탉을 가장 잘 돌보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현대식 닭장 시스템을 지지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이미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안 제2호는 불필요합니다.

발의안 제2호는:

- 조류독감이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살모넬라 같은 식품 매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되는 달걀 가격을 인상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농장주들을 폐업시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 6억 1,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여 환경을 해칩니다.

가족 농장주, 의사, 공중보건 및 식품 안전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발의안 제2호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www.safecaliforniafood.org를 방문하십시오.

발의안 제2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달걀의 안전성, 저렴한 가격, 신선도, 지역성을 유지하십시오.

DR. CRAIG REED, DVM, 전임 부국장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DR. TIM E. CARPENTER, Ph.D., 전염병학 교수
Department of Medicine and Epidemiology,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UC Davis
DR. PATRICIA BLANCHARD, DVM, Ph.D., 부서장
University of California Animal Health and Food Safety
Laboratory System

★ 발의안 제2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2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동물, 식품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장 농업 기업들은 그 업계와 제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잘못된 주장과 쓸모 없는 과학으로 유권자들에게 겁을 줍니다. 동물들에게 놓고, 방향을 바꾸고, 사지를 뻗게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과학에 기반을 둔 다음과 같은 주류 단체들은 발의안 제2호를 지지합니다.

- 미국 소비자 연맹
- 미국 인도주의 협회
- 관심 과학자 동맹
- 산업용 농장 동물 생산에 대한 회중 위원회
- 캘리포니아 주 시에라 클럽
- 캘리포니아 주 청정수 활동

발의안 제2호의 반대자들은 사람과 동물보다 이익을 중요시하는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습니다.

주요 자금 제공자들 중 하나인 Moark LLC는 살아있는 새를 쓰레기통에 버린 가혹 형사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또 하나의 자금 제공자인 United Egg Producers는 동물 복지에 대한 오도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17

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허위 광고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과밀하게 수용된 동물들은 우리가 없는 시설에 있는 동물들보다 살모넬라와 다른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 겁을 주는 전략은 어떨까요? 업계에 속한 경제학자는 암탉을 닭장 안에 뺄까하게 넣는 것을 방지하는 데 달걀 1개당 1센트도 더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반대자의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닭들이 이미 작은 닭장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의안 제2호가 송아지와 돼지를 보호한다는 것과 그러한 동물들이 작은 우리 안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2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YesOnProp2.org

DR. IXCHEL MOSLEY, DVM, 회장
San Diego County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NIGEL WALKER, 캘리포니아 주 달걀 농장주
MICHAEL JACOBSON, Ph.D., 집행 디렉터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발의안 제 3호

아동병원 공채법. 보조금 프로그램. 주민 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아동병원 공채법. 보조금 프로그램. 주민 발의 법안.

- 아동 병원의 건설, 확장, 개축, 보수, 가구 비치 및 장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정부의 일반기금으로 상환할 9억 8,000만 달러의 공채 발행을 승인합니다.
- 공채 수입금의 80퍼센트를 백혈병, 암, 심장결손, 당뇨병, 겸상적혈구 빈혈증,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아동들을 주로 치료하는 병원에 제공하도록 지정합니다.
- 적격 아동병원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다수의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공채 수입금의 20퍼센트는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급성 치료 종합병원에 제공하도록 지정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운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공채 원금(9억 8,000만 달러)과 이자(9억 3,300만 달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정부에 30년에 걸쳐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년 약 6,4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아동병원은 부상을 입고, 장애가 있고, 병에 걸린 유아 및 아동들에게 진단,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합니다. 아동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많은 아동들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로서,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권자들이 2004년 11월의 주전체 총선거에서 통과시킨 발의안 제61호는 아동병원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7억 5,000만 달러의 일반보증공채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발의안 제61호에 따라 자금을 제공 받는 병원에 대한 자격 기준은 이 법안과 동일합니다. 2008년 6월 1일 현재, 약 4억 300만 달러의 발의안 제61호 자금이 적격 병원에 제공되었습니다.

발의안

이 법안은 주정부가 아동병원의 자본적 개량 프로젝트들을 위해 9억 8,000만 달러의 일반보증공채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법안은 특별히 적격 공채 자금 수령자로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의 아동병원들을 지정합니다. 이 법안에 명시된 다른 자격 기준

그림 1
공채 자금 수령 자격이 있는 아동병원
확실하게 적격으로 확인된 병원—총자금의 20퍼센트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Mattel Children's Hospital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Children's Hospital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ildren's Hospital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Children's Hospital
적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총자금의 80퍼센트
Rady Children's Hospital, San Diego (이전의 Children's Hospital 및 Health Center, San Diego)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Children's Hospital 및 Research Center, Oakland Orange County의 Children's Hospital Loma Linda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Stanford의 Lucile Salter Packard Children's Hospital Miller's Children's Hospital, Long Beach Children's Hospital Central California

(2001-02회계연도의 아동병원 실적에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병원들이 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최소한 160개의 유아 및 아동용 면허 병상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림 1에 표시된 것은 적격 아동병원의 리스트입니다.

일반보증공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투표 팜플렛의 “주정부 공채 채무 개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공채 판매에 의해 조달한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아동병원의 건설, 확장, 개축, 보수, 가구 비치 및 장비 설치, 금융 또는 재금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의 80퍼센트는 비영리 아동병원에 제공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캘리포니아 대학 아동병원에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은 프로젝트의 총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고, 자금을 지원 받은 프로젝트는 “적절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아동병원은 자금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주정부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 의료시설 금융국(CHFFA)은 보조금 신청서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아동병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처리하고 6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CHFFA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들이 건강관리에 접근하는 것을 확대 또는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여부, 보조금이 아동 건강관리 또는 소아과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여부, 신청 병원이 소아과 교육 또는 연구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인지 여부.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에 대한 이 공채의 비용은 공채를 판매할 당시에 적용 받는 이자율과 이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안에 의해 승인된 9억 8,000만 달러의 공채가 5퍼센트의 이자율로 판매되고 30년에 걸쳐서 상환되는 경우, 주정부가 일반 기금으로부터 원금(9억 8,000만 달러)과 이자(9억 3,300만 달러)를 모두 지불하는 비용은 약 20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평균 지불금은 연간 약 6,40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운영 비용은 CHFFA의 실제 비용 또는 공채 자금의 1퍼센트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비용이 경미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 발의안 제3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저희와 같은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들은 캘리포니아 주 아동병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은 그들에게 필요하고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병원들은 가장 심한 질병과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들을 매년 백만 회 이상 치료합니다. 백혈병, 암, 심장결손, 겸상적혈구 빈혈증, 당뇨병, 낭포성 섬유증,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희귀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의 소득이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매일 지역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있는 다른 병원과 의사들은 아동들을 이러한 우수한 소아과 센터로 의뢰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전문 치료를 받게 합니다. 아동병원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장 수술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원 환자 치료의 88%
- 장기 이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모든 수술의 97%, 그리고
- 암에 걸린 아동에 대한 입원 환자 치료의 71%

이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동병원은 매일 수백 명에 달하는 아동의 생명을 구합니다. 많은 아동들은 치유됩니다. 다른 아동들은 어린 생명을 몇 년 더 연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현재, 선천성 심장결손이 있는 아동의 거의 90%는 수술에 의해 치유되거나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혈병이 있는 아동의 생존율은 80%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최고의 소아병 연구 센터는 지역 아동병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의학적 발견과 발전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호가 통과되면 아동병원들은 조산, 심한 저체중 또는 결손된 장기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최신 의료 기술 및 특수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호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공채는 향후 30년 동안 치료를 받을 수백만 명의 아동의 생명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동병원들은 심한 질병이나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받는 아동 환자들을 치료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발의안 제3호가 제공하는 자금은 아동병원들이 더 많은 병상을 설치하고 필수 장비를 구입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아동들이 저희 아이들이 받은 것과 똑 같은 우수한 치료를 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병원들과 비영리 자선병원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장 질환, 낭포성 섬유증 또는 암이 있는 아동들은 생명을 위협하고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병을 안정시키고 치료하기 위해 아동병원에 반복해서 입원해야 합니다. 아동병원은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도와 주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동병원들은 가장 심한 질병과 부상에 시달리는 아동들을 매일 구하고 있습니다! 아동병원의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은 여러분이 항상 만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의 삶은 사명감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백혈병, 암, 심장결손, 겸상적혈구 빈혈증, 당뇨병,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환이 있는 아동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심한 질병과 부상에 시달리는 모든 아동들이 저희 아이들이 받은 것과 똑 같은 치료를 받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상상에 동참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병원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저희와 같은 가정들과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 동참해 주십시오. 발의안 제3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ROBIN MEEKS, 부모
 MINDY VAZQUEZ, 부모
 DIANE GIBSON, 부모

★ 발의안 제3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우리의 경제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정부는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과 자녀, 손주들에게 더 많은 부채를 안겨줄 때가 아닙니다.

발의안 제3호의 캠페인 매니저들은 발의안 제3호를 “아동들을 위한” 발의안으로 포장하여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수혜자는 의료 장비 공급업자, 제약회사, 병원 운영자 및 다른 특수이익집단입니다. 그들은 이 발의안에 대한 자격을 얻고 캠페인을 벌이는 데 소액을 “투자”한 후에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의 세금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 발의 절차의 심각한 남용입니다.

발의안 제3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중요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아동병원 공채”(2004년의 발의안 제61호)로부터 지출하지 않은 자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가 어렵고 이러한 자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미 승인한 자금을 지출하는 대신에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발의안 제3호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누가 공채를 갚는다고 믿게 하고 싶을까요? 이빨요정이 갚을까요? 이 공채의 원금과 이자(30년에 걸쳐 거의 20억 달러)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 머지 않아 세금이 인상되거나, 또는 학교, 법집행, 또는 공원과 같은 다른 주정부의 지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큰 금액의 새로운 지출과 이에 수반되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질 여유가 없습니다. 발의안 제3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LEWIS K. UHLER, 의장
 National Tax Limitation Committee
 TED GAINES,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JAMES V. LACY, 디렉터
 American Conservative Union

★ 발의안 제3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캘리포니아 주가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공채 부채를 상환하는 주민들의 능력이 의문시되고, 우리 주의 신용 등급으로 인해 이자율이 치솟고 있는 이때,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공채 부채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만큼 현명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채 부채를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에 결함이 많습니다. 이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공채 법안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특수 이해 집단(병원, 병원의 운영자 및 직원)이 이 법안을 구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불했다는 측면에서 주민 발의 절차의 또 하나의 남용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 이해 집단이 주민 발의 절차를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2004년에 이 주민 발의안과 똑 같은 7억 5,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주민발의안을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금액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공채(발의안 제61호)로부터 제공된 자금 중 수억 달러가 아직 지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몇 개의 이익 집단은 자금이 풍부한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에 속해 있고, 다른 집단들은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 개인과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출 발의안은 주정부의 지출 우선순위를 더 잘 결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회피하는 것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여 “아동병원”을 돕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병원”의 정의를 주의해서 읽어보면 80%의 자금은 여러 환자 중에서 아동 환자들을 치료하는 한 어떤 급성 치료 병원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규 절차를 통해서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은 가난한 환자들(불법체류 외국인 포함)에 대한 치료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에 보상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공채 법안은 공채 수입금을 자본적 개량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너무 허술하여 창의적인 보조금 신청자가 공채 자금 의사결정자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영특하기만 하면 공채 자금을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지급 또는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같은 팀의 일원이고, 공채 자금 중 거의 1,000만 달러가 “운영비,” 즉 보조금 신청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의한 자격이 있는 급성종합병원은 최대 9,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병원이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을 받고 캠페인을 벌이는 자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아동들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한 것에 대해 유권자들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희망합니다. 라벨만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 특수이익집단이 주민발의 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향후에 이러한 절차를 오용하려는 생각을 단념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0년에 걸쳐 이 공채를 상환할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 이러한 종류의 부채를 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LEWIS K. UHLER, 의장
 National Tax Limitation Committee
EDWARD 'TED' COSTA, 회장
 People's Advocate
JON FLEISCHMAN, 발행인
 Flashreport.org

★ 발의안 제3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우리의 아동병원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공채 부채를 추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유권자들에게 외상성 부상과 암, 백혈병, 심장결손, 겸상적혈구 빈혈증, 낭포성 섬유증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들을 매년 백만 회 이상 치료하는 병원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기반 시설이 신생아 진료와 아동에 대한 장기 이식을 위한 기술과 시설보다 더 중요할까요?

발의안 제3호는 향후 30년에 걸쳐 캘리포니아 주 아동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발의안 제3호의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학과 비영리 단체 아동병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심한 질병과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들에게 100%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병원 공채 자금은 주정부 출납국장이 엄격하게 회계 보고를 하고 감독합니다. 그리고 발의안 제3호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가장 적은 금액의 공채입니다.

이 발의안의 반대자들은 우리의 아동들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온 사람들의 성실성을 지나치게 공격합니다. 위의 3 사람은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채로부터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주장은 비열하고, 위선적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3호는 건전한 투자이며, 그 수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캘리포니아 주 아동병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은 그들에게 필요하고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의안 제3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ROBIN MEEKS, 부모
MINDY VAZQUEZ, 부모
DIANE GIBSON, 부모

발의안 제4호

미성년자에 대한 임신 중절 전의 대기 기간 및 부모에 대한 통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미성년자에 대한 임신 중절 전의 대기 기간 및 부모에 대한 통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의사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통지한 후 48시간이 될 때까지 그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합니다.
- 의사가 부모를 법집행기관이나 아동 보호 서비스에 신고하는 경우, 특정한 성인친척에게 통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의료 응급상황이나 부모의 권리 포기에 대한 통지 예외 조항을 규정합니다.
- 미성년자의 성숙 또는 최대 이익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여 통지를 면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미성년자의 낙태에 관한 의사의 보고를 포함하는 보고 요건을 규정합니다.
- 이 법을 위반하는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허가합니다.
- 낙태에 대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나,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보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비용, 법원 행정 비용 및 주정부 보건기관 행정 비용을 합쳐서 주정부에 수백만 달러의 알 수 없는 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1953년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또는 부모에 대한 통지 없이 임신에 대해 성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과 그 후의 낙태와 관련된 법의 발전에 근거하여,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동의 또는 부모에 대한 통지 없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회는 1987년에 이 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가 낙태 수술을 받기 전에 부모나 법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률적인 문제점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고,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997년에 결국 이 법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의 미성년자들은 현재 성인과 같은 정도로 낙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Medi-Cal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속한 미성년자들도 포함됩니다.

발의안

통지 요건

이 법안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의사(또는 그의 대리인)가 임신한 미성년자에 대해 낙태 수술을 하기 최소한 48시간 전에 그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의사나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unemancipated)” 미성년자와 관련된 케이스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미국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이 아니고,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과 통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여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의사는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법이 요구하는 통지를 할 것입니다.

직접 서면 통지. 서면 통지서를 부모나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올 때).

우편 통지. 의사는 우편물 수령증을 요청했고 통지서를 반드시 통지를 받아야 하는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배달하도록 제한한 한 서면 통지서를 부모나 보호자에게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면 통지서의 추가 사본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1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서면 통지서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후 두 번째 날 정오에 그 통지서가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 요건에 대한 예외

이 법안은 부모에 대한 통지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규정합니다.

의료 응급 상황. 의사가 미성년자의 의료 기록에 임신부의 사망을 막기 위해 낙태가 필요하거나, 또는 낙태를 지연시키면 “주요 신체 기능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통지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승인한 면제.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의사에 대한 서면 면제 양식을 작성 및 서명하여 통지 요건과 대기 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이 양식에 이러한 면제가 다음의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1) 30일 간, (2) 지정한 날짜까지, 또는 (3) 미성년자의 18세 생일까지. 이 양식은 부모나 보호자가 의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통지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의사는 미성년자의 다음과 같은 서면 진술에 근거하여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통지하는 대신에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통지를 받을 부모로부터 신체적, 성적 또는 심한 정서적 학대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2) 미성년자의 두려움이 부모에 의한 그러한 학대의 패턴에 근거한다. 이 법안은 성인 가족 구성원을 미성년자의 조부모, 계부모, 양부모, 백모, 숙모, 고모, 이모, 백부, 숙부, 고모부, 이모부,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또는 친사촌으로서 21세 이상 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통지 방법은 부모에 대한 통지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의사가 아동 학대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의심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당 법집행 기관이나 공공 아동 보호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의사는 통지서에 성인 가족 구성원에게 학대를 신고했다는 것을 알리는 서신을 동봉해야 합니다.

법원이 승인한 면제. 임신한 미성년자는 소년법원에 통지 요건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충분히 성숙했고, 또는 통지가 미성년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를 원하는 미성년자는 법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법원으로부터 그 케이스에 대한 다른 지원을 받고, 법원이 임명하는 변호사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보통 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업무일 이내에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보통 4 업무일 이내에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법원이 신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의 증거를 발견하는 모든 경우에 그러한 증거를 해당 법집행 기관이나 공공 아동 보호 기관에 참조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주정부 보고 요건

이 법안은 의사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 낙태 수술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정부 보건서비스부(DHS)¹에 특정한 정보를 보고하는 양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보고 양식에는 낙태 수술을 한 시설과 날짜, 미성년자가 출생한 연도와 달, 미성년자와 낙태 수술을 한 상황에 관한 특정한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의사가 제출할 양식에는 미성년자,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서비스부는 이러한 양식에 근거하여 미성년자에 대해 수행된 낙태 수술과 관련된 특정한 통계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¹ DHS는 2007년 7월 1일부로 건강관리 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와 공중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어느 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발생시킬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제출되었고 승인 또는 거부된 청원의 숫자를 주 사법위원회에 매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공중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사법위원회가 청원을 제출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밀 유지를 보장하는 보고 방법을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처벌

미성년자에 대해 낙태 수술을 하고 이 법안의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법률 대리인, 또는 부당하게 통지를 받지 못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소송을 미성년자의 18세 생일로부터 4년 이내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더 나중에)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성년자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낙태에 대해 통지했다는 허위 정보를 고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받을 것입니다.

강요에 대한 구제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낙태를 강요 받는 경우 소년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케이스를 신속하게 심리해야 하고,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이 주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은 주로 이 새 요건이 낙태와 임신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주의 유사한 법률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미성년자들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미성년자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법원, 주정부의 비용을 합산한 주의 준비비용은 아마도 매년 수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법안의 잠재적인 주요 재정적인 영향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주정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절약 및 증가

이 법안에 의해 제안된 것과 유사한 법률에 대한 다른 주의 연구 결과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미성년자가 받는 낙태 수술의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행하는 낙태 수술의 감소는 캘리포니아 주의 미성년자들이 타주에서 받는 낙태 수술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의해 상쇄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미성년자들은 이 법안의 결과로 임신을 피할 수 있어, 이 그룹에 대한 낙태의 수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이 법안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낙태 수술을 받는 미성년자의 전체적인 숫자가 감소하는 경우, 또한 Medi-Cal 프로그램과 미성년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주정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수행할 낙태 수술의 건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 결과, 주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로부터 알 수 없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미성년자에 대한 임신 중절 전의
제4호 대기 기간 및 부모에 대한 통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또한 이 법안은 주정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금액을 알 수 없는 약간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 법안에 의해 미성년자의 낙태가 감소하여 공적 자금으로 제공하는 건강관리에 대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우, 주정부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임신 기간 동안과 분만 및 추적 진료 시에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또는 다른 관련 비용과 절약 요인들이 주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운영향은 아마도 매년 수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정부의 총지출에 비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Medi-Cal 프로그램만해도 2007-08연도에 141억 달러의 비용을 주정부에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정부 보건기관 행정 비용

주정부는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제작하고, 의사 보고 시스템을 수립하고, 미성년자가 받는 낙태 수술에 대한 통계 정보가 들어있는 최초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첫해에 최대 35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주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5만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소년법원 및 항소법원의 행정 비용

이 법안은 주로 미성년자들이 법원에 통지 요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인해 주정부에 법원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주로 면제를 신청하는 미성년자의 수에 따라 연간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2007-08연도에 2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에 대한 주정부의 총지출에 비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비용

이 법안이 일부 미성년자들이 낙태 수술을 받는 것을 단념시키고 저소득층 미성년자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자녀 취업 기회 및 책임(CalWORKs) 프로그램에 따라 빈곤층 가정에 제공되는 현금 보조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규모는 연간 수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CalWORKs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모두 자금을 지원 받으나, 모든 CalWORKs 연방 자금은 상한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비용은 아마도 주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자금을 합치면 2007-08연도에 약 5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CalWORKs에 대한 주정부의 총지출에 비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의 아동 복지 및 가정 위탁 보호 비용이 경미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미성년자에 대한 임신 중절 전의
제4호 대기 기간 및 부모에 대한 통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4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지금은 어떤 사람(미성년 소녀를 임신시킨 성인 포함)이 임신한 소녀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비밀로 화학적 또는 수술적 방법에 의해 낙태를 시키고, 의사는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의 허점을 시정할 때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임신한 소녀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Sarah는 겨우 15살 때 비밀 낙태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녀에게 고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고,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그녀의 찢어진 자궁 정부에 치명적인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Sarah는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중의 누군가가 낙태한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Sarah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4호(Sarah 법)는 의사가 18세 미만의 소녀에게 낙태 시술을 하기 전에 부모 (또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조부모, 숙모 또는 자매와 같은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으나, 그러한 소녀를 돌보는 성인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고, 정당한 치료를 받는지 확인하고, 그녀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년 간, 30개가 넘는 주에서 발의안 제4호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위협이나 해를 끼치지 않고 십대 임신과 성병을 줄입니다.

의료 전문가와 입법자들은 가족 구성원이 자녀의 의료적 상황에 대해 알고 있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통지를 받을 때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 캘리포니아 주법은 미성년자가 태닝 살롱을 이용하기 전에 부모가 직접 동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

그러나 어린 소녀는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그녀의 안전, 또는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감추면 성범죄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Sarah 법은 어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당시에 14세였던 소녀에게 남성 성범죄자의 요청에 따라 낙태 시술을 했으며, 그녀를 데리고 온 범죄자는 그녀와 즉시 다시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데포 프로베라를 주사했습니다.

낙태 시술자는 이러한 범죄를 법집행기관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면 신고할 것입니다!

가족계획연맹은 23세 된 남자가 성폭행을 한 후에 낙태를 시키려고 데리고 온 13세 된 소녀에 대한 성적 학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비밀 낙태를 한 후, 같은 남자가 다시 그녀를 임신시켰고, 그녀는 두 번째 낙태를 했습니다. 슬프게도, 비밀 낙태 피해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Sarah 법이 없으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미성년인 딸이 낙태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비밀로 하면 학대는 계속되고, 이것은 가정 내의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Sarah 법은 피해를 입기 쉬운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를 신고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SARAH와 같은 어린 소녀들이 혼자서, 또는 더 나쁜 것은 성범죄자의 강요에 의해 비밀 낙태를 받는 신체적, 정서적 위험에 직면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딸들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할 것을 권고하는 의사, 간호사, 교사, 부모 및 법집행관들에 동참하여 발의안 제4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YESon4.net

BARBARA ALBY, 저술가

California's "Megan's Law"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JOSEPH R. ZANGA, M.D., FAAP, 전임 회장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TONY RACKAUCKAS, J.D., 지방검사

오렌지 카운티

★ 발의안 제4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캘리포니아 주의 가족계획연맹은 위에서 설명한 비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위의 사례 중 어느 것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비난을 믿음으로써 발의안 제4호의 실질적인 위험을 무시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오도되지 마십시오.

현실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이 십대가 부모에게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나,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하거나, 타주로 가거나, 자살까지도 고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발의안 제4호는:

- 십대 임신을 줄이지 못합니다.
- 십대를 위협에 처하게 합니다.
- 의사에 대한 소송을 조장합니다.

사실:

- “SARAH”(본명은 Jammie Garcia Yanez-Villegas였음)는 1994년에 텍사스에서 사망했을 때 결혼한 엄마였고,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발의안 제4호의 어떤 조항도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 가족계획연맹은 십대를 보호하지 성범죄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단체는 아동 학대를 신고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합니다. 가족계획연맹이 하는 일의 97%는 예방 진료, 종합적인 성교육 및 암 선별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임신한 십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계획연맹의 자상한 카운셀러는 십대에게 부모에게 말하라고 권유하며,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 . 그리고 카운셀러가 학대의 증거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The San Diego Union Tribune 신문은 그들의 실질적인 목표가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십대의 생활에 관여하기를 원하나, 극단주의자들은 발의안 제4호의 진정하고 위험한 결과로부터 유권자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거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십대의 위험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알고 싶으시면 www.NoOnProposition4.org를 방문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은 십대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KATHY KNEER, 회장

Planned Parenthood Affiliates of California

DR. RAQUEL ARIAS, 부총장

산부인과(Keck School of Medicin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R. JEANNIE CONRY, 회장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제IX 지구

발의안 **제4호** 미성년자에 대한 임신 중절 전의 대기 기간 및 부모에 대한 통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4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발의안 제4호는 십대들을 위협에 처하게 합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캘리포니아 지구, 캘리포니아 주 의학 협회, 캘리포니아 주 가정의 협회, 미국 산부인과 학회, 제IX 지구, 캘리포니아 주 교사 협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부모님들은 유권자들에게 발의안 제4호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을 권합니다. 의무 통지법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나*, 현실 세계에서는 십대를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합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임신을 한 십대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십대는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과 안전한 의학적 처치를 받는 대신에, 위협하고, 불결하고, 불법적인 낙태를 선택하거나, 타자로 가거나, 또는 자살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안 제4호는 위협합니다. 부모님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십대의 생활에 관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딸들이 임신을 하는 경우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십대들이 의사소통이 되는 가정에서 사는 것은 아니며,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임신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십대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론든 우리의 딸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법은 십대들을 우리와 대화하게 만들 수는 없으나, 그들을 좌절시키거나 더 나쁜 상태로 몰고 갈 수는 있습니다. 발의안 제4호는 위험한 가정에서 사는 십대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임신을 한 십대는 담당 의사에게 가서 학대를 주장한 다음, 경찰관이 문(그녀가 돌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문)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혀 진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의안 제4호는 “가족의 참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통지는 같은 도시에 살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친척에게 보내는 주정부가 작성한 양식 서신에 불과합니다. 발의안 제4호에는 상담에 대한 요건이 없고, 그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성인이 도와 주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습니다. 발의안 제4호는 가장 피해를 입기 쉬운 십대들을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하거나, 또는 십대들을 강제로 법원에 가게 합니다. . .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임신을 했고,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고, 이미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미가 없는 법원에 가서 낯선 판사에게 그녀의 생활 중에서 가장 사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상한 카운셀러와 상담하고, 즉시 안전한 양질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의무 통지법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임신을 한 십대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대가 만약 절망감에서 불법적이거나, 자기 유도적이거나, 불결한 낙태를 하면 심한 상해를 입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참된 의사소통은 십대가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기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책임 있고 적절한 성행동(절제 포함)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도 강제로 가족 간에 의사소통을 하게 할 수 없으며, 의무 통지법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나*, 현실 세계에서는 십대를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합니다. 십대를 보호하려면 발의안 제4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DR. MYLES B. ABBOTT, 회장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California District
DONNA GERBER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NANCY SCHUBB, 회장
California Association of School Counselors

★ 발의안 제4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통지법은 30여 개 주에서 소녀들을 보호하고 있고, 최대 25년 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법집행 기관들이 발의안 제4호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반대 주장을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그러한 주장에 “그럴 수도 있다”와 “만약”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사실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통지법에 의해 해를 입은 십대의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발의안의 반대자들은 수백만 명의 소녀 중에서 통지법에 의해서 실제로 해로 입은 소녀를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비밀 낙태 피해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12세 된 소녀에게 술을 먹이고, 그녀가 술에 만취했을 때 성폭행을 했습니다. 몇 주 후에, 성폭행자의 어머니가 그녀를 낙태 클리닉에 데리고 갔고, 그 후에 그녀를 집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버렸습니다. 매우 놀란 그녀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후에 경찰은 마침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심한 낙태 합병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41세 된 Adam Gault는 14세 된 소녀를 마약과 일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그녀의 집에서

빼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녀는 1년 동안 그의 성노예가 되어 그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을 때, Gault는 가족계획연맹에서 낙태 시술을 받게 했습니다. 가족계획연맹은 그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했습니다. 비밀 낙태는 이러한 소녀들을 추가적인 성적 학대, 임신, 낙태, 성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성범죄자들은 자유롭게 새 피해자를 찾아 나섭니다. 현실 세계에서 비밀 낙태와 성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실제 소녀들을 보호하려면 발의안 제4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YESon4.net

MARY L. DAVENPORT, M.D., 특별회원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THOMAS MURPHY GOODWIN, M.D., FAAP, FACOG
산부인과 및 소아과 교수
Keck School of Medicin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OD PACHECO, J.D., 지방검사
리버사이드 카운티

발의안 제5호

비폭력적 마약 범죄. 선고, 가석방 및 재할. 주민 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비폭력적 마약 범죄. 선고, 가석방 및 재할. 주민 발의 법안.

- 마약 및 기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선 및 확대하기 위해 연간 4억 6,000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 특정한 마약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치료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가석방을 위반하는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 특정한 마약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기간을 상당히 단축하고, 중대하고 폭력적인 중죄에 대한 가석방 기간을 연장합니다.
- 교정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권한을 6년의 고정 임기를 가진 장관과 주지사가 임의로 임명하는 장관 사이에 분할합니다. 차관들에 대해서는 5년의 고정 임기를 제공합니다.
- 가석방 및 재할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1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주로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마약 치료 및 재할 프로그램의 확대에 의해 장기적으로 주정부의 비용이 연간 10억 달러가 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로 교도소와 가석방 운영 비용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정부의 비용이 연간 10억 달러가 넘게 절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교도소 시설에 대한 자본 지출 비용과 관련된 주정부의 1회 순절감 금액이 결과적으로 25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카운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자본 지출에 대한 재정적인 순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요약

이 법안은 (1) 형사 범죄자에 대한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 가석방 감독 절차를 변경하고, 교도소 및 가석방 재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3) 수감자들이 재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과를 보여 주어 교도소 복역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4)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특정한 처벌을 줄이고, (5) 주로 주정부가 범죄자들에 대한 재할 및 가석방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주법의 여러 조항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각 제안들과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미치는 종합적인 재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발의안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의 확대

배경

집행유예와 가석방. 현재, 법원은 성인 및 청소년 범죄자들이 정기적으로 당국에 신고하는 것 같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러한 범죄자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이 감독하는 범죄자들은 “집행유예”에 해당됩니다.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주정부가 감독하는 범죄자들은 “가석방”에 해당됩니다.

3종류의 범죄. 현행 주법에 의하면, 범죄에는 기본적으로 중죄, 경범죄, 법률 위반의 3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종류의 범죄인 중죄는 주 교도소나 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 벌금, 지역사회에서 집행유예를 감독, 또는 이러한 처벌을 혼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중죄는 법률에 주 교도소에서의 장기 복역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범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범죄는 중죄보다 경미한 범죄로서, 구치소 수감, 집행유예, 벌금 또는 법원이 부과하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집행유예 없이 지역사회에 석방하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법은 특정한 마약 범죄를 “비폭력적인 마약 소지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어, 중죄 또는 경범죄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특정한 교통법 위반을 포함하는 법률 위반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주 교도소 시스템. 주정부는 2008년 5월 현재 모두 합쳐서 약 171,000명의 성인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는 33개의 교도소와 다른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09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주 교정재활부(CDCR)를 운영하는 비용은 약 1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수감하는 평균 연간 비용은 약 46,000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 교도소 시스템은 현재 모든 수감자에게 영구 숙소를 제공할 수 없어 과밀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육관과 다른 방들을 개조하여 일부 수감자들을 수용해 왔습니다.

새 성인 전환 프로그램의 설립

3 트랙 시스템. 현재, 몇 가지 프로그램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물질 남용 문제가 있는 형사 범죄자들을 교도소나 구치소로부터 다른 형태의 처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 3 트랙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으로 교체합니다. 그림 1에는 각 트랙에 대한 자격이 있는 범죄자와 참여 기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일반적인 영향. 일반적으로, 새 트랙 I, II, III은 전환에 대한 자격이 있는 범죄자들의 종류를 확대하고, 주로 범죄자 대신에 지불할 자금을 증가시켜 범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형법 제1000조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보통 마약 치료 비용을 자신이 지불해야 하나, 이 법안은 일반적으로 트랙 I과 다른 트랙에 의해 치료를 받는 참여자들을 대신하여 카운티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3 트랙 모두에 참여하는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결정된 종류의 마약 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는 클리닉 또는 주거형 시설에서 받는 치료, 메타돈과 같은 약의 제공,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 트랙은 자격 요건, 참여 기간, 감독 수준, 그리고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마약과 관련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는 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이 법안은 트랙 I에서 실패한 범죄자를 트랙 II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나, 이로 인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랙 II에서 실패한 범죄자는 트랙 III으로 옮길 수 있으나,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범죄자가 배정된 치료를 받기 시작하지 않을 때 법원이 후속 심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자료의 수집 및 발행, 규정된 보고서, 그리고 이 법안의 효과와 다른 마약 정책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자금 제공 조항. 2007-08 회계연도 예산법은 최초로 일반 기금으로부터 약 1억 달러를 치료 프로그램과 다른 허용되는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안 제36호에 의해 설립된 물질 남용 치료 신탁 기금(SATTF)에 지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2008-09 회계연도 하반기에 일반 기금으로부터 1억 5,000만 달러를 SATTF에 지출하고 2009-10 회계연도에는 4억 6,000만 달러를 지출하며, 그 후에는 생계비와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지출 금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정한 행정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자금을 남겨둔 후에, 이 법안은 나머지 자금의 15퍼센트를 트랙 I 프로그램, 60퍼센트를 트랙 II 프로그램, 10퍼센트를 트랙 III 프로그램에 지출하도록 지정합니다.

기존의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
주법은 일반적으로 형사 범죄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3 종류의 주요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을 허가합니다.

- **형법 제1000조.** 형법 제1000조 및 관련 법률들에 의하면, 마약 범죄 전과가 없는 특정한 마약 소지 범죄자들은 “판결유예” 조정에 의해 자비로 마약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가 마약 소지자가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그러한 범죄에 대한 판결을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개월에서 3년 후에, 범죄자가 마약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범죄자에 대한 기소는 취하되고 그 범죄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발의안 제36호.** 유권자들이 2000년 11월에 승인한 투표 법안인 발의안 제36호는 비폭력적 마약 소지 범죄로 지정된 특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해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발의안 제36호에 의해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 대신에 집행유예 및 치료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석방 위반자들도 발의안 제36호 전환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발의안 제36호는 마약 치료 프로그램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새 마약 소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는 시기와 방법을 제한합니다.
- **마약 법원.** 성인 중범죄자들에 대해 운영되는 마약 법원 프로그램에 의해, 마약 범죄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특정한 범죄자들은 수감 대신에 치료로 전환됩니다. 마약 법원 참여자들은 법원(그리고 집행유예 담당관과 마약 치료 제공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고, 이러한 참여자가 마약 프로그램의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판사는 일반적으로 처벌을 부과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재량권을 갖습니다.

발의안 **비폭력적 마약 범죄.**
제5호 선고, 가석방 및 재할. 주민 발의 법안.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그림 1 발의안 제5호 트랙 I, II, III—참여 자격 및 기간		
	자격 요건	전환 기간
트랙 I	<p>포함되는 범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폭력적 마약 소지 범죄로 기소되었고 판결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범죄자. 기소자는 범죄자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1건 이상의 비폭력적 마약 소지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 <p>제외되는 범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제외됩니다: (1) 현재 또는 이전의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2) 지난 5년 이내에 중죄에 대한 이전의 유죄판결. 그러나 비폭력적 마약 소지 범죄에 대해 전에 1건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과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는 제외되나, 판사에게 참여를 허용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8개월
트랙 II	<p>포함되는 범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폭력적 마약 소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치료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 <p>제외되는 범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랙 I에 대한 자격이 있는 범죄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전에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 범죄자는 보통 제외됩니다. 그러나, 지난 5년 이내에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나 특정한 중죄, 경범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범죄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동안 특정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지난 30개월 이내에 모든 종류의 범죄로 5건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는 제외됩니다. 새 마약 범죄로 기소된 것과 동시에 다른 중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보통 제외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러한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트랙 II 전환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12개월 이하 • 법원은 6개월씩 최대 2회의 연장을 명령하여 이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랙 III	<p>포함되는 범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비폭력적 마약 소지 범죄를 저질렀으나 트랙 II에 대한 자격이 없었던 범죄자 물질 남용 또는 중독에 적용되는 트랙 III 전환에 대한 자격이 있는 다른 종류의 비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지난 30개월 이내에 범죄를 저질러 5건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서 트랙 II에서 제외된 범죄자는 특히 트랙 III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p>제외되는 범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트랙 III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지방검사가 이러한 범죄자를 전환에 참여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18개월 이하 • 법원은 3개월씩 최대 2회의 연장을 명령하여 이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해, SATTF 기금의 사용 및 분배와 프로그램의 내용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에 관한 프로그램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23명으로 구성된 새 주 치료 전환 감독 및 책임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법안은 일반적으로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현재 물질 남용 치료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 SATTF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가능한 경우 이러한 치료 서비스를 위해 SATTF의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다른 민간 및 공공 자금원을 사용하여 치료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마약 오용과 관련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의 개발을 촉진하고,” 또한 “판단 또는 비난이 없고,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목표 설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이른바 “폐해 감소” 마약 치료법에 SATTF 기금을 지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새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의 설립

이 법안은 앞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18세 미만의 비폭력적인 청소년들에 대해 카운티가 운영하는 새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에 배정되고 다양한 지정된 목적(마약 치료, 정신건강 투약 및

상담, 가족 요법,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 지급금, 고용 지급금, 교통편 서비스 포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SATTF 기금의 일정한 비율(특정한 실행 비용을 공제한 후 15 퍼센트)을 수령할 것입니다.

주정부 가석방 및 재할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

이 법안은 주정부의 현행 가석방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을 변경합니다(가석방 기간에 대한 새로운 규칙, 가석방 위반자의 재수감, 범죄자에 대한 재할 프로그램 포함). 저희는 아래에서 가석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과 변경된 조항들이 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배경

가석방 기간. 현행 주법에 의하면,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석방되면 보통 그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가석방 상태에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가석방 상태에 있게 되며,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가석방이 조기에 해제될 수도 있으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4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범죄, 특히 폭력적인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대해서는 가석방 기간이 연장됩니다.

가석방 취소. 지역사회로 석방된 후 문제를 일으키는 가석방자는 2가지 다른 방법으로 교도소에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1가지 방법은 새 범죄(중죄 또는 경범죄를 막론하고)에 대해 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추가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가석방 당국과 가석방 심리 위원회(BPH)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가석방 위반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가석방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취소는 법원의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행정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석방의 취소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가석방자의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가석방 사무소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동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위반을 “기술적인” 가석방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범죄자를 위한 재할 프로그램. 주정부는 교도소 수감자와 가석방자들이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에 지역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물질 남용 치료,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및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자금, 공간의 제약,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정부는 현재 수감자와 가석방자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가석방이 해제된 범죄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가석방자 중 일부는 정신건강 치료 또는 물질남용 치료와 같은 주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기한에 대한 새로운 한도

이 법안은 일부 가석방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간을 단축하나 다른 가석방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가장 최근에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마약 또는 비폭력적 재산 범죄 때문이었고, 위험한 범죄, 폭력 범죄, 길거리 갱단과 관련된 범죄, 성범죄 기록이 없었던 범죄자에게 6개월 동안 가석방 감독을 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이 가석방자가 첫 6개월 동안 제공된 적절한 재할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가석방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최소 수준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일부 범죄자들에게 더 긴 가석방 기간을 부과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가장 최근에 받은 선고가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중죄(1급 절도 또는 강도)이었던 범죄자의 가석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일부 폭력적 성범죄자와 다른 가석방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의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더 긴 가석방 기간이 부과될 것입니다.

가석방 위반자에 대한 새 가석방 취소 규칙

가석방 위반을 중죄, 경범죄, 기술적 위반의 3 종류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기술적 위반을 했거나 경범죄를 저지른 특정한 가석방자들 주 교도소에 재수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발의안은 중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CDCR이 고위험자로 분류했거나, 또는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범죄 기록이 있는 가석방자가 기술적 위반을 했거나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석방을 취소하고 주 교도소에 재수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가석방을 위반한 특정한 가석방자들은 더 자주 마약 검사를 받거나 지역사회 봉사 작업에 투입되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거나, 가석방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경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가석방자들은 이 법안에 따라 주정부의 비용으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위반자들도 재할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재할 프로그램 확대

이 법안은 수감자, 가석방자, 가석방이 해제된 범죄자에 대한 재할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수감자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수감자에게 예정된 교도소 석방일로부터 최소한 90일 전에 시작되는 재할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CDCR에 수감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CDCR은 가석방자들에게 이러한 평가 결과 확인된 가석방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재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범죄자들은 가석방이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 동안의 재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카운티 집행유예국으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나, 모든 서비스 운영 비용은 이 법안의 조항에 따라 CDCR이 상환합니다.

가석방 시스템에 대한 기타 변경 사항

가석방 개혁 위원회의 설립. 이 법안은 재할 프로그램을 검토, 지도 및 승인하고 주정부 가석방 정책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21명으로 구성된 새 가석방 개혁 감독 및 책임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가석방자에 대한 마약 전환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 현재, 마약 치료로 전환된 일부 가석방자들은 카운티로부터 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 법안에는 CDCR이나 카운티가 가석방자에게 이러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CDCR은 카운티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석방 위반자에 대한 시험 프로그램. 이 법안은 CDCR에 가석방을 위반한 특정한 가석방자들을 치료 및 재할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마약 법원(자세한 설명은 앞의 텍스트 상자 참조)과 유사한 시험 프로젝트를 설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금은 CDCR의 예산 또는 별도의 자금 법안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취소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 이 법안은 가석방자가 수감된 후 3업무일 이내에 열리는 BPH 심리에서 가석방자에게 가석방 위반 주장에 대한 통지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연방 법원 명령과 일치하도록 이러한 모든 가석방자에게 이 심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도록 주법을 개정합니다.

재할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크레딧

배경

주법은 현재 작업, 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정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크레딧은 교도소 수감자의 복역 기간을 단축합니다.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크레딧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범죄자들은 제한된 크레딧만을 받거나 크레딧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범죄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1일 동안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도소 복역 기간을 최대 1일 단축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으나 아직 프로그램을 배정 받지 못한 범죄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3일에 대해 최대 1일의 크레딧을 받습니다.

확대 크레딧의 허용

이 법안은 특정한 마약 범죄 또는 비폭력적 재산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일부 수감자들이 교도소 복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크레딧을 현행 주법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허용하도록 주법을 변경합니다. 이 법안에 의해 설립되는 가석방 개혁 위원회는 수감자가 재할 프로그램에서 진척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요소에 근거하여 추가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추가 크레딧의 제공 가능한 양을 명시 또는 제한하지 않으나,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중죄 또는 특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수감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변경 사항

배경

현행 주법은 일반적으로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28.5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최대 100달러(다른 벌금을 더하면 총비용이 370달러가 될 수도 있음)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하나 수감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반복하면 교도소 또는 청소년 보호감호소에 수감되거나,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이 2가지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추가 벌금 포함)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주법에 따라 지정된 여러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 프로그램에 분배됩니다.

마리화나 범죄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변경

이 법안은 일반적으로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28.5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을 경범죄가 아니라 법률 위반(교통 위반 딱지와 비슷한 경우)으로 처벌합니다. 성인들에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의해 모든 종류의 추가 벌금은 부과된 벌금과 같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면 추가 벌금도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첫 범죄에 대해 더 이상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마약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징수한 벌금은 이 법안에 의해 설립되는 새 청소년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에 예치됩니다.

기타 조항

이 법안의 다른 조항들은:

- CDCR의 재활 및 가석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법을 재구성하고, 이 기관의 새 제2장관과 각 교도소에서 재활을 담당할 부소장을 임명합니다.
- BPH의 위원을 17명에서 29명으로 증가시킵니다.
- 카운티 구치소에 모든 수감자가 석방되기 전에 마약 과용 인식 및 예방에 대한 재료 및 전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가석방자를 제외하고,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들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04년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투표 법안인 발의안 제 63호의 자금을 사용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것을 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에 많은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주요 재정적인 영향은 그림 2에 요약되어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재정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계류 중인 연방법원 소송이나 예산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약 치료 및 재활 확대에 대한 주정부 비용의 증가

이 법안은 주로 적격 범죄자에게 제공하는 마약 치료 및 기타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 행정 비용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연간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주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 2
발의안 제5호
주요 재정적인 영향 요약**

주정부의 운영 비용이 연간 10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주로 범죄자에 대한 마약 치료 및 재활의 확대를 위한 주정부 비용 증가:

- 새로운 3 트랙 마약 치료 전환 시스템에 대한 지출 증가
- 교도소 수감자, 가석방자, 가석방이 해제된 범죄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확대
-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변경사항(현재 특정한 가석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마약 치료 서비스 비용을 주정부가 카운티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는 요건 등)

주정부의 운영 비용 절약 금액이 연간 10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주로 교도소 및 가석방 감독에 대한 주정부 운영 비용 절약:

- 더 많은 범죄자들을 주 교도소에서 마약 치료 프로그램으로 전환
- 특정한 범위의 가석방 위반자들을 주 교도소에서 제외
- 특정한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확대 가능성
- 마약 및 비폭력적 재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감독 기간의 단축

궁극적으로 25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주정부의 자본적 지출 절약. 수감자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교도소 숙소 건설 숫자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1회성 순절약. 이러한 절약은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교도소 공간 확보 비용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카운티 운영 비용 및 자금 조달—알 수 없는 재정적인 순영향 새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인한 카운티의 지출 증가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주정부로부터 받을 자금의 증가와 비슷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의 다양한 조항들이 카운티의 운영 비용 및 수입에 알 수 없는 증가 및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자본적 지출—알 수 없는 재정적인 순영향: 카운티는 가석방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일부 범죄자들을 수감에서 마약 치료로 전환시킴으로써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기타: 더 많은 범죄자들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부터 전환시키거나 일부 범죄자들을 교도소에서 조기에 석방하는 것으로 인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과 비용에 다양한 다른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약 전환 시스템에 대한 지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법안은 이 법안에 의해 설립되는 3 트랙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과 청소년 치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08-09 회계연도 하반기(2009년 1월-6월)에 주 일반 기금으로부터 1억 5,000만 달러를 SATTF에 지출하고, 2009-10 회계연도에는 이러한 지출이 연간 4억 6,000만 달러로 증가합니다. 이 새 프로그램들에 대한 2009-10 회계연도 자금 지출 수준은 이 프로그램이 대부분 교체할 프로그램들(발의안 제36호 치료 및 마약 법원)에 대해 2007-08 회계연도 예산법에 규정된 일반 기금 지출보다 3억 달러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 후의 회계연도들에서는, 새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생계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주의

인구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자동 조정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 마약 전환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되는 자금은 다양한 치료 및 행정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치료 전환의 확대와 관련된 최소한 일부 프로그램 및 행정 비용은 주정부의 추가 지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감자 및 가석방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이 법안은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가석방 중이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된 주정부 비용을 연간 수억 달러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주로 주 일반 기금에서 지출될 것입니다.

주정부에 대한 기타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의 많은 특정한 조항들은 주 프로그램 및 행정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고, 이러한 비용은 모두 합해서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일반 기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증가시킬 조항들 중에는 추가 가석방 위반자를 구치소에 수감하는 비용을 주정부가 카운티(및 일부 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카운티가 특정한 가석방자에게 제공하는 마약 치료 서비스 비용을 주정부가 카운티에 상환해야 한다는 요건도 주정부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나 사용에 대한 처벌을 변경하는 이 법안의 조항들도 형사 처벌과 관련된 주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확실치 않은 추가 비용의 수준. 이 법안의 다양한 조항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주정부의 비용은 알 수 없으나, 이 법안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연간 수억 달러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부가 교도소 복역 기간이 90일 남은 수감자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교육, 물질 남용 및 다른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한 자원을 형기가 90일 이상 남은 수감자로부터 이러한 단기 수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및 가석방 시스템에 대한 주정부의 운영 비용 절약

이 법안은 주로 교도소 및 가석방 감독 건수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연간 10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주정부의 운영 비용을 절약할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주 교도소 수감자를 18,000명 이상 감소시키고 주정부가 감독하는 가석방자의 수를 22,000명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에 대한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의 영향. 이 법안에 의해 설립되는 3 트랙 마약 치료 전환 시스템은 교도소 수감자의 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1) 추가 범죄자들을 주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에 마약 치료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 (2) 전환 프로그램 규칙이나 마약 관련법을 위반한 일부 범죄자들을 주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계속 치료를 받게 하고, (3)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여 미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마약 치료(주거형 시설에서의 치료 등)를 더 많은 범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대한 다른 영향. 이 법안의 다른 조항들도 교도소와 가석방 건수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특정한 범위의 가석방 위반자들을 주 교도소로 복귀시키는 것에서 제외
-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정한 수감자들이 교도소 복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추가 크레딧을 받는 것을 허용
- 수감자, 가석방자, 가석방이 해제된 범죄자들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그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
- 특정한 마약 범죄나 비폭력적 재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감독 기간을 단축. 이러한 절약은 궁극적으로 일부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이 증가하는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가석방과 관련된 장기적인 절약. 이 법안은 가석방 규칙을 위반한 특정한 가석방자들이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단기적으로 가석방 건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장기적으로 가석방 건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 수감자의 수가 대폭 감소하면(예를 들면, 마약 전환 프로그램의 증가로 인해) 궁극적으로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가석방 감독을 받는 범죄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범죄자들이 가석방 감독을 받는 기간을 단축하는 이 법안의 조항도 가석방 건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다소 확실치 않은 교도소 및 가석방 관련 절약 수준. 이러한 모든 조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주 교도소 및 가석방 운영 비용의 절약 수준을 알 수 없고, 이 법안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연간 수억 달러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에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의해 설립되는 새 주 가석방 개혁 위원회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에 대한 크레딧 부여를 확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해 발생하는 교도소 및 가석방 운영 비용의 절약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 법안에 의해 교도소로부터 마약 치료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러한 치료에 성공하지 못한 일부 범죄자들은 궁극적으로 마약과 무관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의 자본적 지출 비용에 대한 순절약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25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새 교도소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1회성 순절약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 순절약 금액에 대한 추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것입니다: (1) 수감자 수가 감소하여 주정부가 교도소 숙소 건설 비용을 절약할 가능성, 그리고 (2) 교도소 내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이 법안의 요건으로 인해 교도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의 증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추가 공간 확보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1) 수감자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때, 현재 수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교도소 공간을 비우고 그 대신에 수감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2) 수감자가 석방되기 최소한 90일 전에 참여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요건이 형기가 90일 이상 남은 수감자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감소하는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카운티의 운영 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 대한 알 수 없는 재정적인 순영향

카운티 운영 비용. 이 법안은 주로 카운티가 운영할 성인 및 청소년 마약 치료 및 전환 프로그램에 대해 2009-10 회계연도까지 매년 3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SATTF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카운티의 지출은 장기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적으로 SATTF 를 통해서 주정부로부터 받을 자금의 증가와 비슷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카운티의 운영 비용과 수입에 다른 증가 및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발의안 제63호 자금을 사용하라는 요건은 카운티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그러한 범죄자들에게 배정한 자금을 다른 지방정부 자금으로 대체해야 하는 만큼 카운티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의한 마약 치료 전환 프로그램의 확대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수감하는 카운티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과 다른 요인들이 카운티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은 알 수 없고 관찰권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자본적 지출. 카운티는 이 법안의 결과로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전환되는 가석방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적 지출 비용은 마약 범죄자들을 수감으로부터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로 전환시킴으로써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의 다른 측면들은 구치소 수감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자본적 지출 비용에 대한 순영향은 알 수 없고 아마도 관찰권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기타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은 다른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비용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전환된 더 많은 범죄자들이 정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거나, 또는 추가 법집행 비용이나 피해자와 관련된 정부 비용(개인보험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정부가 지불하는 건강관리 비용 등)을 발생시키는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법안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범죄자가 납세자가 되는 만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의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안 **비폭력적 마약 범죄.**
제5호 선고, 가석방 및 재할.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5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우리의 주 교도소는 매우 과밀합니다. 주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발의안 제5호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교도소에 매년 100억 달러를 사용하나, 재할에는 거의 자금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견입니다. 마약 문제가 있는 젊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비폭력적인 성인 마약중독자들이 우리의 교도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나, 치료되지 않는입니다.

비폭력적 범죄자 재할법이라고도 하는 발의안 제5호는 폭력적이고 비폭력적인 범죄자들 구별하여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발의안 제5호는 교도소의 과밀을 줄이고, 매년 자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25억 달러의 절약을 발생시킵니다. 이 발의안은 다음 사항을 시행합니다.

첫째, 발의안 제5호는 마약 문제가 있는 비폭력적인 청소년들에게 마약 치료를 제공합니다.

둘째, 엄격하게 책임을 지는 마약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비폭력적 마약 범죄자들의 수를 줄입니다.

셋째, 이 발의안은 교도소 시스템이 수감자와 가석방자에게 재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마약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치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정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발의안 제5호는 마약 문제가 있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 옵션을 규정합니다. 가족, 학교 카운셀러 또는 의사가 그들에 대한 치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여 체포된 사람은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과 범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적 마약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제36호(2000년)는 비폭력적인 마약 사용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치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중 3분의 1이 치료를 완료했고, 생산적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 되었습니다. 발의안 제36호는 2000년 이후 84,000명을 재할시켰고 거의 20억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발의안 제5호는 발의안 제36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이 발의안을 개선합니다. 발의안 제5호는 비폭력적 범죄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더 향상된 치료를 제공합니다.

주민들은 치료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판사는 치료를 따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고,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더 긴 형기를 선고합니다.

발의안 제5호는 주 교도소에 대해 모든 범죄자들이 형기 동안 복역하고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들이 석방된 후에 사회로 다시 복귀할 때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 치료를 받습니다. 발의안 제5호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5호는 경미한 가석방 위반을 한 비폭력적인 가석방자들에게 지역사회 처벌, 마약 치료 또는 구치소 수감을 통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심한 위반을 하는 범죄자들은 주 교도소로 되돌려 보냅니다. 폭력, 갱단 범죄 또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석방자는 어떤 가석방 규칙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교도소에 재수감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 범죄자와 비폭력적 범죄자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과밀한 교도소를 개선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초당파적인 법률 분석가에 의하면, 발의안 제5호는 수년 내에 25억 달러를 절약합니다.

발의안 제5호는 교도소에 항상 폭력 범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폭력적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합니다.

발의안 제5호에 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청소년에 대한 마약 치료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합니다.
- 비폭력적 마약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재할을 제공합니다.
- 교도소의 과밀을 줄입니다.
-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합니다. 그리고
-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여 학교, 의료 및 고속도로에 사용합니다.

JEANNE WOODFORD, 전직 교도관
 San Quentin State Prison
DANIEL MACALLAIR, 집행 디렉터
 Center on Juvenile and Criminal Justice
DR. JUDITH MARTIN, 회장
 California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

★ 발의안 제5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5호는 범죄를 증가시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45,000명의 범죄자들을 조기 석방과 가석방 기간 단축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사회에 풀어놓는 것은 교도소 시스템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 연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의안 제5호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은 실제로 다른 석방된 중범죄자들보다 새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를 끼치지 않을 “피폭력적”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역사회로 일찍 돌아오고 감옥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의 가정들에 대해 다시 피해를 입힐 중범죄자들입니다.

발의안 제5호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마약 거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발의안 제5호는 납세자에 대한 비용을 대폭 증가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1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예산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이 증명된 2건의 거대한 새 관료주의적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학교와 다른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자금 제공을 위태롭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발의안 제5호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금이 부족한 많은 카운티들에 대해 심각한 재정 문제와 세금 인상을 유발할 것입니다. 구치소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20여 개의 카운티는 새 구치소를 건설해야 하나,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발의안 제5호가 지방세 납세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과 비용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발의안 제5호는 실질적인 개혁이 아니고, 범죄자들을 조기에 석방하고 감옥을 줄이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가석방적인 법안입니다.

조기 석방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5호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LAURA DEAN-MOONEY, 전미 회장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MADD)
STEVE COOLEY, 지방검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JEFF DENHAM, 상원의원, 공동의장
 People Against the Proposition 5 Deception

발의안 **비폭력적 마약 범죄.**
제5호 신고, 가석방 및 재할.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5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발의안 제5호는 메탐페타민 거래자와 다른 마약 중범자에 대한 가석방을 3년에서 단 6개월로 단축합니다.

이것이 발의안 제5호를 “마약 거래자의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5호가 우리의 학교 및 이웃에 미치는 손해는 단지 마약 밀매자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위험한 법안은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모기지 사기, 신원 절도, 보험 사기, 자동차 절도 및 수많은 다른 범죄로 기소된 많은 범죄자들에게 실제로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식방” 카드를 제공하여 형사 기소를 효과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5호는 음주 운전을 하는 동안 무고한 피해자를 죽인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기소를 피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것이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음주 음전을 반대하는 어머니회, MADD)이 이 발의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경찰서장들과 카운티 검사들은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집행관들은 발의안 제5호가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 범죄자들(최대 50,000달러 상당하는 메탐페타민 거래자 포함)의 가석방 기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한 감춰진 시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발의안에 압도적으로 반대합니다.

또한 발의안 제5호는 사실상 아무 책임이 없고 수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지출할 2건의 관료주의적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 가정 폭력, 신원 절도, 소비자 사기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5호는 피고들이 재할 기간 동안 마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마약 재할 프로그램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약화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금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치료 프로그램들의 자금을 삭감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이 “비폭력적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믿기를 바라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지방검사인 Steve Cooley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단지 마약 소지로 체포되는 초범은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발의안 제5호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폭력적 범죄자들로서, 그들은 자신이 폭력 행위에 책임이 없고 “메탐페타민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범죄에 대한 기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법집행 전문가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메탐페타민 거래자들의 가석방이 3년에서 단 6개월로 단축될 때, 그리고 신원 절도,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에 대한 억제력이 감소할 때, 우리의 지역사회로 파도처럼 풀려나올 중범자들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법안이 우리의 가정, 학교 및 이웃에 야기할 엄청난 혼란을 방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피해자 그룹, 의료 전문가, 치안관, 지방검사를 대표하는 초당파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기업체, 근로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 위험할 정도로 결함이 많은 발의안에 반대하는 데 동참하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발의안 제5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이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보시려면 www.NoOnProposition5.com을 방문하십시오.

CHARLES A. HURLEY, 최고 집행 책임자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MADD)
JERRY DYER, 회장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BONNIE M. DUMANIS, 회장
 California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 발의안 제5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JAMES P. GRAY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겁을 주는 진략을 믿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5호에 의하면, 어떤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이 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을지는 판사들이 결정합니다. 판사들은 위험한 범죄자와 치료를 받을 범죄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발의안 제5호의 어떤 조항도 판사들이 이 발의안의 반대자들이 언급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5호는 판사들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범죄자들이 마약 치료를 받는 동안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새로운 권한을 제공하는 좋은 법입니다.

전임 경찰서장인 NORM STAMPER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발의안 제5호는 폭력적인 범죄자와 비폭력적인 범죄자를 구분합니다. 이 발의안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비폭력적 범죄자들에게 그렇게 할 기회와 이유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5호는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범죄 전과가 없거나, 형기에 대한 복역을 마치고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공공안전을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수감자의 80퍼센트는 물질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석방된 많은 범죄자들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교도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약 치료와 재할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청소년 마약 치료 전문가인 ALBERT SENELL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시작한 청소년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발의안 제5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설치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캘리포니아 주 여성 유권자 연맹은 발의안 제5호를 지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달성하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JAMES P. GRAY, 판사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NORM STAMPER, 전임 부경찰서장
 샌디에고
ALBERT SENELLA, 최고 운영 책임자
 Tarzana Treatment Centers

발의안 제6호

경찰 및 법집행에 대한 자금 제공. 형사 처벌 및 법률. 주민 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경찰 및 법집행에 대한 자금 제공. 형사 처벌 및 법률. 주민 발의 법안.

- 경찰, 검찰, 구치소, 성인 및 미성년자들의 보호감화 시설을 위하여 주 일반기금으로부터 최소한 매년 9억 6,500만 달러를 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후의 연도들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이러한 자금의 일부가 증가할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 주 형법에 대해 약 30건을 개정하며, 많은 개정 조항들이 폭력집단과 관련된 범죄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정 조항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범죄와 추가적인 처벌에 적용되고, 일부 조항들은 새 중신형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폭력집단과 관련된 금지명령 위반과 특정한 상황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중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주로 다양한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지출이 최소한 9억 6,500만 달러로 증가하고 교도소 및 가석방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주정부의 비용이 수년 내에 연간 5억 달러가 넘게 순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그 후의 연도들에 대해서도 매년 수천만 달러씩 증가할 것입니다.
- 교도소 수감자의 증가로 인해 교도소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1회 자본 지출 비용이 5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형사 사법 프로그램 및 자금.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 형사사법제도의 다양한 부분을 운영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교도소, 가석방 및 법원을 운영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지방정부는 경찰, 보안관, 형사 소추와 같은 지역사회 법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었던 일부 형사 사법 활동을 지원합니다. 주정부는 2007-08 회계연도에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수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시민의 옵션(Citizens' Option for Public Safety), 청소년 사법 범죄 방지법(Juvenile Justice Crime Prevention Act), 청소년 집행유예 및 보호소 자금(Juvenile Probation and Camps Funding)의 3 프로그램에 배정한 4억 3,9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일부 형사 범죄자들에게 부과한 요금 수입을 징수하는 주 벌금 기금(State Penalty Fund)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과 치안관 교육을 포함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지출됩니다. 또한 이 자금의 일부는 주정부 일반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형사 선고법. 주법은 범죄를 중죄, 경범죄, 법률 위반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중죄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범죄입니다. 주법은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하는 최고 형량과 같은 각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을 규정합니다.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약 18 퍼센트는 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다른 중범자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감독을 받거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벌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이러한 처벌을 혼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2008년 5월 현재 모두 합쳐서 약 171,000 명의 성인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는 33개의 교도소와 다른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09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주 교정재활부를 운영하는 비용은 약 1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수감하는 평균 연간 비용은 약 46,000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 교도소 시스템은 현재 모든 수감자에게 영구 숙소를 제공할 수 없어 과밀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육관과 다른 방들을 개조하여 일부 수감자들을 수용해 왔습니다.

가석방자와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주 교도소에서 형기 동안 복역한 범죄자는 석방된 후에 가석방으로 주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주정부는 정책에 의해 이러한 가석방자들을 감독하기 위한 가석방 집행관과 다른 직원들의 숫자를 결정합니다.

발의안 제83호(보통 "Jessica 법"이라고 함)는 2006년 11월에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경 사항 중에서, 이 발의안은 특히 중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특정한 사람들이 가석방 상태에 있는 동안과 나머지 평생 동안 위성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위치 확인 시스템(GPS) 장치를 사용하여 감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발의안은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주정부의 가석방 감독이 해제된 후에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GPS 감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형사사법제도와 관련된 현행법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들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특정한 신규 및 기존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수준 요건. 이 발의안은 주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새 형사 사법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특정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최소한 2007-08 회계연도 수준으로 계속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2009-10 회계연도에 시작되는 특정한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주정부가 모두 합해서 최소한 9억 6,5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금액은 2007-08 회계연도 예산법에 의해 제공된 금액에 비해 3억 6,5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림 1은 이 법안이 요구하는 주정부 지출(보통 2009-10 회계연도에 시작됨)의 증가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요구하는 새 주정부 지출의 대부분은 주로 경찰, 보안관, 지방검사, 구치소 및 가석방 집행관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법집행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새 주정부 지출은 지방정부의 청소년 프로그램, 범죄자 재활, 범죄 피해자 보조금 및 기타 주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특히,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새 주정부 지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성인 집행유예자에 대한 감독 강화(6,500만 달러)
- 청소년 시설의 수리 및 보수와 카운티 청소년 집행유예 프로그램 운영(5,000만 달러)
- 폭력, 갱단 및 총기 범죄를 포함하는 다양한 범죄들을 표적으로 하는 시의 법집행 활동(3,000만 달러)
- 폭력, 갱단 및 차량 절도 범죄의 기소(2,500만 달러)

- 카운티 구치소 건설 및 운영(2,500만 달러)
- 카운티, 지역 및 주 전체 법집행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 보안관 및 중규모 시 경찰기관 지원(2,000만 달러)
- 지역사회에 재진입하는 가석방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2,000만 달러)

이 법안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새 자금을 현재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이러한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의 대부분에 대한 향후의 자금 제공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주 벌금 기금을 치안관, 교도소 직원, 기소자, 관선 변호인은 물론 다양한 범죄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의 주 일반 기금에 대한 자금 이전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재분배합니다. 2007-08 회계연도에 약 1,400만 달러가 주 벌금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종류의 치료 서비스를 수용, 감독,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범죄자 정액 보조금을 카운티 집행유예 사무소에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이 기금을 마약치료국, 정신건강국 또는 다른 카운티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존의 조항을 폐지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부분적으로 범죄율과 형사 사법 법률("3진법"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배포하기 위해 새 주정부 사무소를 설치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 설립했고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조기 개입 및 재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특정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이 법안은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새로운 중죄와 경범죄를 규정합니다. 처벌에 대한 이러한 변경에는 갱단 참여 및 모집과 관련된 범죄, 법원 소송 절차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협박, 메탐페타민의 소지 및 판매, 차량 절도, GPS 장치의 제거 또는 손상, 총기 소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벌 강화와 다른

그림 1
발의안 제6호
이 법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신규 및 기존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수준 요건
 (단위: 백만)

	현재 지출 수준	발의안 제6호	변동
지방정부 법집행 ^a	\$187	\$406	\$219
지방정부 청소년 프로그램	413 ^b	479	66
새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 및 평가	—	23	23
새 범죄 피해자 보조금 프로그램	—	13	13
기타 새 주정부 프로그램	—	45	45
합계	\$600	\$965	\$365

^a 지방정부 법집행에는 경찰, 보안관, 지방검사, 성인 집행유예 및 구치소에 대한 자금 제공이 포함됩니다.
^b 2009-10 회계연도에 대해 현행법이 승인한 청소년 범죄자 정액 보조금(Youthful Offender Block Grant) 9,3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사오입으로 인해 합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법률에서 제안된 처벌 강화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범죄자들이 이 법안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복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2는 이 법안에 의해 제안된 처벌 강화와 신규 범죄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주정부 가석방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사항. 이 법안은 주정부 가석방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합니다. 주정부 가석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들 중의 하나는 가석방 집행관의 평균 가석방자 담당 건수를 가석방 집행관 당 약 70명에서 가석방 집행관 당 약 50명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가석방 감독이 해제된 성범죄자에 대한 GPS 감시 비용을 주정부가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형사 사법 변경사항. 이 법안은 형사사법제도에 영향을 주는 주법에 대해 몇 가지 다른 사항을

변경합니다. 비교적 중요한 변경사항들을 아래에 요약합니다.

- **갱단 데이터베이스.** 이 법안은 주정부가 법집행 기관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갱단 정보와 관련된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일반적으로,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전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사람의 진술을 반복하는 것을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전문증거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전문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을 확대합니다(특히 어떤 사람이 증인을 협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간섭하는 경우).
- **갱단 금지명령 발부절차.** 이 법안은 갱단원들이 범죄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법집행 기관이 그들을 상대로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변경하고, 그러한 법원이 발부한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벌금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새 범죄로 규정합니다.
- **공공주택 거주자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 다른 주정부의 지출 중에서, 이 법안은 공공주택 입주 요건의 준수를 집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1,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금을 수령하는 기관들은 모든 공공주택 거주자에 대해 년 1회 이상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범죄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 이 법안은 구치소가 과밀한 카운티가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 구치소 및 치료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임시 시설은 주거 시설에 적용되는 지방의 보건 및 안전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불법체류자의 석방.** 이 법안은 폭력적 중죄 또는 갱단과 관련된 중죄로 기소된 사람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경우 그러한 사람이 재판에 계류 중인 동안 보석 또는 자신의 서약에 의해 석방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청소년 사법 조정 위원회 참여 자격.** 특정한 청소년 범죄 방지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자금을 받는 각 카운티는 현재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서비스와 감독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청소년 사법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면, 카운티들은 더 이상 지역사회 기반의 물질 남용 치료 프로그램의 대표자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 **성인 법원의 청소년.** 이 법안은 특정한 갱단 관련 범죄에 대해 청소년이 청소년 법원 시스템이 아니라 성인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을 확대합니다.

<p>그림 2 발의안 제6호 이 법안에 의해 제안된 처벌 강화와 신규 범죄에 대한 예 갱단 참여 및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절도, 차량 강탈, 금품 갈취 또는 목격자에 대한 위협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갱단원^a은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합니다. • 14세 미만인 사람을 갱단에 모집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을 추가합니다. • 갱단의 일원으로 중죄를 저지르는 수감자는 2배로 처벌을 받습니다. • 폭력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갱단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10년 추가합니다. • 지방정부의 법집행 기관에 갱단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에 따라 중죄 또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p>메탐페타민 범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탐페타민 소지를 중죄로 규정합니다. (이 범죄는 현재 중죄 또는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b • 메탐페타민의 판매, 판매를 위한 소지 및 운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징역을 1년 추가합니다.
<p>차량 절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훔친 차를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절도에 대해서는 징역을 1년 추가합니다. • 법집행 당국이 범죄에 사용된 총이 발견된 차량을 최대 60일 동안 압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범죄자가 전에 차량 절도로 여러 번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차량 절도 유죄판결에 대해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금지합니다.
<p>기타 처벌 강화 및 신규 범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증인, 판사 또는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 기존의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의 조건으로 착용하는 범죄자의 GPS를 무단 제거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에 따라 중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 유죄판결을 받은 특정한 중범죄자가 은닉 무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역을 10년 추가합니다. <p>^a 일반적으로 형법 제186.2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b 이 법안은 발의안 제36호에 의한 마약 치료 전환에 대한 일부 범죄자들의 자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p>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에 대해 중대한 재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대한 재정적인 영향들은 그림 3에 요약되어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에 대한 추정은 현재 계류 중인 연방법원 소송이나 예산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신규 및 기존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수준 요건. 이 법안은 2009-10회계연도부터 주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합해서 약 9억 6,5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 금액은 2007-08회계연도에 비해 3억 6,5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금액이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의 자금 제공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이 법안의 조항으로 인해 약 5년이 지난 후부터 약 1억 달러씩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주 벌금 기금의 재분배로 인해 주정부의 일반 기금 수입이 2007-08 회계연도에 비해 약 1,400만 달러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가석방 정책 변경. 이 법안의 다양한 조항들로 인해 주정부가 교도소 및 가석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매년 최소한 수억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갇단, 메탐페타민, 차량 절도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과 가석방 집행관의 담당 건수를 줄이고 가석방 감독이 해제된

성범죄자에 대한 GPS 감시 비용을 주정부가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때문입니다.

주정부의 자본적 지출 비용. 특정한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은 또한 주로 교도소 건설 및 보수와 관련된 1회성 자본적 지출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1회성 비용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5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심리법원, 카운티 구치소 및 기타 형사사법기관. 이 법안은 주 심리법원, 카운티 구치소 및 기타 형사사법기관에 중대한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로운 비용과 절약이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다양한 조항에 대한 재정적인 순영향은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알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법안은 지방정부의 법집행 활동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여 더 많은 범죄자들이 체포 및 기소되고 주정부 교도소 또는 지방정부 구치소에 수감되는 만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적 중죄 또는 갇단과 관련된 중죄로 체포된 불법체류 범죄자들은 더 이상 보석이나 자신의 서약에 의한 석방에 대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수감하기 위해 추가 구치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 구치소 및 치료 시설의 사용을 허용하는 이 법안의 조항 때문에, 카운티에 이러한 임시 시설을 구입, 보수 및 운영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규모는 카운티가 사용하는 새로운 임시 시설의 숫자와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안은 사람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추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성공하는 경우, 범죄자들이 체포 및 기소되고 주정부 교도소 또는 지방정부 구치소에 수감되는 숫자가 추가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조항은 일부 범죄자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여 법원 및 다른 형사 사법 기관들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기타 영향. 이 법안의 조항에 의해 범죄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수감되어 정부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범죄를 더 적게 저질러 피해자와 관련된 정부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이 다른 비용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교도소에서 더 오래 복역하는 범죄자들은 현행법에 의해 더 이상 납세자가 아니므로, 그만큼 절약을 상쇄하는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의 정도와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림 3 발의안 제6호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 요약	
재정적인 영향	금액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정부의 연간 순비용이 증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신규 및 기존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3억 6,500만 달러가 증가한 9억 6,5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합니다. • 특정한 형사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증가시켜야 하는 요건 • 교도소 수감자를 증가시킬 특정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가석방 담당 건수 감소 요건으로 인해 가석방 비용 증가 	첫 몇 년 동안 5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그 후에는 이러한 비용이 매년 수천만 달러씩 증가할 것입니다.
교도소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1회성 자본적 지출 비용 증가	5억 달러가 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심리법원, 카운티 구치소 및 기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비용 및 절약	재정적인 순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 발의안 제6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보안관들은 발의안 제6호, 안전한 이웃법을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우리의 거리에 더 많은 경찰관을 제공하고, 안전을 증가시키며, 공공안전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갱단 활동 방지 및 범죄 감소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6호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지방정부 범집행 기관에 제공합니다. 이 발의안은 세금이 낭비 및 낭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감독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 잡힌 해결책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지방검사 협회, 캘리포니아 주 경찰서장 협회, 범죄 피해자 연합 및 45,000여 명의 범집행관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 발의안을 지지합니다.

범죄, 갱단 및 폭력이 우리의 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살인 범죄율이 감소하던 1999년과 2006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의 살인 범죄율은 증가했으며 연간 거의 500여 건이 더 많은 살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살인 범죄율은 미국의 5대 주 중에서 가장 높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살인 범죄율이 증가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갱단입니다. 범무장관에 의하면, 420,000명을 상회하는 갱단원들이 우리의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갱단원들을 받은 중범죄자와 갱단원들이 치안관의 살해를 포함하는 총기 범죄의 대부분을 저지릅니다.

이제는 그들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발의안 제6호는 다양한 수준의 범죄 및 갱단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 폭력적인 범죄 또는 갱단 범죄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보석을 금지합니다.
- 폭력적인 중범죄를 저지르는 갱단 범죄자에게 10년이 증가된 처벌을 부과합니다.
- 청소년들이 갱단에 가입하여 인생을 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유죄판결을 받은 갱단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감에서 석방된 후 5년 동안 매년 범집행 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갱단 범죄자, 성범죄자 및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GPS 추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 메탐페타민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처벌을 코카인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 탄약이 장전되었거나 감춰진 총기를 공공연하게 휴대하는 위험한 증범자에 대해서는 10년의 형기를 추가합니다.
- 낙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범죄 피해자와 범집행관들은 모두 발의안 제6호에 찬성합니다. “저는 7개월 전에 갱단의 폭력에 의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혐의자를 쫓는 동안 총탄에 맞았습니다. 제 남편을 살해한 사람은 16살 된 갱단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위험에 처한 자녀들이 갱단과 범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예방 및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이러한 일을 하고, 범집행관들에게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 Thanh Nguyen, 부모안관 Vu Nguyen의 미망인

“발의안 제6호는 범집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대부분의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선할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 Robert Lopez, 산호세 경찰관 협회 회장

“안전한 이웃법은 우리에게 위험에 처한 자녀들이 갱단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Jerry Powers, 캘리포니아 주 집행유예 책임자 협회 회장

발의안 제6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피해자 권리 옹호자 및 범집행 기관의 지도자들과 함께 발의안 제6호를 지지하는 데 동참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www.SafeNeighborhoodsAct.com을 방문하십시오.

LEE BACA, 보안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BONNIE M. DUMANIS, 지방검사
샌디에고 카운티
HARRIET C. SALARNO, 의장
Crime Victims United of California

★ 발의안 제6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6호는 사용한 자금을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증명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지출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6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6호의 지지자들은 첫째에만 납세자들에게 1,000,000,000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1,000,000,000달러의 비용은 교육, 의료, 소방, 또는 효과가 증명된 공공안전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6호가 하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1. 발의안 제6호는 경찰관이 한 사람이라도 더 거리에 투입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발의안 제6호는 이미 효과가 증명된 청소년 갱단 참여 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발의안 제6호는 지역사회가 공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6호가 교도소와 구치소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새 법을 제정하여 법원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안 제6호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복시켜 관료주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갱단 문제와 고범죄 지역사회의 대한 거의 모든 형사 사법 연구는 엄격한 범집행과 함께 지역사회 서비스 워커, 정신건강, 마약 및 알코올 서비스를 포함하는 조화되고 균형 잡힌 어프로치를 요구합니다.

불행하게도, 발의안 제6호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그 대신에 원인이 아닌 증상에만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또 하나의 투표 법안을 승인할 여유가 없습니다. 발의안 제6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ROY ULRICH, 이사회 의장
California Tax Reform Association
DANIEL MACALLAIR, 집행 디렉터
Center on Juvenile & Criminal Justice

★ 발의안 제6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이번 11월의 투표는 처음 읽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약속한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를 악화시킬 발의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의안 제6호가 좋은 예입니다.

발의안 제6호는 엄청난 새로운 지출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사상 최악의 예산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발의안 제6호는 범죄를 줄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비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매년 거의 10억 달러를 지출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교, 가정 위탁, 방과후 프로그램, 소방 및 효과적인 공공안전 활동에 대한 자금 제공을 위태롭게 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교도소에 대한 주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을 위태롭게 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새 교도소 시설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며, 그 비용은 5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지출하는 수감자 1인 당 비용은 이미 공립학교 학생 1인 당 비용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

“발의안 제6호는 현재의 거주지 주소를 갱신하지 않는 것과 같은 ‘범죄’로 자녀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곳에 더 오래 있게 하는 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할 것입니다. 더욱이 14살 된 자녀가 성인으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십억 달러는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증명된 학교와 아동 의료 프로그램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 Marty Hittelman, 캘리포니아 주 교사 연맹 회장

발의안 제6호는 책임을 지지 않고 비효과적인 프로그램에 자금을 낭비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실질적인 감독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프로그램에 매년 1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쟁 질차나 비용-혜택 분석을 거치지 않고 선정됩니다. 주정부는 그 후에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자금 제공 금액을 자동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6호에 의해 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은 “공공안전 주민 옵션”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독립적인 법률 분석가가 검토한 결과 “정의 가능한 목표가 없고” 또한 “확인

가능한 성과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의안 제6호는 증명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6호는 기존의 범죄 예방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세금의 막대한 지출이 갭단과 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지사와 주의회가 이미 갭단 및 범죄와 싸우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Schwarzenegger 주지사는 작년 “CalGRIP”을 시작하고, 주 전체의 범집행 및 지역사회 갭단 활동 예방 프로그램에 주정부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CalGRIP은 갭단을 공격하기 위해 예방, 개입, 억압 및 수감과 같은 균형 잡힌 어프로치를 적용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을 완전히 방해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6호는 공공안전을 증진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정부가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의안 제6호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발의안 제6호는 실질적인 감독이나 책임이 없는 증명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세금을 쏟아 부어 효과적인 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자금을 박탈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학교에 대한 자금 제공을 위태롭게 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하지 않으므로, 학교, 의료 및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금액이 감소할 것입니다. www.votenoprop6.com을 방문하여 전직 범집행관, 납세자 및 아동 단체, 종교 지도자, 민권 단체를 포함하는 발의안 제6호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리스트를 열람하십시오.

발의안 제6호는 공공안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마케팅을 하여 주정부 출납국에 타격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발의안 제6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LOU PAULSON, 회장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STEPHAN B. WALKER, 최고 집행 책임자
 Minorities in Law Enforcement

★ 발의안 제6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정부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주민의 안전입니다. 그러나 주정부의 예산은 우리의 이웃을 갭단, 마약 거래자 및 폭력적인 범죄자로부터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지속적으로 인건에 있는 폭력적인 갭단들을 제거하기 위해 싸우는 지역의 범집행 기관들을 부당하게 대우해 왔습니다. 공공안전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지출은 현재의 달러 금액으로 환산할 때 2003년에 비해 14%가 감소했습니다.

발의안 제6호에 찬성하여 납세자의 세금을 지역 범집행 기관에 돌려 주십시오.

발의안 제6호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 일반 기금의 1%를 지역 범집행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출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안전한 이웃법은 공공안전을 위한 건전한 투자입니다. 이 법안은 갭단과 범죄를 예방하는 성과를 측정하고 정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참신한 수준의 책임을 집니다.” — Lew Uhler, 전미 세금 제한 위원회 회장

자녀들을 위한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발의안 제6호에 찬성하십시오.

발의안 제6호는 교육에 계속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면서도 자녀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법무장관은 2007년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갭단들이

상존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 및 하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갭단들은 학생들을 위협 및 협박하고, 갭단원을 모집합니다. 그들은 학교 입구 가까이와 버스 정차장에서 학생들을 강탈하고, 공격하고, 총기를 발사합니다.”

“발의안 제6호는 갭단, 마약 및 폭력을 학교에서 추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합니다.” — Jamie Goodreau, 2003년에 올해의 교사로 선정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사

안전한 이웃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보안관, 캘리포니아 주 경찰서장 협회, 캘리포니아 주 지방검사 협회, 캘리포니아 주 집행유예 책임자 협회, 중남미계 미국인 경찰 간부 협회는 발의안 제6호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6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ROD PACHECO, 지방검사
 리버사이드 카운티
 LAURIE SMITH, 보안관
 산타클라라 카운티
 RON COTTINGHAM, 회장
 Peace Officers Research Association of California

발의안 제7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 주민 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 주민 발의 법안.

- 공익사업체(정부 소유 공익사업체 포함)에 2010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은 현재 민간 전기회사들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공익사업체에 대한 요건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50%로 증가시킵니다.
-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나, 면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규제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공익사업 위원회에서 에너지 위원회로 이관합니다.
- 신설 재생가능 에너지 플랜트를 신속하게 승인합니다.
- 재생 가능 에너지 구매 계약을 더 장기적으로(최소한 20년)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재생가능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한 우선통행권과 시설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계정을 설치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주 공익사업의 규제 활동으로 인해 주정부의 행정 비용이 연간 최대 340만 달러 증가할 것이나, 요금 수입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이 소매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용이 증가하고, 판매세와 소득세 수입이 감소하고, 지방 공익사업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없으므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과 비용도 알 수 없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공급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3종류의 공급자들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받습니다.

- 투자가 소유 공익사업체(IOU), 소매 전기 서비스의 68퍼센트를 공급
- 지방의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 소매 전기 서비스의 24퍼센트를 공급
- 전기 서비스 공급자(ESP), 소매 전기 서비스의 8퍼센트를 공급

(이 분석 전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텍스트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투자가 소유 공익사업체. IOU는 민간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영리를 위해 전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3대 전기 IOU는 Pacific Gas and Electric, Southern California Edison, San Diego Gas and Electric입니다. 각 IOU는 정의된 고유한 서비스 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법은 각 IOU가 해당 서비스 지역 내의 고객들에게 전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IOU가 고객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요금은 캘리포니아 주

자주 사용하는 용어—발의안 제7호

에너지 위원회(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에너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특정한 발전소를 허가합니다.

ESP(전기 서비스 공급자). 해당 지역에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고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IOU(투자가 소유 공익사업체). 정의된 서비스 지역을 보유하고 있고 주법에 따라 그 지역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 공익사업체 위원회는 IOU의 요금과 서비스 조건을 규제합니다.

전기 시장 가격. 주법에 규정된 정의와 기준에 따라 주정부 기관이 결정하는 전기의 표준 가격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 해당 지역에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 기관으로서, 일반대중이 선출하거나 지역에서 선출한 단체가 임명하는 위원회가 관리합니다.

PUC(공익사업체 위원회). IOU와 ESP를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공익사업체를 규제하는 주정부 기관

RPS(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전기 공급자들이 지정된 일정에 따라 재생가능 자원(풍력, 태양열 등)으로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비율을 증가시켜야 하는 요건

공익사업체 위원회(PUC)가 결정합니다. 또한 PUC는 IOU가 고객들에게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전기요금과 서비스에 대한 조건을 “서비스 조건”이라고 합니다.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는 지방정부 기관으로서, 일반대중이 선출하거나 지역에서 선출한 단체가 임명하는 위원회가 관리합니다.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는 PUC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체적으로 서비스 조건을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에는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과 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가 포함됩니다.

전기 서비스 제공자. ESP는 해당 지역에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고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객들은 ESP와 “직접 접근(direct access)” 계약을 체결합니다. ESP는 직접 접근 계약에 따라 지역 공익사업체의 송전선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20개의 등록 ESP가 있습니다. 이러한 ESP는 대규모의 상업 및 공업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ESP는 몇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캠퍼스 및 일부 지방 학군과 같은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ESP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PUC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포함하는 ESP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하지는 않으나, ESP에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충분한 전기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포함하는 제한된 요건들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전기 기반시설

주요 구성요소. 4가지의 주요 구성요소가 전기를 생산 및 공급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 발전 설비
- 주간(interstate) 전송 그리드
- 발전 설비를 그리드에 연결하는 송전선
- 전기 그리드를 전기 고객에게 연결하는 배전선

이러한 기반시설을 허가하는 규제 책임은 특정한 프로젝트에 따라 하나 이상의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가 당국. 발전 설비의 허가 권한은 운영할 설비의 종류와 규모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댐과 같은 수력 발전 설비는 연방정부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가 허가합니다. 5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열발전 설비(주로 천연가스를 연소시키는 발전소)는 주정부의 에너지 자원 보전 및 개발 위원회(에너지 위원회)가 허가합니다. 풍력 터빈과 비열(nonthermal) 태양열 발전소와 같은 많은 종류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다른 발전 설비들은 지방정부가 허가합니다.

송전선에 대한 허가 권한은 건설되는 송전선의 기능과 송전선을 소유할 전기 제공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전선은 기능과 소유권에 따라 FERC, 에너지 커미션, PUC 또는 지방정부가 허가합니다.

에너지 위원회의 허가 처리 기간. 기존의 법률은 에너지 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에서의 발전 설비 또는 송전선의 건설 및 운영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대부분의 신청에 대해 18개월이고,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청에 대해서는 12개월입니다.

재생가능 자원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현행법은 IOU와 ESP가 획득(자체적으로 공급하거나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전기 중에서 태양열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양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RPS)이라고 합니다. RPS의 적용을 받는 각 전기 제공자는 적격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비율을 매년 1 퍼센트 이상 증가시켜 2010년 말까지는 20퍼센트의 전기를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해야 합니다.(나중에 설명할 것이나,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는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 요건을 적용 받습니다.)

비용 상한선의 제한을 받는 RPS에 의한 IOU의 의무. 현행법은 IOU에 적용되는 연간 RPS 목표에 상관없이 IOU가 RPS에 의해 획득해야 하는 재생가능 전기의 양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비용과 관련된 다음의 2가지 요소에 근거합니다.

- 주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PUC가 정하는 가격인 “전기 시장 가격”
- 재생가능 전기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전부터 운영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전기요금 납부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IOU는 비용이 PUC가 정한 전기 시장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재생가능 전기를 획득해야 합니다. 충분한 양의 재생가능 전기를 획득하지 않는 IOU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OU는 이처럼 높은 비용의 재생가능 전기를 위의 시장 가격 비용이 IOU가 전부터 운영하는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징수한 자금의 금액보다 적은

한도 내에서만 획득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IOU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납부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 모두에 대해 RPS를 준수하는 연간 비용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RPS의 집행. 현행법은 PUC가 IOU와 ESP의 RPS 준수를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IOU만이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RPS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설명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IOU와 ESP는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생가능 자원 구매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PUC는 매년 RPS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IOU나 ESP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PUC는 IOU나 ESP가 RPS 목표에 미달하는 전기의 양에 대해 킬로와트시 당 5센트로 벌금 금액을 정했습니다. PUC는 1년에 IOU나 ESP에 부과할 수 있는 총 벌금 금액의 상한선을 2,500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벌금의 사용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나, 보통 주정부 일반 기금에 예치됩니다.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는 자체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표준을 설정. 현행법은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가 다른 전기 제공자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RPS를 충족시키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현행법은 각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을 제정 및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각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가 재생가능 자원이라고 간주하는 전기 자원을 정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어떤 주정부 기관도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의 표준 준수를 집행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재생가능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정부의 RPS 목표 달성에 대한 진척도. 2010년까지 20퍼센트의 전기를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한다는 주정부의 RPS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진척도는 전기 제공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06년(자료를 사용 가능한 마지막 연도) 현재, IOU 전체에서 13퍼센트의 전기가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되었습니다. ESP에서는 2퍼센트의 전기가 같은 종류의 자원으로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재생가능 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 전체에서는 거의 12퍼센트의 전기가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IOU와 ESP에 적용되고 있는 재생가능 자원에 대한 주법의 정의

(예를 들면, 대규모 수력발전 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를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에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공익사업체의 2006년 현재 목표 달성율은 7퍼센트가 약간 넘는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에너지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는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가 IOU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생가능 전기의 공급을 증가시켰습니다.

발의안

법안 요약

이 법안은 RPS와 발전 설비 및 송전선의 허가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주로 다음 사항을 변경합니다.

- 전기 제공자에 대해 더 높은 추가 RPS 목표를 설정
-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에 대해서도 RPS 요건을 집행
- “전기 시장 가격”을 정의하는 과정을 변경
- RPS에 의한 전기 제공자의 의무를 제한하는 비용 상한선 조항을 변경
- RPS의 집행 범위를 확대
- RPS와 관련된 계약 기간과 의무를 개정
- 법률에 더 낮은 벌금 요율을 설정하고 RPS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총 벌금 금액의 대한 상한선을 제거
- RPS 벌금 수입의 사용 방법을 지시
- 에너지 위원회의 허가 권한을 확대

이러한 각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법안의 개별 구성요소

더 높은 추가 RPS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더 높은 새 RPS 목표를 추가합니다: 2020년까지 40퍼센트, 2025년까지 50퍼센트. 각 전기 제공자는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획득 비율을 현재의 연간 1퍼센트에서 2퍼센트 이상으로 증가시켜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 제공자가 특정한 연도에 달성하지 못한 RPS 목표를 그 후에 연도들에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구매함으로써 보상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요건을 제거합니다.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에 대해서도 RPS 요건을 집행. 이 법안은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에 대해서 IOU와 ESP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같은 RPS 목표(각 전기 제공자가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획득하는 전기의 비율을 2010년까지 20퍼센트로

증가시킨다는 현재의 RPS 목표 포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에너지 위원회에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에 대해 RPS 요건을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에너지 위원회가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의 재생가능 자원에너지 계약(계약 조건 포함)을 승인 또는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전기 시장 가격”을 정의하는 과정을 변경.

이 법안은 RPS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시장 가격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2가지 주요 사항을 변경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전기 시장 가격을 결정할 책임을 PUC에서 에너지 위원회로 이전합니다. 둘째, 이 법안은 에너지 위원회가 전기 시장 가격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현행법 요건에 3가지 새 기준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재생가능 자원의 가치와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RPS에 의한 전기 공급자의 의무를 제한하는 비용 상한선 조항을 변경. 이 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IOU가 연간 RPS 목표에 상관없이 획득해야 하는, 비용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재생가능 전기의 양을 제한하는 비용 상한선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비용 상한선을 확대하여 ESP에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가능 전기의 비용이 에너지 위원회가 정의한 전기 시장 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전기 공급자가 연간 RP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전기를 획득하거나 또는 벌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IOU와 ESP는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의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이 10퍼센트의 비용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도 이러한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의 비용은 IOU 및 ESP와 유사한 비용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RPS의 집행 범위를 확대. 이 법안은 PUC가 현재 IOU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RPS와 관련된 집행 메커니즘을 ESP를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집행 메커니즘에는 재생가능 자원 구매 계획, 이와 관련된 요금 설정 권한 및 처벌 권한의 검토 및 채택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에 대한 이와 유사한 RPS 관련 집행 권한을 에너지 위원회에 부여합니다.

RPS와 관련된 계약 기간과 의무를 개정. 이 법은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를 포함하는 모든 전기 공급자에게 2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생가능 자원 구매 계약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나, 특정한 예외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전기 공급자가 에너지 위원회가 정의한 전기 시장 가격 이하인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모든 제의를 수락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률에 더 낮은 벌금 요율을 설정하고 총 벌금 금액의 대한 상한선을 제거. 이 법안에는 충분한 양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전기 공급자에 대한 금전적 처벌을 결정하는 공식이 포함됩니다. 이 처벌 공식은 제공자가 해당 RPS 목표에 미달하는 전기의 양에 대해 킬로와트시 당 1센트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공식은 현재 PUC가 설정한 벌금 요율인 킬로와트시 당 5센트보다 낮은 벌금 요율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또한 PUC나 에너지 위원회가 특정한 연도에 전기 공급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총 벌금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전기 공급자가 고객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통해서 벌금 비용을 보상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항이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는 보통 고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제외하고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또한 PUC 또는 에너지 위원회(해당되는 경우)가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합니다(전기 공급자가 RPS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등).

벌금의 직접적인 사용. 이 법안은 모든 RPS 관련 벌금(다른 지정된 수입과 함께)을 부동산 또는 우선통행권의 획득과 송전 설비의 건설을 통해서 RPS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송전 기반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위원회가 이러한 자금으로 획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규정합니다.

에너지 위원회의 허가 권한을 확대. 이 법안은 에너지 위원회의 기존의 허가 권한을 RPS에 국한되지 않는 2가지 주요한 방법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 에너지 위원회에 3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새 비열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소를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새 허가 권한에는 발전소를 송전망 그리드와 연결하는 송전선 같은 관련 기반시설이 포함됩니다. 현재, 이러한 허가 권한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위원회에 IOU가 송전 그리드 내에 새 송전선을 건설하는 것을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허가는 현재 전적으로 주 수준 PUC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이러한 권한을 에너지 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PUC의 권한을 제거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소나 관련 설비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에너지 위원회가 이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설비가 환경이나 전기 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주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법적 기준이나 다른 명시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6개월의 기간 내에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미치는 제한적인 영향에 대한 선언. 이 법안의 사실 확인 및 선언문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이 법안의 시행에 포함될 것임)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3 퍼센트 이하로 인상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이러한 선언을 실행 또는 집행할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영향

에너지 위원회 비용의 증가. 이 법안은 에너지 위원회의 새로운 책임과 기존의 의무 확대로 인해 이 위원회의 연간 행정 비용을 약 240만 달러 증가시킬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러한 추가 비용은 전기 고객들이 납부하는 요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위원회에 전기 시장 가격을 정의하고 IOU 관련 송전선을 허가하는 새로운 책임을 부여합니다(이러한 책임은 현재 PUC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PUC의 비용은 이 법안에 의해 증가된 비용을 상쇄할 만큼 상당히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PUC의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위원회에 부여된 책임을 삭제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UC가 계속 기존의 의무를 수행하는 한, PUC에 증가된 비용을 상쇄할만한 절약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PUC 비용 증가. 또한 이 법안의 다른 요건들은 PUC의 연간 행정 비용을 최대 100만 달러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RPS 목표 확대와 관련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러한 추가 비용은 전기 고객들이 납부하는 요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행정 비용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영향. 이 법안은 특정한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를 허가하는 책임을 지방정부로부터 에너지 위원회로 이전합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지방정부의 행정 비용을 알 수 없는 금액만큼 절약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를 허가하는 에너지 위원회의 절차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절약이 이 법안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많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 전체 지방정부 행정 비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순영향은 경미할 것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용과 수입

이 법안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주요 재정적인 영향은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전기요금의 변동은 정부의 비용과 수입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비용에 대한 알 수 없는 영향

개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변동은 정부의 비용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생가능 자원의 가격과 천연가스와 같은 재래식 전기 자원의 가격을 비교하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전기요금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단기. 저희는 주요 재생가능 자원과 재래식 자원에 대한 현재의 비용 요인을 비교한 것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비용 요인에는 설비 건설 및 기술 비용은 물론, 연료와 같은 발전 공정 투입물을 포함하는 일상적인 운영 비용이 포함됩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 이러한 비용 요인은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 비용, 그리고 따라서 그러한 전기에 대해 고객이 납부하는 요금이 재래식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 비용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이 법안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민간 소유 전기 제공자들이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한선은 에너지 위원회가 결정할 전기 시장 가격과 관련하여 설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전기 시장 가격 결정에 대해 이 위원회에 상당한 재량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이 지불하는 전기 가격에 대한 상한선의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장기. 장기적으로, 이 법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전기요금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이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전기 고객들의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촉진하는 경우, 이러한 고객들은 장기적으로 그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비용 요인이 단기적인 전기요금을 높게 유도하면 장기적으로도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전기 제공자들에게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비싼 전기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들의 비용은 장기적으로 그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들보다 더 우세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정부 비용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수입에 대한 알 수 없는 영향

개관. 또한 이 법안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부 지방정부는 그 경계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비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이 전기요금을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도 그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수입은 기업 이익, 개인 소득, 과세 대상 판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기업과 개인이 납부하는 전기 요금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 비용이 높으면 정부 수입이 감소할 것이고, 전기 비용이 낮으면 정부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단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저희는 전기요금이 단기적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 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의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은 이 법안의 비용 상한선 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법안에 의해 전기요금이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인상되는 경우, 지방의 공익 서비스 사용세 수입은 그만큼 증가하고, 주 및 지방의 판매세 및 소득세 수입은 그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 수입에 미치는 전반적이고 단기적인 순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장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법안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전기요금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정부 수입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도 알 수 없습니다.

★ 발의안 제7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우리는 오염을 일으키는 석탄, 원자력과 해상 시추보다 더 개선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법이라고 하는 발의안 제7호는 모든 공익사업체가 더 많은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조력 및 소량의 수력전기 에너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기준은 매년 2%씩 17년에 걸쳐 증가되므로, 2025년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절반을 보다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증가하는 산불, 물 부족,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에 대한 위협, 오염이 유발하는 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는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제한하는 발의안 제7호는 균형 잡힌 해결책입니다.

발의안 제7호는 신중하게 작성되었고 법률,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가 검토했습니다.

발의안 제7호는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 위원회가 주로 우리의 광활한 사막에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생산 구역을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발의안 제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주를 청정 전력 기술의 리더로 만듭니다.
- 370,000여 개의 새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발의안 제7호는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환경 보호 조항을 충족시킵니다.
- 캘리포니아 주 환경 품질법
- 사막 보호법
- 지방정부 십사

태양열 및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규모 및 소규모 사업에 대한 강력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안 제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의 회사들은 현재와 미래의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캘리포니아 주 법률 분석가는 발의안 제7호의 재생가능 에너지 기준을 시행하는 비용이 35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익사업체가 벌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7호에 의해 태양열과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더라도 우리의 전기 요금을 연간 3%가 넘게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체들이 “환경 보호 활동” 홍보에 수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정당을 후원하고, 특정한 환경 단체들과 제휴하여 우리를 오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공익사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감추고 싶은 작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 전기는 석탄과 화석 연료를 태워서 생산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를 온난화하는 오염의 40%가 이러한 형태의 발전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익사업체가 소유, 가동 및 송전하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매년 1억 700만 미터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는 전세계에서 16번째로 지구를 온난화하는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전기의 절반은 타주의 석탄을 사용하여 발전합니다.)

공익사업체들은 2001년에 에너지 위기를 일으켰고, 그 후에 최고경영자들에게 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 태양, 바람, 조류 및 지열에서 얻는 에너지는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료 및 무제한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 값비싼 화석 연료, 석유, 가스 시추, 그리고 위험한 원자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온난화하는 오염을 막기 위해 주요하고 환경적으로 현명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국산 석유와 수입한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해 특별히 축복을 받은 지역입니다.

우리는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전체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solarandcleanenergy.org

DR. DONALD W. AITKEN, Ph.D., 재생가능 에너지 과학자
JOHN L. BURTON, 캘리포니아 주 상원 임시의장(은퇴)
JIM GONZALEZ, 의장

Californians for Solar and Clean Energy

★ 발의안 제7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위의 찬성 의견은 단 몇 사람의 개인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7호는 재생가능 전력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싸움을 주도하고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수십 개의 단체들이 반대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태양열 에너지 산업 협회
-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존 유권자 연맹
- 천연자원 보호 위원회
- 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 기술 센터
- 환경 보호 기금
- 관심 과학자 동맹

이러한 단체들은 발의안 제7호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이 법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허점 투성이고, 재생가능 전력 개발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발의안 제7호는 모든 것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과 같은 단체들도 발의안 제7호에 반대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 협회
-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연합
- 수십 개의 환경, 납세자, 근로자, 고령자, 공익사업체 및 기업 단체.

법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십시오.

지지자들이 그들의 법안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실제 내용입니다.

- 발의안 제7호는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 회사들을 캘리포니아 주 시장에서 축출하여 경쟁과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거합니다.
 - 발의안 제7호의 문안에는 전기 요금 인상을 제한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 발의안 제7호는 전력 제공자들이 언제든 시장 가격보다 10% 높은 전력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여, 재생가능 에너지에 경쟁을 제한합니다.
 - 발의안 제7호는 전기 및 납세자와 관련된 수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값비싼 전력을 재생가능 전력으로 대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 발의안 제7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www.NoProp7.com

TOM ADAMS, 이사회 의장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GARY T. GERBER, 사장
Sun Light & Power
BETTY JO TOCCOLI, 회장
California Small Business Association

★ 발의안 제7호에 대한 반대 의견 ★

풍력, 태양열 및 다른 재생가능 전력 제공자, 환경, 소비자 및 납세자 단체, 기업 및 근로자, 그리고 지구 온난화 과학자들은 모두 발의안 제7호에 반대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애리조나 주의 억만장자가 소모 비용을 지불한 발의안 제7호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법안에 기술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제로 재생가능 전력의 개발을 방해할 것입니다.
-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 회사들을 캘리포니아 주 시장에서 축출할 것입니다.
- 법안에 기술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전기 요금과 납세자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 다른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발의안 제7호는 소규모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 회사들을 시장에서 축출합니다.

발의안 제7호에는 경쟁을 제거하여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 회사들을 캘리포니아 주 시장에서 축출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30메가와트 미만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가능 전력은 이 법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재생가능 에너지 요건에 의한 계약의 거의 60퍼센트는 이러한 소규모 제공자들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제7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소규모 태양열 회사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청정 전력의 주요 공급원과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거하여 이 산업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Sue Kateley, 집행 디렉터, 캘리포니아 주 태양열 에너지 산업 협회

발의안 제7호는 에너지 가격을 지속적으로 시장 오용보다 10% 높게 고정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경쟁을 제한합니다.

발의안 제7호는 전력 제공자들이 언제든지 시장 가격보다 10% 높은 전력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여, 재생가능 에너지에 경쟁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발의안 제7호의 어떤 조항도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7호는 재생가능 시장을 혼란시키고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수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발의안 제7호에는 전기 소비자들의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에 해를 끼칠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Philip Romero, 박사, 전임 수석 경제학자, 캘리포니아 주 계획조사국

“발의안 제7호의 결함이 많은 조항들은 재생가능

전력의 개발을 방해하고, 불필요하게 비용을 증가시키고, 값비싼 에너지원을 청정 전력으로 대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 것입니다.”— Sheryl Carter, 에너지 프로그램 공동 디렉터, 천연자원 보호 위원회

“제7호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증가시키고 납세자들에게 수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Teresa Casazza, 회장,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 협회
우리는 아직도 지난 번 에너지 위기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7호는 ENRON이 에너지 위기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한 것과 매우 유사한, 시장을 조작할 호기를 제공하는 시장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들은 지난 번 에너지 위기의 대가로 아직도 매년 거의 10억 달러(전기 소비자 당 거의 100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번의 에너지 위기를 유발하고 전기 요금을 인상할 불안정하게 작성된 법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Betty Jo Toccoli, 회장, 캘리포니아 주 소기업 협회

주요 환경 단체와 재생가능 전력 제공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공익사업체들이 재생가능 전력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는 청정 에너지 기준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7호는 이러한 발전을 위태롭게 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은 모두 발의안 제7호에 반대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존 유권자 연맹
- 캘리포니아 주 태양열 에너지 산업 협회
- 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 기술 센터
- 환경 보호 기금
- 천연자원 보호 위원회
- 관심 과학자 동맹

발의안 제7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www.NoProp7.com

SUE KATELEY, 집행 디렉터

California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TOM ADAMS, 이사회 의장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TERESA CASAZZA, 회장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 발의안 제7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영리 공익사업체들은 발의안 제7호에 반대합니다.

향후 수십 년 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청정 전기의 공급을 보장할 발의안에 반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3대 공익사업체(Pacific Gas & Electric, Southern California Edison, San Diego Gas & Electric)가 발의안 제7호에 반대하기 위한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의안 제7호에 반대하는 그들의 주장의 어디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줄이거나 37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것을 돕는 방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대신에, 그들은 소규모 재생가능 전기 회사들과 소비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옳지 않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법률 분석가가 작성한 보고서는 그들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 이 주의 두 정당이 발의안 제7호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기 공익사업체들이 지난 4년 간 주 민주당에 150만 달러를 제공하고, 주 공화당에 110만 달러를 제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 일부 재생가능 에너지 제공자들이 발의안 제7호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 반대자들이 고른 환경 단체들이 발의안 제7호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익사업체와 같이 많은 위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캘리포니아 주는 지구를 온난화하는 오염을 16번째로 많이 발생시키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라는 우리 시대의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과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발의안 제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Yeson7.net

DOLORES HUERTA, 공동 설립자

United Farmworkers Union

PAUL "PETE" McCLOSKEY JR., 연방의회 의원(은퇴)

JIM GONZALEZ, 회장

Californians for Solar and Clean Energy

발의안 제 8 호

동성 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동성 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 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하도록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을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향후 수년 간, 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판매세 수입이 함께 수천만 달러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거의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은 2000년 3월에 발의안 제22호를 통과시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을 받는다고 주법에 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2008년 5월에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로 제한하는 발의안 제22호에 의해 제정된 법률과 다른 법률들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평등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따라 동성인 사람 사이에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 동성인 사람 사이의 결혼이 유효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발의안

이 법안은 주 헌법을 개정하여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을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그 결과, 2008년 5월의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이성인 사람 사이에 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동성인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결혼권을 인정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영향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 동성인 사람 사이의 결혼이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 부부가 결혼식에 지출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주로 판매세 수입)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동성인 사람 사이의 결혼이 유효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이 법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주로 판매세 수입)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향후 수년 동안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법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발의안 동성 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
제8호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8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8호는 간단하고 직설적입니다. 이 법안에는 지난 2000년에 61%가 넘는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가 승인한 다음과 같은 14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을 받는다.”

샌프란시스코의 행동주의자 판사 4명이 주민의 투표를 뒤집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을 헌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켜 결혼의 정의를 남성과 여성으로 복원시켜야 합니다.

발의안 제8호는 결혼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동성애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8호는 남성 또는 여성 동성애자의 동거 파트너십에 대한 권리나 혜택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동거 파트너는 결혼한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 보호,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가족법 § 297.5.) 이 규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발의안 제8호는 이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8호에 찬성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이 이미 승인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결혼의 정의를 복원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4명의 행동주의자 대법원 판사가 내린 악의적인 결정을 뒤집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성 결혼”이 전통적인 결혼과 다르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발의안 제8호는 결혼을 사회의 필수적인 제도로서 보호합니다. 사망, 이혼 또는 다른 상황들이 이상적인 환경을 방해할 수도 있으나, 자녀에 대한 가장 좋은 환경은 결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협의적인 결정은 단지 “간섭하지 않고 공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법은 교사들에게 유치원생 같은 어린 아동들에게 결혼에 관해 가르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 51890.) 동성 결혼에 대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교사들은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 결혼과 전통적인 결혼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가르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립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동성 결혼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자녀들과 의견을 나누는 부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의안 제8호가 동성 동거 파트너십에 대한 법적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발의안 제8호는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선택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개인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해도,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결혼을 재정의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 결혼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 행동주의자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를 원하면 그 안건을 투표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유권자들이 모르게 샌프란시스코의 4명의 행동주의자 판사들에게 가서 나머지 사회에 대해 결혼을 재정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발의안 제8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61%가 넘는 유권자들이 승인한 결혼의 정의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찬성 투표를 하면 4명의 행동주의자 판사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찬성 투표를 하면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8호에 찬성 투표를 하여 결혼의 의미를 복원합니다.

RON PRENTICE, 의장
California Family Council
ROSEMARIE “ROSIE” AVILA, 관리위원회 위원
산타아나 통합 학교
BISHOP GEORGE MCKINNEY, 디렉터
Coalition of African American Pastors

★ 발의안 제8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검을 주는 진술에 속지 마십시오.

• 발의안 제8호는 학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발의안 제8호에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 한 단어도 없습니다. 설제로, 지역(주가 아닌)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정합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과 가족 문제에 대한 어떤 교육도 강제로 받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이 그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주법의 어떤 조항도 유치원에서 결혼에 관해 언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장을 위한 연막입니다.

• 동거 파트너십과 결혼은 같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은 결혼과 동거 파트너십 사이의 9가지의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결혼만이 배우자들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결혼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는 아프거나, 다쳤거나, 나이가 들어갈 때 배우자에게 의지합니다. 그들은 구급차나 병실에 동행하고, 생사가 달린 결정을 하면서도, 어떤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결혼만이 혼란을

제거하고 부부가 가장 필요한 때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 동일한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발의안 제8호는 남성 및 여성 동성애자 부부의 권리를 박탈하고 법에 따라 다르게 대우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들 중의 하나입니다.

발의안 제8호는 한 부류의 주민들은 결혼의 존엄성과 책임을 즐길 수 있고 다른 부류의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발의안 제8호에 반대하십시오.

www.NoonProp8.com

ELLYNE BELL, 교육위원회 위원
새크라멘토 시 학교
RACHAEL SALCIDO, 법대 부교수
McGeorge School of Law
DELAINE EASTIN
전임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 교육감

발의안 동성 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
제8호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8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우리의 캘리포니아 주 헌법(우리 주의 기본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어떤 한 집단을 선정하여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건국되었습니다.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는 미국 사회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 자유 및 공정-이것이 이번 선거의 목적입니다.

결혼은 부부가 하는 평생 동안의 약속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심을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발의안 제8호는 남성 및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이러한 존엄성과 존중심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발의안 제8호가 캘리포니아 주에 해로운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결혼할 자유는 종교 및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발의안 제8호는 하나의 규칙을 남성 및 여성 동성애자 부부에게 적용하고 다른 규칙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사실, 정부는 사람들에게 누구는 결혼할 수 있고 누구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우리에게 어떤 책을 읽고,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의 사생활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발의안 제8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정부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성 및 여성 동성애자 부부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특정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처벌에 따라 불공평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과 함께 발생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원리는 헌신적이고 사랑하는 부부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동거 파트너십은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아프거나, 다쳤더라도 혼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급차를 타거나 병실에 들어가더라도, 아무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동거 파트너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혼만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때에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확실성과 보장을 제공합니다.

법에 의한 평등은 기본적인 헌법상의 보장입니다. 발의안 제8호는 한 집단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다른 집단의 주민들로부터 분리하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에서 제외시킵니다.

저는 46년 전에 대학 시절의 연인이었던 Julia와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아들 둘, 딸 하나의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들은 결혼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딸인 Liz는 동성애자이지만, 본인이 결정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 딸이 오빠나 남동생과 같은 존엄성과 존중심으로 대우 받고, 다른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과 같은 자유와 책임을 향유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이들을 다르게 대우한 적이 없고, 다르게 사랑한 적도 없으므로, 이제 법도 그들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각 자녀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고, 약속하고, 결혼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사람(이성애자, 남성 또는 여성 동성애자)이 누릴 자격이 있는 평등, 자유 및 공정성을 박탈하지 마십시오.

저희와 함께 발의안 제8호에 반대 투표를 해주십시오.

SAMUEL THORON, 전임 회장

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

JULIA MILLER THORON, 부모

★ 발의안 제8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8호는 전통적인 결혼에 관한 것이지, 동성애자의 관계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 및 여성 동성애자의 동거 파트너십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그들은 이미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8호는 그러한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8호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고, 불과 몇 년 전에 61%가 넘는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이 이미 승인한 결혼의 의미를 복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성 투표를 하시면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투표를 부당하게 무시한 샌프란시스코의 4명의 판사들이 제시한 결함이 있는 법적 추론을 뒤집고, 동성애자 결혼은 주민 투표를 통해서만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러분이 찬성 투표를 하시면 부모들이 공립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강제로 전달하는 동성 결혼을 해도 괜찮다는 상충되는 메시지가 없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발의안 제8호에 대한 여러분의 찬성 투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언제, 어디서 결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8호는 동성 부부의 다른 권리나 혜택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남성 및 여성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선택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살 권리가 있다고 해도,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결혼을 재정의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8호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존중하나, 여전히 전통적인 결혼을 재차 강조합니다.

발의안 제8호에 찬성 투표를 하여 유권자들이 이미 승인한 결혼의 정의를 복원해 주십시오.

DR. JANE ANDERSON, M.D., 특별회원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ROBERT BOLINGBROKE, 위원회 위원

San Diego-Imperial Council, Boy Scouts of America

JERALEE SMITH, 교육 디렉터/캘리포니아 주

Parents and Friends of Ex-Gays and Gays (PFOX)

발의안 제9호

형사사법제도. 피해자의 권리. 가석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형사사법제도. 피해자의 권리. 가석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 보석, 탄원, 선고, 가석방을 포함하는 형사 사법 과정의 각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보석이나 가석방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할 것을 규정합니다.
- 가석방 심사를 할 때 피해자를 대신하여 참석 및 증언하도록 허용되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 수감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가석방 심사의 수를 줄입니다.
- 피해자에게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통지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가석방 취소 심사에 관한 일정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교도소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것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정부가 교도소 운영에 대한 미래의 절약 금액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카운티 구치소 운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모두 합치면 연간 수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 가석방 취소 절차의 변경이 연방의 법적 요건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석방 심사 및 취소의 행정 처리 비용에서 연간 수천만 달러의 순절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발의안 개관

이 법안은 (1) 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형사 범죄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확대하고, (2) 수감자의 조기 석방을 제한하며, (3) 가석방을 승인 및 취소하는 절차를 변경하도록 주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들을 개정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손해 배상 확대 배경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은 1982년 6월에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도 하는 발의안 제8호를 승인했습니다. 이 발의안은 다양한 변경사항들 중에서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선고 및 가석방 심리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러한 법적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들을 개정했습니다. 별도로 제정된 다른 법률들은 피해자가 형사 피고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보호 명령을 받을 기회를 포함하는 범죄 피해자들의 다른 권리들을 제정했습니다.

발의안 제8호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그 범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제정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종종 도난 당했거나 손상된 재산의 대체 또는 범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용의 상환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현행 주법에 따라 완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하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 한 그러한 손해배상을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판사는 손해배상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의안 제8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고,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할 권리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변경사항

손해배상. 이 법안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모든 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법원이나 법집행 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자금을 먼저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고, 실제로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범죄자가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는 다른 벌금 및 채무에 우선하여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의 통지 및 피해자의 참여.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발의안 제8호는 범죄 피해자가 선고 및 가석방 심리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러한 법적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권리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자를 체포한 후 재판을 받기 전에 수감 장소에서 석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공적 형사 절차를 포함하도록 이러한 법적 권리를 확대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자의 기소에 대해 기소자와 협의하는 것과 같은 형사 사법 과정의 다른 측면에 참여할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또한 법집행 기관과 형사소주 기관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기타 확대. 이 법안은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확대합니다.

-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주 헌법상의 권리를 보유합니다: (1) 특정한 비밀 정보나 기록을 형사 피고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 (2) 형사 피고를 대신하여 요청된 면담을 하거나 재판 전 증언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 (3)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 (4) 형사 절차의 증거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재산의 반환, 그리고 (5) 피해자가 관련된 형사 절차의 “최종 결과.” 이러한 권리들 중 일부는 현재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사람에 대한 보석금을 책정할 때 판사가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도록 헌법을 변경합니다.
- 이 법안은 안전한 학교에 대한 권리에 커뮤니티 칼리지,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합니다.

수감자 조기 석방에 대한 제한사항

배경

주정부는 2008년 5월 현재 모두 합쳐서 약 171,000명의 성인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는 33 개의 교도소와 다른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09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주 교정재활부(CDCR)를 운영하는 비용은 약 1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수감하는 평균 연간 비용은 약 46,000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 교도소 시스템은 현재 모든 수감자에게 영구 숙소를 제공할 수 없어 과밀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육관과 다른 방들을 개조하여 일부 수감자들을 수용해 왔습니다.

주의회와 법원은 모두 과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주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것 포함)을 고려해 왔습니다. 이 분석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러한 제안들 중 어떤 것도 채택되지 않았습니 다. 주 교도소의 수감자 수는 수감자에게 부여되는 크레딧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 다. 모범적인 행동이나 특정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크레딧은 수감자가 석방되기 전에 복역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 주의 58개 카운티는 모두 합쳐서 80,000여 명의 수감자가 수용된 카운티 구치소에 대해 24 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현재 연방법원이 수감자 수 상한선을 부과한 카운티는 20개이고, 다른 12개 카운티는 자체적으로 수감자 수 상한선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한선이 있는 카운티에서는 상한선 한도를 지키기 위해 때때로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안관들은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사용하여 수감자를 자택에 구금하는 것과 같은 대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법안에 의한 변경사항

이 법안은 법원이 부과하는 형사 선고를 법원의 선고 명령에 따라 수행하고 그러한 형기를 교도소나 구치소 시설의 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조기 석방 정책에 의해 “상당히 단축”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주의회나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법적으로 승인된 크레딧에 의해 형기를 단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감자들 전체 형기 동안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지시합니다.

가석방의 승인과 취소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

배경

가석방 심리 위원회는 가석방과 관련하여 2가지 다른 종류의 절차를 시행합니다. 첫째, CDCR 이 가석방이 가능한 조건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를 석방하기 전에, 해당 수감자는 이 위원회로부터 가석방 고려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이 위원회는 가석방 조건으로 석방되었으나 그 후에 가석방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최대 1년 동안 주 교도소로 복귀시키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석방 취소라고 합니다.) 연방법원의 명령은 주정부가 가석방 취소 기소와 관련된 심리에서 가석방자에게 도움을 주고 변호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에 의한 변경사항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고려 절차. 이 법안은 위원회가 종신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를 교도소로부터 석방하는 것을 고려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변경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위원회가 가석방 고려 심리를 한 후에 석방하지 않은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다시 가석방 고려 심리를 받기 전에 1-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법안은 다음 심리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15년으로 연장합니다. 그러나 수감자는 위원회가 심리 날짜를 정기적으로 앞당겨 줄 것을 정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는 가석방 고려 심리를 하기 전에 더 일찍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현재의 30일 대신에 90일 전에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 현재, 범죄 피해자들은 가까운 친척, 그리고 직계가족 중 최대 2명, 또는 2명의 대리인과 함께 가석방 고려 심리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심리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는 가족의 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해자의 가족이 출석하는 것에 상관없이 심리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가석방 고려 심리에 출석한 사람들은 심리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의 사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석방 취소 절차. 이 법안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가석방 된 후에 실시되는 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절차를 변경합니다. *Valdivia v. Schwarzenegger*라고 알려진 사건에 대한 연방법원의 명령에 의해, 가석방자는 가석방 위반으로 기소된 후 10업무일 이내에 취소 기소가 확정될 때까지 가석방자를 수감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심리 기한을 15일로 연장합니다. 이와 동일한 법원 명령도 가석방 위반으로 체포된 가석방자에게 대해 35일 이내에 취소 기소를 확정하기 위한 심리를 열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이 기간을 45일로 연장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위원회가 취소 기소를 받은 석방자가 빈곤층이고,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또는 가석방자의 정신적 또는 교육적 무능력 때문에,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호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케이스 별로 변호사를 임명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가석방 취소 심리에 변호사를 출석시킨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빈곤층이 아닌 가석방자에게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석방자에게 변호사를 제공하는 *Valdivia* 법원 명령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저희의 분석 결과,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조기 석방으로 인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 (2) 가석방 위원회의 절차 변경으로 인한 주정부의 순절약 가능성, 그리고 (3) 손해배상 자금에 대한 변경과 기타 재정적인 영향. 아래에 설명된 재정에 대한 추정은 현재 계류 중인 연방법원 소송이나 예산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기 석방 제한이 주정부 및 카운티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법안은 법원이 부과하는 형기를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조기 석방에 의해 상당히 단축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항은 조기 석방과 관련된 상황과 법원이 이 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주와 카운티 모두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교도소. 주정부는 현재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을 교도소에서 조기에 석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면, 이 법안은 아마도 주정부 교도소 시스템에 어떤 재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주의회나 유권자들이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의한 조기 석방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향후에 중대한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항은 수감자의 조기 석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교도소 운영에 대한 주정부의 절약을 상실합니다.

카운티 구치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조기 석방은 주로 연방법원이 카운티 구치소 시설에 부과한 수감자 수 한도에 부응하여 현재 여러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방법원의 조치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 헌법 법안의 제정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러한 카운티들의 구치소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카운티는 수감자를 조기에 석방하는 대신에 GPS 자택 감시 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하거나 용의자의 재판 전 수감을 축소하여 수감자 수 상한선을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명령한 수감자 수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카운티에서는 이 법안의 수감자 조기 석방 제한 조항이 조기 석방과 관련된 상황과 연방법원이 이 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구치소 운영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카운티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비용은 알 수 없습니다.

가석방 위원회의 절차 변경으로 인한 주정부의 순절약 가능성

무기수에게 적용되는 가석방 심리의 횟수를 줄이는 이 법안의 조항은 주정부에 연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절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가 변호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가석방 취소 절차를 변경하는 조항들로 인해 연간 수천만 달러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사항 중 일부는 가석방 취소와 관련된 연방법원의 *Valdivia* 명령과 상충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절약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고려 및 취소와 관련된 조항들로 인해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은 범죄자들을 더 오래 주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주정부의 비용을 그만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 취소에 대한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재정적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이러한 절차의 변경이 연방법원의 *Valdivia* 명령에 포함된 법적 요건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정부에 연간 수천만 달러의 순절약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손해배상 자금에 대한 변경 및 기타 재정적인 영향

손해배상 자금. 이 법안에 포함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다른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들은 형사 범죄자들로부터 징수한 벌금으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입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 다양한 야생생물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어류 및 수렵 동물 보존 기금, 성인 뇌손상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외상성 뇌손상 기금,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손해배상 기금에 제공됩니다. 이 발의안은 피고로부터 징수한 모든 자금을 법원 명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불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므로, 벌금 수입 중에서 손해배상 기금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금에 제공되는 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의 특정한 조항들은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증가시켜 손해배상 기금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므로, 손해배상 기금 수입의 감소를 그만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불이 증가하면 보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주정부 및 지방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필요가 감소하므로, 이 발의안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에 그만큼 절약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및 대리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에 참여하고 통지를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에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더 긴 법원 및 가석방 고려 절차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이 이러한 절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통지하는 것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자금과 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들에 대해 미치는 재정적 순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 발의안 제9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살인 범죄에 의해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을 것이나, 이러한 고통은 범죄자의 권리를 무고한 피해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법 시스템에 의해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고, 납세자에게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Marsy Nicholas는 21살의 UC 산타바바라 대학생이었으며,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자 친구가 근접한 거리에서 산탄총을 발사하여 장래가 촉망되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법 시스템으로 인해 Marsy를 잃은 가족들의 고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Marsy의 어머니인 Marcella와 그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전에 느껴보지 못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Marsy를 살해한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Marcella가 식료품점에서 Marsy의 살해범과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그녀가 느꼈을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범인은 어떻게 석방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불과 얼마 전에 Marcella의 사랑스러운 딸을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Marsy의 살해범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그녀의 가족들은 통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쉽게 다시 살인을 저지룰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은 성폭행범, 살인범, 아동 성추행범과 다른 범죄자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발의안 제9호는 범죄 피해자에게도 공정한 권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사법과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 종종 무고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영원히 고통을 겪게 하는 시스템에 의해 그들이 더욱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합니다.

발의안 제9호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범죄 피해자의 권리장전을 제정합니다.

- 판사가 입건된 범죄자에 대한 보석 결정을 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 범죄자가 석방될 때 범죄 피해자에게 통지할 것을 지시합니다.
- 피해자가 가석방 심리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심리에 대해 미리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피해자가 보석, 사법 거래, 선고, 가석방 심리를 포함하는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고 그러한 절차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피해자에게 그의 개인적인 비밀 정보나 기록을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할 헌법상의 권리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9호는 지금같이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납세자들을 보호합니다.

현재, 납세자들은 사실상 석방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대한 심리로 인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Charles Manson의 추종자이고 여러 건의 무자비한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포악한” 수감자 Bruce Davis와 Leslie Van Houten은 지난 30년 동안 38회의 가석방 심리를 받았습니 다. 이 38회 동안 그들의 범죄와 관련된 가족들은 강제로 고통스러운 범죄의 기억을 되살려야 했고, 심리에 참석하기 위한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했으며, 또한 이 38회 동안 납세자들은 심리 비용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발의안 제9호는 가석방 판사들이 가석방 심리 사이에 대기하는 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초당파적인 법률 분석가는 이 법안이 “수천만 달러를 절약할 가능성이 있다. . .”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발의안 제9호는 정치인들이 교도소의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위험한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의안 제9호는 피해자를 존중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안전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안전 지도자, 피해자 옹호자, 납세자 및 근로 가정이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9호는 법을 준수하는 주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여 발의안 제9호에 찬성 투표를 해주십시오!

MARCELLA M. LEACH, 공동 설립자
Justice for Homicide Victims
LAWANDA HAWKINS, 설립자
Justice for Murdered Children
DAN LEVEY, 전미 회장

The National Organization of Parents of Murdered Children

★ 발의안 제9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우리는 폭력적인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발의안 제9호는 가족의 일원이 25년 전에 살해당한 한 가정에 의해 투표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9호는 불필요하고, 납세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삼진법,”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킨 “피해자의 권리장전” 같은 형사재판법에 많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현행법에 의해 범죄자가 석방되는 경우 통지를 받고, 형사 재판 일정을 미리 통지 받고, 가석방 심리와 선고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그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이 발의안 제9호가 예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때, 막대한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독립적인 법률 분석가가 이 법안이 “연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발의안 제9호는 정부를 능률화하는 대신에 현행법을 심각하게 중복시킵니다. 이 법안은 우리의 헌법에 몇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법률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일단 헌법에 포함되면 그 법이 효과가 없거나, 어떤 이유로는 개정 또는 현대화해야 하는 경우, 주의회 의원 3/4의 찬성 투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도 더 엄격한 요건입니다!

발의안 제9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JEANNE WOODFORD, 전임 교도관
San Quentin State Prison
REV. JOHN FREESEMAN, 위원회 의장
California Church IMPACT

★ 발의안 제9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여러분은 한 개인이, 비록 좋은 의도이기기는 하지만, 결국 납세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어떤 아이디어를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싫증이 나지 않으십니까?

발의안 제9호는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서, Henry Nicholas III세라는 한 사람이 이 법안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발의안 제9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관심을 이용하여 주민을 오도하는 발의안입니다. 이 법안은 주 헌법을 재작성하고 캘리포니아 주가 교도소와 구치소를 관리하는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 모두에서 우리의 과밀 위기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발의안 제9호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발의안입니다. 사실, 발의안 제9호의 많은 구성요소들(피해자가 범죄자의 법적 절차의 중요한 일정에 대해 통지를 받을 요건과 피해자가 법적 절차의 전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 포함)은 1982년의 발의안 제8호, 피해자의 권리장전에서 이미 유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니다.

이것이 발의안 제9호가 참으로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중복된 활동인 이유입니다. *어필 데모크랫* 신문에 의하면, “이 발의안은 정치적인 인기 영합에 지나지” 않습니다(“우리의 견해: 범죄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 허풍에 불과,” 3/1/08).

때때로 유권자들은 발의안에 대해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는 법적 검토를 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안 작성자는 때때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현행법을 발의안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발의안 제9호에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동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조항들은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의안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의안 제9호가 통과되면 법집행관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권리가 기재된 “Marsy 법”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참으로 이 조항을 주 헌법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발의안 제9호는 범죄자들의 조기 석방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초당파적인 법률 분석실은 이 법안이 “연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법률 분석가는 “주정부는 현재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을 교도소에서 조기 석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석방 시스템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2급 살인 또는 과실치사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감자에 대한 실제 연간 가석방률은 20년 동안 자격이 있던 수감자의 1%미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 기존의 가석방 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감자와 가석방에 관한 발의안 제9호의 조항이 승인되더라도 연방정부의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발의안 제9호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기적해야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불필요한 발의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이미 자금이 고갈된 주정부 예산으로부터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교육, 의료 및 빈곤층과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모든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삭감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안 제9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이 법안은 불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해로운 법률입니다.

SHEILA A. BEDI, 집행 디렉터
Justice Policy Institute
ALLAN BREED, 전임 디렉터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 발의안 제9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특수이익집단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에 의존하는 것을 볼 때 슬픔을 느낍니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예 중에서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딸이 “갱단 저격수”에 의해 처형된 Anna Del Rio는 *법원에서* 갱단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발언을 하거나 딸의 사진을 옷에 부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Marguerite Hemphill은 딸을 살해한 범인의 가석방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몸이 마비된 남편의 침상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300마일을 운전한 후에 심리가 연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EMPHILL은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이미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살인법, 성폭행법, 아동 성추행법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이와 유사한 헌법상의 권리가 없습니다.

발의안 제9호는 사법, 적법 절차, 인간의 존엄성 및 공정성을 회복합니다. 이 법안은 정치인들이 단지 교도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범죄자들을 석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사회에 진 빚을 갚게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범죄 피해자 연합, 살인 피해자를 위한 사법, 살해 아동을 위한 사법, 도처에 피해자에 대한 추억(Memory of Victims Everywhere), 살해 아동 부모 전미 기구와 같은 단체들과 경찰서장, 보안관, 지방검사들은 찬성 투표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믿으십시오. 120만 명의 주민, 민주당원 및 공화당원들이 발의안 제9호를 투표에 회부했습니다. 초당파적인 법률 분석가에 의하면, 이 법안은 납세자의 세금을 수천만 달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발의안 제9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인 Anna Del Rio와 Marguerite Hemphill이 겪은 고통을 잊지 마십시오. 찬성 투표를 해주십시오.

MARCELLA LEACH, 공동 설립자
Justice for Homicide Victims
HARRIET SALARNO, 회장
Crime Victims United of California
MARK LUNSFORD, 작성자
Jessica’s Law: Sexual Predator Punishment and Control Act of 2006

발의안 제10호

대체 연료 차량과 재생가능 에너지. 공채. 주민 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대체 연료 차량과 재생가능 에너지. 공채. 주민 발의 법안.

- 소비자나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 또는 천연가스 차량과 같은 대체 연료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대체 연료 기술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34억 2,5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주로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생산에 12억 5,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다른 형태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해 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태양열 및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구입할 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시의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와 대학의 재생가능 및 에너지 효율 기술 교육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 일반 보증 공채를 발행하여 총 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운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공채 원금(50억 달러)과 이자(50억 달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정부에 30년에 걸쳐 약 1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년 약 3억 3,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주정부의 판매세 수입이 증가하고, 2009년에서 대략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액이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지방정부의 판매세 및 차량 면허료 수입이 증가하고, 2009년에서 대략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액이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주정부 기관의 행정 처리 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략 2019년까지 연간 약 1,000만 달러 미만의 주정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주정부 에너지 및 공기의 질 프로그램. 주정부는 재생가능 에너지(태양열, 풍력 등), 대체 청정 연료(천연가스 등), 에너지 효율 및 공기의 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합니다. 일부 프로그램들은 보조금, 융자금, 융자금 보증, 리베이트, 세액 공제와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금은 주로 요금 수입으로부터 제공되나, 최근에는 일반 보증(GO) 공채가 공기의 질과 관련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세 및 지방세와 지방정부 차량면허료(VLF) 수입.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판매사용세(SUT)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SUT는 유형 개인용품의 최종 구입 가격에 부과되나, 많은 특정한 면제가 적용됩니다. SUT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2가지 세율로 구성됩니다. 주정부의 SUT 세율은 현재 6.25퍼센트이고, 이 중 1퍼센트는 지방정부에 분배됩니다. 지방정부의 SUT 세율은 현재 1퍼센트와 2.5퍼센트 사이이고, 세금이 부과되는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의 전체 세율은 7.25퍼센트와 8.75퍼센트 사이로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자동차에 대해 연간 VLF를 징수합니다. 이러한 VLF 수입의 대부분은 시와 카운티에 분배됩니다. 현재, VLF 요율은 감가상각된 차량 구입 가격의 0.65 퍼센트입니다.

발의안 대체 연료 차량과 재생가능 에너지. 공채. 주민 발의 법안.
제10호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발의안

GO 공채 판매 권한. 이 법안은 주정부가 다양한 재생가능 에너지, 대체 연료, 에너지 효율, 대기 배출 감소의 목적으로 50억 달러의 GO 공채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림 1은 이 법안에 사용된 주요 용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림 1 발의안 제10호에 정의된 주요 용어
청정 대체 연료. 천연가스 또는 재래식 석유 기반 연료와 비교할 때 탄소 배출을 최소한 10퍼센트 감소시키는 모든 연료
청정 대체 연료 차량. 일반적으로, 청정 대체 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차량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 특정한 청정 대체 연료(바이오메탄, 전기, 수소, 천연가스, 프로판 또는 이러한 연료들을 혼합한 연료)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차량
고연비 차량. 고속도로에서 갤런 당 45마일의 연비를 달성할 수 있는 소형 도로주행용 차량(중량이 8,500파운드 미만 ^a)
최고 연비 차량. 고속도로에서 갤런 당 60마일의 연비를 달성할 수 있는 소형 도로주행용 차량(중량이 8,500파운드 미만 ^a)
^a 현재, 소형 승용차의 평균 중량은 4,500파운드 미만입니다.

GO 공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투표 팜플렛의 “주정부 공채 채무 개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는 공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요약한 것이며, 이러한 자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고연비 차량과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주로 트럭과 다른 중형 및 대형 차량에 대한 리베이트)로 34억 달러 제공, 그리고 (2) 재생가능 전기 생산 기술의 연구, 설계, 개발 및 배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16억 달러. 이 법안은 그림 2에 표시된 것처럼 공채 자금을 4개의 계정에 배정합니다.

그림 2 발의안 제10호 공채 자금의 용도	
	금액 (단위: 백만)
청정 대체 연료 계정	\$3,425
리베이트—리베이트 당 2,000달러에서 50,000달러 범위.	\$2,875
• 고연비 차량	(\$110)
• 최고연비 차량	(230)
•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	
—중량이 8,500파운드 미만인 소형 차량 ^a	(550)
—중량이 8,500–13,999파운드 사이인 중소형 차량	(310)
—중량이 14,000–24,999파운드 사이인 중대형 차량	(650)
—중량이 25,000파운드 이상인 대형 차량	(1,000)
• 가정용 충전소(리베이트 당 2,000달러)	(25)
재정적 인센티브—대체 연료 차량 및 고효율 차량과 대체 연료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시범. ^b	\$550
태양열, 풍력 및 재생가능 에너지 계정	\$1,250
재정적 인센티브—발전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발전 기술의 연구, 설계, 개발, 건설 및 생산 ^{b,c}	\$1,000
재정적 인센티브—재생가능 자원에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b	250
시범 프로젝트 및 공교육 계정	\$200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대체 및 재생가능 에너지 시범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200
교육, 훈련 및 지원 계정	\$125
공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보조금—대체 연료 및 청정 에너지 기술의 상업화(신기술을 상업 시장에 판매할 준비를 완료하는 것)를 위한 직원 개발, 교육, 연구, 수업료 보조금과 인력 개발, 지원 및 공교육에 대해 최소한 2,500만 달러.	\$125
합계	\$5,000

^a 현재, 소형 승용차의 평균 중량은 4,500파운드 미만입니다.
^b 재정적 인센티브에는 저리 융자금, 융자금 보증,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c 자금의 최소한 80퍼센트(8억 달러)는 태양열 기술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합니다.

공채 자금에 대한 주정부 기관의 관리. 이 법안은 이 법안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을 관리할 여러 주정부 기관을 지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주 조세형평국(BOE)은 대체 연료 차량 리베이트를 관리하고, 대기자원국은 대체 연료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관리하고,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재생가능 에너지 인센티브와 지방정부 및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자금을 관리합니다. BOE의 리베이트 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안은 BOE가 리베이트 전 구입 또는 리스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 또는 리스하는 것에 적용할 SUT를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각 주정부 관리 기관이 프로그램의 중요 일정을 채택하고, 연례 독립 감사를 준비하고, 연례 진척도 보고서를 발행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감독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각 공채 계정에 배정된 자금을 10년 이내에 지출하고, 대체 연료 차량 리베이트용 자금을 5년 이내에 지출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이 법안에 의해 설치된 각 계정에 배정된 자금의 1퍼센트 이하를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공채 비용. 이러한 공채의 비용은 공채 판매 시에 유효한 이자율과 공채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정부는 30년에 걸쳐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것입니다. 공채가 약 5퍼센트의 평균 이자율로 판매되는 경우,

원금(50억 달러)과 이자(50억 달러)를 상환하는 비용은 약 100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연간 지불금의 평균 금액은 약 3억 3,50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주정부 판매세 수입에 대한 영향. 이 법안은 차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베이트에 대해 29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리베이트는 소비자(개인 및 기업체)가 리베이트 없었더라면 구입 또는 리스할 차량보다 더 고가일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구입 또는 리스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리베이트로 인해 개인 및/또는 기업체가 리베이트가 없었더라면 구입 또는 리스할 차량보다 더 고가인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하는 경우, 주정부 판매세 수입은 그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소매업자는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차량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 리베이트에 대한 자격이 있는 개인 및/또는 기업체를 고려하여 판매 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을 인상하면 주정부 판매세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는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하는 개인 및/또는 기업체의 현금 비용을 줄일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및/또는 기업체들이 이러한 절약 금액을 다른 과세 대상 물품 구입에 지출하면 결과적으로 SUT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의해 증가하는 판매세 수입의 정확한 금액은 구입 또는 리스하는 차량의 숫자와 실제 판매 가격, 그리고 리베이트에 부응하는 다른 행동의 영향에 달려 있으나, 저희는 이러한 금액이 2009년부터 약 2019년까지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지방정부 수입에 대한 영향. 이 법안에 의해 공채 자금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수입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지방정부 판매세 수입의 증가.** 위에서 설명한 이 법안이 주정부의 판매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은 리베이트에 부응하여 구입 또는 리스하는 차량의 숫자와 실제 판매 가격에 따라 지방정부의 판매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2009년부터 약 2019년까지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방정부 VLF 수입의 증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법안은 개인 및/또는 기업체가 리베이트가 없었더라면 구입 또는 리스할 차량보다 더 고가인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개인 및/또는 기업체가 리베이트가 없었더라면 구입 또는 리스할 차량보다 더 고가인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하도록 유도한다면 지방정부의 VLF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VLF 수입 증가의 정확한 금액은 이 법안에 의해 제공되는 리베이트의 결과로 구입 또는 리스하는 차량의 숫자와 실제 판매 가격에 달려 있으나, 저희는 VLF 수입 증가 금액이 2009년부터 약 2019년까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법안을 시행하는 주정부의 관리 비용. 관리 비용에 대한 이 법안의 1퍼센트 한도는 자금이 부족한 여러 주정부 기관이 이 발의안의 조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적절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면 대략 2018-19회계연도까지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주정부 자금이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 금액은 평균적으로 매년 최대 약 1,000만 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의안 제10호 대체 연료 차량과 재생가능 에너지. 공채.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10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여러분은 외국산 석유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의존도를 낮추고, 천식과 암을 유발하는 공기 오염을 줄이고, 새 녹색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주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0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10호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 태양열, 풍력, 조력, 저충격 수력 전기를 포함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합니다.
-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그리고 갤런 당 45마일 이상을 주행하는 고연비 차량을 포함하는 청정 대체 연료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하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 오염을 일으키는 구형 디젤 트럭을 청정 대체 연료 트럭으로 교체합니다.
- 더 저렴하고 청정한 대체 연료의 연구 개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발의안 제10호에 찬성하시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적대적인 외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나, 휘발유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10호는 풍력, 태양력 및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운전자들에게 재생가능 에너지와 더 저렴한 국내 대체 연료로부터 생산한 전기로 달리는 차량을 구입할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촉진합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청정한 공기 및 우리와 자녀들을 위한 더 건강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휘발유와 디젤 같은 대부분의 수송용 연료는 천식과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및 독소가 들어 있는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더럽고, 노후된 트럭들이 공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폐협회가 선정한 10개의 가장 오염이 심한 주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10호는 28,000여 대의 디젤 트럭을 청정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트럭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연비가 높은 차량과 우리 주의 지구 온난화 목표를 충족 및 초과하는 청정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휘발유에 대한 더 많은 대안을 제공합니다.

기록적으로 높은 휘발유 가격은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들을 압박하고 우리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10호는 더 저렴한 청정 대체 연료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소비자들에게 대체 연료 차량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를 강화합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청정 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에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외국산 석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낮추고, 캘리포니아 주에 새 청정 에너지 산업을 개발하고, 높은 금료를 받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발의안 제10호에 찬성하시면 엄격한 책임 및 효율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책임 기준을 정하고, 독립적인 재무 분석 및 감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대체 연료 차량 또는 고연비 차량의 구입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새로운 관료주의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세금, 수수료 또는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0호는 판매세율, 차량 면허 수수료 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지역사회에 새로운 대체 연료 차량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제공할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 청정 공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더 건강한 미래 및 경제 회복을 위해 발의안 제10호에 찬성 투표를 해주십시오.

DR. ALAN HENDERSON, 전임 회장
American Cancer Society, California Division
MIGUEL PULIDO, 관리위원회 위원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ALLISON HART, 집행 디렉터
Clean and Renewable Energy Association

★ 발의안 제10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10호는 납세자에게 거의 10,000,000,000달러에 달하는 장기부채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자금은 학교, 의료 또는 공공안전을 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주로 이 발의안의 후원자가 소유하는 한 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익한 공공정책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10호의 자금은 화석 연료,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트럭과 다른 차량의 구입자에게 각 차량에 대해 최대 50,000달러의 납세자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연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발의안 제10호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및 기타 청정 연료 차량을 거의 제외하도록 교묘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한 가지 연료에만 치우친다는 것을 잘 감추고 있는 발의안 제10호는 주로 텍사스 주의 석유 억만장자인 T. Boone Pickens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그의 회사는 자동차용 천연가스의 주요 공급자입니다.

청정 공기와 책임에 대한 이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 발의안 제10호는 공기 질의 개선 또는 온실가스의 감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 법안은 수천만 달러의 “청정 에너지” 보조금을 받는 산업에 청정 전력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그들이 지불하는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리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 보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면 전기요금에 인상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산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는 특수이익집단의 책략에 넘어가서 100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제10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DONNA GERBER, 정부 관계 디렉터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RICHARD HOLOBER, 집행 디렉터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
JUDY DUGAN, 조사 디렉터
Consumer Watchdog

★ 발의안 제10호에 대한 반대 의견 ★

한 회사가 납세자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 위해 법안을 투표에 회부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특수이익집단을 위한 입법. 기업 복지. 납세자의 세금을 훔치는 행위.
 이것이 발의안 제10호의 진실입니다. 텍사스 주의 억만장자 석유업자인 T. Boone Pickens가 소유한 한 회사가 이 법안을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모든 비용(3,000,000달러!)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 법안에 의해 지출되는 납세자 세금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첫 번째로 줄에 서있습니다.
 발의안 제10호는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주로 T. Boone Pickens가 소유한 것과 같은 회사들(여러분이 추측하신 것처럼)이 판매하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트럭과 대형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합니다.
 발의안 제10호가 특수이익집단과의 담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안은 여전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위기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이 법안은 매우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을 포함하는 차량 운영 회사에 천연가스 트럭의 구입 또는 리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교육, 의료, 공공안전 및 대학에 필요한 자금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차량의 배기가스가 공기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이 트럭 당 최대 50,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이미 다른 중요한 서비스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요금을 받아 지불하는 2억 달러의 청정 연료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프로그램은 천연가스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든 청정 수송 수단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발의안 제10호는 요금 납부자들이 이미 납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복시킵니다. 현재, 전기요금 납부자들은 우리가 납부하는 요금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대체 에너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은 공익사업체위원회의 철저한 규제 감독을 받습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사실상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감독을 덜 받는 에너지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며, 그러한 회사들은 전력의 생산 여부에 상관없이 지불을 받습니다!
 소비자들도 역시 피해를 입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난방과 많은 전기 생산에는 천연가스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천연가스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값비싼 천연가스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난방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10호에 규정된 수천만 달러는 홍보, 현장 지원 및 기타 마케팅 책략에 지출됩니다. 공채는 도로와 학교 같은 기반시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홍보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제10호는 보기와 다릅니다. 문안을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차량을 선택할 때 더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10호의 의도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이고 건전한 대체 에너지나 기술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0호는 단기적인 이익과 노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위해서 장기적인 차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의안 제10호는 납세자들에게 해롭고,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해롭고, 소비자에게 해롭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이 법안을 투표에 회부한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0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LENNY GOLDBERG, 집행 디렉터
 California Tax Reform Association
MARK TONEY, 집행 디렉터
 The Utility Reform Network (TURN)
MARTY HITTELMAN, 회장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 발의안 제10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공식 법률 분석가의 보고서를 읽어보시거나 WWW.PROP10YES.COM을 방문하여 발의안을 읽어보십시오. 발의안 제10호에 반대하는 새크라멘토의 로비스트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의안 제10호의 자금은 "텍사스 주의 석유업자"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청정 대체 연료 차량을 구입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수십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태양열 및 풍력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에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발의안 제10호는 우리의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디젤 배기가스는 매년 수천 명이 암으로 조기 사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2020년까지 의료 비용을 2,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입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우리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노후되고 오염을 일으키는 디젤 트럭을 전기, 수소, 천연가스 또는 다른 청정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청정 트럭으로 교체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 발의안 제10호는 교육에 제공하는 자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시킵니다.
 발의안 제10호는 녹색 기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에 1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휘발유를 대체할 더 저렴하고 깨끗한 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5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발의안 제10호는 우리의 자녀와 캘리포니아 주의 미래를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10호는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외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휘발유 구동 차량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태양열, 풍력 및 기타 청정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발의안 제10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DR. ALAN HENDERSON, 전임 회장
 American Cancer Society, California Division
JIM CONRAN, 회장
 Consumers First, Inc.
JOHN D. DUNLAP III, 전임 의장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발의안 제11호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 하원, 상원 및 조세형평국의 선거구를 정하는 권한을 선출된 대표자에서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변경합니다.
- 정부 감사인이 전체 신청인 중에서 60명의 등록 유권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회 지도자들이 신청인 수를 줄인 다음, 감사인이 추첨 방식으로 8명의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고, 이 선정된 위원들이 추가로 6명의 위원들을 선정하여 총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5명의 민주당원, 5명의 공화당원, 양당에 속하지 않은 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합니다.
- 선거구가 승인을 받으려면 3명의 민주당원 위원, 3명의 공화당원 위원, 그리고 양당에 속하지 않은 3명의 위원이 찬성 투표를 해야 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2개의 조직체가 선거구 재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주정부의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아마도 상당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연방정부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여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를 집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주의회가 각 인구조사 후에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거구 경계를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선거구 재조정”이라고 합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주의회(상원과 하원), 주 조세형평국(BOE) 및 연방 하원 선거구에 영향을 줍니다. 선거구 재조정의 주 목적은 인구가 “적절하게 같은” 선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구 재조정 계획은 법안에 포함되고, 주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으로 확정됩니다.

발의안

이 법안은 2010년 인구조사 이후부터 주의회, BOE,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한 재조정 과정을 변경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합니다.

연방 하원 선거구

이 법안은 연방 하원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주의회의 역할을 현재대로 유지합니다. 이 법안은 주의회가 이러한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을 부과합니다. 새로운 요건 중에는 주의회가 이웃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를 가능한 한 한 선거구 내에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1은 이 법안과 현행법의 요건을 비교한 것입니다.

주의회 및 BOE 선거구

이 법안은 주의회 및 BOE 선거구에 대한 재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주의회로부터 신설되는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로 이전합니다. 이 법안은 위원의 선정과 선거구 경계 설정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을 부과합니다.

그림 1
선거구 경계 설정에 대한 주요 요건

	발의안 제11호		
	현행법 전 선거구에 적용	연방 하원 선거구	주의회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
인구가 적절하게 같은 선거구를 개발	X	X	X
연방의 투표권법 준수	X	X	X
카운티와 시를 여러 개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최소화 ^a	X	X	X
이웃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를 유지 ^a	—	X	X
지리적으로 밀집된 선거구를 개발 ^a	—	X	X
인접한 2개의 하원 선거구로 상원 선거구를 구성하고, 인접한 10개의 상원 선거구로 BOE 선거구를 구성 ^a	—	—	X
현직 공직자, 정치 입후보자, 또는 정당을 편들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	—	—	X

^a 다른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선정. 이 법안은 위원회를 구성할 14명의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제정합니다. 그림 2에 이러한 과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등록 유권자는 위원이 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주정부 감사인은 다양한 이해의 상충에 기준한 풀에서 신청인들을 제외시킵니다. 예를 들면, 신청인(또는 직계가족)은 지난 10년 동안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주 또는 연방 공직에 대한 정치 입후보자
- 로비스트
- 어느 한 해에 정치 입후보자에게 2,000달러 이상을 기부

이외에도, 신청인은 지난 5년 동안 가입한 정당을 변경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최근 3번의 총선거에서 2번 이상 투표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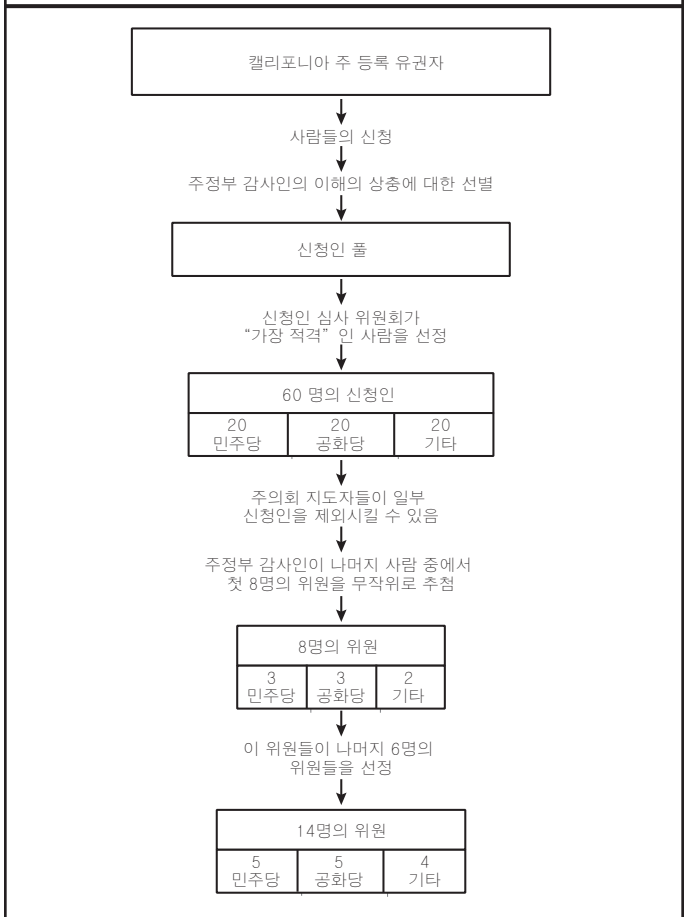
주정부가 고용한 3명의 감사인으로 구성된 신청인 심사 위원회가 신청인을 60명으로 축소합니다. 이 위원회는 분석 능력, 불편부당성, 캘리포니아 주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기준하여 가장 적격인 신청인들을 선정합니다. 주의회 지도자들은 최대 24명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주정부 감사인은 나머지 사람 중에서 첫 8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이 8명의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6명의 위원들을 선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 주의 2대 정당(민주당과 공화당) 중 하나에 등록된 각 5명의 위원과 다른 정당에 등록했거나 무소속 유권자인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선거구 경계에 대한 요건. 이 법안은 위의 위원회가 주의회 및 BOE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그림 1에 표시된 것처럼 이 법안의 연방하원 선거구에 대한 새로운 요건과 유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주정부 및 BOE 선거구에 대해서 위원회가 현직 공직자, 정치 입후보자, 또는 정당을 편들거나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승인 과정. 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고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승인하려면 2대 정당 중 하나에 등록된 위원들 중 각 3명의 찬성 투표와 다른 위원들 중 3명의 찬성 투표를 포함하는 최소한 9명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가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이 계획은 다음 10년 간 사용됩니다. 이 과정은 10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고, 향후에 선거구 재조정을 할 때마다 새로운 14명의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자금 지원.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회 업무에 대한 보수로 300달러의 일당을 받고, 사용한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과 주의회가 위원회 위원의 선정, 업무 수행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주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300만 달러 또는 직전의 선거구 재조정에서 지출한 금액(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주의회는 2001년에 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자체

그림 2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 선정



예산에서 주 헌법이 정한 한도인 약 3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신청 심사 과정을 제정하고, 일반대중과 의사소통을 하고, 위원들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선거구 재조정 분야의 법률 및 기타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에 의하면, 주의회는 연방 하원 선거구에 대한 재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주민 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의회 및 BOE 선거구와 관련된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위해 자금을 지원(주의회 예산 외에)할 것을 승인합니다. 저희는 2010년 재조정을 위해 최소한 약 400만 달러(2001년에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2010년까지의 추정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2개의 조직체(주의회와 위원회)가 선거구 재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아마도 상당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발의안 제11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혼란시키기를 원하지만, 선택은 간단합니다. 초당파적인 단체들은 발의안 제11호에 찬성 투표를 하여 새크라멘토를 변화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고령자, 소비자, 기업 및 납세자 단체들은 유권자들에게 발의안 제11호에 찬성 투표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찬반 투표에 대한 의견에 서명한 사람들을 참조하십시오).

정치인들은 변화에 반대하고 유권자들이 반대 투표를하기를 원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쪽에는 변화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거의 어떤 일 또는 어떤 말이라도 할 정치인, 정치 내부자, 정당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여 새크라멘토를 변화시키십시오.

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 경계를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의 상충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재선이 보장되는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이웃과 지역사회를 분할합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일단 선출된 후에는 다음 번에 유권자의 표를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특수이익집단에 더 신경을 씁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그들의 재선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의안 제11호는 다시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정치인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투표를 통해서 쉽게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 Pete Constant, 은퇴 산호세 경찰관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여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맡기십시오.

발의안 제11호는 독립적인 주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구 경계를 공정하게 정하게 함으로써 이해의 상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이 요구하는 기준은 이웃과 지역사회가 분할되지 않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원, 공화당원 및 무소속 유권자가 포함되며, 이러한 절차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정하게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절차를 보장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으면 유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육, 의료, 도로, 범죄, 주 예산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들과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제11호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필요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게 할 것입니다.” — Jodi Serrano, 공립학교 교사, 새크라멘토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여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직면하고 많은 문제들은 정치인들이 유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면 우리는 갇힌 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새크라멘토를 변화시킬 때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의안 제11호에 찬성 투표를 하려는 이유입니다.” — Mike Holley, 기업주, Apogee Publications, Whittier

발의안 제11호는 정체 상태를 종료시키고 정치인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이제 그들은 공정한 선거구에서 입후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소속 유권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주 전체의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무책임한 행동을 끝내고 서로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주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치인들에게 보내기 위해 발의안 제11호를 지지합니다.” — Eligio Nava, 의장, 중부 캘리포니아 주 중남미계 미국인 상공회의소

저희에게 동참하여 발의안 제11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십시오: YesonProp11.org

JANIS R. HIROHAMA, 회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TERESA CASAZZA, 회장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JEANNINE ENGLISH, 회장
AARP California

★ 발의안 제11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정치인들이 발의안 제11호에 대해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발의안 제11호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발의안 제11호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보수를 받는 컨설턴트는 여러분이 4,500 단어나 되는 발의안을 읽지 않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의안을 읽어보면 발의안 제11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권한을 한 번도 선출된 적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의안 제11호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발의안 제11호가 두 정당의 당원들이 나머지 우리들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판료와 정치인들이 누가 책임을 맡을 것인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발의안 제11호의 비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11호는 우리가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일에 대해 이미 보수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하여 그러한 일을 할 새 판료주의적 조직을 설치합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며, 그러한 자금을 대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11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그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 그러나 그들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사람을 선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돕기 위해 규정을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십시오: 이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발의안 제11호를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www.NoOnProp11.org

HENRY L. "HANK" LACAYO, 주 회장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MIKE JIMENEZ, 주 회장
California Correctional Peace Officers Association
MARTIN HITTELMAN, 회장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 발의안 제11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실질적인 문제들(예산 적자, 상승하는 휘발유 가격, 불안정한 경제)에 직면해 있는 이때, 정치인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제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거구 사이의 경계선을 정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또 하나의 터무니없는 안건인 발의안 제11호입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거구 재조정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다섯 번이나 이러한 안건을 투표에 부치기 위해 변호사, 컨설턴트, 그리고 유급 서명 수령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 때마다 유권자들은 “반대”했습니다.

발의안 제11호를 지지하는 집단들은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권자의 비용으로 자신의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거구 재조정이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을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재작성하기를 원합니다.

발의안 제11호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발의안 제11호는 한 번도 주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전체 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나 이웃을 대표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단체들이 발의안 제11호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발의안 제11호는 14개의 위원회 의석 중에서 10석을 양대 정당의 당파적 위원들에게 배정하고, 그들에게 거의 모든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합니다. 대정당의 대표가 찬성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치 내부자들이 계속 주 전체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분할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11호는 관료들에게 권력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11호는 정치인들을 선거구 재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라, 단지 그들을 정치적 유대 관계를 위해 선정한 관료들로 구성된 거미줄처럼 얽힌 망 뒤에 숨어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실제로 주정부 감사인이 위원회 신청서를 선별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느라고 정부의 낭비를 근절하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누가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까요? 관료들이 합니다. 그들이 누가 자격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4명의 의회 의원이 그들 마음대로 위원 후보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일까요?

발의안 제11호는 관료주의적 조직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제11호는 이 새 위원회에 절반의 일만을 맡깁니다. 연방의회 선거구를 조정하는 다른 절반의 일은 계속 주의회가 맡습니다.

따라서 발의안 제11호는 별개의 두 사무실에서 따로 일하고, 아무도 협력하거나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두 팀의 변호사 및 컨설턴트와 같이 모든 것을 두 번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제11호는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1호는 각 위원들에게 300달러의 일당과 경비의 상환을 보장하는데, 이러한 경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할 변호사, 컨설턴트 및 직원의 수, 또는 사무실 비용, 공청회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지출할 금액에도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에게 위원회의 지출에 낭비나 남용이 없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발의안 제11호는 공허한 약속입니다.

이 법안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이 법안은 많은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구의 경계를 정할 사람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책임도 없고 지출 한도도 없는 새 관료주의적 조직을 얻습니다.

제11호의 진정한 의미는 많은 정치 내부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소수의 권력은 더욱 증가하고, 나머지 대중의 권력은 감소합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우리 주가 직면해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숨겨진 의도일 뿐입니다. www.noonprop11.org를 방문하시고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DANIEL H. LOWENSTEIN, 전임 의장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ROBERT BALGENORTH, 의장
State 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California
MARTIN HITTELMAN, 회장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 발의안 제11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여 정치인들의 이해의 상충을 방지하십시오.

발의안 제11호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이해의 상충을 종료시킵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정한 선거구를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의 책임을 묻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 투표는 정치인들이 계속 그들의 선거구 경계를 정하고 새 크라멘토에 더 많은 정체 상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권자를 오도하는 “반대” 캠페인의 배후에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의 논평입니다.
“... 상원 임시의장인 Don Perata(민주당, 오렌트)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기적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그의 위원회의 명칭은 “주민들에 대한 책임—권력 장악 반대”인데, 이 위원회의 분명한 목적은 현직 의원의 권력 장악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명칭은 매우 역설적이다.”

San Jose Mercury News, 7-7-08
“... 그[Perata]는 그가 매년 모든 문제에 대해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San Diego Union Tribune, 7-7-08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십시오—유권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시면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사회와 이웃을 참으로 존중하는 공정한 선거구 경계를 정할 다양하고, 자격이 있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십시오—지금의 변화의 시기입니다.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시면 정치인들에게 유권자들이 충분히 참았고, 이제는 변화의 시기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1호는 다시 유권자에게 책임을 맡기고, 정치인들에게 의료, 교육, 물, 예산, 고가의 식품 및 휘발유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유권자 및 지역사회 단체들은 발의안 제11호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11호에 찬성하십시오.

KATHAY FENG, 집행 디렉터
California Common Cause
JOSEPH V. KERR, 회장
Orange County Professional Firefighters Association
GARY TOEBBEN, 소장
Los Angeles Area Chamber of Commerce

발의안

제12호

2008년 재향군인 공채법.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2008년 재향군인 공채법.

-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재향군인들에게 농장과 주택을 구입할 자금을 용자하기 위해 구역 달러(900,000,000 달러)의 공채를 발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향군인들의 용자금 상환이 공채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출하여 공채를 상환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공채 원금(9억 달러)과 이자(8억 5,600만 달러)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 약 18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향군인들이 지불합니다.
- 30년 간 매년 평균 약 5,900만 달러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SB 1572(발의안 제12호)에 대한 주의회의 최종 투표 결과

상원:	찬성 39	반대 0
하원:	찬성 75	반대 0

제12호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1921년 이후, 유권자들은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입(Cal-Vet)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약 총 84억 달러의 일반 보증 공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이 기금에는 약 1억 200만 달러가 남아있으며, 이러한 자금은 새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공채 판매 금액은 주정부 재향군인 원호처가 농장, 주택 및 이동 주택을 구입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재향군인들에게 재판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재향군인은 매월 일정 금액을 원호처에 지불합니다. 이러한 지불금은 (1) 원호처가 농장,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2) 이자를 포함하는 공채 판매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며, (3)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발의안

이 법안은 주정부가 Cal-Vet 프로그램에 사용할 9억 달러의 일반 보증 공채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공채는 최소한 3,600명의 재향군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성합니다. 일반보증공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투표 팜플렛의 “주정부 공채 채무 개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이 승인하는 공채는 약 30년에 걸쳐서 상환됩니다. 9억 달러 상당의 공채가 5퍼센트의 이자율로 판매되면 원금(9억 달러)과 이자(8억 5,600만 달러)를 합쳐서 약 18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원금과 이자의 평균 지불금은 연간 약 5,90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Cal-Vet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재향군인들이 전적으로 지원해왔으며, 납세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증 공채는 주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향군인들이 공채 채무 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주의 납세자들이 그 차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발의안 제12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922년 11월 7일에 Cal-Vet 주택 융자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최초로 재향군인 공채법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85년 동안 26건의 재향군인 공채법이 있었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러한 공채를 모두 승인함으로써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군에서 복무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정했습니다.

Cal-Vet 주택 융자금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에게 단 1센트의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고 재향군인들이 전통적인 주택,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낮은 이자율의 융자금을 제공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최근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420,000여 명의 캘리포니아 주 재향군인들이 Cal-Vet 주택 융자금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운영비를 포함하는 모든 프로그램 비용은 융자를 받는 재향군인들이 지불합니다. 그 동안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들에게 전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은 이 프로그램은 민간 생활로 복귀하는 남성 및 여성 재향군인들을 지원하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Cal-Vet 주택 융자금은 재향군인들을 돕는 것에 추가하여 주택 산업과 관련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수백 만 달러의 급여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에도 유익합니다.

이러한 공채는 재향군인들이 상환하므로, 우리의 재향군인을 돕기 위한 이 자조적인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 공채를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발의안 제12호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75-0, 그리고 주 상원에서 39-0의 만장일치 찬성 표결로 투표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안 제12호가 승인되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미국과 우리 주를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복무와 희생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발의안 제12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주의 납세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재향군인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와 동시에 우리 주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MARK WYLAND, 상원의원, 의장
Senate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GREG AGHAZARIAN, 하원의원
TONY STRICKLAND, 하원의원

★ 발의안 제12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이 법안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정부가 공채를 판매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에 “납세자에게 단 1센트의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고. . . 낮은 이자율의 융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정부는 싼 가격에 자금을 차입하여 일부 재향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융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시장보다 낮은 이자율을 지불하는 정부 공채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공채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모든 연방세 및 주세 납부자들은 판매되는 모든 공채에 대한(그리고 자금을 제공 받는 모든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크게 도와줍니다.

또한 Cal-Vet 융자를 받은 사람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주택을 팔 수도 없는 경우, 주의 납세자가 그러한 부족 금액을 부담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재향군인에게 저이자 주택 융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또는 최소한 전투에 참가했거나 전쟁 지역에서 복무한 재향군인과 같은 가장 빈곤하고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Cal-Vet 융자금 프로그램은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국가 및 주에 대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필요합니다.

Cal-Vet 융자금 프로그램은 일부 특수이익집단과 비교적 소수의 재향군인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GARY WESLEY

★ 발의안 제12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전세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항상 현명하게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 특히 실제로 생명이 위험한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군인은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급여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정부로부터 낮은 급여와 부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주정부가 개입하여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정당합니다.

Cal-Vet 용자금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동안 재향군인들에게 저이자의 농장 및 주택 용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차입(공채를 판매하여)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차입하는 금액은 9억 달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재향군인이 가장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Cal-Vet 용자금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군사 행동을 포함하는 전쟁 시기에 복무한 재향군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전투에 참가했거나 전투 지역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에게만 제공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복무했거나 또는 미국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재향군인들도 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곳에서 복무한 재향군인들이 Cal-Vet 용자금 프로그램에 의한 제한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은 Cal-Vet 용자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승인하기 전에 전투에 참가했거나 전투 지역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에게만 이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GARY WESLEY

★ 발의안 제12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12호의 반대자들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Cal-Vet 주택 용자금 프로그램은 명예스럽게 복무한 모든 재향군인들을 돕기 위해 주택 용자금을 제공합니다. 모든 재향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을 방어할 책임을 부여 받았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많은 군인들은 그들이 입대할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에 소집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으나, 명예롭게 그러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평화시에 국가를 위해 봉사한 다른 사람들도 국민을 보호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용감하게 복무한 남성 및 여성 군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주택 소유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주택 용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채는 재향군인들이 모기지론 지불하여 공채는 물론, Cal-Vet 주택 용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다른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전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지난 85년 간, Cal-Vet 주택 용자금 프로그램은 420,000여 명의 재향군인들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이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발의안 제12호에 찬성 투표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MARK WYLAND, 상원의원, 의장
Senate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GREG AGHAZARIAN, 하원의원
TONY STRICKLAND, 하원의원

이 섹션에서는 공채 채무와 관련된 주정부의 현재 상황을 개관합니다. 또한 이번 투표에 제출된 공채 법안이 승인되는 경우 주정부의 채무 수준과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채무를 상환하는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공채 금융이란 무엇입니까? 공채 금융은 주정부가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장기 차입입니다. 주정부는 투자자에게 공채를 판매하여 이러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대신에, 주정부는 이러한 차입 자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자와 함께 상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왜 공채를 발행합니까? 주정부는 전통적으로 도로, 교육시설, 교도소, 공원, 수자원 프로젝트, 사무실 건물과 같은 주요 자본적 지출 프로젝트(즉, 공공 기반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시설들이 장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큰 금액의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공채를 상환하는 다양한 납세자들이 이 시설로부터 장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채는 주택과 같은 특정한 민간 기반시설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발행해 왔습니다.

주정부는 어떤 종류의 공채를 판매합니까? 주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종류의 공채를 판매합니다.

- **일반보증공채(General Obligation Bonds).**

이 공채의 대부분은 주로 세금 수입으로 유지하는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부터 직접 상환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채는 다른 지정된 수입원에서 상환하고, 일반 기금은 그러한 수입이 부족한 경우 이차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Cal-Vet 프로그램은 공채를 발행하여 재향군인에게 주택 융자를 제공하고 재향군인의 모기지 지불금을 사용하여 공채를 상환합니다.) 일반보증공채는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정부의 일반적인 과세권에 의해 상환을 보증합니다.

- **임대수입공채(Lease-Revenue Bonds).**

이 공채는 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시설을 사용하는 주정부 기관이 지불하는 임대료(주로 일반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음)로 상환합니다. 이 공채는 유권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주정부의 일반적인 과세권에 의해 상환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채는 일반보증공채보다 이자 비용이 약간 높습니다.

- **전통적 수입공채(Traditional Revenue Bonds).** 이 공채도 자본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나 일반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공채는 공채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수입(다리 통행료 등)으로부터 상환합니다. 이 공채도 유권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주정부의 일반적인 과세권에 의해 상환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공채. 또한 주정부는 최근에 일반 기금 예산의 큰 부족 금액을 메우기 위해 공채 금융을 사용했습니다. 유권자들은 2004년 3월에 발의안 제57호를 통과시켜 주정부의 누적 예산 적자와 다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150억 달러의 일반보증공채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113억 달러는 2004년 5월과 6월에 공채를 판매하여 조달했고, 나머지 승인 금액에 대한 공채는 2008년 2월에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공채들은 향후 수년에 걸쳐 상환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채들은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채에 대해 중점을 두는 아래의 설명에서 제외됩니다.

- **공채 금융의 직접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주정부의 공채 금융 비용은 주로 판매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및 만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판매된 일반보증공채는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을 지불하여 30년에 걸쳐 상환합니다. 공채 발행에 5퍼센트의 비과세 이자율이 부과된다고 가정할 때, 30년 간 균등한 금액을 지불하여 공채를 상환하는 비용은 차입한 1달러에 대해 거의 2달러(차입한 금액 1달러와 1달러에 가까운 이자)에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전체 30년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므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후의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어 1달러 당 1.30달러에 상당합니다.

주정부의 현재 채무 상황

일반 기금 채무 금액. 2008년 6월 1일 현재, 주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미상환 일반 기금 공채 채무는 약 530억 달러입니다. 이러한 채무는 약 450억 달러의 일반보증공채와 80억 달러의 임대수입공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680억 달러의 승인된 일반보증공채와 임대수입 기반시설 공채를 아직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채의 대부분은 특정한 프로젝트에 할당되어 있으나, 관련 프로젝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주요 공사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금 채무 상환 금액. 저희는 2007-08년도에 기반시설 관련 일반보증공채와 임대수입공채에 대한 일반 기금 채무 상환을

위해 44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전에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발행하지 않은 공채를 판매하면 공채 채무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2017-18년도에 정점에 도달하여 약 92억 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상환비율. 주정부의 부채 상황에 대한 한 가지 지표는 채무상환비율(DSR)입니다. 이 비율은 주정부의 연간 수입 중에서 기반시설 공채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DSR은 1990년대 초에 상승하여 최고 5.4퍼센트에 도달했으나, 부분적으로 예산 적자 재금융으로 인해 2002-03년도에는 3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DSR은 2003-04년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현재 기반시설 공채에 대한 비율은 4.4퍼센트입니다. 현재 승인되어 있는 공채를 판매하면 이 비율이 2011-12년도에 6.1퍼센트로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투표에 제출된 공채 발의안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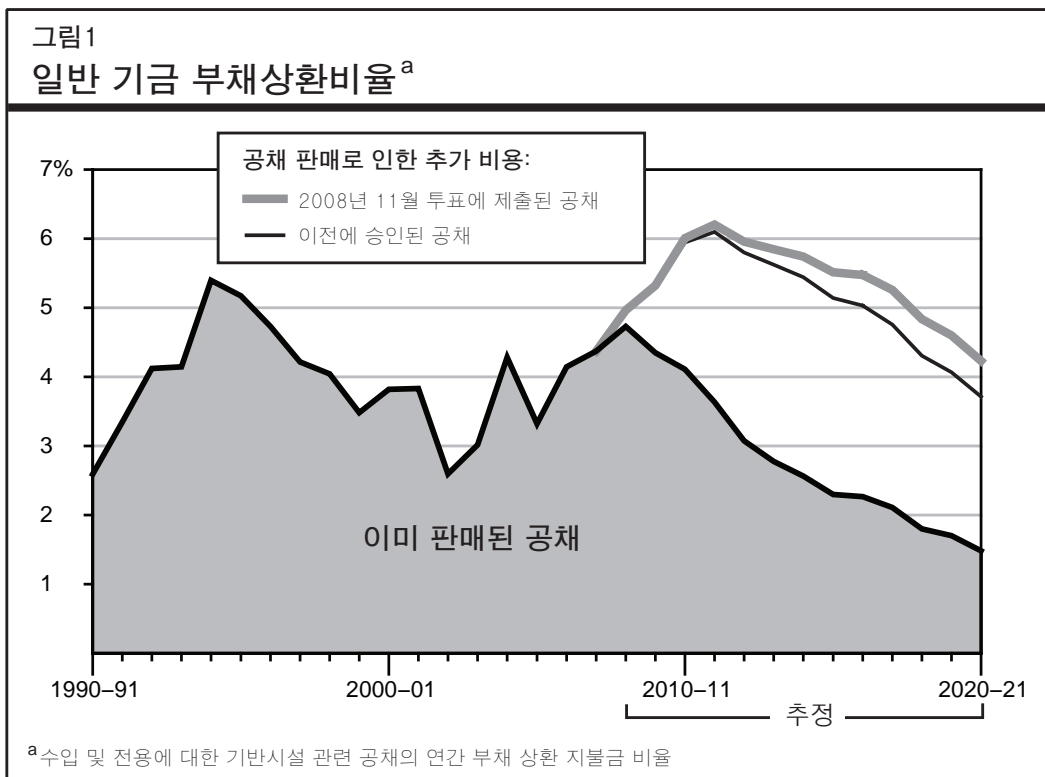
이번 투표에는 4건의 일반보증공채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새로 승인할 금액의 합계는 168억 달러입니다. 이러한 발의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정부에 99억 5,000만 달러의 공채 발행을 승인할 발의안 제1호

- 아동병원의 자본적 개량 프로젝트를 위해 주정부에 9억 8,000만 달러의 공채 발행을 승인할 발의안 제3호
- 다양한 재생가능 에너지, 대체 연료, 에너지 효율 및 대기 배출 감소 목적으로 주정부에 50억 달러의 공채 발행을 승인할 발의안 제10호
- Cal-Vet 프로그램에 따라 모기지 지불금으로 상환할 9억 달러의 공채 발행을 주정부에 승인할 발의안 제12호

채무 상환에 대한 영향. 이번 투표에 제출된 3건의 일반 기금 지원 공채(발의안 제1, 3, 10호)가 모두 승인되면 공채 상환 기간 동안 승인된 금액의 약 2배를 채무 상환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공채에 대한 연간 평균 채무 상환 금액은 판매 시기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채가 모두 판매되면 연간 예산 비용은 약 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상환비율에 대한 영향. 그림 1은 모든 공채가 승인 및 판매되는 경우 주정부의 추정 DSR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비율은 2011-12년도에 정점에 도달하여 6.2퍼센트가 되고 그 후에는 감소할 것입니다. (그림 1에 표시된 미래의 채무 상환 비용은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2008년 11월 이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추가로 공채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 증가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1호

2001 - 2002년 정기 회기의 상원 법안 제1856호(2002년 법률, 제 697장)에 의해 발의되고, 2005 - 2006년 정기 회기의 상원 법안 제 713호(2006년 법률, 제44장)에 의해 개정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VI절의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법안은 거리 및 간선도로법에 조항들을 추가한다. 따라서,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제2조. 제20장(제2704조부터 시작)을 다음과 같이 거리 및 간선도로법 제3편에 추가한다.

제20장. 21세기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고속여객열차 공채법 제1절. 일반 조항

제2704조. 이 장은 21세기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고속여객열차 공채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704.01조.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위원회"란 제2704.12조에 따라 설립된 고속여객열차 재정위원회를 의미한다.

(b) "고속철도국"이란 공익사업체법 제185020조에 따라 설립된 고속철도 주무 정부기관을 의미한다.

(c) "기금"이란 제2704.05조에 따라 설립된 고속여객열차 공채 기금을 의미한다.

(d) "고속열차"란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유지 가능한 수입을 발생시키고, 최소한 시속 200마일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여객열차를 의미한다.

(e) "고속열차 시스템"이란 우선통행권, 궤도, 전력 시스템, 열차, 역 및 관련 설비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고속열차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2조. 고속여객열차 재정 프로그램

제2704.04조. (a) 고속철도국의 2000년 6월 최종 사업계획에 따라 고속열차 네트워크의 건설에 착수하는 것이 이 장을 제정하는 주의회와 이 장에 따라 공채 법안을 승인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도이다.

(b) (1) 이 장에 따라 승인되는 공채 수입금 구입액 달러(9,000,000,000달러)와 고속철도국에 제공되는 연방정부 자금 및 기타 수입을 샌프란시스코 트랜스베이 터미널과 로스앤젤레스 유니온역 사이의 고속열차 시스템 구간에 대해 (c)항에 정의된 계획 및 적격 자본적 비용으로 사용한다.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구간 공사에 대한 자금 제공이 완료되면, 이 항에 기술된 나머지 모든 자금은 다음과 같은 추가 고속열차 구간에 대해 우선순위 없이 (c)항에 정의된 계획 및 적격 자본적 비용으로 사용한다.

- (A) 오클랜드-산호세
(B) 새크라멘토-머시드
(C) 로스앤젤레스-인랜드 엠파이어
(D) 인랜드 엠파이어-샌디에고
(E) 로스앤젤레스-어바인

(2) 운행 및 유지보수 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운행 수입은 고속열차 시스템 건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c) 이 장에 따라 고속열차 목적으로 승인되는 공채의 수입금에서 지불할 적격 자본적 비용에는 우선통행권의 획득, 궤도, 구조물, 전력 시스템 및 역의 건설, 열차 차량 및 관련 장비, 그리고 다른 관련 자본적 설비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d) 이 장에 따라 승인되는 공채의 수입금은 열차 또는 설비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e) 주정부 감사인은 고속철도국이 이 장에 따라 승인되는 공채의 수입금을 이 장의 요건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제2704.05조. 이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의 수입금은 이 조에 의해 설치되는 고속여객열차 공채기금에 예치된다.

제2704.06조. 이 기금에 예치된 구입액 달러(9,000,000,000 달러) 의 자금은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고속철도국의 2000년 6월 최종 사업계획(고속철도국이 수행하는 환경 연구에 의한 차후의

변경 포함)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 주의 고속열차 시스템의 계획 및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제2704.07조. 고속철도국은 이 장의 수입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방정부 자금, 수익공채로부터의 자금 및 지방정부 자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기타 민간 및 공공 자금의 획득을 추진한다.

제2704.08조. 이 장에 따라 고속열차 목적으로 승인되는 공채의 수입금은 각 고속열차 시스템 구간에 대한 궤도 및 역 건설에 소요되는 총 공사 비용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2704.09조. 이 장에 의해 건설되는 고속열차 시스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a) 유지 가능한 최대 수입을 발생시키고, 시속 200마일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전기열차

(b) 다음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각 노선에 대한 최대 고속 서비스 운행 시간:

- (1)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유니온역: 2시간 42분
(2) 오클랜드-로스앤젤레스 유니온역: 2시간 42분
(3) 샌프란시스코-산호세: 31분
(4) 산호세-로스앤젤레스: 2시간 14분
(5) 샌디에고-로스앤젤레스: 1시간
(6) 인랜드 엠파이어-로스앤젤레스: 29분
(7) 새크라멘토-로스앤젤레스: 2시간 22분
(8) 새크라멘토- 산호세: 1시간 12분

(c) 배차 시간 간격(다음 열차 사이의 시간 간격)은 5분 이내이다.

(d) 제2704.04조 (b)항에 기술된 모든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기착하는 역의 총수는 24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e) 열차는 본선 운행 속도로 중간 역으로 노선을 바꾸거나 그러한 역들을 우회하는 성능을 갖는다.

(f) (b)항에 기술된 각 노선에 대해, 여객들은 그 구간에 있는 한 역에서 다른 역으로 열차를 환승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다.

(g)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속열차 시스템의 노선은 가능한 한 기존의 교통 또는 공익 설비 경로를 따른다.

(h) 역은 지역 대중교통수단이나 다른 승수 방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i) 고속열차 시스템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획 및 건설해야 한다.

(j) 고속열차 시스템이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이동을 방해하는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실행 가능한, 경우 야생동물 이동 경로를 보존하고 야생동물 이동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제2704.095조. (a) (1) 이 장에 의해 승인되는 공채의 수입금 중에서 구역 오천만 달러(950,000,000달러)는 도시 간 철도, 통근 철도 및 도시 철도 시스템을 제2704.04조 (b)항에 기술된 고속열차 시스템에 연결하고, 그러한 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증가시키고 안전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자본적 개량을 위해 적격 수령자에게 할당된다. 이 조에 의한 자금은 주의회가 (d)항에 기술된 적격 목적에 대해 연간예산법을 통해서 책정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2) 이 조에 의해 승인되는 금액의 이십 퍼센트(일억 구천만 달러(190,000,000달러))는 도시 간 철도를 위해 교통국에 할당되고, 또한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철도 설비, 우선통행권 및 장비를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도시 간 철도에 제공하기 위해 할당된다. 이 목에 의해 제공되는 금액의 최소한 25퍼센트(사천칠백오십만 달러(47,500,000달러))는 이 주의 3개 도시 간 철도 노선에 할당된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위원회는 사용 가능한 자금을 이 조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적격 수령자에게 할당하고, 이 조의 요건을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자금을 상호 합의에 의해 도시 간 철도 노선 사이에 대출하는 도시 간 노선 운영자의 권한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자금의 운영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다.

(3) 이 조에 의해 승인되는 금액의 팔십 퍼센트(칠억 육천만 달러(760,000,000달러))는 도시 간 철도를 제외한 (c)항에 기술된 적격 수령자에게 다음의 모든 항목을 통합하여 계산한 퍼센트 비율 금액에 근거하여 할당된다.

- (A) 주 전체 궤도 마일에 대한 적격 수령자 퍼센트 비율의 3분의 1

(B) 주 전체 연간 열차 마일에 대한 적격 수령자 퍼센트 비율의 3분의 1

(C) 주 전체 여객 여행에 대한 적격 수령자 퍼센트 비율의 3분의 1
캘리포니아 주 교통 위원회는 사용 가능한 자금을 이 조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적격 수령자에게 할당하고, 이 조의 요건을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b) 이 조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궤도 마일”이란 공공기관이나 공동관할당국이 정기 여객 철도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궤도의 마일 수를 의미한다.

(2) “열차 마일”이란 공공기관이나 공동관할당국이 여객 철도 서비스를 위해 열차편성표에 의해 운영하는 모든 기관차와 열차를 정비장에서 나온 때부터 운행한 총 마일 수를 의미한다.

(3) “여객 여행”이란 공공기관이나 공동관할당국이 정기 여객 철도 서비스에 대해 보고하는 연간 비연결 여객 탑승자 수를 의미한다.

(4) “주 전체”란 (a)항 (3)목 (A), (B) 및 (C)소목의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모든 적격 수령자에게 할당되는 그러한 금액을 혼합한 합계를 의미한다.

(c) (a)항 (3) 목에 의한 적격 자금 수령자는 다음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정기 여객 철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공동관할당국이다.

- (1) 통근 철도
- (2) 경철도
- (3) 중철도
- (4) 케이블카

(d) 이 조에 의해 할당되는 자금은 고속열차 시스템과의 연결, 또는 공공 여객 철도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궤도, 신호등, 구조물, 설비 및 철도 차량의 복구, 현대화 또는 안전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e) 적격 수령자는 (d)항에 기술된 적격 철도 요소에 대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f) (a)항 (3)목에 의한 적격 수령자가 이 조에 의해 할당되는 자금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이 조에 의해 수령자에게 할당되는 총금액 이상의 금액을 상응 자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g) (a)항 (3)목에 의한 자금의 적격 수령자는 상응 자금 요건과 이 조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안에 의해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 (a)항 (3)목에 의해 적격 수령자에게 할당되는 자금은 여객 철도 시스템의 유지보수 또는 복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입을 보충해야 한다. (a)항 (3)목에 의해 할당되는 자금의 적격 수령자가 이 조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 자금의 할당 및 지출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기존의 자금을 계속 수령해야 한다.

(i) (a)항 (3)목에 의한 적격 수령자가 이 조에 의해 자금을 할당 받기 위해서는 여객 철도 시스템의 유지보수 또는 복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입으로부터 1998 - 99, 1999 - 2000 및 2000 - 01 회계연도 동안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방정부 수입으로부터 지출된 연간 평균 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j) 이 조에 의해 남가주 지역철도국 내의 서비스 지역 내에 위치한 적격 프로젝트들을 위해 이 철도국에 할당되는 자금은 남가주 지역철도국과 이 철도국을 구성하는 기관들 사이에 체결하는 양해각서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배분된다. 양해각서 또는 양해각서들은 남가주 지역철도국과 그 구성 기관들의 여객 서비스 필요, 구성 기관들에 기인하는 수입, 구성 기관들이 남가주 지역철도국에 제공하는 기여금을 고려해야 한다.

제3절. 재정 조항

제2704.10조. 이 장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자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제16724.5조에 따라 일반보증공채 비용 회전기금에 상환하기 위해 사용할 총액 구십구억 오천만 달러 (9,950,000,000달러)의 공채를, 상환용 공채를 제외하고, 필요한 만큼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공채가 판매되면 캘리포니아 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공채를 구성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한의 성실성과 신용으로 지불 기일이 도래하는 공채 원금과 이자를 정시에 지불할 것을 서약한다.

제2704.11조. (a)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의해 승인되는 공채는 정부법 제2권 4편 3부 4장(제16720조부터 시작), 주 일반보증공채법의 규정에 따라 준비, 집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해야 하며, 이 법의 모든 조항은 공채와 이 장에 적용되고 이 장에 전문이 게재된 것처럼 이 장의 일부로 통합된다.

(b) 주 일반보증공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승인 하에 발행되는 각 공채는 30년 이하의 최종 만기를 갖는다.

제2704.12조. (a) 단지 주 일반보증공채법에 따라 이 장에 의한 공채의 발행과 판매를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속여객열차 재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장의 목적상, 고속여객열차 재정위원회는 주 일반보증공채법에 사용되는 “위원회”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위원회는 회계감사원장, 재정국장, 출납국장, 사업교통주택부 장관, 고속철도국장 또는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출납국장은 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위원회 전체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주 일반보증공채법의 목적상, 고속철도국은 “주관 기관”으로 지정된다.

제2704.13조. 이 위원회는 제2704.06 및 2704.095 조에 명시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장에 따라 승인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발행 및 판매할 공채의 금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점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채를 단계적으로 발행하도록 승인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전체 공채를 한번에 발행 또는 판매할 필요는 없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자금 제공 필요, 수입 예측, 금융시장 상황 및 다른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행할 공채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을 결정한다.

제2704.14조.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공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주정부의 경상 수입에 추가하여 매년, 그리고 다른 주정부 수입을 징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또는 그와 같은 시기에 징수해야 한다. 추가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실행 및 수행하는 것은 수입 징수와 관련된 법적 직무가 부여된 모든 공무원의 의무이다.

제2704.15조.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목적상, 이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에 대해 지불 기일이 도래하는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정부 출납국의 일반 기금으로부터 책정한다.

제2704.16조. 주관 기관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정부법 제16312 조에 따라 공동자금 투자위원회에 공동자금 투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금액은 위원회가 이 장의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결의에 의해 승인하는 미판매 공채 금액에서 제2701.17조에 따라 차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관 기관은 공동자금 투자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및 상환한다. 대출 받은 금액은 주무 기관이 이 장에 따라 할당하기 위해 기금에 예치한다.

제2704.17조.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재정국장은 위원회가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미판매 공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제2704.16조에 따라 차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또는 금액들을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한 금액은 이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이 조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공채 수입금으로부터 이 금액이 공동자금 투자계정에 있었다라면 발생했을 이자를 더하여 일반 기금에 반납해야 한다.

제2704.18조. 판매된 공채에 대한 프리미엄과 발생 이자로부터 획득하여 기금에 예치한 모든 자금은 기금에 비축하여 공채 이자 지출에 대한 크레딧으로 일반 기금에 이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2704.19조. 공채는 주 일반보증공채법 제6절(제16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공채 발행에 대한 주 유권자의 승인에는 원래 발행된 공채 또는 이전에 발행된 상환용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채에 대한 승인이 포함된다.

제2704.20조. 주의회는 이 장에 의해 승인된 공채의 판매로부터 얻는 수입금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 B절에 사용된 용어인 “세금의 수입금”이 아닌 한, 이러한 수입금의 지출은 이 절이 부과하는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및 선언한다.

제2704.21조. 정부법 제2권 4편 2부 3장 4절(제16470조부터 시작)에 의한 투자의 적용을 받는 이 장에 의해 승인되는 공채 판매의

수입금에 관한 주 일반보증공채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출납국장은 투자 수익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유지하고, 연방법에 의해 적용되는 리베이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그러한 수익을 지불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공채에 대한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이 주의 기금을 대신하여 연방법에 의한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수입금의 사용 및 투자를 지시할 수 있다.

발의안 제2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보건안전법에 조항들을 추가한다. 따라서,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제1조. 약식 명칭

이 법은 농장동물 가혹행위 방지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농장동물들이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고, 눕고, 일어나고, 사지를 완전히 뻗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혹하게 가두는 것을 금지한다.

제3조. 농장동물 가혹행위 조항

제13.8장(제25990조부터 시작)을 다음과 같이 보건안전법 제20편에 추가한다.

제13.8장. 농장동물 가혹행위

제25990조. 금지사항. 해당되는 법의 기타 조항에 추가하여, 사람은 농장에서 적용 동물을 하루 종일 또는 하루의 대부분 동안 다음과 같은 동작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밧줄로 매놓거나 가두어놓아서는 안된다.

(a) 눕고, 일어나고, 사지를 완전히 뻗는 동작, 그리고

(b)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

제25991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송아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육되는 송아지”란 송아지 고기라고 부르는 식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소과에 속하는 모든 송아지를 의미한다.

(b) “적용 동물”이란 농장에서 키우는 새끼를 뺀 돼지, 송아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육되는 송아지, 또는 알을 낳는 암탉을 의미한다.

(c) “알을 낳는 암탉”이란 가축화된 닭, 터키, 오리, 거위 또는 빨닭의 암컷을 의미한다.

(d) “우리”란 보호 받는 동물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케이지, 크레이트 또는 다른 구조물(흔히 돼지에 대해 “임신용 크레이트,” 송아지에 대해 “송아지 크레이트,” 또는 알을 낳는 암탉에 대해 “양계용 케이지”라고 부르는 것 포함)을 의미한다.

(e) “농장”이란 식품 또는 섬유를 얻기 위해 키우는 동물 또는 동물 제품의 상업적 생산을 위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지면 시설 및 기타 설비를 의미하며, 살아 있는 동물 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f) “사지를 완전히 뻗는다”는 것은 사지를 완전히 뻗어도 우리의 가장자리에 닿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알을 낳는 암탉이 양쪽 날개를 완전히 뻗어도 우리의 가장자리나 다른 알을 낳는 암탉에 닿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g) “사람”이란 모든 개인, 회사, 파트너십, 합작투자, 협회, 유한회사, 주식회사, 대농장, 트러스트, 관재인 또는 신디케이트를 의미한다.

(h) “새끼를 뺀 돼지”란 주로 새끼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돼지과에 속하는 새끼를 뺀 돼지를 의미한다.

(i) “자유롭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동물을 매두는 밧줄을 포함하는 방해물이 없이 완전히 원을 그리면서 돌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가장자리에 닿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제25992조. 예외사항. 이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과학 연구 또는 농업 연구를 하는 동안

(b) 수의학적인 목적으로 검사, 시험, 개별적인 치료 또는 수술을 실시하는 동안

(c) 수송하는 동안

(d) 로레오 전시회, 주 또는 카운티 품평 전시회, 4-H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전시회

(e) 인도적인 도살 방법과 관련된 식품농업법 제9편 3부 6장(제19501조부터 시작)과 다른 적용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적용 동물을 도살하는 동안

(f) 돼지의 예상 분만일 직전 7일의 기간 동안 돼지에게

제25993조. 집행. 이 장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 유효판결을 받으면 천 달러(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 카운티 구치소 징역 또는 이러한 벌금 및 징역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5994조. 이 장의 해석.

이 장의 조항들은 캘리포니아 주 형법을 포함하는 동물 복지를 보호하는 다른 모든 법률에 추가되며, 그러한 법률들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장은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는 주의 법률이나 규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 장의 어떤 조항도 지방정부 조직체가 자체적인 동물복지법과 규정을 채택 및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다.

제4조. 가분성

이 법의 어떤 조항 또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 또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무효성 또는 위헌성이 무효 또는 위헌 조항이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의 조항들은 분리가 가능하다.

제5조. 발효일

제25990, 25991, 25992, 25993 및 25994조의 조항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발의안 제3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보건안전법에 조항들을 추가한다. 따라서,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제1조. 제6.1부(제1179.50조부터 시작)를 다음과 같이 보건안전법 제1편에 추가한다.

제6.1부. 2008년 아동병원 공채법

제1장. 일반 조항

제1179.50조. (a) 이 부는 2008년 아동병원 공채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b)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 아동병원 네트워크는 생명이 위태로운 질환이 있거나 부상을 당한 아동들에게 중요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들은 가족의 의료비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이러한 병원에서 매년 백만여 회의 진료를 받는다.

(c) 또한 아동병원들은 백혈병, 암, 심장결손, 당뇨병, 겸상적혈구 빈혈증,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중한 질병 및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생존을 증가시킨 전문화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한다.

(d) 또한 아동병원은 아동을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 소아과 전문의 및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학 연구를 수행한다.

(e) 그러나 무상 진료 제공의 부담과 건강관리 비용의 증가로 인해 시설을 현대화 및 확장하고 병에 걸린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최신 의료 기술과 특수 의료 장비를 구매하는 아동병원의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f) 따라서,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주 아동들의 건강, 복지, 안전을 개선하는 아동병원의 자본적 개량 프로그램에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자금공급원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제1179.51조. 이 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재정국”이란 정부법 제15431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 의료시설 재정국을 의미한다.

(b) “아동병원”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 다음과 같은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급성치료 종합병원:

(A)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Children’s Hospital

(B) Mattel Children’s Hospital of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of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Children’s Hospital

(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ildren’s Hospital

(2)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의 비영리 법인이거나 이러한 법인이 운영하는 조직체인 급성치료 종합병원으로서, 아동에 중점을 둔 임상치료, 교육, 연구 및 옹호를 사명으로 하고,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다수의 아동들과 캘리포니아 주 아동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고 특별한 건강관리자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소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병원:

(A) 2001년 6월 30일과 2002년 6월 29일 사이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소아과 급성 진료, 소아과 중환자 진료, 신생아 중환자 진료 카테고리에 대해 160개 이상의 면허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주 전체 건강 계획 및 개발국에 보고한 병원

(B) 2001년 6월 30일과 2002년 6월 29일 사이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총 소아과 환자(센서스) 치료일이 30,000일을 넘었고, 이를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주 전체 건강 계획 및 개발국에 보고한 병원

(C) 2001년 6월 30일과 2002년 6월 29일 사이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8명(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의 풀타임에 해당되는 소아과 레지던트 또는 소아과 부전공 레지던트에게 의료 교육을 제공했고, 이를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주 전체 건강 계획 및 개발국에 보고한 병원

(c) “위원회”란 제1179.61조에 따라 설립되는 아동병원 공채법 재정위원회를 의미한다.

(d) “기금”이란 제1179.53조에 따라 설치하는 아동병원 공채법 기금을 의미한다.

(e) “보조금”이란 재정국이 이 부에 명시된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금으로부터 아동병원에 분배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f) “프로그램”이란 이 부에 따라 설립하는 아동병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g) “프로젝트”란 이 부에 따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자금을 지원받거나 이러한 지원을 재조정하는 아동병원의 건설, 확장, 개축, 보수, 가구 비치, 장비 설치, 자금 지원 또는 이의 재조정을 의미한다. “프로젝트”에는 2008년 1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아동병원의 건설, 확장, 개축, 보수, 가구 비치, 장비 설치, 자금 지원 또는 이의 재조정을 위한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프로젝트”에는 이 부에 의해 자격이 있는 참여 아동병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하나 이상의 전문한 항목들이 혼합된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도 있다.

제2장. 아동병원 프로그램

제1179.53조. 이 부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의 수입금은 이 조에 따라 설립하는 아동병원 공채법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제1179.54조. 아동병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동병원의 자본적 개발 프로젝트에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자금공급원을 제공하여 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아동들의 건강 및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부에 규정된 프로그램은 공익에 부합하고, 공적인 목적에 기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 복지, 안전을 증진시킬 것이다.

제1179.55조. 재정국은 제1179.51조의 (g)항에 정의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

1179.56. (a) 이 부에 따라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총 자금의 20퍼센트는 제1179.51조 (b)항 (1)목에 정의된 아동병원에 지급한다.

(b) 이 부에 따라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총 자금의 80퍼센트는 제1179.51조 (b)항 (2)목에 정의된 아동병원에 지급한다.

1179.57. (a) 재정국은 이 법이 채택된 후 90일 이내에 이 부에

의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작해야 한다. 재정국은 다음의 요소에 근거하여 이 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 아동병원에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이 보조금은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아동들과 가난하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들의 건강관리 접근을 확대 또는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이 보조금은 아동 건강관리 또는 소아과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아동병원은 가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소아과 환자들에게 무보상 또는 저보상 치료를 제공한다.

(4) 아동병원은 취약한 소아과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아동병원은 소아과 교육 또는 연구 프로그램을 증진시킨다.

(6) 프로젝트 준비 완료와 프로젝트 타당성의 증명.

(b) (1) 자금 신청서를 재정국에 제출하여 이 부의 요건에 대한 일치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2) 재정국은 보조금을 적시(60일 이내)에 처리 및 지급한다.

(c) 제1179.51조 (b)항 (1)목에 포함된 아동병원은 제1179.56조 (a)항에 따라 그 아동병원에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이 전체 아동병원에 지급되는 총 자금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재정국은 그러한 아동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조금 한도에도 불구하고, 제1179.56조 (a)항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소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79.51조 (b)항 (1)목에 포함된 아동병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그러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d) 제1179.51조 (b)항 (2)목에 포함된 아동병원은 제1179.56조 (b)항에 따라 그 아동병원에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이 전체 아동병원에 지급되는 총 자금 중 추천 팔백만 달러(98,000,000달러)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재정국은 그러한 아동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조금 한도에도 불구하고, 제1179.56조 (b)항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소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79.51조 (b)항 (2)목에 포함된 아동병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그러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병원이 결정하고 재정국이 승인한 총 프로젝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f) 보조금을 지급 받은 모든 프로젝트는 적절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재정국이 아동병원이 보조금 지급 서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재정국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것을 포함하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아동병원은 프로젝트 완료 증명서를 재정국에 제출해야 한다.

(g) 보조금은 재정국이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이 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재정국이 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재정국에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h) 재정국은 매년 이 부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비용은 실제 비용 또는 1퍼센트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179.58조. 주정부 감사국은 공채 수입금이 적시에, 그리고 이 부의 요건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지급되고, 공채 수입금의 수령자가 이 부의 해당 조항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조항

제1179.59조. 이 부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자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제16724.5조에 따라 일반 보증 공채 경비 회전 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공채 상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총액이 구역 팔천만 달러(98,000,000달러)인 공채를 판매 및 발행할 수 있다. 판매된 공채는 캘리포니아 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공채를 구성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한의 성실성과 신용으로 지불 기일이 도래하는 공채 원금과 이자를 정시에 지불할 것을 서약한다.

제1179.60조. 이 부에 의해 승인된 공채는 주 일반 보증 공채법(정부법 제2권 4편 3부 4장(제1672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준비, 집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해야 하며, 이 법의 모든 조항은 공채와 이

부에 적용되고 이 부에 전문이 게재될 것처럼 이 부의 일부가 된다.

1179.61. (a) 단지 이 부에 의해 승인된 공채를 주 일반 보증 공채법에 따라 발행 및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병원 공채법 재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부의 목적상, 아동병원 공채법 재정위원회는 주 일반 보증 공채법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위원회는 감사원장(Controller), 재정국장(Director of Finance), 출납국장(Treasurer), 또는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출납국장은 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위원회 전체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재정국은 주 일반 보증 공채법의 목적상 “위원회 구성원”으로 지정되고 이 부에 따라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제1179.62조. 이 위원회는 제1179.54조에 명시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 부에 따라 승인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발행 및 판매할 공채의 금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점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채를 단계적으로 발행하도록 승인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전체 공채를 한번에 발행 또는 판매할 필요는 없다.

제1179.63조.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공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주정부의 정상 수입에 추가하여 매년, 그리고 다른 주정부 수입을 징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또는 같은 시기에 징수해야 한다. 추가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실행 및 수행하는 것은 수입 징수와 관련된 법적 직무가 부여된 모든 공무원의 의무이다.

제1179.64조.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의 목적상, 다음 항목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정부 재무부의 일반 기금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a) 이 부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에 대해 지불 기일이 도래하는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

(b) 제1179.65조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책정된다.

제1179.65조. 이 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재정국장은 위원회가 이 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미판매 공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한 금액은 이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이 조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이 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공채 수입금으로부터 일반 기금에 반납해야 한다.

제1179.66조. 판매된 공채에 대한 프리미엄과 발생 이자로부터 획득하여 기금에 예치한 모든 자금은 기금에 비축하여 공채 이자 지출에 대한 크레딧으로 일반 기금에 이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1179.67조. 정부법 제2권 4편 3부 4장(제1672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채 발행 비용은 공채 수입금에서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이 공채법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 받은 각 아동병원이 비례 배분하여 공동 부담한다.

제1179.68조. 재정국은 이 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법 제16312조에 따라 공동자금 투자위원회에 공동자금 투자계정으로부터 상업어음이 포함되거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승인된 다른 형태의 임시 대출 방법으로 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금액은 위원회가 이 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결의에 의해 승인한 미판매 공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정국은 공동자금 투자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상환한다. 대출 받은 금액은 위원회가 이 부에 따라 할당하기 위해 기금에 예치한다.

제1179.69조. 공채는 주정부 일반 보증 공채법의 일부인 정부법 제2권 4편 3부 4장 6절(제16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주정부가 이 부에 기술된 공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의 승인에는 이 부에 의해 원래 발행된 공채 또는 이전에 발행된 상환용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채에 대한 승인이 포함된다.

제1179.70조. 이 부 또는 주정부 일반 보증 공채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이 이 부에 따라 공채에 대한 이자는 연방세 목적상 총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지정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포함된 공채를 판매하는 경우, 재무국장은 공채 수입금의 투자와 그러한 수입금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투자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 재무국장은 이러한 수입금 또는 소득을 연방법이 요구하는 리베이트, 벌금 또는 다른 지불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 또는 사용을 지지하거나, 이러한 공채에 대한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이 주의 기금을 대신하여 연방법에 의한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그러한 공채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79.71조. 주민들은 이 부에 의해 승인된 공채의 판매로부터 얻는 수입금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 B절에 사용된 용어인 “세금의 수입금”이 아닌 한, 이러한 수입금의 지출은 이 부가 부과하는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및 선언한다.

제1179.72조. 이 부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의 조항들은 분리가 가능하다. 이 법의 어떤 조항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무효가 무효 조항이나 적용이 없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의안 제4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한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명백하게 개정한다. 따라서,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제1조. 명칭

이 법은 아동 및 십대 안전 및 성범죄자 방지법: Sarah 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목적에 대한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미성년자가 그녀의 부모나 돌볼 책임이 있는 가족이 그녀가 비밀 낙태를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지 않는 위험을 포함하는 미성년자들을 비밀 낙태의 알려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감추기 위해 비밀 낙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3조. 부모에 대한 통지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I 절에 추가한다.

제32조. (a)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낙태”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임신을 종료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살아있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피임약이나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낙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의료 응급상황”이란 의사의 성실한 임상적 판단에 근거할 때, 임신한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의학적인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낙태를 시켜야 하거나, 또는 낙태를 지연시키면 주요 신체 기능을 돌이킬 수 없이 심하게 손상시킬 중대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3) “부모”란 이 조에 의해 통지를 받거나 통지를 면제해야 할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부모(양 부모가 모두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나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적 보호자를 의미한다.

(4) “성인 가족 구성원”이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조부모, 계부모, 양부모, 백모, 숙모, 고모, 이모, 백부, 숙부, 고모부, 이모부,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또는 친사촌으로서 21세 이상 된 사람을 의미한다.

(5) “통지서”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성인 가족 구성원에게 그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고 낙태를 요청했다는 것을 알리는 의사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의미한다.

(6)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미국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이 아니고, 주법에 따라 부모의 통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여성을 의미한다. 이 조의 목적상, 임신은 18세 미만의 여성을 해방시키지 않는다.

(7) “의사”란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수행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b) 제1절 1조, 또는 이와 상반되는 이 헌법이나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f)항에 규정된 의료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의사는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이 낙태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부모에게 직접 또는 (c)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으로 전달한 후 최소한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이 (d)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통지 면제서를 받을 때까지, 또는 의사가 (e)항의 규정에 따라 성인 가족 구성원에게 서면 통지서를 전달하고 그가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아동 학대를 신고한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의사가 (h), (i), 또는 (j)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 면제서 사본을 받을 때까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해서는 안된다. 통지서나 면제서의 사본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의료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그녀의 부모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c)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은 서면 통지서를 부모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부모의 주소로 배달 증명 우편을 보내고, 우편물 수령증을 요청하고, 수신인에게로만 배달을 제한해야 한다. 통지서를 배달 증명 우편을 보내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통지서의 사본을 부모에게 1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서면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이 항의 조항들에 의해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후 두 번째 날 정오에 그 통지서가 배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규 우편 배달을 하지 않는 날들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통지서 양식은 주정부 보건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 통지서 양식은 영어와 스페인어의 이중 언어로 제공해야 하고, 또한 영어와 캘리포니아 주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발행하는 다른 각 언어로도 제공해야 한다.

(d) 낙태 수술을 받으려는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한 통지서는 그녀의 부모가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는 주정부 보건서비스부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러한 양식에는 부모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모는 이러한 면제가 30일 간, 또는 지정한 날짜까지, 또는 미성년자의 18세 생일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양식에 명시해야 한다. 부모가 서면 면제서를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이 부모나 보호자가 통지 면제서를 제공했다고 믿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에게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면제서 양식은 영어와 스페인어의 이중 언어로 제공해야 하고, 또한 영어와 캘리포니아 주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발행하는 다른 각 언어로도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수행한 각 낙태 수술에 대해,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은 별개의 면제서 원본을 받아서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의료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e) 주치의가 낙태 수술을 하기 최소한 48시간 전에 (c)항에 기술된 방법과 양식을 사용하여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지정한 성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고,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한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아동 학대를 해당 법집행 기관이나 공공 아동 보호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한 부모에 대한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신고는 미성년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신체적, 성적, 또는 심한 정서적 학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녀의 두려움이 그녀의 부모가 자행한 신체적, 성적, 또는 심한 정서적 학대의 패턴에 근거한다는 미성년자의 서면 진술에 근거해야 한다. 의사는 미성년자의 진술서를 자신의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진술서와 보고서의 사본을 미성년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의사는 통지서와 함께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아동 학대에 대한 보고서 작성했다는 것을 성인 가족 구성원에게 알려주고 그 보고서를 보낸 기관을 밝히는 서신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의사는 이러한 통지서와 서신이 미성년자가 지정한 성인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f) 주치의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의료 기록에서 의료적 응급상황으로 인해 낙태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성실한 임상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증상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한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g) 이 항과 (h), (i), 또는 (j)항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한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임신한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청원을 제출하는 데는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이 항에 따라 청원을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은 그 미성년자나 그녀가 지정한 사람이 이 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미성년자의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소년법원의 심리 절차에 직접 출두해야 하고, 자신을 스스로 대표하거나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와 함께 출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가 원하는 경우 법원이 임명하는 변호사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심리는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나 그녀의 변호사가 서면으로 요청하여 연기하지 않는 한 청원을 제출한 후 두 번째 법원 업무일 오후 5시까지 열어야 한다.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청원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날짜, 시간, 장소를 통지 받아야 한다. 판결은 이 사건을 제출한 후 1 법원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판사는 판사의 사실 확인서와 판결을 뒷받침하는 법적 결론을 포함하는 증거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원이 비밀로 유지되고 모든 법원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h) (1) 판사가 명확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결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통지를 면제할 것을 허가해야 한다.

(2) 판사가 명확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이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통지를 면제할 것을 허가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통지가 미성년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것이 신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증거에 근거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증거를 해당 법집행 기관이나 공공 아동 보호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3) 판사가 (1) 또는 (2)목에 기술된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 판사는 청원을 기각해야 한다.

(i) 판사가 (g)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청원의 연기가 요청 및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고 통지 요건은 면제된다.

(j)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소년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언제든지 그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사법 위원회는 규정에 의해 항소에 대한 관행과 절차, 그리고 항소에 대한 기록을 준비 및 제출하는 기한과 방법을 정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에 사용할 양식을 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는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후 3 법원일 이내에 심리를 열 것을 요구한다.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심리가 열리는 날짜, 시간, 장소를 통지 받아야 한다. 항소법원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신원이 비밀로 유지되고 모든 법원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항소를 제출하는 데는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판결은 이 사건을 제출한 후 1 법원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k) 사법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규정에 의해 부모에 대한 통지 면제, 심리, 판결에 대한 관행과 절차를 정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에 사용할 양식을 정할 수 있다. 각 법원은 청원을 제출하는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청원의 수, 그리고 (h)항의 (1) 또는 (2)목에 의해 승인되었고, (i)항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h)항의 (3)목에 의해 거부되었고, (j)항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된 청원의 수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사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보고서는 사법 위원회가 청원을 제출하는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 보고서에 들어있는 자료를 일반대중에게 제공하기 전에 카운티별로 취합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대중에게 제공된다.

(l) 주정부 보건서비스부는 의사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 수행한 낙태 수술을 보고하는 양식을 정한다. 이 보고서 양식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나 그녀의 부모(들)의 이름을 밝히거나,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나 그녀의 부모(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 양식에는 수술 날짜,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출생일과 연도, 임신 경과 기간, 낙태 수술의 종류,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이전 낙태 및 출산 횟수(알고 있는 경우), 낙태 수술을 수행한 기관의 이름이 포함된다. 또한 이 양식에는 (c), (d), (e), (f), (h), (i) 또는 (j) 항 중 어느 조항에 따라 낙태 수술을 했는지 기재한다.

(m)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 낙태 수술을 수행한 의사는 그 낙태 수술에 대한 보고서를 (l)항에 의해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기재하여 1개월 이내에 주정부 보건서비스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되고 캘리포니아 주 공공 기록물법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다.

(n) 보건서비스부는 (l)항에 명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연례 통계 보고서를 작성한다. 연례 보고서에는 (m)항에 요구된 보고서를 제출한 의사의 신원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작성된 보고서에는 월별 및 수술을 수행한 카운티별 낙태 횟수, 미성년자의 연령, 낙태 수술의 종류, 이전의 낙태 및 출산 횟수(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c), (d), (e), (f), (h), (i) 또는 (j)항에 따라 각각 수행한 낙태 수술의 횟수에 대한 통계 정보가 포함된다. 이 연례 통계 보고서는 카운티 공중보건 담당 공무원, 주의회 의원, 주지사 및 일반대중에게 제공된다.

(o)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 낙태 수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 조의 조항들을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해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 그녀의 법률 대리인, 또는 부당하게 통지가 거부된 부모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소송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짜로부터 4년, 또는 부당하게 통지가 거부된 부모가 이 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발견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4년 중에서 더 늦게 만료되는 기간 내에 개시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 조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관한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성실했고 사실이었다는 증거에 의존했고 그러한 증거가 주의와 사려가 깊은 사람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서면 또는 서류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이 조에 의한 책임이 없다. 원고는 이 항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언제든지 일만 달러(10,000달러)의 법정 손해액을 배상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항에 의한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정당한 변호사 수수료를 상환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조의 어떤 조항도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낙태로부터 입을 손해와 관련된 보통법에 의한 부모의 권리, 또는 어떤 사람,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어떤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책임 이면에 의한 구제(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한 법적, 행정적 또는 형평법상의 구제를 포함)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p) 의사의 환자인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 또는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을 제외하고,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이 이 조에 의해 통지서가 부모 또는 성인 가족 구성원에 전달되었거나 전달될 것이라는 것, 또는 통지 면제서를 입수했다는 것, 또는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 환자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사나 의사의 대리인에게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최대 이천 달러(2,000달러)의 벌금형을 받는다.

(q) 통지서나 통지 면제서에도 불구하고, 의료 응급상황이나 미성년자 자신의 정신적 무능력 같은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그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는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동의하지 않은 낙태 수술을 수행 또는 유도해서는 안된다.

(r) 통지서나 통지 면제서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힘이나 힘을 사용하겠다는 위협, 또는 음식이나 집을 빼앗겼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빼앗는 것을 통해서 낙태 수술을 받을 것에 동의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그러한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구제를 승인해야 한다.

(s) 이 조는 이 조를 승인한 선거가 끝난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사법 위원회는 이 90일 이내에 규정, 관행 및 절차를 정하고, (k)항의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주정부 보건서비스부는 이 90일 이내에 (c), (d) 및 (l)항의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t) 이 조의 하나 이상의 조항, 부속 조항, 문장, 절, 구 또는 단어, 또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 또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거나 무효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이 항에 의해 그러한 것들이 분리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며, 이 조의 나머지 조항들은 이러한 위헌이나 무효에도 불구하고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유권자들은 이 조의 하나 이상의 조항, 부속 조항, 문장, 절, 구 또는 단어가 위헌이거나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조의 각 조항, 부속 조항, 문장, 절, 구 또는 단어를 승인했을 것이다.

(u) 이 조에 명확하게 규정된 권리, 의무, 특권, 조건 및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의 어떤 조항도 낙태 또는 이에 대한 자금 제공과 관련된 다른 권리, 의무, 특권, 조건 및 제한사항을 승인, 보증 또는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법의안 제5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조항들을 개정하고 형법의 조항을 추가하며 성문화되지 않은 법 조항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삭제된 발의된 기존의 조항들은 ~~취소~~를 그어 인쇄하고, 추가된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제1조. 명칭.

이 법은 “2008년 비폭력적 범죄자 재활에 관한 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사실확인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I. 효과적인 재활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고비용의 과실

(a) 캘리포니아 교도소 체계는 범죄자 재활과 공공 안전 보호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b) 주 교도소는 현재 17만 5천명의 수감자가 정원 약 10만 명으로 한정된 시설에 가득차 인원이 심하게 초과 수용되어 있고 매우 위험하다. 당수가 비폭력적 범죄와 비폭력적 가석방 위반으로 수용되어 있다.

(c) 약물 중독은 캘리포니아 주 범죄의 주요 원인이며, 피체포자, 수감자 및 가석방자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더욱이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치명적이다. 약물 과용은 미국 내 우발적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며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자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 처벌만으로는 비폭력적 범죄 행위를 변화시키지 못하며, 특히 이러한 범죄 행위가 중독 및 기본적 교육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더 그러하다.

(e) 캘리포니아 주의 교정 체계는 대부분의 수감자와 가석방자에게 의미 있는 재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비폭력적 범죄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재활 프로그램 없이 교도소 안에서 수 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수감자들은 중요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술이나 기회가 전혀 없이 지역 사회로 돌려 보내진다.

(f) 캘리포니아 주의 형법 체계는 약물 남용 및 중독이 원인인 약물 범죄 및 기타 범죄 행위를 범하는 기타 수만 명의 비폭력적 범죄자에 대해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법원에 대해서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경미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흔히 발생하는 성인 마리화나 소지 사건 처리에 이례적인 자원을 쓰도록 요구한다.

(g)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공공 자금으로 제공되는 약물 치료 옵션을 사실상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비극적이고 근시안적인 실패에 해당한다. 약물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약물 중독과 범죄로 얼룩진 삶을 보낼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원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동시에 마리아나 소지로 체포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과학에 기초한 적절한 약물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h) 캘리포니아는 비폭력적 범죄로 수감 경력이 있는 자를 감시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여러 주에서 위험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자들의 감독을 줄이고 재범율도 낮다. 가석방 감독은 강화된 가석방 감독을 받게 되는 중죄자나 폭력적인 범죄자등 위험 요소가 많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i) 수감과 재수감의 높은 비율은 청소년과 비폭력적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 옵션의 부재에서 일부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만원이 된 교도소는 재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며, 비폭력적 수감자와 가석방자에 대한 재활 부재는 갓 출소한 자가 재범과 재수감을 되풀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j)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 및 비폭력적 범죄자, 그리고 비폭력적 수감자 및 가석방자에게 약물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의 범죄성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k)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체계의 위기를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청소년, 비폭력적 범죄자, 비폭력적 수감자 및 가석방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재활, 책임 및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

II.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치료와 재활

(a) 공공 안전은 청소년들이 약물 남용 문제의 초기 증상을 보여 가족 상담을 포함한 약물 교육 및 치료를 제공 받을 때 강화된다.

(b) 공공 안전은 비폭력적, 약물 중독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기 보다는 효과적인 약물 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때에 강화된다.

(c) 공공 안전은 비폭력적 수감자와 가석방자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와 줄 수 있도록 설계된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 강화된다.

(d) 공공 안전과 기관의 안전은 수감자들을 교도소에 정원을 초과하여 억지로 수용하지 않을 때 강화된다. 재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위한 적당한 장소가 있고 재활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교도소 내 감금기간이 최소화될 때에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 나아가 재활 프로그램은 수감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완료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때에 보다 우수한 결과를 달성한다.

(e) 공공 안전은 집행 유예 및 가석방 집행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건들을 감독하고,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때에 강화된다.

(f) 캘리포니아 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며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의 불필요한 수감을 줄일 수 있다:

- (1) 청소년들에게 치료 기회 확대;
- (2) 비폭력적 범죄자들을 치료로 유도하고 이러한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3) 비폭력적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잘 처신하고 의미 있는 재활 프로그램 참여 및 완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고;
- (4) 보다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가석방 자원을 집중하면서 이들의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가석방자들에게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 제공.

III. 감시와 책임은 범죄자 개인과 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요소

(a) 형법 사법 시스템의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참여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리와 함께 치료와 재활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원과 가석방 당국이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b) 형사 사법 시스템은 중독은 그 정의상 만성질환이며 재발한다는 것과 중독 자체로는 형사 처벌받기에 적절한 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중독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

사법 분야의 전문가들은 과학적 연구와, 다른 무엇보다도 다양한 회복 단계를 인식하고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인센티브 사용을 승인하고, 치료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재 규정의 종류와 엄격성을 상당히 완화시킨 최고의 임상시행을 고수할 의무가 있다.

(c)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의 감독과 평가는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과 최고의 시행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연구자들은 청소년, 비폭력적 범죄자, 수감자 및 가석방자를 위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정부 기관은 여론을 수렴하여 이러한 노력이 투명하고 대중에게 반응하도록 독립적인 위원회와 관련 당국이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IV. 치료와 재활은 이미 성공이 입증되었음; 프로그램은 개선, 확대되어야 함

(a) 비폭력적 범죄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널리 마련되어 있는 재활 프로그램은 그 성공이 입증되었다. 2000년 11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비폭력적 마약 소지 범죄자들에 대해 수감 대신 지역 사회에 근거한 약물 치료를 요구하는 발의안 제36호, '2000년 약물 남용 및 범죄 예방 법(Substance Abuse and Crime Prevention Act of 2000)'을 승인하였다.

(b) 2000년에 통과된 이후 발의안 제36호는 19만명 이상의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해 왔다. 또한 매년 약 3만 6천명의 주민들에게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c) 발의안 제36호에 따른 치료성공률은 캘리포니아와 미전역에서 연구된 가장 효과적인 치료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성공률과 같은 수준이다.

(d)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대학의 연구자들이 실시한 독자적 연구에 따르면 발의안 제36호로 인해 납세자들이 프로그램에 매번 1달러를 투자하면 2.50 달러~4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새로운 법 시행후 초기 6년간 납세자들은 약 18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e)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발의안 제36호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올바르게 받지 않은 종류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 2006년에 발표된 두 가지 연구는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조달이 최소한 2억 2천 8백만 달러에서 2억 5천 6백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7-2008년 회계 연도에는 제시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마련되었고 현재 카운티들은 제공된 치료의 종류, 강도 및 질을 상당히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비폭력적 범죄자들을 위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치료에 충분히 투자함으로써 보다 혜택을 얻을 수 있다.

(f) 다수의 다른 주들은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후에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감 경력자들의 재범을 성공적으로 낮추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가 해온 소규모의 노력들은 프로그램의 제한적인 범위와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의 상당한 장애물로 인해 다른 주보다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g) 이제는 발의안 제36호에서 도입한 약물 치료로의 변화를 확대하고 다수의 독자적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연관시키고,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편화 시켜야 할 때이다.

(h) 캘리포니아 주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갇힌 하급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수감후 출소한 자에게 이러한 재활에 대한 책임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범죄 행위의 일부 근본 원인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다수의 범죄자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안으로 되돌아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i) 중독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성급하게 치료와 단절시키고, 예상가능한 재범이나 문제를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 시키는 기존의 법은, 범죄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치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j) 치료 기간 중 재범과 경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수감하는 것은 그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집행유예와 치료가 종료될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사람만 수감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부여와 완전한 제재가 실패한 경우에만 수감되어야 한다.

(k) 지역 사회에 근거한 치료는, 범죄자의 행동이 근본적인 약물 남용 문제가 주 원인이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발의안 제36호의 적용 대상을 제외한 넓은 범위의 비폭력적 범죄자들을 위한 선택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들이 수감 대신 치료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 사법 체계에 있는 범죄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책임을 부여하여 미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과 자원이 주어져야 한다.

(l) 2006년에 의회는 상원 법안 제1137호 (63장, 2006 법령)로 알려진 법률안을 통과시켜 발의안 제36호를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발의된 개정안은 원 조례와 충돌이 있어 헌법에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금지한 바 있다. 개정안이 무효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의회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조례를 고려함에 있어 주민들은 상당히 흡사한 입법례를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2006 법률안을 유권자의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제3조. 목적과 의도.

주민들은 이 발의안의 의도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범죄 예방, 중독으로부터 회복 장려, 재활 서비스와 정의 회복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과 비폭력 범죄자들의 책임 강화.

(b) 교도소의 초과 수감 인원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와 성범죄자를 교도소의 주된 수감 대상으로 하는 것.

(c) 형법의 제1000조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면서 위협에 처한 청소년과 법원 시스템을 통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한 개인의 약물 남용 문제의 중대성과 범죄경력과 직결되는 치료완료 단계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약물 치료와 관련 서비스를 보급.

(d)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습범 비율을 낮추고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표로 교도소 수감자, 가석방자 및 이전 가석방자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재활 프로그램 수립.

(e) 개인적 용도로 마리화나를 소량 소지한 것은 경미한 법률 위반으로써 벌금으로 처벌하여 개인적 용도로 마리화나 소지 성인에 대해 현재 소모하고 있는 귀중한 법원 자원을 보존. 마리화나 사용으로 검거된 청소년들은 과학에 의거한 적절한 약물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도하고, 마리화나 소지로 검거된 자들이 납부한 벌금을 전용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으로 공급.

(f) 비폭력적 가석방자가 중대하거나 폭력적인 중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거나, 등록을 요하는 성범죄자나 집단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비폭력적 가석방자의 경미한 가석방 위반 처벌시 주 교도소의 이용을 제한.

(g) 치료와 재활에 참여하는 비폭력적 범죄자, 수감자, 가석방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보상을 제공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에의 참여와 완료를 권장.

(h) 비폭력적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주요 쟁점으로 하여 형사 사법 시스템을 개선.

(i) 수감자 교화와 수감경력자 재활이라는 사명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사명은 교정재활국의 새 장관을 포함하는 새로운 재활 관련 직위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가석방을 통합하여 주 교정 체계를 변모시킬.

(j) 중대하고 폭력적인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감독 확대, 가석방 집행관들이 보다 위험한 범죄자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석방 업무량 축소.

(k) 비폭력적 범죄자가 중독과 범죄의 삶을 벗어나 사회로의 재통합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비폭력적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감독의 초점을 새로 정립.

(l)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위해 고품질의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재원 조달.

(m) 비폭력적 범죄자, 교도소 수감자 및 가석방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 때 이 발의안의 규정상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에 제한을 두지 않음.

(n) 카운티 구치소의 수감자들에게 약물 과용 인식 및 예방 교육을 제공하여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과 질병 방지.

(o) 이 법령 시행을 구체화하고 감시하는 대중의 눈과 귀, 목소리로 봉사를 돕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그룹을 임명하여, 이 법령에 개요가 설명된 프로그램 시행의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과 지도를 보장.

(p) 캘리포니아 주에서 약물 관련 범죄를 다루는 법원에 충분히 재원을 조달하여 법원이 고유의 자격 기준 및 운용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한편, 예산, 지출, 운용 및 치료 결과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고하도록 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에 책임을 부여.

(q) 선거시 본 조례의 사안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최종 판단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 미래에 선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원 법안 제1137호 (63장, 2006 법령)의 규정을 충족.

제4조. 재활 및 가석방 장관을 교정재활국에 추가.

제4.1조. 정부 법령의 제1283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38조. (a) 주 정부 기관인 교정재활국에 신설하여 ~~장관~~ 두 장관들이 이끌어 나가되, 장관은 '재활 및 가석방 장'과 '교정국 장'으로 명명될 두 명의 장관으로 한다. 재활 및 가석방 장관은 주지사가 2009년 2월 1일까지 임명하되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교정부 장관은 주지사가 임명해야 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임기가 결정된다. 장관들은 재임명될 수 있다. 교정재활국은 성인운영부(Adult Operations), 성인부 프로그램(Adult Programs), 청소년부(Juvenile Justice), 교정 표준 당국(the Corrections Standards Authority), ~~가석방 심의회(the Board of Parole Hearings)~~, 청소년부 주 위원회(the State Commission on Juvenile Justice), 교도소 연합 당국(the Prison Industry Authority), ~~크라운 교도소 연합회(the Prison Industry Board)~~와 ~~가석방 심의회(the Board of Parole Hearings)~~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가석방 정책, 프로그램 및 심의회(Parole Policy, Programs and Hearings)로 이루어진다. 두 장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1) 재활 및 가석방국 장관은 이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교정재활국이 교도소 안팎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든 가석방 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형법 제 4056.5조와 제5060조에 명시된 직무를 실행한다.

(2) 교정부 장관은 교정 시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형법 제5054.1조, 제5054.2조, 제5061조, 제5062조, 제5063조 및 제5084조에 명시된 직무를 실행한다.

(3) 주 의회는 각 직위의 목적과 의도에 합치하도록 장관들의 책임을 다수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b) 주지사는 ~~장관~~장관들의 추천을 받아 두 명의 교정재활국 차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차관은 5년의 임기를 가진다. 임기는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 명의 차관은 프로그램 지원을 감독하고 다른 한 명은 차관 부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감독한다. 이 법령의 효력 발효일에 재직 중인 차관들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다.

(c) 주지사는 ~~장관~~장관들의 추천을 받아 세 명의 차관보를 임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차관보들은 5년의 임기를 가진다. 임기는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 명의 차관보는 성인운영부를 감독하고 다른 차관보는 성인부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나머지 한 명의 차관보는 교정재활국의 청소년부를 감독한다. 이 법령의 효력 발효일에 재직 중인 차관보들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임기를 계속한다.

(d) 주지사는 ~~장관~~장관들의 추천을 받아 한 명의 부국장(assistant secretary)을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국장은 부서의 의료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e) 주지사는 ~~장관~~장관들의 추천을 받아 피해자와 생존자 권리 및 서비스(Victim and Survivor Rights and Services)부서의 부국장 한 명과 교정시설 안전(Correctional Safety)부서의 부국장 한 명을 임명해야 하며 이들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제5조. 정부 법령의 제12838.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38.1조. (a) 교정재활국에서 성인운영부 차관보 하에 성인 시설 부서(Division of Adult Institution)와 ~~성인 가석방 운영부(Division of Adult Parole Operations)~~를 신설한다. ~~각~~ 이 부서는 부서의장이 최고 책임자가 된다. 부서의장은 주지사가 ~~장관~~장관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b) 주지사는 **강관** 장관들의 추천을 받아 성인 시설 부서의 장 밑에서 근무할 하위 공무원들을 임명한다. 이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며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이 하위 부서에 임명되는 하위 공무원들은 성인 시설 부서에 속한다고 명시한 범주를 감독하며 이 중 하나는 여성 범죄자 시설들이다.

제6조. 정부 법령의 제12838.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38.2조. (a) 교정재활국의 성인부 프로그램 차관보 아래 지역사회 협력 부서(Division of Community Partnerships), 교육, 직업 및 범죄자 프로그램 부서(Division of Education, Vocations and Offender Programs) 및 교정 시설 의료 서비스 부서(Division of Correctional Health Care Services)를 신설한다. 각 부서는 부서의장이 이끌어 간다. 부서의장은 주지사가 **강관** 장관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b) 교정재활국의 재활 및 가석방 장관 아래 가석방 정책, 프로그램 및 심리 부서(Division of Parole Policy, Programs and Hearings)를 신설하며 이 부서는 다른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심리 및 성인부 가석방 운영 당국(Adult Parole Operations Authority)을 포함하며 이전의 성인부 가석방 운용 부서(Division of Adult Parole Operations)의 권한, 직무, 책임, 법적 책임, 채무 및 법적 관할 일체를 보유한다. 각 부서는 부서의장이 이끌어간다. 부서의장은 주지사가 재활 및 가석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5년의 임기를 가지며 재임명될 수 있다. 재활 및 가석방부 장관은 수감경력자의 성공적인 사회로의 재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가석방 정책, 프로그램 및 심리 부서가 자신의 직접 권한 하에 있는 다른 부서 및 교정재활국 내의 다른 부서들과 필요할 때마다 충분히 업무를 조정하도록 보장한다.

(c) 교정재활국 내에서 재활 및 가석방 장 아래 회복 및 재활화 문제 연구 부서(Division of Research for Recovery and Re-Entry Matters)를 둔다. 이 부서는 부서의장이 이끌어간다. 장은 주지사가 재활 및 가석방부 장관이 임명하고 5년의 임기를 가지며 재임명될 수 있다. 이 부서는 가석방 교정 감독 및 책임 위원회(Parole Reform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Board)의 명령에 합치하도록 교정재활국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표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주의회가 다수결로 재활 및 가석방부 장관 직속 부서를 추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조. 정부 법령의 제12838.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38.4조. 가석방 심리 위원회를 신설한다. 가석방 위원회는 ~~17~~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주지사가 **재활 및 가석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되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3년의 임기를 가진다. 가석방 심의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형기 위원회(Board of Prison Terms), 마약 중독 평가 당국(Narcotic Addict Evaluation Authority) 및 청소년 범죄자 가석방 위원회(Youthful Offender Parole Board)의 권한, 직무, 업무상 책임, 법적 책임, 채무 및 법적 관할 일체를 승계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상기 열거한 조직들은 “전신 기관”으로 명명한다. 이 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의 효력 발효일에 가석방 심리 위원회에 재직 중인 위원들은 남아 있는 임기 동안 계속 재직한다.

제8조. 정부 법령의 제12838.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38.7조. (a) 교정재활국의 **강관** 장관들은 교정재활국의 최고 집행 ~~사무관~~ 사무관들로서 재직하며 제12838조의 (a)항에 따라 의회에서 규정된 각각의 법적 관할 내에서 정부 법령 제2편 3절 1부 2장 (제11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부서의 장에게 수여되는 모든 권한과 직권을 가진다.

(b) 다른 어떠한 권한이나 직무를 제한하지 않고 **강관** 장관들은 주의 계획, 이해규약, 행정 명령, 정부 기관 간 합의, 단언, 단일 주 기관의 법적 의무, 연방법과 규정 및 형식을 불문하고 필수적인 정부 업무가 의존하거나 주 부서, 연금 기금 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나 법적 책임을 충족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제12838.4조 또는 제12838.5조에 따라 폐지된 기관, 위원회 또는 부서의 특정한 법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개인, 그룹 및 자원의 지명, 임명 및 제공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9조. 정부 법령의 제12838.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38.12조. (a) 전신 기관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임시직을 제외하고 본 조직 재정비 계획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고 주의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제19050.9조의 규정에 따라 교정재활국으로 인사 이동된다.

(b) 지속 기관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임시직을 제외하고 본 조직 재정비 계획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고 주의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제19050.9조의 규정에 따라 지속되는 기관에서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c) 선임 기관의 간부나 직원의 지위, 직위 및 권한은 인사 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 시민 서비스 법령(State Civil Service Act)(정부 법령 제2편 5절의 2부(제1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교정재활국의 간부나 직원이 그대로 보유하며),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지위의 간부나 직원은 제외한다.

(d) 이 법령에 따라 재활 및 가석방부 장관 하에 신설되는 모든 지위는 법에서 허용되는 정도까지 동일한 종류의 재활 담당 직원, 공공 평화 유지사관 및 이 법령에 앞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재활국이 채용했던 다른 직원들이 담당하며, 교정재활국 간부 또는 직원의 지위, 직위 및 권한은 본 법령이 요구하는 교정재활국의 구조 조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 시민 서비스 법령(정부 법령 제2편 5절의 2부(제1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지위를 제외한 간부 및 직원은 교정재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도이다.

제10조. 정부 법령의 제12838.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38.13조. ~~재활 및 가석방부 장관을 2009년 2월 1일까지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항은 개정된 대로~~ 2005년 2009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제11조. 정부 법령의 제12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0조. 제1210.01조에서 제1210.05조, 이 법령의 제1210.1조, 제1210.2조, 제3063.1조 및 건강 및 안전 법령의 10.8(제1199.4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된 문구는 다음과 같은 정리가 적용된다:

(a)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란 건강 및 안전 법령 제11054조, 제11055조, 제11056조, 제11057조, 제11058조에 규정된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의 위법적인 개인적 사용, 개인적 사용을 위한 소지나 운반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혹은 법적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써 건강 및 안전 법령의 제11550조를 위반하는 범죄, 혹은 건강 및 안전 법령 제11364조나 업무 및 직업 법령의 제4140조에 규정된 사용 기구 관련 범죄를 의미한다.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는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의 판매, 판매를 위한 운송, 제조 또는 생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제4573.6조나 제4573.8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에게 단순한 소지의 유죄를 인정하는 배심원의 결정은 피고가 본 법령의 다른 조에 규정된 기타 실격 요소가 없을 경우 본 법령에 따라 가석방 자격이 있다고 처벌의 방향을 결정하는 확인에 해당한다. *People v. Dove, 124 Cal. App.4th 1 (2004)*는 따라서 법적으로 무효화된다.

(b) “약물 치료 프로그램”, “감정 치료 프로그램” 또는 “약물 치료”란 주의 허가를 받거나 공인 받은 지역 사회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과학에 근거한 약물에 대한 교육, 외래 환자 서비스, 투약 치료, ~~마약 대체 요법~~, 거주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마약 중독자 치료 서비스~~, 사후 관리 또는 지속 관리 서비스.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약물 치료”는 재향 군인 부서의 재향 군인 건강 관리국의 지도 하에 운영되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제8001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은 본 하위 조항에서 요구되는 라이선스 발급 또는 인증 규정과 관계 없이 약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 보호 감독이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마약 중독자 치료 서비스 그리고/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는 본 하위 조항에 정의된 대로 약물 치료의 일부로서 제공될 수 있지만 두 서비스 모두 치료로서 기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약물 치료”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 또는 기타 보호 감호 시설에서 제공되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c) “투약 치료”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약물 치료의 일부 또는 약물 치료에 대한 보조나 보충 수단으로서, 처방약을 의학적으로 지시

또는 관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는 항정신병약, 재발 방지약, 신경안정제, 메타도네와 부프레오핀을 포함하는 합성 진통 마취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약물 또는 의술은 투약 치료의 일부로 사용되는 합법적인 것이며 치료 서비스 비용에 추가되는 합법적인 경비로 추정한다.

(d) “폐해 감소 치료” 또는 “폐해 감소 서비스”란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 및 가족, 타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타 유해한 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장려하는 공공 건강 철학에 따라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폐해 감소 치료는 사람들이 알코올을 포함하는 약물을 다양한 이유로 사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생에 걸쳐 정신 활성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구축되는 복잡한 관계를 사회적, 직업적 영향과 약물 오용의 심리학적, 감정적 관계라는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통합적인 치료 접근을 시도한다. 폐해 감소 프로그램은 판단이나 비난이 없이 사람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e) “성공적인 치료 완료”란 가석방 조건으로서 약물 치료를 받는 피고인이 치료 제공자가 권장하고 법원에서 명령한 대로 처방된 약물 치료 과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 앞으로 피고인이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완료 치료의 성공적 완료는 ~~약물 대체 치료 중단~~, 투약 치료 기타 유효한 처방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법에 따라 치료에 사용된 것으로서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약물 투여의 종료나 해독을 요구하지 않는다.

(f) “약물 사용과 관련 없는 경범죄”란 (1) 약물 또는 약물 기구의 단순 소지나 사용, 약물이 사용된 장소에 있었던 것 또는 약물 범죄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 또는 (2) (1)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경범죄를 의미한다.

(g) “임상 평가”란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 따라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문제 주 당국에서 인정한 약물 치료 전문가가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하며 이 평가는 개인의 사회적, 교육 환경, 중독 심각성, 기타 합성 진통 마취제 치료를 포함하여 개인의 필요와 적절한 약물 치료 과정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한다. 적절한 경우 임상 평가는 정신 건강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 그리고/또는 정신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h) “범죄 경력 평가”란 가석방 부서 또는 법원이 지명한 기타 기관이 피고의 체포, 유죄 판결, 수감 및 재범 경력을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들의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는 피고의 재범 위험과 관련한 의견이나 권장안 및 피고를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i) “중독 치료 훈련”이란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치료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약물 남용 및 중독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중독 치료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은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주 부서(State Department of Alcohol and Drug Programs)가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주 전체 의사 협회 및 법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모든 중독 치료 훈련 코스의 필수 과정 중 하나는 합성 진통 마취제 중독과 관련된 교육 및 합성 진통 마취제 저하 치료를 다루어야 하며 하나의 코스는 폐해 감소의 원리와 실행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감독 위원회가 승인한 금액만큼 약물 남용 치료 기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j) “인센티브 및 보상”이란 피고의 발전, 일정한 목표나 기준치 달성, 본 조에 따라 실시된 치료 과정에서 보여 준 기타 모범적인 행위 등에 대한 치료 제공자나 법원의 반응 또는 앞으로의 발전과 모범적인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보상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카운티는 감독 위원회에서 승인한 규정에 따라, 본 조에서 배정된 자금을 사용해서 본 조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주 정부 당국은 적절한 인센티브와 보상의 예를 제시하는 목록을 매년 출간해야 한다.

(k) “약물과 관련된 가석방 조건”이란 문구는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하며 가석방자의 특정한 약물 치료 일정, 고용,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l) “단계적 제재”란 피고의 적절치 못한 행동, 가석방 규정 위반, 치료 중 재발 등에 대한 치료 제공자 또는 법원의 대응으로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정적인 조치를 부과하며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재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최소한의 부정적 조치에서 시작하여, 추가적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 위반 또는 재발이 있을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그 예로는 치료 추가, 약물 검사 빈도 증가, 법원 출석이나 대 지역 사회 서비스 횟수 강화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주 정부 당국은 적절한 제재의 예시 목록을 매년 출간해야 한다. 단계적 제재는 구치소 수감은 포함하지 않는다.

(m) “구치소 제재”란 피고의 부정 행위나 가석방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로 카운티 유치장 수감을 명령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구치소 수감에 허용되는 기간은 법률로 명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떠한 유치장 수감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구치소 수감 제재 부과는 약물 치료의 중단을 요하거나 내포하고 있지 않다.

구치소 수감 제재 처분 결정시 법원은 다른 요인 중에서도 위반 정도의 심각성, 예전 치료 준수 정도, 고용, 교육, 직업 훈련, 의학적 상태, 합성 진통 마취제 저하 치료를 포함한 의학적 치료, 피고를 치료하는 자격 있는 의사가 심리에 출석하여 제시할 소견, 자녀 양육 의무 및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불법 약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 구치소 내에서 이러한 약물 사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리고 구치소에서의 약물 사용으로 인한 약물 관련 피해 영향을 문서로 기록한 것 등도 고려해야 한다.

(n) “청소년 프로그램”이란 감독 위원회에서 정립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폭력적이지만 미래에 약물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해 제공되는 비보호관찰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약물 치료 프로그램; 청소년, 부모, 후견자 또는 기타 1차 양육권자를 위한 가족 치료; 정신 건강 상담; 신경정신적 측면과 관련한 의약품, 상담 및 자문; 대학, 종합대학, 기술 및 전문 학교 교육비; 고용 수당;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통 수단.

제12조. 제1210.01조는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제1210.01조. 부과 또는 자격 판단에 앞서 피고 평가.

(a) 기타 어떠한 범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10.1조, 제1210.2조를 포함하여 제1210.03조-제1210.05조에서 규정된 트랙 I, 트랙 II, 또는 트랙 III 에 따른 치료를 요할 수 있는 범죄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법원은 임상 평가 그리고/또는 범죄 이력 평가를 명할 수 있다. 임상 평가 비용은 본 법령에 따라 제공된 자금에서 변상해야 한다. 피고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를 가지며 소환되어 유죄 협상을 거친 후까지 임상 평가 그리고/또는 범죄 이력 평가를 위한 인터뷰를 거절할 수 있다.

(b) 임상 평가 또는 범죄 이력 평가를 위해 출석한 피고의 진술 또는 혐의가 있는 구체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실시한 평가 및 진단 도중 노출된 정보는 구형을 위한 심리를 포함하여 이후 필요한 모든 조치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의 효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13조. 제1210.02조는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제1210.02조. 치료 배치, 모니터링 조건, 비용 지급, 법적 훈련.

(a) 트랙 I, 트랙 II, 또는 트랙 III 하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피고는 적절한 치료에 배치해야 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모니터링 조건을 가진다:

(1)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피고에 대한 임상 평가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피고를 위한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 및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은 판단하기에 앞서 법원은 피고가 신속하게 치료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잠정 조치로서 피고의 요구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잠정 조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잠정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피고는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에 투입될 때까지 가석방 규정 중 약물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잠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고는 참여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이나 가석방 규정 중 약물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법원은 피고가 잠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을 필요한 전체 치료 기간에 기산해야 한다.

(2) 법원은 임상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합성 진통 마취제 저하 치료 또는 투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3) 피고에게 부과되는 적절한 모니터링 조건 및 요구 조건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피고에 범죄 경력 평가와 임상 평가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4) 피고는 어떤 카운티에서든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트랙 I, 트랙 II, 트랙 III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고에게는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약물 반응 검사를 위해 소변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는 피고의 재발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법원의 대처를 수립하기 위한 치료 도구로만 사용해야 한다. 피고의 개별 치료 프로그램의 다른 측면보다 이 분석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없다. 이러한 검사의 결과는 새로운 형사 기소 또는 절차의 증거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트랙 I 하에서 판결 등기가 유예되어 있는 피고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등기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가석방 위반 발생 증거로도 인정될 수 없다. 분석을 실시한 실험실이 다음과 같은 절차와 표준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때에만 법원은 검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유효성 검사, 초기 및 확인 검사, 컷오프 농도, 희석 및 불순물 기준, 분할된 표본 절차.

(6) 다른 경우로 치료에 참여 자격이 없는 자는 동반 발생한 신경 정신적 장애, 개발 장애 또는 언어 장애를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치료 참여 자격이 있는 피고에게는 투여 치료, 또는 유효한 처방이나 주 법에 따라 투여하고 있는 기타 약의 투여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처방이나 주 법의 유효성 여부는 법원의 확인 결과에 따른다.

(7) 법의 다른 규정상 산정된 벌금 일체에 추가하여 사실심 재판관은 트랙 I, 트랙 II, 트랙 III 치료를 받고 있는 자 중 합리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 또는 소변 분석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치료 제공자가 피고의 프로그램 완료 보고를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B)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법원으로 하여금 범죄 혐의, 기소, 청구 또는 유죄 판결의 기각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C)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트랙 I 또는 II에 따른 치료의 만족스러운 이행이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기록을 봉인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D) 치료 완료 전후 법원은 미결제 수수료, 벌금 또는 법원 비용 지급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종류를 불문하고 남아 있는 미결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행정적 또는 민사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E) 약물 치료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법원이 명령한 적절한 약물 치료나 소변 분석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8) 또한 법원은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가족 상담, 의료 서비스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정신 건강 서비스, 읽기 쓰기 훈련 그리고/또는 대 지역 사회 서비스, 폐해 감소 서비스 기타 피고에 대한 임상 평가나 피고의 요구에 대한 다른 평가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b) 2010년 7월 1일 이후 피고에게 임상 평가를 위해 출석할 것을 명한 후 트랙 I, 트랙 II, 또는 트랙 III 사건을 정기적으로 주재하는 모든 판사는 매년 중독 치료 훈련 코스를 이수해야 한다.

제14조. 제1210.03조는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제1210.03조. 트랙 I 판결 등기 유예가 허용되는 치료.

(a) 어떠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피고에게는 약물 치료를 제공한다. 피고는 다음의 경우 트랙 I의 부과 옵션, 법적 제재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다:

(1) 피고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로 기소된 경우.

(2) 피고가 제667.5조의 (c)항에 폭력적인 중범죄로 정의된 범죄 또는 제1192.7조의 (c)항에 중대한 범죄로 정의된 범죄로 기소된 적이 전혀 없을 것.

(3) 피고가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일로부터 5년 이내 이 범죄를 제외하고 어떠한 중범죄로도 기소된 적이 없을 것.

(4) 피고가 하나의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 이외의 어떠한 범죄 혐의도 받고 있지 않을 것.

(b) (a)항의 (4)절에 규정된 다른 범죄로 병행 기소 - 동일한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동일 관할 지역이든 다른 관할 지역이든 -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자격을 얻지 못한 피고는

법원에서 판결 등기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피고에게 이익이며 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본 조에 따라 트랙 I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c) 피고는 트랙 I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어떠한 피고에 대해서도 제1000조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트랙 I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d) 어떠한 피고라도 피고가 (a)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법원에서 (b)항에 규정된 확인을 한 경우 피고 측 변호사, 검사, 또는 법원은 그 자신의 결정으로 트랙 I 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의 트랙 I 치료 참여 자격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에 의한 심리를 명해야 한다. 피고가 치료 참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가 참여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e) 법원이 피고가 트랙 I 치료 참여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피고 및 그의 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1) 트랙 I 치료의 절차에 대한 완전한 설명, 피고에게 허용되는 면제, 피고가 프로그램을 거부할 권리, 프로그램 진행 중 피고의 권리, 프로그램의 예상 지속 기간, 프로그램 종료 시 피고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

(2) 가석방 당국, 검사, 프로그램 및 법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일반적 설명. 판결 등기가 유예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범죄 기록 보유 및 최종 결정 설명, 체포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있어 피고의 권리 설명,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료에 따른 판결 등기 유예에 대한 설명.

(f) 피고가 동의하고 신속한 공판 또는 예심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피고가 혐의가 의심되는 범죄에 유죄를 인정하고 판결 발표를 위한 시간을 포기했다면 법원은 판결 보류를 허용해야 한다.

(g) 판결 등기 유예가 허용되는 때, 피고가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가석방 보석금이나 보증 또는 이를 대신한 예탁금은 면제해야 한다.

(h) 판결 등기 유예를 허락한 시점에 법원은 체포와 구금에 관한 모든 기록을 포함한 해당 범죄와 관련한 모든 기록과 파일을 일반 대중이 볼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한다. 그 기간은 본 조에서 언급된 치료 프로그램에 피고가 참여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프로그램의 대기 목록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i) 법원은 피고에게 임상 평가 및 범죄 기록 평가를 위해 출석할 것을 명하고 이후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완료할 것을 명한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격 여부 결정 전 피고에 대해 실시한 임상 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새 평가를 명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제1210.02조의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피고를 치료에 투입하고 모니터링 조건을 수립한다.

(j) 피고가 본 조에 따라 판결 등기 유예를 허용 받고 허용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법원은 양 당사자, 가석방국 및 치료 제공자의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심리에서 피고는 치료 및 판결 등기 유예를 거부할 수 있다.

피고가 치료를 거부하지 않았으면서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를 치료 프로그램에 다시 보낼 수 있고 단계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판결을 등기할 수 있다. 단, 피고가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없는 카운티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거나,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피고에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교통 서비스가 필요한 데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피고가 치료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 카운티의 잘못 때문이라면 법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판결을 등기해서는 안 된다. 치료를 시작하지 않아서 판결이 등기된 피고는 트랙 II 치료로 이전된다.

법원은 피고가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비롯하여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30일 내 감독 위원회가 요구한 형식으로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치료와 관련 있는 이러한 데이터는 교정재활국 또는 감독 위원회가 임명한 조사자들이 카운티별로 그리고 주 전체를 기준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발표되어야 한다.

(k) 판결 등기 유예가 허용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이다. 경과 보고는 법원이 지시한 대로 치료 제공자와 가석방국에서 법원과 협력하여 제출한다.

(l) 치료 과정 중 혐의가 있는 특정 범죄와 관련하여 얻어진 피고의 진술 또는 정보는 구형을 위한 심리를 포함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의 효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m) 건강 및 안전 법령의 제11368조의 위반으로 유예된 판결 기록은 행정 기관이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라이선스 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하위 규정의 어떤 것도 제1210.05조 규정을 확장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n) 이 장에 따른 피고의 유죄 협상은 제1210.04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생기지 않는 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유죄 판결이 되지 않는다.

(o) 피고의 발전을 평가하는 정기적 검토 심리 동안 법원은 지속적인 발전을 격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보상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치료 제공자나 가석방국에서 보고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판결을 등기하지 않고 단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트랙 I 치료에 참여한 피고에게 구치소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p) 판결 등기 유예가 허용된 기간 동안 피고가 만족스럽게 치료를 이행한 경우 혐의가 의심되는 범죄는 기각해야 하고 체포 및 구금 기록을 포함한 사건 기록 및 파일은 영구 봉인한다.

제15조. 제1210.04조는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제1210.04조. 치료 제공자, 검사, 법원 또는 가석방국에서 피고가 지정된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행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피고가 약물 사용과 관련 없는 부정 행위로 기소되었거나 비폭력적 마약 소지 범죄가 아닌 중죄로 기소되었거나 판결 유예 등기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범죄 행위에 참여한 경우 검사 또는 법원은 자신의 재량으로 판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에게 통지 후 법원은 판결을 등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치료 제공자, 검사, 법원 또는 가석방국에서 피고가 지정된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 치료, 재활로부터 피고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법원이 피고가 위에서 명시한 범죄로 기소된 것을 발견했거나, 판결 유예 등기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범죄 행위에 피고가 참여한 경우 기소된 혐의가 의심되거나 혐의를 인정한 범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판결을 등기하며 본 법령에 규정된 대로 형기에 대한 심리 일정을 세워야 한다.

피고가 치료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피고의 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자격 있는 치료 전문가가 법원에 제공한 평가와 함께 피고의 치료 부기 및 치료 계획 내 성공적인 치료 계속 진행에 대한 치료 제공자의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

법원이 판결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 치료 제공자의 권고에 따라 치료 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단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이 판결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자격이 있으면 트랙 II 가석방 및 치료를 신고해야 한다. 피고가 약물 사용과 관련 없는 새로운 경범죄 또는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가 아닌 중범죄를 범한 경우 형기 산정은 본 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6조. 제1210.05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1210.05조. (a) 법무부에 제출된 기록은 본 장에 따라 유예된 처분을 기재해야 한다.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판결 등기 유예를 허용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종료에 있으면 판결이 보류된 체포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는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함에 있어,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체포되지 않았거나 판결 등기 유예를 허락 받았다는 점을 표시할 수 있다. 판결 등기가 유예된 치료 프로그램의 원인이 되는 체포와 관련된 기록은 고용 거부, 연금 거부, 허가증 또는 자격증 발급 거부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 피고가 판결 등기 유예를 허가 받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법무부에서 치안관 신청서에 대한 답변으로 판결이 유예된 원인이 되는 체포를 공개할 수 있고 (a) 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는 제830조에 정의된 대로 고용 또는 치안관 신청서나 설문조사지에 포함된 직접적 질문에 답변시 이 체포를 공개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형법의 제1210.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0.1조. 트랙 II. 유죄 판결 후 치료.

(a)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f)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트랙 I의 판결 등기 유예 자격이 없고 비폭력 약물 소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는 가석방 되어야 한다. 가석방의 조건으로 법원은 적절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완료를 요구해야 한다. 법원은 가석방 조건으로 적절한 약물 검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가석방 조건으로 직업 훈련, 가족 상담, 읽기 쓰기 교육 크리코/또는 지역 사회 서비스에의 참여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가석방의 추가 조건으로 수감을 명할 수는 없다. ~~그 외에도~~ 법원은 피고에게 임상 평가 및 범죄 기록 평가를 위해 출석할 것을 명하고 이후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완료를 할 것을 명한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격 여부 결정 전 피고에 대해 실시한 임상 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새 평가를 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원은 제1210.02조의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피고를 치료에 투입하고 모니터링 조건을 수립한다.

(b) 이 하위 조항에서 부여된 제한을 제외하고는 예심 법원은 부과하는 가석방 조건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형기 부과를 중단함으로써 가석방을 부과해야 한다. 어떠한 자도 동시에 발생한 신경 정신적 또는 발달 장애의 증거에만 의존하여 2000년 약물 남용 및 범죄 예방 법령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기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c) (a)항에 따라 가석방을 허락 받은 경우 피고가 치료를 받거나 치료 대기 목록에 있는 동안 법원은 체포, 구금 및 유죄 판결을 포함하여 치료의 원인이 된 범죄와 관련한 모든 기록 및 파일을 봉인해야 한다.

(d)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본 조에 따라 가석방이 명해진 자는 전용 법원 일정 사용 및 치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치료 제공자, 가석방, 약물 검사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포함하는 협력적 법원 감독 모델, 및 검토 위원회에서의 경과 관찰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정도까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법원의 다른 규정 상 인정된 벌금 일체에 추가하여 사실심 재판관은 약물 소지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중 합리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신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 본 조에 따라 약물 치료 프로그램 완료를 명령 받은 자에게는 치료 중 건강 및 안전 법령의 제11590조의 약물 범죄자 등록 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면제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영구적으로 된다. 약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없다고 간주되는 비폭력적 약물 범죄로 기소된 경우 또는 본 법령의 지속적인 참여에서 제외되었던 자는 건강 및 안전 법령의 제11590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b)(f) 하위 조항 (a)는 다음의 어떤 항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제667.5조의 (c)항 또는 제1192.7조의 (c)항에 정의된 폭력적 또는 중대한 범죄로 각각 예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는 피고로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가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를 제외한 중범죄 유죄 판결을 초래한 범죄를 범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신체 상해 위험과 관련한 경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교도소 수감도 없었던 5년 동안의 기간 이후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물 소지 범죄에 추가하여 약물 사용과 관련되지 않은 경범죄 또는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가 아닌 중범죄의 동일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로 경범죄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가 (a)항의 치료 참여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약물 치료 참여 중 형기 진행을 중단한 경우는 제외.

(3) 치명적 무기를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한 채로 건강 및 안전 법령의 제11054조, 제11055조, 제11056조, 제11057조 및 제11058조에 명시된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이 약물의 영향을 받은 피고.

(4) 가석방 조건인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피고.

(5)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로 두 개의 개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으로서 (a)항에 따라 두 개의 개별 약물 치료 과정에 참여했고 법원의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제1210조의 (b)항에 정의된 가능한 어떠한 약물 치료 방법에 의해서도 교정 가능하지 않다고 선언된 경우.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심 법원은 피고에게 구류 30일을 신고해야 한다.

(6) 현 유죄 판결 전 30개월 내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를 포함하거나 경미한 법률 위반을 포함하지 않는 5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나 병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 이 사실에만 근거하여

트랙 II 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피고는 트랙 III 치료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g) 어떠한 피고에 대해서도 제1000조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트랙 II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결해서는 안된다.

(c) (1) 최소한 세 개의 약물 비관련 증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제667.5조의 (b)항의 의미에 따라 세 개의 개별 형기를 마친 피고는 하위 조항(a)의 치료에 참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원은 검사 또는 자신의 신장에 따라 법원이 (a)항 하에서 피고가 다른 사람들의 인건에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며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서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한 경우에는 이러한 피고를 제외할 수 있다. 법원은 자신의 판단 및 판단의 이유를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2) 30개월 내 경범죄 또는 증범죄로 적어도 5번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는 하위 조항(a)항의 치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원은 법원 또는 검사의 신장에 따라 피고나 다른 사람들의 인건에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며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서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한 경우에는 피고를 하위 조항(a)의 치료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법원은 자신의 판단 및 판단의 이유를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d) (h) (a)항에 따라 가석방 부과 명령이 있는 지 7일 내 가석방국은 지정된 약물 치료 제공자에게 통지하여 (a)항의 약물 치료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이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 치료 제공자는 치료 계획을 작성하여 가석방국에 발송하여 법원과 변호인 측에 배포하도록 한다. 치료 제공자는 가석방국에 표준 치료 경과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여기에는 모든 약물 검사 결과를 비롯하여 가석방국에서 판단한 최소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소한 보고서는 90일에 한 번 또는 법원이 지정한 대로 이보다 자주 제공되어야 한다.

(1) 피고가 (a)항에 따라 가석방을 명령받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법원은 양 당사자, 가석방국 및 치료 제공자의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심리에서 피고는 (a)항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피고가 치료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를 치료 프로그램에 다시 보낼 수 있고 단계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피소의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피고가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없는 카운티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거나, 양육을 담당하는 피고에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교통 서비스가 필요한 데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피고가 치료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한 카운티의 잘못때문이라면 법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가석방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치료를 시작하지 않아서 가석방이 취소된 피고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트랙III 치료로 이전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비롯하여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과 관련 있는 모든 데이터를 30일 내 감독 위원회가 요구한 형식으로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치료와 관련 있는 이러한 데이터는 교정재활국 또는 감독 위원회가 임명한 조사자들이 카운티별로 그리고 주 전체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발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발전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 검토 심리 동안 법원은 지속적인 발전을 격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보상 사용을 고려해야 하고 치료 제공자 또는 가석방국이 보고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혹은 법원의 재량으로 가석방 위반 발생 발견 여부에 상관 없이 단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3) 약물 치료 중 언제라도 치료 제공자는 가석방국과 법원에 피고가 제공 받는 약물 치료에 순응하지 않지만 다른 약물 치료나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순응할 수 있다고 통지할 수 있고 가석방국은 법원에 가석방 조건을 변경하도록 신청하거나 피고가 대체 약물 치료나 프로그램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심리 후 법원이 직접 가석방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약물 치료 중 언제라도 치료 제공자가 가석방국과 법원에 피고가 제공받는 약물 치료는 물론 제1210조 (b)항에 따른 어떠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으로도 순응할 수 없다고 통지하는 경우 가석방국은 가석방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가석방 취소를 결정하는

심리에서 검사는 제1210조의 (b)항에 따른 모든 약물 치료에 피고가 순응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고 피고가 제1210조의 (b)항에 따른 모든 약물 치료 프로그램으로 순응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면 이에 따라 법원은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5) 가석방 의 필수 조건으로서 (a)항에 따라 제공되는 약물 치료 서비스는 법원에서, 약물 치료가 성공적이라면 12개월이 넘는 치료 서비스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것이 기록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경우에는 치료 서비스 6개월 연장을 최대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2000년 약물 남용 및 범죄 예방 법령의 본 조에 따른 치료 서비스 규정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 피고가 법원에서 요구한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한 경우 치료 제공자는 7일 이내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은 치료 완료일 이후 계속된 감독 기간 6개월 이내 가석방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사후 관리 또는 지속적 관리 서비스가 요구 및 제공될 수 있다.

(i) (1) 약물 치료 완료 및 가석방 기간 후 어느 때라도 법원은 심리를 실시해야 하고 이 심리에서 피고가 성공적으로 약물 치료를 완료했고, 치료 후 약물 사용 억제를 비롯한 가석방 조건을 상당히 준수했다고 판단한 경우 가석방이 명령된 유죄 판결을 취소되고 법원은 피고에 대한 기소, 청구, 또는 피고에 불리한 정보를 기각해야 하며 체포, 구금 및 유죄 판결 기록을 포함한 사건 기록과 파일의 봉인 유지를 명령해야 한다. 나아가, (2)와 (3)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체포와 유죄판결 모두 아예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피고는 처방된 약물 치료 과정을 완료한 후 어느 때라도 법원에 혐의 기각을 청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나 (3)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이후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인한 모든 형벌 및 제한에서 면제된다.

(2) (1)절에 따른 기소, 청구 및 정보 기각은 그 자를 제12021조에 따라 은닉할 수 있거나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소유, 소지, 또는 점유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3) 아래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소, 청구 또는 정보가 (1)절에 따라 기각된 후 피고는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함에 있어, 범죄로 체포를 당했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없다는 점을 표시할 수 있다. 아래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체포되어 이 조에 따라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이 체포와 관련된 기록은 피고의 동의 없이는 고용 거부, 수당 거부, 허가증 또는 자격증 발급 거부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약물 치료의 성공적인 완료와 상관 없이 가석방의 근거가 되는 체포 및 유죄 판결은 법무부가 기록할 수 있고 치안관 지원 신청 또는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 공개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정보, 청구 또는 기소 기각은 피고인에게 제830조에 정의된 치안관에 지원, 주 또는 지역 기관으로부터의 라이선스 발급, 캘리포니아 주 복권 청약, 또는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지원서 또는 설문조사에 포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체포나 유죄 판결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j) (1) 이 하위 규정의 조항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트랙 III의 가석방과 치료를 명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에 대해 1년 미만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을 구형할 수 있다. 피고가 약물 사용과 관련 없는 새로운 경범죄 또는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가 아닌 증범죄를 범한 경우 형기 산정은 본 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피고는 이 조 규정에 상관 없이 다른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수감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위반이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가석방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피고가 (a)항에 따라 가석방을 받고 비폭력 약물 소지 범죄가 아닌 범죄를 범하거나 약물에 관련되지 않은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여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주는 가석방을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은 가석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법원은 가석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가석방 및 치료를 복귀에 앞서 의심된 위반이 입증된 경우 단계적 제재 그리고/또는 구치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의약품의 지원을 받는 치료를 받는 피고의 경우 이 피고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치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구치소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피고를 재구류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치료, 가석방,

주 당국, 피고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법원은 본 조에 따라 가석방을 원래대로 복귀시키지 여부 결정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권주되는 심리를 실시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를 타사 가석방으로 복귀시키려면 치료 계획 및 가석방 조건을 변경하고 피고가 2000년 약물 남용 및 범퇴 예방 법령 하의 치료 프로그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를 타사 가석방으로 복귀시키려면 치료 제공자와 가석방 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한 경우 하위 조정(a) 하의 치료 계획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치료에의 순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구치소 체제를 포함한 체제를 부과할 수 있다.

(3) (A) 피고가 가석방을 받고 (a)항에 따라 약물 치료가 시작된 후 크라코 폭력 약물 소지 범죄가 아닌 범죄를 범하거나 약물 사용 또는 약물 기구의 단순 소지, 약물이 사용된 환경에 있었거나, 약물 범죄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제1210조의 (d)항에 명시된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거나 약물에 관련된 가석방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피고가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위반한 경우, 주는 가석방 취소로 나아갈 수 있고 법원은 가석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피고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 압도적인 증거로 주가 입증하여 의심되는 가석방 위반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실심 법원은 가석방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본 조상 피고가 치료 프로그램의 대기 목록에 있을 때, 잠정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을 때, 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발생한 약물 관련 가석방 위반으로 가석방을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이 가석방을 취소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 강화 또는 변경 및 추가적으로 단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이 치료나 법원에 불출석, 치료 불응, 약물 검사용 보고의 관련된 위반을 포함하거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최근의 약물 사용과 관련이 없으면 법원은 치료 순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48시간을 넘지 않는 지속적인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구치소 체제를 포함하는 체제를 부과할 수 있고 가석방의 규정에 대한 다른 변경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 위반 정도의 심각성, 이진 치료 준수 정도, 고용, 교육, 직업 훈련, 의학적 상태, 마약 대체 치료를 포함한 의학적 치료, 피고를 치료하는 자격 있는 의사가 심리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 크의 소견, 자녀 양육 의무 및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추가적인 가석방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감독 하에 진행되는 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 상황 중 하나나 최근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경우, 최근 약물 사용 상황은 만족스러운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하고 판단을 기록에 남기며 법원은 치료와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가능하다면 피고를 허가 받은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나 주가 치료 시설로 입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에 즉시 이용 가능한 자리가 없으면 법원은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 목적으로만 피고를 카운터 구치소에 구류할 수 있다. 단, 구치소에서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는 마약 대체 치료를 현재 실제로 받고 있는 피고에게는 마약 대체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B) 피고가 (a)항에 따라 가석방을 받고 비폭력 약물 소지 범죄가 아닌 범죄를 범하거나 약물 사용 또는 약물 기구의 단순 소지, 약물이 사용된 환경에 있었거나, 약물 범죄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제1210조의 (d)항에 명시된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거나 약물에 관련된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여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다고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혹은 때로는 주는 가석방을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은 가석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피고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약물 치료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압도적인 증거로 주가 입증하여 의심되는 가석방 위반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실심 법원은 가석방을 취소해야 한다. 피고가 약물 치료에 따르지 않음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관련 있는 정도까지 피고가 (i)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서 중대한 규칙 위반을 범했는지 여부, (ii) 피고가 프로그램 하에서 기능하는 것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규칙 위반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는지 여부, 또는 (iii)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련 있는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이 가석방을 취소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 강화 또는 변경 및 단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이 치료나 법원에

불출석, 치료 불응, 약물 검사용 보고의 관련된 위반을 포함하거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최근의 약물 사용과 관련이 없으면 법원은 치료 순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120시간을 넘지 않는 지속적인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구치소 체제를 포함하는 체제를 부과할 수 있고 가석방의 규정에 대한 다른 변경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 위반 정도의 심각성, 이진 치료 준수 정도, 고용, 교육, 직업 훈련, 의학적 상태, 마약 대체 치료를 포함한 의학적 치료, 피고를 치료하는 자격 있는 의사가 심리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 크의 소견, 자녀 양육 의무 및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추가적인 가석방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감독 하에 진행되는 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 상황 중 하나나 최근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경우, 최근 약물 사용 상황은 만족스러운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하고 법원과 결정을 기록에 남기며 법원은 치료와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가능하다면 피고를 허가 받은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나 주가 치료 시설로 입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에 즉시 이용 가능한 자리가 없으면 법원은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 목적으로만 피고를 카운터 구치소에 구류할 수 있다. 단, 구치소에서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는 마약 대체 치료를 현재 실제로 받고 있는 피고에게는 마약 대체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C) 피고가 (a)항에 따라 가석방을 받고 세 번째 혹은 크 이상 위반하고 비폭력 약물 소지 범죄가 아닌 범죄를 범하거나 약물에 관련되지 않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여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크라코 주가 가석방 취소 결정을 세 번째 혹은 크 이상 취하였을 때 법원은 가석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가석방 위반이 입증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약물 치료 제공자와 검사의 의견 및 권고를 고려한 후 피고가:

- (1) 지역 사회에 대한 위협인물이 아님, 그리고
- (2) 치료에 불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 한, 피고는 (a)항에 따른 계속적인 가석방의 자격이 없다.

법원에서 가석방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약물 치료 계획 강화 또는 수정, 단계적 제재 부과, 그리고/또는 현재 치료 과정 중 첫 번째 처벌이 있는 후로부터 48시간을 넘지 않는 동안 또는 현재 치료 과정 중 두 번째 처벌이 있는 후로부터 5일을 넘지 않는 동안 그리고 후속 처벌 시 10일의 구치소 제재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약 치료를 받는 피고의 경우 구치소에서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이 피고에 대해서는 구치소 체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지역 사회에 위협이 아니고 (a)항에 따른 후속 치료에서 혜택을 볼 것인하고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한 법원은 (a)항에 따라 치료 계획을 강화 또는 변경하거나 피고를 매우 조직화된 약물 범인으로 어송할 수 있다. 법원에서 피고에게 (a)항 또는 약물 범원의 의견에 따른 치료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구치소 체제를 포함한 적절한 체제를 부과할 수 있다.

(D) 만약 본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에 제1210.1조의 예전 규정에 따라 가석방 중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피고는 미래에 가석방 위반이 있거나 새로운 범죄를 범한 경우 이 조의 개정된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가석방자가 개정된 법규정의 효력 발효일 전 약물과 관련된 가석방 위반을 하나 또는 그 이상 범한 경우 법원의 결정을 정하는 데 있어 가석방 위반 수는 재산정보와 상관 없이 2009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가석방 위반의 수부터 앞으로 산정하고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 또는 약물이 아닌 약물의 단순 소지로 인한 경범죄, 약물 사용 환경에 약물 범죄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제1210조의 (d)항에서 열거된 것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로 인한 가석방 위반을 했는지, 또는 약물과 관련된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가석방 위반 수를 고려하여 주는 가석방 취소로 나아갈 수 있고 법원은 가석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피고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 압도적인 증거로 주가 입증하여 의심되는 가석방 위반이 입증된 경우 사실심 법원은 가석방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이 가석방을 취소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 강화 또는 변경 및 추가적으로 단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이 치료나 법원에 불출석, 치료 불응,

약물 검사용 보고의 관련된 위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최근의 약물 사용과 관련이 없으면 법원은 치료 순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48시간을 넘지 않는 지속적인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구치소 제재를 포함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가석방의 규정에 대한 다른 변경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 위반 정도의 심각성, 이전 치료 준수 정도, 고용, 교육, 직업 훈련, 의학적 상태, 마약 대체 치료를 포함한 의학적 치료, 피고를 치료하는 자격 있는 의사가 심리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 크의 조건, 자녀 양육 의무 및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추가적인 가석방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감독 하에 진행되는 직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 상황 중 하나가 최근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경우, 최근 약물 사용 상황은 만족스러운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하고 결과를 기록에 남기며 법원은 치료와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수령한 후, 가능하다면 피고를 허가 받은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나 주 치료 시설로 입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에 즉시 이용 가능한 처리가 없으면 법원은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 목적으로만 피고를 카운티 구치소에 구류할 수 있다. 단, 구치소에서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는 마약 대체 치료를 현재 실제로 받고 있는 피고에게는 마약 대체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E) 본 법령의 효력 발효일에 비폭력 약물 소지 행위로 가석방 중인 피고가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 약물 사용 또는 약물 거구의 단순 소지와 같은 경범죄약물이 사용된 환경에 있었거나, 약물 범죄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제1210조의 (d)항에 명시된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약물에 관련된 가석방 조건을 두 번째로 위반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가석방을 취소 조치로 내어줄 수 있고 법원은 가석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피고가 다른 사법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약물 치료에 불응한다는 것을 압도적인 증거로 캘리포니아 주가 입증하여 의심되는 가석방 위반을 입증된 경우 사실심 법원은 가석방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이 가석방을 취소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 강화 또는 변경 및 추가적으로 단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이 치료나 법원에 불응, 치료 불응, 약물 검사용 보고의 관련된 위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최근의 약물 사용과 관련이 없으면 법원은 치료 순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120시간을 넘지 않는 지속적인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구치소 제재를 포함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가석방의 규정에 대한 다른 변경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 위반 정도의 심각성, 이전 치료 준수 정도, 고용, 교육, 직업 훈련, 의학적 상태, 마약 대체 치료를 포함한 의학적 치료, 심리에서 출석할 수 있는 경우 피고를 치료하는 자격 있는 의사의 조건, 자녀 양육 의무 및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추가적인 가석방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감독 하에 진행되는 직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 상황 중 하나가 최근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경우, 최근 약물 사용 상황은 만족스러운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록에 남기며 법원은 치료와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수령한 후, 가능하다면 피고를 허가 받은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나 주 치료 시설로 입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에 즉시 이용 가능한 처리가 없으면 법원은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 목적으로만 피고를 카운티 구치소에 구류할 수 있다. 단, 구치소에서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는 마약 대체 치료를 현재 실제로 받고 있는 피고에게는 마약 대체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F) 본 법령의 효력 발효일에 비폭력적 약물 범죄로 가석방 중인 비폭력 약물 소지 범죄를 범하거나 약물 관련된 가석방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가석방 조건을 세 번 또는 그 이상 위반한 경우 주는 가석방을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은 가석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의심된 가석방 위반이 입증된 경우 피고가 다른 사법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a)항의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한 피고는 (a)항 하의 지속적인 가석방의 자격이 없다. 법원은 (a)항에 따라 치료 계획을 강화 또는 변경하거나 피고를 배우 조직화된 약물 범인으로 이송할 수 있다. 법원에서 피고에게 (a)항에 따른 치료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 법원은 구치소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g) “약물과 관련된 가석방 조건”이란 문구는 가석방자의 특정한 약물 치료 일정, 고용,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18조. 제1210.2조는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제1210.2조. 트랙 III.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 소지로 인한 유죄 판결 후 치료; 다른 비폭력적 범죄; 사법 재량.

(a) 어떠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트랙 III 치료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 (1) 트랙 II 치료에 성공적으로 참여;
-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를 범했으나 트랙 II 치료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 (3)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폭력적 범죄를 범했고 피고가 약물 남용 또는 중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때.

(b) 법원은 정의 충족의 정신으로 하위 조항 (a)에 따라 트랙 III 치료에 피고를 참여시켜야 한다. 피고가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가 아닌 비폭력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손해 배상을 명하거나 소급 정의 프로그램의 참여, 그리고/또는 트랙 III 치료에 앞서 형기의 일부를 완료하고 치료 참여 중 남은 형기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c)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재의 유죄 판결 전 30개월 내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를 포함하나 경미한 범 위반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가 5개 또는 그 이상이나 병합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트랙 II 치료에 참여 자격이 있다면 이 자는 트랙 III 치료 프로그램으로 배치한다.

(d) 피고는 다음의 경우 이 조의 트랙 III 치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 (1) 피고가 제667.5조의 (c)항에 폭력적인 중범죄로 정의된 범죄 또는 제1192.7조의 (c)항에 중대한 범죄를 범한 적이 있고 검사가 피고를 트랙 III 치료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하지 않을 때;
- (2) 트랙 I 또는 트랙 II 치료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 또는
- (3) 이 조에 따른 치료 참여를 거부한 경우.

(e) 트랙 III 치료에 둔 피고에게는 가석방을 허용해야 한다. 가석방의 조건으로 법원은 적절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완료를 요구해야 한다. 그 외에도 법원은 피고에게 임상 평가 및 범죄 기록 평가를 위해 출석할 것을 명하고 이후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완료를 명한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격 여부 결정 전 피고에 대해 실시한 임상 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새 평가를 명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제1210.02조의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피고를 치료에 투입하고 모니터링 조건을 수립한다.

(f) 피고가 이 조에 따라 가석방을 명령 받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법원은 양 당사자, 가석방국 및 치료 제공자의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심리에서 피고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피고가 치료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를 치료 프로그램에 다시 보낼 수 있고 단계적 제재 그리고/또는 구치소 제재를 부과하거나 피고가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카운티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거나, 양육을 담당하는 피고에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교통 서비스가 필요한 때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피고가 치료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한 카운티의 잘못 때문이라면 법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가석방을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가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비롯하여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30일 내 감독 위원회가 요구한 형식으로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치료와 관련 있는 이러한 데이터는 교정재활국 또는 감독 위원회가 임명한 조사자들이 카운티별로 그리고 주 전체에 걸쳐 최소한 1년에 한 번 발표되어야 한다.

(g) 가석방의 필수 조건으로서 (e)항에 따라 제공되는 약물 치료 서비스는 법원에서, 약물 치료가 성공적이라면 18개월이 넘는 치료 서비스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경우에는 치료 서비스 3

개월 연장을 최대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치료 서비스 제공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h) 아래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체포되어 이 조에 따라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이 체포와 관련된 기록은 피고의 동의 없이는 고용 거부, 연금 거부, 허가증 또는 자격증 발급 거부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i) 피고의 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 검토 심리 동안 법원은 지속적인 발전을 격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보상 사용을 고려해야 하고 치료 제공자 또는 가석방국이 보고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혹은 법원의 제정으로 가석방 위반 발생을 발견 여부에 상관 없이 단계적 제재 또는 구치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구치소 제재는 현재 치료 과정 중 첫 번째 처벌이 있는 후로부터 48시간을 넘지 않는 동안 또는 현재 치료 과정 중 두 번째 처벌이 있는 후로부터 5일을 넘지 않는 동안 그리고 후속 처벌이 있는 후 10일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투여 치료를 받는 피고의 경우 구치소에서 치료를 이용할 수 없다면 구치소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j) 이 하위 규정에서 부여된 제한을 제외하고 예심 법원은 가석방 위반에 대한 대응과 이를 처리하는 권한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의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치료와 가석방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가석방이 종료되면 본 조의 어떤 조항과도 상관없이 피고에게 형을 선고할 수 있다.

(k) 본 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치료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때 법원은 계속적인 가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약물 치료와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언제라도 법원은 사건에 대해 적절한 최종 판결을 결정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 판결에는 유죄 판결, 기소, 청구 및 피고에 불리한 정보의 기각과 체포, 구금 및 유죄 판결 기록을 포함하는 사건 기록 및 파일 봉인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피고는 치료 완료 후 어느 때라도 법원에 형의 기각을 청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각 명령이 있을 때 법원은 기각된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제 19조. 형법의 제29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33조. (a) 제1170조에 따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을 신고 받은 자는 ~~재활부장~~ 교정재활국이 수립한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에 따라 ~~재활부장~~ 교정재활국의 보호 감독 하에 복역하는 시간의 삭감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부과한 전체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회의 의도이다. 작업 시간 점수는 작업 과제 이행 성적 및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는 직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적으로 적용된다.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학위를 취득하면 제293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시간 점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정재활국이 국장이 지정하고 학점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에서 풀 타임 이행 6개월 마다 수감자는 6개월의 구금 기간에서 작업 시간 점수만큼의 차감을 인정받는다. 6개월보다 적은 기간 지속적인 이행을 하는 경우 이 비율에 근거하여 더 적은 시간 점수를 인정한다. 풀 타임 점수가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배정되지 않은 수감자에게는 ~~국장~~ 교정재활국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적게 인정된다. 풀 타임 점수가 인정되는 과제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2932조의 (a)항에 따른 작업 시간 점수 취득 기회가 거부된 모든 수감자는 작업 시간 점수 삭감을 인정받지 않는다. 풀 타임 과제에 대신하여 하프 타임 점수 인정 과제를 자발적으로 수락한 모든 수감자는 이행이 계속되는 기간 중 매 6개월동안 3개월의 구금 기간에서 작업 시간 점수 차감을 인정받는다. 제2932조의 (a)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풀 타임 점수 인정 과제에 참여할 의지가 있지만 풀 타임 과제에 배정되지 않았거나 풀 타임 미만의 프로그램에 배정된 수감자는 제2931조에서 규정된 점수보다 더 적게 인정받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감자는 본 하위 조항 ~~조~~에 따라 6개월의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의 점수 삭감을 받을 수 없다.

(b) 제3000조의 (b)항의 (1)절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제1170조의 주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을 신고 받은 자는 교정재활국에서 승인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모범적인 행동과 프로그램 이행을 인정 받아 교정재활국에서 복역 기간을 삭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부과한 전체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도이다. 재활 프로그램에서의 모범적인 행동과 이행에는 점수제도가 적용된다.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 매 2

개월 마다 수감자는 한 달 미만의 구금 기간에서 모범적으로 보낸 시간만큼 점수 차감을 인정받는다. 재활부장관이 지정한 점수 인정 재활 프로그램에서 이행 기간 매 2개월마다 수감자는 한 달 미만의 구금 기간에 대한 프로그램 기간 차감을 인정받는다. 모범적으로 보낸 시간과 프로그램 기간의 차감에서 두 경우 모두 앞서 명시한 것 보다 적은 기간의 모범적 행동 또는 프로그램 기간에 대해서는 이 비율에 근거하여 더 적은 점수를 인정한다. 교정재활국은 가석방 개혁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이 조에서 명시한 최소 점수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하위 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수는 제667.5조 또는 제1192.7조의 해석에 따른 중대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제290조의 등록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수감자에게는 형기를 낮추는데 사용할 수 없다. 수감자는 원래 범했던 범죄로 복역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수감자는 원래 범했던 범죄로 복역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수감자는 원래 범했던 범죄로 복역하는데, 본 하위 규정에서 규정된 점수를 얻을 수도 있다.

(c) 본 조항의 어떤 내용도 본 법령 발효일 이전에 존재하는 법 또는 규칙에 따라 수감자에게 점수를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d) (a)항과 (b)항에 따라 점수 인정 자격이 있는 수감자는 각 하위 조항에 따른 점수를 모두 획득할 수 있고 점수의 총합은, 수감자가 제3000조의 (b)항목 (3)절에 규정된 재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지 않은 한 법원이 부과한 복역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재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복역자에 대해 인정되는 최대 점수는 가석방 개혁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승인한 규정에서 정한다.

(~~b~~) (e) ~~작업 시간 점수~~ 점수 획득은 특별히 허가되는 권리일 뿐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작업 시간 점수~~ 점수는 반드시 제293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해야 하며 몰수될 수 있다. 1997년 1월 1일에 또는 그 이후 범죄를 범한 수감자의 형기를 감형하기 위한 점수 신청은 제3067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932조 (a)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수감자에게 시설의 보안 및 이용 가능한 자원에 부합하는 방식하에서 풀 타임 점수 인정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c~~) (f) 징계를 요하는 경미한 법률 위반을 1년 이상 범하지 않았을 것을 요하는 교정재활국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라 전에 몰수되었던 ~~작업 시간~~ 점수는 교정재활국 국장이 복구할 수 있다. 중대한 징계 위반의 개별 분류는 점수 복구, 몰수되었던 점수나 점수 일부가 복구되기 전 요구되는 기간 및 몰수되었던 점수중 이러한 기간을 이유로 복구될 수 있는 퍼센트와 개별 분류가 점수 복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 분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교정재활국은 제2932조의 (a)항의 (1)절에 명시된 중범죄를 범하여 몰수된 점수의 경우 최대 180일의 점수를, 이러한 중범죄의 미수 또는 음모로 몰수된 점수의 경우에는 최대 90일의 점수를 복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중대한 징계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또는 영구 장애로 점수가 몰수된 경우에는 이를 복구할 수 없다. 수감자의 신청 및 징계형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90일 이상의 점수 차감으로써 처벌할 수 있는 중대한 징계 위반을 제외한 징계 범죄를 다루는 규정 상 복구 자격이 있는 몰수된 점수는 심리에서 수감자가 점수 인정 과제를 수락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점수가 복구되어서는 안되는 특별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는 한, 복구되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란 국장이 채택한 규정에 정의되어야 한다. 단, 작업 시간 점수가 90일이 넘는 점수 삭감으로 처벌 가능한 중대한 징계 위반으로 인해 몰수된 경우 점수 복원은 국장의 재량에 의한다.

수감자는 기관에 대해 감독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개인의 재조사를 포함하는 교정재활국 재조사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항소할 수 있다.

(~~d~~) (g) (~~c~~)(f)항의 규정은 제2931조에 따라 1983년 1월 1일에 또는 그 이후 발생한 중대한 징계 위반 및 범죄로 인해 몰수된 점수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20조. 형법의 제300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0조. (a) (1) ~~주 의회~~ 주민들은 복역이 끝나기 직전 및 직후의 ~~작업 시간~~ 기간이 범죄자가 사회와 긍정적인 시민으로의 성공적인 복구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선언한다. 주 교도소를 떠나는 수감자들에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취소 조치의 법적 사용을 포함하여 가석방자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제공하는 것, 적절한 교육적, 직업적, 가족 및 개인 상담, 그리고 수감과 석방사이의 변천단계에 있는 수감자와 가석방자를 돕는 데 필요한 복귀 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 안전의 관심 사항이다. 제1168조와 제1170조에 따른 판결은 면제되지 않는 한, 본 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가석방 기간을 포함한다.

(2) ~~주 의회~~ 주민들은 교정재활국이 책임져야 하는 가석방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정재활국에 할당된 자원을 삭감하는 것은 본 조의 의도가 아니며 ~~확인하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선언한다~~ 선언한다. 가석방 심리 위원회가 이행 책임이 있는 가석방 관련 직무를 위해 할당된 자원을 삭감하는 것 역시 본 조의 의도가 아니다.

(3) ~~주 의회~~ 주민들은 가석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라는 목표 하에, 가석방자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여기에는 손해 배상 벌금과 명령의 준수 및 복귀 정의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자의 교도소 석방 전후 적절한 서비스, 프로그램, 상담을 제공하여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선언한다~~ 선언한다.

(4) 폭력적인 성범죄자로서 밝혀진 자의 가석방 기간은 이 자가 폭력적인 성범죄자로서 더 이상 밝혀지지 않을 때까지 지연되며, 이것이 밝혀진 때에 가석방 기간 또는 남아 있는 기간이 진행하기 시작한다.

(b) 본 조와 제2933조의 (b)항의 목적 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1) “적격 범죄(qualifying commitment offense)”란 가석방 원인이 된 범죄가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 범죄, 비폭력적 재산 범죄 또는 주의회가 다수결로 추가한 기타 모든 범죄인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 범죄(controlled substance offense)”란 건강 및 안전 법령 제11054조, 제11055조, 제11056조, 제11057조, 제11058조에 정의된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의 소지나 사용 또는 이러한 약물을 1kg 미만의 양으로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범죄를 의미하며 단, 유죄 판결은 미성년자에게 판매 또는 유통했다는 범법의 판결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비폭력적 재산 범죄(nonviolent property offense)”란 재산에 대한 범죄로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압력 또는 폭력의 사용이나 미수, 혹은 압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려는 위협을 내포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가석방 개혁 감독 및 책임 위원회는 본 하위 조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범죄의 권고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제290조 등록 범죄”란 문구는 제290조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3) “재활 프로그램”은 교도소 수감자와 가석방자 석방 시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교정재활국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각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 정신 건강 서비스, 알코올 남용 치료, 재가입서비스, 인지 기술 개발, 주택 지원, 교육, 읽기 쓰기 훈련, 삶의 기술, 직업 기술, 직업 훈련, 피해자에 대한 영향 인식, 복귀 정의 프로그램, 분노 관리, 가족 및 관계 상담 그리고 공공 자금 조달 의료, 사회 보장 및 기타 혜택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교도소 내에서 또는 교도소 출소 후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교도소 출소 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기관까지 이동하는 교통 수단은 교정재활국에서 부담한다.

(4)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약물 치료”란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과학에 의거한 약물에 대한 교육, 외래 환자 서비스, 주거 서비스, 합성 마취 진통제 저하 치료, 투약 보조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나 지속 관리.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약물 치료”는 재향 군인 부서의 재향 군인 건강 관리국의 지도 하에 운영되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제 8001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은 본 하위 조항에서 요구되는 라이선스 발급 또는 인증 규정과 관계 없이 약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

(5) “최소 감독”이란 가석방자가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규정의 정도를 의미하고 횡수는 90일에 한 번보다 많아서 안되며 수색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b) (c) 이 장의 제3조 (제30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1) 1년과 1일의 수감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제1170조에 따라 부과된 수감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2931조의 제2933조에 따라 감소된 형기가 종료되었을 때, 해당하는 경우 수감자는 가석방을 조건으로 석방되고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단 제667.5조의 (c)항의 (3), (4), (5), (6), (11), (16), 또는 (18)절에 명시된 범퍼로 인해 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는 제외된다. 이러한 수감자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석방을 조건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이는 ~~즉이나~~ 가석방 당국은 타당한 이유로 가석방 처분을 포기하고 수감자를 보호 관찰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1) 제1170조에 따라 주 교도소 수감을 선고 받았고 석방이 예정된 모든 수감자들의 경우 교정재활국은 예정된 출소일 전 90일 이내 시작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재활 프로그램에 수감자를 배치시키기 전 교정재활국은 수감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수감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와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을 판단할 사례 평가를 실시한다. 가석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내 주 교도소로 되돌아온 경우 교정재활국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2) 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가석방 중인 모든 수감자들의 경우 교정재활국은 사례 평가에서 판단한 대로 가석방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3) 1년과 1일의 수감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제1170조에 따라 부과된 수감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2931조와 제2933조에 따라 감소된 형기가 종료되었을 때, 해당하는 경우, 당국이 충분한 이유로 가석방 처분을 포기하고 수감자를 보호 관찰에서 해방시키지 않는 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수감자는 가석방 감독을 조건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A) 수감자가 가석방 처분을 받은 범죄가 적격 범죄일 것;

(B) 제667.5조 또는 제1192.7조의 폭력적인 중범죄로 정의된 범죄 또는 제290조의 등록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전혀 없거나 또는 청소년법으로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수감자; 그리고

(C) 제186.22조의 (a)항을 위반하여 조직폭력집단에 참가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청소년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나 제 186.22조의 (b)항을 위반하여 조직폭력집단의 이익을 위해, 조직폭력집단의 지시로, 또는 조직폭력집단과 관련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수감자.

6개월의 감독 기간은 가석방자가 가석방 위반으로 수감되었던 기간 또는 가석방자가 감독을 받지 않았던 기간만큼만 확장될 수 있다. 감독 기간 종료 시 가석방자는 그 이상의 가석방 감독으로부터 해제된다. 단, 가석방 당국이 가석방자가 제공받은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 가석방자에게 6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최소 감독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최소 감독을 받는 가석방자의 경우 이 6개월이 만료된 때 또는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완료한 때 중 빠른 날짜에 가석방이 최종 해제된다.

(4)와 (5), (6) 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수감자들은, 가석방 당국이 충분한 이유로 가석방 처분을 포기하고 수감자를 교정재활국의 보호 감독에서 해제하지 않는 한,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가석방을 조건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4) 1년과 1일의 수감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제1170조에 따라 부과된 수감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2931조와 제2933조에 따라 감소된 형기가 종료되었을 때, 제667.5조와 제1192.7조에 정의된 중대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는 가석방 당국이 선의로 가석방 처분을 포기하고 수감자를 교정재활국의 보호감독에서 석방하지 않는 한 최대 5년까지의 가석방을 조건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5) ~~(2)~~ 제116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수감자의 경우 가석방 당국은 선의로 가석방 처분을 포기하거나 교정재활국의 보호 감독에서 수감자를 해제하지 않는 한 수감자가 중신형을 선고 받은 1급 또는 3급 살인 이외의 범죄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석방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른 수감자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하위 규정은 1977년 7월 1일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에게 제1170.2조에 명시된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다.

(6) ~~(3)~~ (1), ~~(2)~~, (3), (4), 그리고 (5) 절에도 불구하고 수감자가 제667.61조 또는 제667.71조의 범죄를 범하고 중신형을 받은 경우 가석방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7) ~~(4)~~ 가석방 당국은 수감자를 불문하고 가석방 기간 및 그 조건과 관련된 수감자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8) ~~(5)~~ 가석방의 성공적인 종료 시 또는 사건에 따라 (1), ~~(2)~~, 또는 ~~(3)~~ (3), (4), (5) 또는 (6)절에 따라 수감자마다 법에 규정된 최대 가석방 기간 종료 시, 그 중에서 빠른 날짜에 수감자는 보호 감찰에서 해제된다. 본 하위 조항 및 (1), ~~(2)~~, ~~(3)~~ (3), (4), (5), 그리고 (6) 에 따른 최대 법정 가석방 기간은 초기 가석방일부터 산정해야 하며 기간은 시간의 경과대로 산정한다. 수감자가 도주 했거나 구금 시설로 돌아간 것을 이유로 가석방이 중단된 동안의 기간은 수감자가 가석방 위반에 대해 무죄 판정을 받지 않는 한, 어떠한 가석방 기간에도 산정되지 않는다. 단, 가석방 기간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A) 제3064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3년의 가석방을 받는 수감자는 처음 가석방 날짜로부터 4년이 넘는 가석방 보호 감찰 또는 구금을 받지 않는다.

(B) 제3064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5년의 가석방을 받는 수감자는 처음 가석방 날짜로부터 7년이 넘는 가석방 보호 감찰 또는 구금을 받지 않는다.

(C) 제3064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10년의 가석방을 받는 수감자는 처음 가석방 날짜로부터 15년이 넘는 가석방 보호 감찰 또는 구금을 받지 않는다.

(9) ~~(6)~~ 교정재활국은 출소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 각 수감자를 만나서 가석방 당국이 명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석방 조건 및 법에서 규정된 최대 기간 내의 가석방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수감자는 가석방 당국이 정한 가석방 기간 및 조건을 재고할 권리를 가진다. 교정재활국 또는 가석방 심리 위원회는 가석방의 조건으로 1994년 9월 28일 전에 효력이 있는 정부 법령 제13967조의 (a)항이나 (c)항, 또는 제1202.4조의 (b)항 또는 (f)항에 따라 부과한 손해 배상 벌금, 또는 명령 중 미납부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 ~~(7)~~ 이 장의 목적상 가석방 심리 위원회는 가석방과 관련된 권한 당국으로 간주된다.

(11) ~~(8)~~ 가석방을 조건으로 석방된 주 교도소 수감자를 실제로 구금 시설로 돌려 보내는 명령을 부과하는 유일한 권한 당국은 가석방 심리 위원회이며, 탈주한 주 교도소 수감자 또는 예정된 석방일 전 석방된 주 교도소 수감자로서 다시 구금되어야 할 자는 제외하고, 제3060조가 적용된다.

(12) ~~(9)~~ 제290.011조에 따라 가석방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주 의회의 의도이다.

(d) 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가석방 중인 모든 수감자들의 경우 교정재활국은 가석방에서 해제된 1년내 예전 수감자의 신청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수감자가 속한 카운티 가석방 부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서비스는 처음 제공된 날짜로부터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운영 비용 일체는 교정재활국이 변상해야 한다.

제21조. 제3063.01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3063.01조. (a) 가석방자가 제1210조의 (a)항에 정의된 비폭력적 약물 소지 범죄를 범했거나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고, 제3063.1조에 따라 약물 치료 서비스에 참여 자격이 있으면 카운티가 서비스와 감독을 제공하는, 가석방 당국이 제공하는, 교정재활국의 비용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더 이상의 위반에 대한 조치는 이 조에 따라 가석방자의 지속 치료 참여자격이 유지되는 한 제3063.1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3061.1조의 (d)항의 (3)절 (A) 또는 (B)절의 규정에 따른 약물 치료에 참여할 자격이 더 이상 없는 가석방자, 그리고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가석방자에게는 본 조의 (c) 항, (d)항 그리고 (e)항이 적용된다.

(b) 제3060.9조, 제3069조 또는 제3069.5조에 설명된 프로그램 참여 또는 과제를 수락한 가석방자는 본 조 또는 제3063.1조에 따라 다른 경우에 보유할 수도 있는 특정권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c) 제3060.7조의 대상이 되는 가석방자를 제외하고 제667.5 조의 (c)항 또는 제1192.7조의 (c)항에 따른 중대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 가석방자의 경우 가석방은 중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며 가석방자는 가석방의 기술적인 위반을 이유로 주 교도소에 다시 구금된다. 본 조의 목적상 “가석방의 기술적 위반”이란 가석방 조건을 위반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경범죄나 중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석방 감독으로부터 도주가 밝혀진 경우 가석방자는 최대 30일 동안 지역의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비수감 옵션과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가석방 조건 변경, 제3000조의 (b)항의 (3)절에 정의된 지역 재활 프로그램의 요구와 규정을 판단하기 위한 사건 평가 실시 등이 포함된다. 다른 기술적 위반이 발견된 경우 비수감 옵션과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도주를 제외하고 두 번째 기술적 위반이 있을 시 수정된 가석방 조건은 비수감 제재와 옵션 그리고/또는 최대 7일의 지역 구치소 구금을 포함할 수 있다. 도주를 제외하고 두 번째 기술적 위반이 있을 시 수정된 가석방 조건은 비수감 제재와 옵션 그리고/또는 최대 14일의 지역 구치소 구금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구치소 구금 및 재활 프로그램 평가의 운영 비용은 교정재활국이 변상해야 한다. 본 조의 어떤 것도 제3063.1조의 규정을 무효로 할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d) 제3060.7조의 대상이 되는 가석방자를 제외하고 제667.5 조의 (c)항 또는 제1192.7조의 (c)항에 따른 중대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 가석방자의 경우 가석방은 중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며 가석방자는 경범죄가 원인이 된 가석방의 위반을 이유로 주 교도소에 다시 구금된다. 본 조의 목적 상 “경범죄를 원인으로 한 가석방 위반”이란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꼭 중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범죄를 원인으로 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비수감 옵션 및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가석방 조건 변경, 제3000조의 (b)항의 (3)절에 정의된 지역 재활 프로그램의 요구와 규정을 판단하기 위한 사례 평가 실시 등이 포함된다. 경범죄로 인한 가석방 위반이 발견된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고 가석방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역 구치소에 구금되도록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 구치소 구금 및 재활 프로그램 평가의 운영 비용은 교정재활국이 변상해야 한다. 본 조의 어떤 것도 제3063.1조의 규정을 무효로 할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e) 법의 다른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은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고 어떤 수감자라도 가석방 중 중범죄로 인한 위반이 있을 경우 주 교도소 구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본 조의 목적 상 “중범죄를 원인으로 한 가석방 위반”이란 그 자체로 중범죄가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범죄를 원인으로 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비수감 옵션 및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가석방 조건 변경, 제3000조의 (b)항의 (3)절에 정의된 지역 재활 프로그램의 요구와 규정을 판단하기 위한 사건 평가 실시 등이 포함된다. 중범죄로 인한 가석방 위반이 발견된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고 가석방자는 지역 구치소 또는 주 교도소에 다시 구금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 구치소 구금 및 재활 프로그램 평가의 운영 비용은 교정재활국이 변상해야 한다. 본 조의 어떤 것도 제3063.1조의 규정을 무효로 할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f) 법에 규정된 다른 어떠한 절차 및 권리에 추가하여,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는 추정을 받는 가석방자는 구금된 후 3 영업일 내 가석방 심리 위원회의 최고 위원 앞에서 열린 심리에서 추정되는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는다. 가석방자는 이 심리에서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g) 석방 당국은 모든 가석방 위반 추정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및 공표하며 이 때 가석방 위반 추정이 증명되었던 가석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초래하는 상관이 없다. 데이터는 가석방 개혁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권장한 형식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추정된 위반의 성질 및 위반이 추정되는 자의 지역 분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교정재활국은 이 데이터를 일 년에 최소한 두 번 해당 웹사이트에 전자적으로 출판해야 한다.

제22조. 제3063.02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3063.02조. 해마다 제정되는 예산법 또는 기타 법에 따라 교정재활국에 분배된 자금으로부터, 그리고 법령의 제한을 준수하여, 교정재활국은 자금을 5년 동안 분배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제3060.9조, 제3069조 그리고 제3069.5조에 설명된 프로그램을 도시 및 시골 지역에 걸쳐 최소한 5개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시범 프로젝트에 자금을 분배해야 한다.

제23조, 제3063.03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3063.03조. (a) 가석방 개혁 감독 및 책임 위원회 내에 신설하며 교정재활국이 본 법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이행을 검토, 지시 및 승인한다. 교정재활국이 제정하고 수감자와 가석방자를 위한 가석방 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적 적용성 규정들은 위원회의 다수결 투표에 의한 승인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승인에 좌우되는 규정들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행정법 당국의 검토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위원회는 석방일 또는 특정 수감자나 가석방자의 가석방 규정 위반 추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행한다:

- (1) 가석방 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모든 규정을 다수결로 검토 및 승인;
 - (2)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배분 제안과 이전 해 동안 실제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이 자금 배분과 지출에 대한 의견을 공표;
 - (3) 프로그램 완료를 포함하여 발전 기준표와 같은 요인에 근거하여 제2933조의 (b)항에 규정된 최소값 이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및 모범적인 행동에 대해 인정할 점수를 명시하는 규정들을 다수결로 검토 및 승인. 이 규정들은 주 교도소로 돌아올 가석방자가 점수 측면에서 다른 수감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어야 함;
 - (4) 제2933조의 (b)항, 제3000조의 (b)항의 (1)절 및 (c)항의 (3)절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적격 범죄 권고 목록을 다수결로 수립 및 승인;
 - (5) 교정재활국에 대해 가석방 시스템에 관한 특정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가석방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는 현재의 법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사;
 - (6) 교정재활국에 대해 재활 시스템에 관한 특정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이것은 회복 및 복귀 문제 연구 부서가 수집하며 현재의 재활 프로그램과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조사;
 - (7) 가석방 규정 위반에 관해 제3063.01조의 (e)항의 목적 상 알맞은 데이터 수집 형식을 다수결로 결정 및 승인;
 - (8) 캘리포니아 주 안팎에서 가석방 정책 및 실행에 대한 연구를 명령하고 그 비용은 해마다 제정되는 예산법에서 교정재활국에 분배된 자금으로부터 다수결의 동의를 얻어 지급하며 이 때 법에서 정한 제한을 받는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 주의 한 공립 대학교가 실시해야 한다;
 - (9) 교정재활국이 개발하고 실행하는 인센티브와 보상 시스템이, 가석방 감독 하에 있는 모든 예전 수감자들의 가석방 규정 준수를 장려하는지를 모니터;
 - (10) 가석방 절차에 관한 주 전역의 정책 개발, 정보 확장, 연구 및 계획에 대한 균형 잡힌 토론회를 제공;
 - (11) 형사 사법 체계의 모든 분야, 일반 대중 및 기타 관할 지역의 지식, 경험 및 지역 사회 가치 등의 정보원을 조합하여 입안 작성;
 - (12) 다른 주의 가석방과 관련 경험을 연구;
 - (13) 최소한 2년에 한 번 발행되는 보고서를 통해 재활 및 가석방국 장관과 주 의회에 권고 함;
 - (14) 이런 모든 노력이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정재활국이 제공하는 가석방 시스템 및 재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평가, 발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 (15) 교정재활국과 상의하여 수감자와 가석방 재활이라는 주제로 연국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안건, 초청 목록과 예산 수립 및 승인;
 - (16) 교도소에서 그리고 가석방 시 이행하는 혁신적인 재활 프로그램 및 최상의 실행을 식별 및 장려하고 우수한 재활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부서의 직원들을 공개 칭찬;
 - (17) 위원회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직원 채용 요구를 판단;
 - (18) 공개 회의 실시, 여론 초청 및 수렴. 위원회는 규정을 제정하고 제안한 모든 법령에 일반 대중의 검토와 의견을 허용하며 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함. 단 위원회는 규정을 승인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 모든 의견에 대답할 필요는 없음.
- (b) 2009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 위원의 후보 명부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19명의 투표권 있는 위원과 두 명의 투표권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두 명의 투표권 없는 위원은 재활 및 가석방 부 장관 또는 그의 피지명인과 총감찰관이다. 19명의 투표권 있는 위원 중 두

명의 위원은 의회 의장이 임명한 가석방 정책 분야의 전문 학자로 한다. 한 명의 회원은 상원 법사 위원회 (Senate Committee on Rules)가 임명한 가석방 정책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법학자로 한다. 한 명의 회원은 인구가 10만 명이 넘지 않는 카운티의 카운티 보안관으로서 주지사가 임명한 자로 한다. 한 명의 회원은 전직 재판관으로서 주지사가 임명한 자로 한다. 한 명의 회원은 과거에 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적이 있었던 자로 하며 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한 명의 회원은 인구 최소 10만 명의 카운티의 보안관으로서 주지사가 임명한 자로 한다. 한 명의 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한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한다. 한 명의 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한 캘리포니아 주 국선 변호인으로 한다. 한 명의 회원은 수감자를 대신하여 가석방 사건 소송에 경험이 있는 민간 형사 변호인으로 하며 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한 명의 회원은 범죄 피해자 그룹의 회원으로 하며 주지사가 임명한다. 한 명의 회원은 최소한 5년의 경험이 있는 치안관으로 하며 주지사가 임명한다. 세 명의 회원은 제3000조의 (b)항 (3)절에 정의된 약물 치료, 재활 또는 재가입 서비스 제공자로 하며 한 명은 의회 의장이, 다른 한 명은 상원 법령 위원회에서, 마지막 한 명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한 명의 회원은 지역 기반 서비스를 가석방자에게 제공하는 자로 하며 상원 법사 위원회가 임명한다. 한 명의 회원은 카운티 정부 연합의 회원으로 하며 주지사가 임명한다. 두 명의 위원은 교정재활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부서의 대표자로 하며 한 명은 의회 의장이, 다른 한 명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c) 2012년 1월 1일 비교적 작은 카운티의 카운티 보안관, 전 재판관, 가석방 집행관, 검사, 카운티 정부 대표자, 교정재활국내 가장 규모가 큰 교섭 단체의 대표 및 개인 형사 변호사의 임기는 종료한다. 2013년 1월 1일 피해 범죄자 대표, 국선 변호사, 인구가 보다 많은 카운티의 보안관, 부서 내 두 번째로 큰 교섭 단체 대표자, 지역 사회 기반의 서비스 제공자의 임기는 종료한다. 2014년 1월 1일 두 명의 전문 학자, 법학자, 전 수감자, 및 세 명의 재활 서비스 제공자의 임기는 종료한다. 후속 회원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되고 3년 동안 재직하며 각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에 시작한다. 임기 만료 이외의 이유로 공석에 임명이 있는 경우 피임명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종료하지 않은 임기 중 남아 있는 기간으로 한다. 회원들은 재임명될 수 있다.

(d) 위원회에서 정부 직원을 제외한 회원들은 교정재활국에서 결정할 수당을 받으며 이 수당은 교정재활국 직원이 주 의회에서 출장 시 허용되는 수당을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교정재활국은 모든 회원들에 대해 위원회와 교정재활국의 회의 참여와 임무수행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 여행 경비를 변상해야 한다. 또한 교정재활국은 모든 경비를 지불해야 하고,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직원을 공급하여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명령한 연구는 캘리포니아 주의 한 공립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은 해마다 제정되는 예산법에서 교정재활국에 분배된 자금으로부터 다수결의 동의를 얻어 지급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는다. 보상의 목적상 위원회 회의에 주 또는 지역 정부의 직원이 참석하는 것은 주 또는 지역 정부 직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으로 간주한다.

제24조. 형법의 제3063.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3.2조. 제3063.1조에 따라 가석방 조건으로 가석방자가 약물 치료를 명령 받은 경우 가석방자의 약물 검사는 가석방자의 재활에 대한 감독 당국과 치료 프로그램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치료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가석방자의 치료 프로그램 평가 시 피고의 개별 치료 프로그램의 다른 측면보다 약물 검사의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없다. 이러한 검사의 결과는 새로운 형사 기소 또는 절차의 증거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가석방 위반 발생 증거로도 인정될 수 없다. 카운티 또는 가석방 당국은 분석을 실시한 실험실이 다음과 같은 절차와 표준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때에만 검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유효성 검사, 초기 및 확인 검사, 컷오프 농도, 희석 및 불순물 섞임 기준, 짧은 표본 처리 절차.

제25조. 형법의 제505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50조. 교정국 장관 및 교정국장에 대한 문의/재활 및 가석방 장관 신설.

2009년 7월 1일부터 교정재활국 또는 교정국장에 대한 지시는 법 또는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정 및 가석방 장관 또는 교정국장에게

지시한다. 2005년 7월 1일부터 이 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교정부장에 대한 지시는 교정재활국에 지시한다. 이 날짜에 교정국장직위는 폐지된다.

제26조. 제6026.01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6026.01조. 교정 표준 당국은 각 달력 연도마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중 주요 범죄가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 범죄인 사람들의 수를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에 가석방 위반으로 인해 법원에서 새로운 형을 선고 받아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의 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의 간단한 소지로 인해 시설에 입소한 모든 사람들의 경우 보고서에는 이 자들의 과거 기록과 관련된 세부 사항, 문제가 된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 시설에 입소하는 이유, 신고형 기간 범위 및 이러한 자들에 부과되는 평균 형기 등이 최대한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법적 제재를 받는 약물 범죄로 인한 수감에 소요되는 추정 연간 비용 또는 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야 한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10년 7월 1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제27조. 제6026.02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6026.02조. 교정 표준 당국은 가석방자 수, 가석방자 프로그램 참여, 가석방 규정 위반 및 이러한 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해야 한다. 각 보고서는 1 달력 연도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가석방 감독을 받는 사람의 수와 감독 수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석방자의 수와 이러한 가석방자들이 등록한 특정한 종류의 프로그램; 의심되는 가석방 규정 위반의 수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가석방 위반의 수; 가석방 변경, 제재, 프로그램 추천과 취소를 포함하는 가석방 위반에 대한 대응; 가석방 위반으로 인한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 일수. 각 보고서는 제3063.1조에 따라 규정된 치료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섹션을 포함해야 하고 자격, 참여 및 종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각 보고서는 요구되는 정보의 각 종류마다 모든 가석방자들의 성별, 인종 또는 수감되는 카운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11년 7월 1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제28조. 제6032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6032조. 교정재활국은 캘리포니아 주의 재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조사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노력을 다른 법적 관할 지역의 최상의 관행 및 혁신을 위한 노력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감자 및 가석방 재활 분야에 대한 국제 회의를 해마다 개최해야 한다. 이 회의는 다른 주 및 국가의 교정재활 부서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완전한 프로그램, 의제, 초청 목록 및 예산은 교정재활국이 가석방 개혁 감독 및 책임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되 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가석방 개혁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과 합치하는 회의 비용은 교정재활국이 연간 예산 법령에서 교정재활국에 할당된 자금으로 지급하며 이 법령의 관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회의는 2010년 7월 1일까지 개최해야 한다.

제29조. 제6050.1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6050.1조. (a) 주지사는 재활 및 가석방 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주 교도소 및 필요한 경우 재가입 센터와 같은 다른 교정재활국 산하 시설에서 재직할 수석 부 교도관을 임명하며 이 자는 재활 교도관 (Rehabilitation Warden)으로 명명한다. 재활 교도관은 각 주 교도소 그리고/또는 시설에서의 재활 프로그램 실행 및 감독에 대한 책임과 함께 구금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들의 지역 분포도, 각 교도소 그리고/또는 시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장애물, 그리고 재활 및 가석방국 장관과 가석방 개혁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데이터를 재활 및 가석방 장관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 데이터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회복 및 재가입 문제에 대한 연구 부서를 통해 장관에게 제공한다. 각 재활 교도관은 장관이 해임할 수 있다. 장관이 해임하면 그 조치는 최종적으로 된다.

(b) 직원 관리 부서(Department of Personnel Administration)는 교도소 시스템의 다른 수석 부 교도관의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활 교도관의 보상을 정한다.

제30조. 제6126.01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6126.01조. 감찰관은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및 교정재활국에서 관리하거나 계약을 맺은 각 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재활 프로그램 종류와 이용 정도를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필요, 이용률 및 이행 평가 측정에 대비한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교도소와 시설의 등급을 매기고 평가해야 하며 각 교도소 또는 시설의 프로그램 실행 성공 정도 및 참여하는 수감자의 성공 정도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 보고서는 문자를 사용한 등급 체계를 사용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해야 한다. 예비 보고서는 최대한 2009년 10월 1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이후 연간 보고서는 매년 10월 1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제31조. 마리화나. 18세 미만의 자를 위한 전환처우. 벌금.

제31.1조. 건강 및 안전법의 제1135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57조. (a) 법에서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 농축 대마를 소지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징역, 오백달러(\$5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과 구치소 징역형 둘 다 부과하거나 주 교도소 수감으로 처벌해야 한다.

(b) 법에서 승인된 것을 제외하고 농축 마리화나 이외의 마리화나를 28.5그램 이하로 소지한 18세 이상의 자는 모두 경미한 법률 위반의 유죄 판결을 받고 백달러(\$10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평가, 수수료, 벌금을 포함한 추가 수수료는 부과한 벌금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서 승인된 것을 제외하고 농축 마리화나를 제외하고 28.5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모두 경미한 법률 위반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카운티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행정관이 인증한 과학에 의거한 교육 프로그램 완료를 요구해야 한다. 법에서 승인된 것을 제외하고 농축 마리화나 이외의 마리화나를 28.5그램 이하로 소지한 자는 모두 경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백달러(\$10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가 혐의가 있는 위반을 범한 날처 직전 2년의 기간 동안 이 하위 규정에 기재된 범죄로 재범 또는 크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전의 커소 범죄가 소송 절차에서도 혐의가 인정되고 배심 재판에서 배심원이 또는 법원 재판에서 법원이 혐의를 사실로 판결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인정된 경우 형법 제1000.1조와 제1000.2조의 규정들이 적용되고 법원은 법원 심리, 판결, 또는 검사의 동의 없이 교육,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이 자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지역 사회의 적절한 프로그램에 이 자를 위탁해야 한다. 이 자가 너무 일탈한 경우에는 본 하위 조항에 명시된 벌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자를 수용할 지역 사회 프로그램이 없으면 본 하위 조항에 명시된 벌금이 적용된다. 본 하위 규정 위반으로 체포되고 재판관이 주재하는 재판을 요구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형법 제853.6조에 따라 신분을 증명할 만한 만족스러운 제시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으면 이 자를 풀어야 하고 체포하지 않는다.

(c) 법에서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 농축 대마 외의 마리화나 28.5그램을 초과하여 소지한 자에게는 모두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징역, 오백달러(\$5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과 구치소 징역형 둘 다 부과한다.

(d) 법에서 승인된 것을 제외하고 농축 마리화나를 이외의 마리화나를 28.5그램 이하 소지한 18세 이상의 자는, 유치원 또는 1-12학년의 교육 과정 중 수업이나 학교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 동안에 근거하여, 모두 경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오백달러(\$500) 이하의 벌금이나 10일 이하의 구치소 수감,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해야 한다.

(e) 법에서 승인된 것을 제외하고 농축 마리화나 이외의 마리화나를 28.5그램 이하 소지한 18세 미만의 자는 유치원 또는 1-12학년의 교육 과정 중 수업이나 학교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 동안에 근거하여, 모두 경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다음의 처분이 부과된다:

(1) 첫 번째 범죄를 범했다는 판결이 있을 시 이백 오십 달러(\$250) 이하의 벌금과 카운티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증한 과학에 의거한 약물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완료.

(2) 두 번째 혹은 그 이상의 범죄를 범했다는 판결이 있을 시 오백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청소년 회관 입소, 목장, 캠프, 산림 캠프 참여 또는 안전한 청소년 시설 입소.

(f) 본 조에 따라 징수한 벌금은 제11999.6.2. 조의 (b)항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이 지정된 카운티의 신탁 기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제32조. 트랙 III 전환 처우의 성인 중범죄자를 위한 약물 법원 프로그램 감독.

제32.1조. 건강 및 안전법의 제11970.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70.1조. (a) 본 조는 ‘1999년 광범위한 약물 법원 실행 법령’으로 식별되며 인용될 수 있다.

(b) 2009년 7월 1일 이후 트랙 III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 모든 성인 중범죄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고 트랙 III 참여 자격이 있는 피고들을 다루는 약물 법원들은 트랙 III 규정, 형법의 제1210.2조와 이 법의 제11999.5조에서 제11999.13조가 관할 및 통제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도이다.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약물 법원에 참여하는 피고들과 트랙 III 참여 자격이 있는 피고들은 가능한 최대한 트랙 III 프로그램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b) (c) 이 조항은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주 부서에서 이행하며 트랙 III 치료에 등록된 성인 중범죄자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은 제11999.5.2조에 기술된 대로 감독 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해야 한다.

(c) (d) 교정재활국과 법사 위원회는 성인, 청소년 및 청소년 법원의 피고거나 청소년 법원에 구금된 아동의 부모를 위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지역 약물 법원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11970조의 1998년 약물 법원 제휴법에 따라 설립된 약물 법원 최고 운영 위원회(Drug Court Partnership Executive Steering Committee)를 통해 이 조항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제33조. 성인 중범죄자를 위한 약물 법원 프로그램 평가.

제33.1조. 제11970.2.1 조를 다음과 같이 건강 및 안전법에 추가한다:

제11970.2.1조. 제11970.2조의 (d)항에도 불구하고 제11970.1조에서 제11970.3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성인 중범죄자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 평가는 제11999.10조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그램 평가에 통합되어야 한다.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주 부서는 2007년 10월 31 전에 수립된 입안을 사용하여 성인 중범죄자들과 관련한 추가 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성인 중범죄자들을 위한 약물 법원 프로그램 부서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는 연방법 또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만 개정이 가능하다. 교정재활국은 법사 위원회와 협력하여 1999 광범위한 약물 법원 실행 법을 위관 평가 입안을 수립하여 성인 중범죄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개별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 트랙 III의 참여 자격이 있는 성인 중범죄자를 위한 약물 법원 프로그램 자금 지원.

제34.1조. 건강 및 안전법의 제11970.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70.3조. (a) 트랙 III 치료에 참여 자격이 있는 성인 중범죄자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형법의 제1210.2조 제정 전 운영되었던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2009년 7월 1일 시작하며 ~~어~~ **강은** 제11999.6.2조의 (c)항에 설명된 트랙 III 프로그램을 위한 연간 상당금에서 주로 자금이 지원되며 트랙 III 치료에 참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타 모든 프로그램들은 연간 예산 법에 따른 총당에 의해 자금이 지원된다는 것이 **주의화** 주민들의 의도이다.

(b) 본 조에 따라 허가된 프로그램을 위해, 그리고 트랙 III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 성인 중범죄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연간 예산 법에서 자금이 총당된 금액의 최대 5퍼센트까지 부서와 법사 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카운티에 대한 기술 지원과 평가 요소 개발이 포함된다.

제35조. 약물 남용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취소.

제35.1조. 건강 및 안전법의 제11999.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99.30조. (a) 주민들은 치료 참여 자격이 있는 약물 범죄자들의 그룹을 위해 개별 자금 지원 경로를 유지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조는 무효로 되며 2009년 7월 1일 발효한다. 본 조에 따라 총당 또는 분배된 자금 일체는 이 규정에 따라 사용된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주 또는 카운티에서 보유한 자금은 제11999.6.2조의 (b)항에 따라 수립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카운티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조항은** 약물 남용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배분되는 자금은 2000년 약물 남용 및 범죄 예방 법령에 따른 서비스에 참여 자격이 있는 범죄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항 이행은 연간 예산 법에 따른 총당의 직용을 받는다.

(b) 교정재활국은 카운티 일반 기금 약속 또는 프로그램 자격을 증명하는 주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의 자금 약속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이행 자격을 증명된 카운티에게 약물 남용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분배해야 한다. 교정재활국은 다음의 요인에 기초하여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분배할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1) 약물 치료를 명명 받은 범죄자 중 치료를 실제로 시작한 범죄자의 퍼센트.

(2) 치료를 명명 받은 범죄자 중 처방된 치료 과정을 완료한 자의 퍼센트.

(3) 부서에서 결정된 기타 다른 요인.

(c)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격 있는 각 카운티로의 배분은 카운티 보조금의 일달러(\$1) 당 7달러(\$9)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

(d) 본 조항하의 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카운티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특정 기준에 따라 부서에서 결정해야 한다:

(1) 약물 치료를 명명 받은 사람의 치료 경과를 정기 일정에 따라 검토하는 진단 법원 일정표의 수립 및 관리.

(2) 약물 법원의 존립 또는 약물 법원의 설립, 기타 유사한 방법 및 주 교도소로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피고들을 수용할 의지.

(3) 범죄자들의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약물 검사에 사용할 프로토콜 수립 및 유지.

(4) 범죄자의 치료 요구 평가 및 범죄자를 알맞은 치료 단계에 배치하기 위한 프로토콜 수립 및 유지.

(5) 가석방 중인 범죄자들의 효율적인 감도를 위한 프로토콜 설립 및 유지.

(6) 자격 있는 가석방자를 위해 서비스의 전체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프로토콜 수립 및 유지.

(e) 부서는 참여 자격 있는 카운티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행정 비용을 제한할 수 있고, 행정 비용을 위해 본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지출을 부서의 제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부서는 프로그램 자금 수령에 대한 조건으로, 본 조에 따라 제공된 자금 중 직접 치료 비용 이외의 서비스를 위한 자금 지출에 대한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f) 본 조에 따라 자금을 받으려면 카운티는 다음 사항을 모두 기록된 신청서를 교정재활국에 제출해야 한다:

(1) 하위 규정 (b)항에서 요구된 대로 카운티의 자금 약속.

(2) 하위 규정 (d)항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 판단된 카운티의 자격.

(3) 프로그램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려는 카운티의 계획 및 약속으로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음:

(A) 추가 치료 및 마약 대체 치료를 포함하여 강화된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범죄자들에게 이를 제공.

(B) 서비스의 공동 제공 감소, 범죄자 감독 강화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통해 필요하다고 결정된 서비스 강화등과 같은 접근 방법과 활동을 통해 치료에 참여, 계속 및 완료하는 범죄자의 비율을 높임.

(C) 적절한 치료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지연을 줄임.

(D) 약물 법원 또는 치료 경과에 대한 정기 검토 일치를 기록하는 진단 법원 일정표의 같은 유사 모델 사용과 법원, 가석방 당국 및 차포진 공고한 협력.

(E) 필요하지만 아직 실행할 수 없는 치료 서비스를 개발.

(F) 아래 관계자들과의 상의 후 교정재활국에서 승인한 기타 활동, 방법 및 서비스.

(g) 교정재활국은 본 조에 따라 배분된 자금에 대한 카운티의 지출 내역을 검사. 본 조에 합치하지 않는 지출 금액은 주에 환원해야 함.

(h) 교정재활국은 연간 예산 심리 중 프로그램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추가 권고안, 크라코 경쟁적 접근 방법, 실적에 근거한 분배 및 측정할 데이터의 출처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금 할당 및 조달 방법에 대한 추가 권고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과 상의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i) (1) 2006-07과 2007-08 재무 연도에 교정재활국은 전체 카운티 공식 문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자사로 본 조를 실행할 수 있고 정부 법령 제2편 3절 1부의 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입법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2008-09 재무연도부터 시작하여 교정재활국은 (2)절에 따라 채택한 응급 규정에 따라 본 조항을

이행할 수 있다.

(2) 본 조에 따라 교정재활국에서 채택한 규정은 정부 법령 제2편 3절 1부의 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응급 규정으로 채택해야 하며, 정부 법령의 제11349.6조를 포함하는 이 장의 목적 상 이들 규정이 채택은 응급 사항이며 행정법 사무소에서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크리코 일반 부처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 법령의 제11346.1조의 (c)항을 포함하여 교정재활국에서 채택한 규정은 정부 법령 제2편 3절 1부의 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에 따라 채택된 응급 규정은 행정법 관청에 제출되고 사무소가 폐지하지 않으며 교정재활국에서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 절의 어떤 것도 정부 법령 제11346.1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비응급 또는 응급 규정으로서 교정재활국이 추가적인 재정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36조. 건강 및 안전 법의 제11999.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99.5조. 자금 충당.

본 법령 통과 시 2000-01 회계 연도를 위해 일반 기금에서 6천만 달러를 지속적으로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2001-02 회계 연도에는 추가적으로 1억2천만 달러를 일반 기금에서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으로 지속 충당하고 이후 각 재무 연도 당 추가적으로 1억2천만 달러를 충당하며 2005-06 회계 연도에 종료한다. 이들 기금은 명시된 각 회계 연도의 7월 1일에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으로 송금된다. 기금

(a)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 기금에서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으로 1억5천만 달러를 충당해야 하며 이후 2009-10 회계 연도부터 시작하여 각 회계 연도 마다 4억6천만 달러를 충당하되 (c)항에 명시된 대로 해마다 가격 인플레이션을 위해 수정을 하며 주 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에 한 번 수정을 한다.

(b) 재무부는 매년 5월 중에 다가오는 회계 연도를 위한 수정 수치를 일반에게 공표해야 한다. 감사관은 각 회계 연도의 첫 날 재무부가 계산한 금액의 자금을 일반 기금에서 약물 치료 신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c) 재무부는 2009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2009-10 회계 연도에 충당한 기준 수치에 가격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여기에 수정을 가하고, 5년에 한 번씩 이전의 5년 간 생긴 주 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을 하여 연간 자금 수준을 계산하며 이러한 수정은 2016-17 회계 연도에 처음으로 실시한다.

가격 인플레이션을 위한 수정은 주 정부 및 지역 정부의 구매를 위해 미국 상무부의 경제 분석 부서에서 발표한 잠재적 물가 지수 (Implicit Price Deflator)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 데이터 소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이와 유사하거나 계승 기관에서 발표한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회계 연도 시작 전 이용 가능한 마지막 데이터 발표 시점에 기초해야 한다. 주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은 미국 통계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d) 자금은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으로 이전된 것으로 주의회가 해 마다 충당하지 않으며 시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본 조의 어떤 내용도 주의회가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으로 추가 충당하는 내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7조. 제11999.5.1조를 다음과 같이 건강 및 안전법에 추가한다:

제11999.5.1조. 주 정부 기관 및 지역 정부 기관 감독.

“부서(Department)”란 트랙 I, 트랙 II, 트랙 III 전환 처우 및 청소년 프로그램의 문맥에서 사용할 때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주 정부 부서를 의미하며 제11999.4조에서 제11999.14조에 따라 모든 자금을 배분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 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카운티의 요청을 감독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각 카운티는 지역의 책임 기관으로서,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제38조. 제11999.5.2조를 다음과 같이 건강 및 안전법에 추가한다:

제11999.5.2조. 감독 위원회.

(a) 따라서 치료 감독 및 책임 위원회 (감독 위원회)를 신설하며 이 위원회는 알코올 및 약물 문제 주 부서의 트랙 I, 트랙 II, 트랙 III 전환 처우 및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책의 이행을 검토, 지시 및 승인하기 위해 소집된다. 형법의 제1210.1조와 제1210.2조를 포함하여 제1210.01조에서 제1210.05조까지의

규정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서에서 제정되고 이 법의 제11999.4조에서 제11999.14조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일반 적용성 관련 규정은 감독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다. 위원회는 법규 및 회계 문제에 대해 (b)항에서 명시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다. 위원회의 승인에 좌우되는 규정들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행정법 당국의 검토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행한다:

(1) 검토 및 다수결 투표에 의한 승인:

(A) 본 법령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관계된 카운티 레벨의 실행 문제와 관련한 모든 규정 및 트랙 I, 트랙 II, 트랙 III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 제공된 자금 사용;

(B) 제11999.6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제공을 위한 배분 공식. 위원회는 성인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제공 공식과 상당히 다른 청소년 프로그램 자금 제공 배분 공식을 승인할 수 있다;

(C) 제11999.6조의 (d)항에 규정된 대로 카운티 분배액 중 최고 10퍼센트까지 임시 지출에 사용하는 규정;

(D) 본 법령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약물 치료 서비스 외에 제11999.6조의 (a)항에서 설명된 대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

(E) 비폭력적이고 미래에 약물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타깃 인구 집단을 정의하기 위한 감독 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정립을 포함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사용과 관련된 규정;

(F) 본 법령에 따라 제공된 자금 배분에 책임이 있는 책임 기관으로서,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 이외의 기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카운티의 요청;

(G) 연구자들에게 이미 승인된 연구 범위 밖의 문제를 연구할 것을 명령하는 제안;

(H) 중독 교육 프로그램, 이행 훈련 및 회의를 위해 부서에서 따로 배정할 것을 제안한 연간 금액;

(I) 합성 진통 마취제 저하 치료를 포함한 약물 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기존 프로그램에 의해 충분히 충족할 수 없는 카운티의 경우, 약물 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직접 계약에 사용하기 위해 부서에서 따로 배정할 것을 제안한 연간 금액;

(J) 제11999.10조에 따라 제공된 공립 대학에서의 연구를 위해 부서에서 따로 배정할 것을 제안한 연간 금액;

(K) 평가를 실행하는 사람들과 표준 평가 도구 또는 도구를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임상 평가와 관련된 규정;

(L) 카운티 계획에 대한 모든 요구 조건, 여기에는 이러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횟수, 인센티브 및 보상에 사용되는 금액에 대한 제한, 연간 이전되는 자금 또는 유보액에 대한 제한, 해당 지역 사회에서 지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다루는 요구 사항, 카운티 구치소에서 약물 과용에 대한 인식 및 예방 자료와 전략 자료 배포, 폐해 감소 실행에 대한 교육 제공 및 폐해 감소 치료와 서비스 시행 등이 포함됨;

(M) 부서에서 검토를 마친 모든 카운티 계획;

(N) 인구 10만명 미만의 카운티의, 치료 및 비치료 비용과 관련된 규정으로부터의 면제 청원, 여기에 대한 승인은 4년간 유효함;

(O) 본 법령의 요구 조건에 합치하여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자금에 대해 카운티에서 환원하는 대신 제안한 수정 조치;

(P) 각 카운티의 연간 보고서 양식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범위;

(Q) 직고가 30일 내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형법의 제1210.03조의 (j)항, 제1210.1조의 (h)항의 (1)절, 제1210.2조의 (f)항에서 규정된 대로 법원이 수집할 것을 요구하는 데이터 범위;

(R) 본 법에 따라 실시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서의 연간 보고서에서 다룰 문제와 데이터 범위; 그리고

(S) 제11999.10조에 따른 외부 평가를 위한 모든 연구 계획.

(2) 부서에 트랙 I, 트랙 II, 트랙 III 프로그램 및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

(3) 부서에 트랙 I, 트랙 II, 트랙 III 프로그램 및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제공할 것을 요구;

(4) 합성 진통 마취제 저하 치료가 본 법령에 합치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감독 및 법집행 메커니즘 개발;

(5)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주 당국과 상의하여 본 법령에 따른 프로그램과 약물 치료에 대한 주 전역의 연간 회의 안건, 초청 목록, 및 예산 수립 및 승인; 그리고

(6) 공청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고려함. 단 감독 위원회는 규정에 동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 모든 의견에 대답할 필요는 없음.

(c) 2009년 7월 1일까지 위원회 위원들의 후보 명부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3명의 투표권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의회 의장이 임명한 세 명을 포함하여 다섯명의 치료 제공자, 그 중 최소한 한 명은 중독 전문 의사, 최소한 한 명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전문 치료 제공자, 그리고 상원 의장이 임명한 두 명으로 그 중 한 명은 주 전역의 치료 제공자 협회 회원; 정신 질환 및 약물 남용으로 이중 진단을 받은 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두 명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그 중 한 명은 주 전역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협회 회원이 되며 둘 다 주지사가 임명함; 두 명의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로 둘 다 상원 의장이 임명; 두 명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카운셀러로, 그 중 한 명은 주 전역의 카운셀러 협회 회원으로 둘 다 주지사에게 의해 임명; 두 명의 가정방부 집행관 또는 사무관으로 둘 다 주지사에게 의해 임명; 2009년 약물 남용 및 범죄 예방 법령, 또는 본 법령의 트랙 I 또는 트랙 II에 따라 설립된 치료 프로그램에 예전에 참여했던 자로 주지사가 임명; 두 명의 형사 변호사, 이 중 한 명은 국선 변호사와 한 명의 민간 변호사로 둘 다 의회 의장이 임명;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 또는 사립 대학교의 공공 정책 연구자 두 명으로 둘 다 상원 의장이 임명; 시민 권리, 약물 법 그리고/또는 약물 정책과 관련된 조직의 회원 두 명으로 상원 의장이 임명; 세 명의 법 집행관 그리고/또는 재직 중이거나 퇴임한 사법부 일일들로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음.

(d) 2011년 7월 1일부터 다음 회원들의 임기는 종료한다: 의회 의장이 임명한 치료 제공자 대표 두 명, 상원 의장이 임명한 치료 제공자 대표 한 명, 한 명의 공공 정책 연구자, 한 명의 형사 변호사, 사법부 또는 법집행관 대표 한 명,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 약물 치료 프로그램 카운셀러 한 명,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한 명, 시민의 권리, 약물 법 그리고/또는 약물 정책과 관련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한 명, 가정방부의 임원 또는 간부 대표자 한 명, 그리고 과거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자. 2012년 7월 1일부터 다음 회원들의 임기는 종료한다: 의회 의장이 임명한 치료 제공자 대표 한 명, 상원 의장이 임명한 치료 제공자 대표자 한 명, 약물 치료 프로그램 카운셀러 한 명, 한 명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 가정방부의 임원 또는 간부 대표 한 명, 형사 변호사 한 명, 시민 권리, 약물 법 그리고/또는 약물 정책과 관련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한 명, 공공 정책 연구자 한 명, 법집행부 또는 사법부의 대표자 두 명. 2009년 7월 1일까지 첫 번째 위원회 임명을 위한 후보 구성을 하면, 임명자 부문에 따라 둘 이상의 임기 종료일이 있으면 의회 의장, 상원 의장, 주지사는 자신이 각각 임명한 대표자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승계 회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되고 4년의 임기를 가지며 각 임기는 선임자의 임기가 종료하는 날에 시작한다. 임기 만료 이외의 이유로 공석에 임명이 있는 경우 피임명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종료하지 않은 임기 중 남아 있는 기간으로 한다. 회원들은 재임명될 수 있다.

(e) 정부 직원을 제외한 감독 위원회의 회원들은 부서의 장이 결정할 일당을 받으며 부서 직원이 주 밖으로 출장 시 허용되는 일반적인 일당을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위원회 회의 및 임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발생한 모든 회원의 필요 경비는 부서에서 변상해야 한다. 모든 경비는 부서에서 지급해야 하고 부서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직원을 제공해야 한다. 보상의 목적상 위원회 회의에 주 또는 지역 정부의 직원이 참석하는 것은 주 또는 지역 정부 직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으로 간주한다.

제39조. 건강 및 안전 법의 제11999.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99.6조. (a)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에 예치한 자금은 건강 및 인사 서비스 기관의 장이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주 부서를 통해서 카운티에 매년 배분하여 본 법령에 규정된 대로 트랙 I, 트랙 II, 트랙 III 전환 처우에 따른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치료자를 배치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고, 직업 훈련, 가족 상담, 정신 건강 서비스, 폐해 감소 치료 및 서비스, 읽기 쓰기 훈련 및 감독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주택 지원, 양육과 임상 평가, 법원 출석, 약물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및 본 법령 하에 따라 직업 훈련, 가족 상담, 폐해 감소 치료와 서비스, 읽기 쓰기 훈련과 같은 법원에서 명령한 기타 서비스와 부차적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한 이동 교통 수단 제공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에서 변상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트랙 I이나 트랙 II에 참여하는 피고를 위해 또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 약물 검사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가석방 당국 비용, 법원 모니터링 비용 및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다. 부서는 본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다. 부서는 본 법령에 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수감 비용은 기금에서 변상할 수 있다. 이 자금은 감독 위원회가 수립한 공정하고 평등한 배분 공식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하며, 이 공식은 1인당 법적 체재를 받는 약물 소치 위반 체포, 본 법령의 목적상 부서에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물 남용 치료 사건 배경 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서는 자금의 일부를 유보하여 합성 진통 마취제 치료를 포함한 약물 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부서의 장 또는 감독 위원회가 결정한 카운티 또는 지역의 경우 약물 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단, 이 조의 어떤 내용도 부서나 카운티를 포함하여 어떤 주체가, 약물 법원 제후 법 또는 광범위한 약물 법원 실행 법에 따라 인정된 기금금을 제외하고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의 자금을, 현재 약물 남용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자금원이나 메커니즘의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이해될 수 없다. 약물 남용 치료는 트랙 III 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에서 제공하는 자금은, 공공 보험 또는 개인 보험, 정신 건강 서비스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정신 건강 서비스, 교정체활국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치료 프로그램, 피고 개인의 기여 혹은 피고가 수령 자격이 있는 다른 자금원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그 밖의 다른 수단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관리 비용을 지급한다. 추카토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에서의 자금은 약물 치료 법원이 10.5천의 9부 2장의 2조(제11970.1조부터 시작) 또는 3조(제11970.4)조에 따라 설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여기에는 이러한 약물 치료 법원과 관련된 약물 치료 또는 가정방부 중단을 포함한다.

(b) 카운티에 분배하기 위한 연간 할당액을 산정하기 전, 부서는 다음의 항목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금액 중 감독 위원회가 다수결로 승인한 금액을 약물 남용 치료 기금에서 보류한다:

(1) 합성 진통 마취제 치료를 포함한 약물 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부서의 장 또는 감독 위원회가 결정한 카운티 또는 지역의 경우 약물 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

(2) 본 법에 따라 중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본 법에 따라 감독 위원회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을 것을 허가한 사람들에게 중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3)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지역 이해 관계자들에게 회의 제공; 그리고

(4) 제11999.10조에서 규정된 공립 대학교의 연구 비용 지급.

(c) (d)항에서 규정된 변경에 따라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에 남아 있는 자금은 이후 해마다 신탁 기금의 하위 계정으로 배분해야 한다:

(1) 형법 제1210조의 하위 규정 (n)항에 정의된 대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15 퍼센트.

(2) 형법 제1210.03조에 따라, 트랙 I 프로그램의 치료 및 관련 비용을 위해 15 퍼센트.

(3) 형법 제1210.1조에 따라, 트랙 II 프로그램의 치료 및 관련 비용을 위해 60 퍼센트.

(4) 형법 제1210.2조에 따라, 트랙 III 프로그램의 치료 및 관련 비용을 위해 10 퍼센트.

(d) 부서가 제정하고 감독 위원회에서 승인한 법령 제정 시 트랙 I, 트랙 II 그리고/또는 트랙 III 프로그램을 위해 카운티에 배분되는 것 중 최대 10퍼센트까지는, 최고의 실행 채택, 혁신적 프로그램 수립, 그리고/또는 규정되지 않은 인구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등을 조건으로 하여 배분될 수 있고 카운티의 매칭 준비금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처럼 카운티 배분액의 일부를 조건부로 하는 규정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 불충족 시 카운티가 이용하지 않은

자금의 처분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부서는 트랙 I, 트랙 II, 트랙 III 프로그램을 위한 배분액에 대한 카운티의 매칭 준비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임시 지출도 할 수 없다.

(e) 본 법령의 트랙 III 프로그램 신설과 신탁 기금 자금의 10 퍼센트를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령의 어떤 규정도 다음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1) 본 법령의 규정 상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또는 피고들에게 법원이 감독하는 치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수립 또는 유지;

(2) 본 법령의 규정 상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또는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감독하는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 총당. 총당은 주 의회가 결정함; 또는

(3) 카운티, 연방 정부 또는 민간 자원이 제공한 자금에서 지역 법원이 감독하는 치료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것.

제40조. 건강 및 안전 법의 제11999.6.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99.6.1조. 가석방자의 치료 비용 지급.

제11999.6조에도 불구하고 본 법령의 규정상 치료를 받는 가석방자를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약물 치료 및 관련 서비스의 비용은 교정재활국이 지급해야 하며 약물 남용 및 치료 시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a) 다른 법규정도 불구하고 교정재활국이 자금을 약물 남용 치료 기금에 배분할 때에는 카운티에 이전에 배분한 것 중 지당잡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으면 카운티에 배분할 금액만큼 분류해야 한다. 본 하위 규정에 따른 각김 없이 카운티에서 카운티가 배분을 받은 대부분의 최근 회계 연도에는 카운티에 배분한 금액 중 5퍼센트를 보유하도록 방해 없는 자금을 허용해야 한다.

(b) 교정재활국은 제11999.6조의 (a)항 및 이 조에 따라 채택한 다른 규정에 따라, 따라 금액의 75퍼센트를 배분하고 (a)항에 따라 유보한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c) 교정재활국은 모든 카운티가 대부분의 회계 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최종 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a)항에 따라 유보한 금액의 25퍼센트를 넘겨 두어야 한다. 이후 교정재활국은 지당잡하지 않은 자금의 실제 금액을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해, 따로 넘겨 둔 금액을 분배해 주며, 그 금액은 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도 된다. 본 하위 조항에 따라 재분배하지 않는 자금 잔액은 (c) 하위 조항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d) 실제 지출에서 (a)항에 따라 카운티에 유보한 것보다 더 많이 유보해야 했었다고 교정재활국에서 결정된 경우 가능한 정도까지 (c) 항에 따라 분배액을 조절해야 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카운티에서 제 때에 실제 지출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교정재활국은 제량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만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고 보고를 하지 않은 카운티는 본 조에 따른 배분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e) 약물 남용 치료 기금의 수익, 자금 기타 다른 수령이, 채무 없는 자금을 제정도를 통하여 카운티에 주기적으로 배분하는데 충분하다면 재무장관은 충당한 자금을 초과하는 지출을 허용할 수 있고 이는 그 필요성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최소한 30일 이후에 해야 하며 통지는 각 의원의 재무 위원회 장과 공동 주 의회 예산 위원회의 장에게 하거나 같이 지명된 자에게 해야 한다.

(f) 교정재활국은 전체 카운티 책임 당국의 공문 또는 기타 유사한 저서로 본 조를 실행할 수 있고 정부 법령 2편 3부의 3.5장(제11340 조부터 시작)의 입법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제41조. 제11999.6.2조를 다음과 같이 건강 및 안전법에 추가한다:
제11999.6.2조. 카운티 관리

(a) 카운티 계획. 카운티는 교정재활국과 감독 위원회에 본 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실행 및 지출 계획을 최소한 3년에 한 번, 또는 감독 위원회에 승인한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보다 자주 제출해야 한다. 10만 명 미만의 카운티는 감독 위원회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카운티들과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할 수 있다.

(b) 자금 분리. 제11999.6조에 따라 자금을 받는 카운티는 세 개의 개별 신탁 기금을 설정해야 한다: 하나는 트랙 I 프로그램과 트랙 II 프로그램, 하나는 트랙 III 프로그램을 위해, 하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사용한다. 카운티들은 주에서 받은 모든 자금을 적절하게 나눠야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미만의 카운티는 감독 위원회에 이 제한의 면제를 청원할 수 있다.

(c) 치료와 비 치료 비용 규정. 카운티는 제11999.6조에 따라 트랙 I과 트랙 II 치료 프로그램에 제공된 자금의 최소 80퍼센트를 치료 제공 및 지원 서비스에 지출하며 최대한 20퍼센트는 가석방비용, 법원 모니터링 비용 및 본 법령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비치료 비용에 지출할 수 있다. 감독 위원회는 비용을 치료 비용으로 할 것인지 비 치료 비용으로 할 것인지를 분류하고 트랙 III 프로그램에 대한 비치료 비용 퍼센트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된 자금 사용을 설명하는 법령을 승인해야 한다. 이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의 카운티는 감독 위원회에 이들 제한의 면제를 청원할 수 있다.

(d) 초과비용. 청소년 치료. 2008-09, 2009-10, 2010-11과 2011-12 회계 연도에 카운티는 약물 남용 치료 기금에서 받고 지출하지 않은 기금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할 수 있다. 이후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지출하지 않은 자금과 관련되고 감독 위원회가 승인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승인된 카운티 계획에 따라 유보한 자금을 제외하고 카운티에 배분한 자금 중 3년 내 허가 받은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카운티 자금으로 이전된다.

(e) 지역 연구. 카운티가 교정재활국과 감독 위원회로부터 연구 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은 경우 제11999.6조에 따라 제공된 자금의 일부를 개별 연구에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건강 및 안전 법의 제11999.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99.8조. 잉여 자금.

회계 연도 말에 약물 남용 치료 기금에 남아 있는 자금은, 후속 회계 연도에 이어질 트랙 I, II, 또는 III 프로그램의 피고에게 제공할 청소년 프로그램 또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야 한다.

제43조. 건강 및 안전 법의 제11999.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99.9조. 교정재활국은 이 법에 따라 실행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매년 발행해야 한다. 연간 데이터 출판은 회계 연도 말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는 이러한 연간 보고서에 공표할 데이터를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11999.9.1 조에 따라 주 의회 분석가 사무소에서 보고서 포함에 요구되는 모든 사건과 재무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는 전자적으로 발행될 수 있다. 교정재활국은 실행할 수 있는 즉시, 요청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주 의회 분석관 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a) 교정재활국은 2년의 추속 연구를 세 번 실시하여 본 법령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금이 조달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재무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연구를 각각 2009년 1월 1일, 2011년 1월 1일,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전까지 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연구는 다음의 모든 항목에 추가하여 프로세스 실행 연구, 더 낮은 수감 비용 검토, 범죄 감소, 교도소 및 구치소 건설 감소, 복지 비용 절감, 자금의 충분성, 기타 부시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영향이나 문제점을 포함한다:

- (1) 형사 사범은 제체포, 예방된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일 수 및 범죄 경향을 측정.
 - (2) 다음의 결과로 발생한 제체포를 요약 문서로 분류:
 - (A) 가석방 위반.
 - (B) 가석방 취소.
 - (C) 집행 유예 위반.
 - (D) 집행 유예 위반.
 - (3) 범죄자가 다음과 같은 항목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에 대한 판결 분류:
 - (A) 가석방 유지.
 - (B) 구치소 구형.
 - (C) 교도소 수감 구형.
 - (4) 사용한 알고리즘과 약물, 고용, 건강, 정신 건강 및 가족 및 사회 자원과 같은 삶의 지표의 원수율과 질을 측정하는 치료.
 - (5) (1)에서 (3)절에 설명된 모든 정보에 대한 개별 논의, 메타메타데이터의 소지 또는 사용으로 체포되거나 메타메타데이터 주요 남용 약물인 경우를 포함하고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기한된 보고서부터 시작하여 이 보고서는 메타메타데이터 범죄자들에게 특정된 치료의 비용과 혜택에 대한 개별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 (b) 본 법령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금이 조달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재무 영향을 평가한 연구에 추가하여 교정재활국은 본 법령의 결과로 복무하는 참여자들의 특성과 수를 상세히 보고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4조. 제11999.9.1조를 다음과 같이 건강 및 안전법에 추가한다:
제11999.9.1조. 자금 조달 권고안.

각 2010-11, 2012-13 및 2013-14 회계 연도와 이후 정기적으로 주 의회 분석가 사무소는 제1210.01조에서 제1210.04조, 그리고 형법의 제1210.1조와 제1210.2조에 따라 이전 연도에 프로그램에 제공된 자금이 충분한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행한다. 보고서는 치료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또는 관련 프로그램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권고안을 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요구를 산정 또는 견적 낼 수 있는 정도로, 연구자, 치료 제공자, 의사,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권장하는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 보고서는 주와 카운티의 재무 조건을 고려한 자금 조달에 대해 개별적인 권고를 할 수 있다.

제45조. 건강 및 안전 법의 제11999.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99.10조. 교정재활국은 2009-10년에서 2014-15년까지의 회계 연도의 총 자금의 최소한 1퍼센트, 그리고 후속 재무 연도에는 각 년마다 총 자금의 0.5 2퍼센트까지 캘리포니아 주의 두 개의 공립 대학교 - 하나는 주의 북쪽, 하나는 주의 남쪽에 있는 것 -에서 실시할 연구에 제공하며 이 연구는 트랙 I, 트랙 II, 트랙 III 치료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와 재정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조에 따라 비용이 지급된 보고서와 연구 결과는 두 개의 대학교가 공동으로 발행해야 하며 부서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최소한 3년에 한 번 발행되는 연구 결과는 경제적, 공공 보건, 공공 정책 및 법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는 주와 지역의 마약 당국 및 금지 정책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일부는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약물 법 집행국의 영향을 다루고 수량 및 질적 분석을 통해 (a) 인종, 성별 및 사회경제 지위에 근거한 개별 영향, (b) 주 및 지역의 약물 집행관 사무소의 결정, 전략 및 실행과 이 개별 영향에 관한 관계 및 (c) 약물 관련 법, 정책 및 공권력의 부수적 결과 등을 연구한다.

감독 위원회는 다수결로 제11999.9조에서 ~~따라~~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서 실시하는 연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건강 및 안전 법의 제11999.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99.11조. 카운티 보고서.

카운티들 각 카운티는 본 법령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와 특징, 기타 필요한 데이터를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매 년 제출한다. 교정재활국은 카운티가 이러한 정보 및 ~~교정재활국에서~~ 요구하는 다른 정보를 보고하는데 사용하는 양식을 만들고 감독 위원회가 이 양식을 승인한다. 이 양식은 트랙 II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고의 약물 치료 서비스와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고하고 카운티가 자금 조달의 적절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한다. 교정재활국에서는 카운티의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수립해야 한다. 교정재활국은 연방 법 또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이 공개를 금하는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전자식으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47조. 건강 및 안전 법의 제11999.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99.12조. 교정재활국은 본 법령이 제공한 자금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조달한 것 중 카운티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카운티는 본 법의 규정에 합치하여 지출하지 않은 자금을 교정재활국에 환원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의 다수결로 인한 승인으로 교정재활국은 당국이 결정할 때로 금액을 환원하는 대신 카운티가 수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건강 및 안전 법의 제11999.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99.13조. ~~영어~~ 자금 다양한 치료.

각 회계 연도 말에 카운티는 약물 남용 치료 신탁 기금에서 수령한 자금 중 지출하지 않은 것을 보유할 수 있고 교정재활국에서 승인한 경우 이 법령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이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교정재활국은 카운티가 해당 지역 사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울 것을 요하는 규정을 감독 위원회 다수결의 승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제11999.14조를 다음과 같이 건강 및 안전법에 추가한다:

제11999.14조. 약물 남용 예방.

본 법령의 트랙 II이나 트랙 III, 또는 형법의 제3063.01조에 따라

가석방자나 집행 유예자를 구치소에 수감하는 카운티는 수감자 석방 전 약물 남용에 대한 인식 및 예방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각 카운티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부서가 중독 전문 의사, 폐해 감소 전문 치료사의 조언을 참조하여 자료와 전략을 개발해야 하고 이것은 구치소의 수감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고 배포되어야 하며 카운티 계획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주 정부 당국은 증거에 기초한 최상의 관행을 위해 카운티의 남용 자료 및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제50조. 치료 트랙 I, II, 및 III에 따라 이중 진단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의 정신 건강 서비스 참여 자격.

제50.1조. 제5600.33조를 다음과 같이 복지 및 기관법에 추가한다:
제5600.33조. 제5600.3조의 (b)항의 목적상 중대한 정신 질환이 있는 성인은 형법의 제1210.1조와 제1210.2조를 포함하는 제1210.01조에서 제1210.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약물 남용 또는 중독과 함께 정신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제5600.3조의 (b)항의 (2)와 (3)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성인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성인들은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5892조의 (a)항의 (5)절에 따른 자금을 활용하여 제5813.5조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5847조에 따른 카운티 계획의 업데이트는 형법의 제1210.1조와 제1210.2조를 포함하는 제1210.01조에서 제1210.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약물 남용 또는 중독과 함께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성인들을 위한 카운티의 노력을 문서화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단 이 조의 어떤 내용도 가석방자를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에서의 지급을 요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제51조. 정신 건강 서비스 기획에 있어 약물 치료 이해 관계자 포함.

제51.1조. 복지 및 기관법의 제584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48조. (a) 각 계획과 업데이트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 및 고령의 성인,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아동, 성인 및 고령자의 가족, 서비스 제공자, 약물 치료 제공자, 카운티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기관, 재판관, 법집행기관, 교육 및 사회 서비스 기관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기획과 업데이트 초안을 준비하여 최소한 30일 동안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 이해 관계자 대표자들 및 이러한 기획의 사본을 요청한 이해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b) 제5604조에 따라 설립된 정신 건강 위원회는 기획 초안 및 (a)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3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이행되는 연간 업데이트에 대한 공공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채택한 각 기획과 업데이트는 서면으로 작성된 주요 수정 권고안을 포함해야 한다. 채택한 각 기획과 업데이트는 수정 권고안을 요약 및 분석해야 한다. 정신 건강 위원회는 채택한 계획 또는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카운티 정신 건강부서에 수정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c) 교정재활국은 계획의 내용을 위한 요구 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들은 본 편의 3부(제5800조부터 시작), 3.6부(제5840조부터 시작) 및 4부(제5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에서 자금이 조달되고 교정재활국에서 수립된 서비스의 실적 결과나 달성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d) 본 편의 3부(제5800조부터 시작)과 4부(제5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는 제5772조의 (c)항의 (2)절에서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주 정신 건강 계획 위원회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행 검토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5604.2조의 (a)항의 (7)절에서 요구하는 이행 결과 데이터에 대한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의 검토와 의견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52조. 유권자 추천 규정 폐지.

제52.1조. 이로써 2006년 법령의 제63장 9조는 무효로 된다:
~~제9조. 이 법안의 규정은 장래에 적용된다. 이 법안의 규정 중 무효화되고 결정된 것이 있으면 전체 입법 조례는 주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된다.~~

제53조. 효력 발효일.

다르게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 법령의 규정은 2009년 7월 1일 효력이 발효되며 장래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제54조. 개정.

여기서 다르게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 법령은 유권자가 승인한 법, 주 의회의 각 의원의 모든 회원이 5분의 4 다수결로 승인하고

본 법령의 목적을 충족하는 성문법으로만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약물 남용 및 범죄 예방 법의 일부로 제정된 형법과 건강 및 안전법 부분으로써 여기서 언급 또는 변경되지 않은 것은 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입법적으로 제정된 법의 헌법 합치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 지를 다루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앞에서 말한 요구 사항에 충족하여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제55조. 교육 자금 조달 보장.

본 법령의 어떤 규정도 캘리포니아 주 헌법 XVI항 8조의 주 최소 의무 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헌법에서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요구하는 K-14학교를 위한 주와 지역에 대한 실제 지원을 줄이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

제56조. 충돌하는 투표 조례.

청소년과 비폭력적 범죄자를 위해 재활 프로그램과 약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본 조례 및 사회로 복귀하는 수감자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형사 사법 조례 또는 조례들은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다수결로 승인하며, 비폭력적 범죄자의 재활과 관련한 이 조례는 다른 어떠한 조례 또는 조례들보다도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이 조례는 그 전체로 작용하고 다른 조례 또는 조례들의 충돌 규정들은 무효로 되며 법적 효과가 없다. 청소년 및 비폭력적 범죄자와 관련한 이 조례가 승인되거나 다른 조례 또는 조례들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법에서 허용되는 정도까지 효력이 있다.

제57조. 분리성

이 법의 어떤 조항이나 부분, 또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 또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무효성 또는 위헌성이 무효 또는 위헌 조항이 없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법의 나머지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의 조항들은 분리가 가능하다.

발의안 제6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다양한 법률들을 개정 및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기존의 조항들은 ~~삭제~~를 그어 인쇄하고,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제1조. 명칭

이 법은 “안전한 이웃: 갱단, 총기 및 거리 범죄 방지”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목적

(a)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나 가장 도전적인 요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 거의 모든 주민들이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알고 있다.

(c) 범죄율은 1990년대 초 이후 상당히 감소했으나, 지난 수년 간 몇 가지 유형의 범죄가 약간 걱정스러운 정도로 증가했다. 연방수사국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6년에 1999년보다 477건이 더 많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기간 동안 많은 타주에서는 살인 사건 건수와 발생률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사법부는 2006년에 1999년보다 74,000건이 더 많은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 주의 강도 사건 건수는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7,500여 건이 급증했다. 따라서 범죄를 줄이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갱단은 캘리포니아 주가 범죄율 감소의 측면에서 많은 타주들만큼 좋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수년 간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인 사건이 증가한 것은 대부분 거리 갱단에게 책임이 있다. 많은 갱단에는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

(e) 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증범자와 갱단원들은 치안관 살해를 포함하는 거의 대부분의 총기 범죄를 저지른다. 갱단은 우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피해자, 증인, 그리고 판사까지도 일상적으로 협박하고 공격한다. 주법과 자원들을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적용 및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f) 메탐페타민의 급증은 많은 범죄 문제를 일으켰고, 최근의 차량 및 신원 도난 증가를 촉진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불법 마약인 메탐페타민은 종종 거리 갱단에 의해 판매되며, 다른 많은 마약들과는 달리,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된다. 마약은 사용자와 마약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회를 황폐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g) 우리 주는 매년 수십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므로, 형사 사법 요원 및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집행 요원, 프로그램, 기술 및 기반시설은 낙후되어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법집행 기관에 제공되는 자원은 일반적으로 타주의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것처럼 많지 않다. 미국 법무부에 의하면, 2004년에, 주민 100,000명 당 경찰관의 수가 캘리포니아 주보다 많은 주는 35개에 달했다.

(h) 불행하게도, 우리의 주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자들을 재활시키는 프로그램들은 부적절하고 일반대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러한 범죄를 방지할 만큼 충분히 엄격하지 못했다. 효과가 있는 법집행 활동과 범죄자 방지 프로그램은 종종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유지되지 못했다.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한 정보,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07년에, 주 상원은 전적으로 책임을 포기했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거부했다.

(i) 이러한 상황은 용인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과거에 헌법에 유보된 주민발의 권한을 사용하여 종합적인 형사 사법 개혁을 규정했고, 지금은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할 때가 되었다. 조기 개입은 범죄와 갱단의 활동을 줄인다. 엄격한 형사 처벌은 범죄 피해자의 수를 줄인다.

제3조. 목적에 대한 진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우리의 이웃을 안전하게 만들고 범죄 피해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형사 사법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규정한다.

- (a)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
- (b) 공적인 참여와 공적인 책임을 강화
- (c) 범죄자를 무력화하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을 강화
- (d) 범죄 피해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형사 사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대우할 것을 보장, 그리고
- (e) 법집행, 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적이고 유지 가능한 자금을 제공

제4조. 개입
제4.1조. 제12.6권(제14260조부터 시작)을 다음과 같이 형법 제4부에 추가한다.

제12.6권. 공공 안전 교육 및 정보국

제14260조. (a) 이 조에 의해 공공 안전 교육 및 정보국을 설립한다. (b) 이 기관의 주요 목표는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일반대중과 법집행 기관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목표는 부분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및 이 기관의 자체 웹사이트를 포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 전파되는 공익광고를 통해서 달성된다.

(c) 대중공개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와 주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총기를 사용하면 끝장이다,” “삼심법,” 및 “제시카 법”. 또한 이러한 공개에는 살인, 성폭행, 강도, 주거 침입 및 차량 절도를 포함하는 특정 범죄별 범죄율 비교, 수감률, 수감자의 구성을 범죄별로 설명하는 교도소 수감자 통계가 포함된다. 범죄 및 형사 사법 자원에 대한 비교 정보에는 연도별 및 주별 비교가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대중 공개에는 범죄 방지,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의 상대적 효과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개에는 재범률과 차후 체포 및 유죄판결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d) 이 기관은 일반대중이 접속 가능하고 최소한 3가지의 독립된 측면을 다루는 웹사이트를 유지한다.

(1)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일반 정보, 현재의 범죄 활동, 안전에 대한 조언, 통계, 법률 개정,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같은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는 공공안전 정보 페이지.

(2) 지역 이웃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새 이웃 감시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지역사회, 보안관, 경찰서를 지원하는 “캘 워치(Cal Watch)”라고 하는 주 전체 이웃 감시 프로그램.

(3) 형사 사법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의료비, 성폭행 상담, 손실 임금 및 피해자가 지불한 보상금을 포함하는 서비스와 비용 상환을 제공하는 범죄 피해자 정보 및 지원 페이지.

(e) 캘리포니아 주 헌법 또는 이와 일치하는 법률에 의해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피해자 통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한 지방검사와 법집행 기관의 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천이백오십만 달러(12,500,000달러)의 금액을 2009-10 회계연도와 그 후 매년 일반기금으로부터 공공 안전 교육 및 정보국에 책정하고, 이러한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1) 매년 책정되는 이 금액의 이십 퍼센트는 피해자 정보 및 매일 통지(VINE)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참여 카운티 보안서에 특정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2) 매년 책정되는 이 금액의 팔십 퍼센트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진파하고 범죄 피해자가 보호 서비스, 상담, 손실 상환 과정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 지방검사, 보안관 및 경찰서에 지급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보조금 신청 요건은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이 기관이 공포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은 보조금을 받으려는 회계연도의 직전 연도 6월 15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f) 주지사는 이 기관의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적절하게 필요한 최고 책임자와 직원을 임명한다.

(g) 이 기관은 주정부,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안전 자원을 최대화하고, 상응 자금을 확보하고, 중복되는 활동을 제거하고, 개선된 공공안전 정책 및 관행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4.2조. 제13921조를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한다.

제13921조. (a) 조기 개입을 통해서 범죄를 방지하거나 재발을 통해서 재범을 감소시키고, 그러한 활동의 결과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조기 개입, 재활 및 책임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제한된 공적 자원을 의미 있는 책임이 없는 조기 석방보다는 범죄 방지와 중점적인 재활을 통해서 수감을 제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최선의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엄수한다.

(b) 이 위원회의 장기 목표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수감되기 전에 파악하고, 생산적으로 개입하며, 수감을 수용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재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과 범죄자들을 파악하여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c) 이 위원회는 공적 자금을 지원 받는 프로그램 제공자와 참여자에 대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고, 자금을 계속 제공하거나, 보충하거나, 삭감하는 것에 대한 추천을 하고, 심각한 프로그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파악할 권한을 갖는다.

(d) 이 위원회는 지출과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합동 의회 감사 위원회와 주지사에게 매년 보고한다.

(e) 공적 자금을 지원 받는 모든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범죄의 위험에 처한 참여 대상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참여자가 차후에 범죄와 관련된 경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대조 그룹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f) 공적 자금을 지원 받고, 청소년을 포함하는 형사 범죄자들이 참여하는 모든 재활 프로그램은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 또는 재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범죄자에게 직장을 구하고, 주택을 찾고, 중독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 능력을 개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g) 조기 개입 및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든 자금 수령 프로그램은 직원,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 연차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른 당국에는 연차 보고서의 사본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h)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3명(의장 포함), 상원의원 2명(의사운영 위원회가 임명하는 1명과 소수당 원내총무가 임명하는 1명), 하원의원 2명(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1명과 소수당 원내총무가 임명하는 1명),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은퇴 판사 1명, 그리고 법무장관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으나, 위원회와 관련된 정당한 경비만은 상환 받는다.

(i) 주지사는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 최고 책임자가 조사를 수행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위원회의 예산 한도 내에서 공적 자금을 지원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 또는 무작위 감사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을 채용한다.

(j)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 받는 모든 조기 개입 및 재활 프로그램은 공적 자금 제공의 조건으로 물리적 시설과 재무 기록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k) 위원회는 비교 연구 목적으로 청소년 또는 성인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의 조기 개입, 교육 또는 재활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다. 제4.3조. 복지 및 시설법 제749.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9.22조. 이 보조금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각 카운티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카운티 기반의 연속체를 개발 및 시행하는 다기관(multiagency) 청소년 사법 조정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조정 위원회에는 최소한 집행유예 최고 책임자(의장), 그리고 지방검사실, 공선 변호사실, 보안서, 감독 위원회, 사회복지 서비스부, 정신건강부; 지역사회 기반의 마약 및 알코올 프로그램, 시 경찰서, 카운티 교육국 또는 학교의 대표자 각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 대표자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조정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의 대표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감독 위원회는 조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조정 위원회는 남성 및 여성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범죄 예방, 개입, 감독, 치료 및 수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연속체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과 전략(제602조에 기술된 청소년에 대한 지방 기반 또는 지역 기반의 가정 외 배치 옵션을 개발 및 시행하기 위한 전략 포함)을 확인하는 종합적인 다기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카운티들은 1995년 예산법에 포함된 자금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에 의해 작성된 지역사회 처벌 계획에 청소년 범죄의 청소년 사법 시스템, 또는 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작성된 지역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처벌 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특히 위험에 처한 청소년, 청소년 범죄자 및 그 가족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법집행, 집행유예, 교육, 정신건강, 건강, 사회복지 서비스, 마약 및 알코올, 청소년 서비스 자원에 대한 평가.

(b) 이 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갱단 활동, 주관 주거 침입, 야간 강도, 기물 파손, 무단 결석, 규제 약물 판매, 총기 관련 폭력, 청소년의 알코올 및 마약 사용과 같은 청소년 범죄로 인해 공공안전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이웃, 학교 및 기타 지역의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c) (b)항에 의한 목표 지역과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와 비행 사건을 줄이기 위해 (a) 항에 기술된 자원을 개선 및 정비하기 위한 지역 실행 계획(LAP). 이 위원회는 (a)항에 기술된 모든 자원의 협력적,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조항을 최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확인된 남성 및 여성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처하는 연속체를 제공하기 위한 예방, 개입, 책임 및 무력화를 포함하는 모든 대응 요소에 대한 특정한 전략, 그리고 제602조에 기술된 청소년에 대한 지방 기반 또는 지역 기반의 가정 외 배치 옵션을 개발 및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

(d) 카운티의 조치가 완전한 협조를 받는 것을 보장하고, 보조금 수령자가 목표 달성에 성공한 정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개발. 이 계획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성과 측정치와 관련된 목표를 개발해야 한다.

(e)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성과 측정치를 확인한다.

(1) 범죄율과 관련된 청소년 체포 비율

(2)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비율

(3) 손해배상과 법원이 명령한 지역사회 봉사 책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비율

(f) 청소년 또는 성인 범죄자나 범죄의 위협에 처한 사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 자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할 수 있는 민간 조직체(비영리 자선단체 포함)가 고용했거나 그 조직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조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4.4조. 복지 및 시설법 제19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1조. (a) 이 조에 의해 청소년 범죄자 정액 보조금 기금을 설치한다.

(b) 청소년 범죄자 정액 보조금 기금으로부터 할당되는 자금은 카운티 집행유예, 정신건강, 마약 및 알코올 및 카운티 기관이 제731.1, 733, 1766 및 1767.35조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적절한 재활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 또는 확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카운티가 청소년 범죄자 정액 보조금을 더 많이 할당 받으려면 범죄자의 구금 및 처치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c) 참여 카운티는 단지 제733조 (c)항에 따라 주정부에 구금되지 않은 각 범죄자에 대해, 그리고 제1766조 (b)항 또는 제1767.35조 (b)항에 따라 참여 카운티로부터 감독을 받는 각 범죄자에 대해 제912, 912.1, 또는 912.5조에 따라 주정부에 지불할 의무가 해제된다. 이 조항에 의해 절약한 금액은 청소년 범죄자 정액 보조금 기금에 추가되고 (b)항에 지정된 대로 집행유예국에 할당한다.

(d) 이 조에 의해 구권이백오십만 달러(92,500,000달러) 또는 제1953, 1954 또는 1955조의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2009 - 10 회계연도와 그 후 매년 계속해서 일반기금으로부터 책정하고,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이 금액은 카운티가 청소년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1955조의 공식에 따라 분배된다.

제4.5조. 제30062.2조를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한다.

제30062.2조. (a) 이 조에 의해 청소년 집행유예 시설 및 감독 기금을 설치한다.

(b) 이 조에 의해 오천만 달러(50,000,000달러)의 금액을 2009 - 10회계연도와 그 후 매년 일반기금으로부터 청소년 집행유예 시설 및 감독 기금에 책정하고,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하며, 청소년 시설 수리 및 보수, 청소년 판결 연기 프로그램,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25세 미만)에 대한 집행유예 감독 강화에 사용하기 위해 제30061조 (b)항 (1)목에 의해 승인된 것과 같은 비율로 회계감사원장이 각 카운티에 할당하고 각 카운티의 SLESF에 예치한다.

제5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5.1조. 증거법 제24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0조. (a)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인으로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은 선언자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증인의 진술이 관련성이 있는 문제에 관해 증언하는 것을 법적 권리를 이유로 면제 또는 제외하는 경우

(2) 그 문제에 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사망했거나 또는 당시에 발생한 신체 또는 정신질환이나 쇠약으로 심리에 출석하거나 증언할 수 없는 경우

(4)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이 증인의 출석을 법원 절차에 의해 강요할 수 없는 경우

(5)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증인 진술의 제안자가 정당한 노력을 했으나 증인을 법원 절차에 의해 출석시킬 수 없는 경우

(6) 선언자가 심리에 출석했으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언자가 진술한 주제의 견에 관해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b) 이러한 면제, 제외, 자격 상실, 사망, 무능력, 불참이 선언자 진술의 제안자가 선언자가 출석 또는 증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여 초래된 경우 선언자는 증인으로 증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 주장된 범죄에 의해 초래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증인에게 충분히 심한 해를 입혀 증인이 신체적으로 증언할 수 없거나 또는 상당한 고통을 겪지 않고는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하는 전문가 증언은 (a)항 (3)목에 따라 증인이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표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조에 사용된 “전문가”라는 용어는 일반의사와 외과의사(정신과의사 포함), 또는 제1010조 (b), (c) 또는 (e)항에 기술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 항에 의해 증인이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5.2조. 제1390조를 다음과 같이 증거법에 추가한다.

제1390조. (a) 선언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게 만든 고의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한 당사자를 상대로 진술을 하는 경우, 진술에 대한 증거는 전문(hearsay)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 인정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니다.

(b) (1) (a)항에 따라 진술을 제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기초 심리에서 (a)항의 요소들이 우월적 증거에 의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전문 증거(기초 심리의 주체인 전문 증거 포함)는 기초 심리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a) 항의 요소들이 충족되었다는 판결은 단지 증언을 할 수 없는 선언자의 반박되지 않은 전문 진술에 근거해서는 안되고 독립적이고 확정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기초 심리는 배심원단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이 심리가 배심 재판이 시작된 후에 실시되는 경우, 이 심리를 주재하는 판사는 (a)항의 요소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미 배심원단에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c)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에 (a)항에 따라 증언을 할 수 없는 선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전문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다른 전문 진술은 전문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5.3조. 제13921.5조를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한다.

제13921.5조. (a) 이 조에 의해 위원회가 관리할 범죄 방지 보상금 상환 기금을 설치한다.

(b) 범죄 방지 보상금 상환 기금으로부터 할당된 금액은 중죄 사건에서 정보의 대가로 제공 및 지불한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c) 청구 당 오천 달러(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상환금을 유자격 청구인에게 지불할 수 있으나 지불한 실제 보상금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d) 보상금 상환 청구 금액은 해당 보상금을 실제로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유도했다고 체포 또는 기소 기관이 확인한 증거에 대해 제공 및 지불했다는 증빙에 근거하여 지불해야 한다.

(e) 유자격 상환 청구인에는 해당 중죄의 피해자나 그의 가족, 또는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가 포함된다.

(f) 위원회는 보상금 한도를 최대 금액 이하로 설정할 수 있고, 다른 범죄 분류에 대해 별도의 한도를 정할 수 있고, 유자격 청구인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고, 청구 절차와 양식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g) 회계감사원장은 2009 - 10 회계연도에 천만 달러(10,000,000 달러)를 일반기금으로부터 범죄 방지 보상금 상환 기금으로 이전한다.

(h) 회계감사원장은 범죄 방지 보상금 상환 기금이 천만 달러(10,000,000달러)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이 기금에 자금을 추가하고,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i) 이 조의 어떤 조항도 형법 제1547조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하는 주지사의 권한을 배제하거나 달리 방해하는 것을 간주되지 않는다.

제5.4조. 제13974.6조를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한다.

제13974.6조. (a) 이 조에 의해, 범죄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피해자 외상 회복, 자원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복 기금을 설치한다.

(b)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최대 5개의 사이트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따른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나 이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1) 피해자 회복, 자원 및 치료 센터의 설립

(2) 종합적인 개입과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제공하는 범죄 현장 이동 지원 팀을 운영

(3) 지역사회 기반의 현장 지원

(4) 살인 사건 피해자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c) 위원회가 선정한 피해자 회복, 자원 및 치료 프로그램은 현재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범죄 피해자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주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분산시켜야 하고, 다음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 (1)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폭과 범위를 모르는 사람
- (2)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
- (3) 장애로 인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
- (4) 살인 사건 피해자의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
- (d) 위원회는 이러한 보조금을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급한다.
- (e) 위원회는 이러한 보조금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기금의 최대 5퍼센트를 보유할 수 있다.

제5.5조. 형법 제136.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1조. (a)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공공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 (1) 증인이나 피해자가 법률에 의해 승인된 재판, 소송 절차 또는 심리에 출석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단념시키는 행위
- (2) 증인이나 피해자가 법률에 의해 승인된 재판, 소송 절차 또는 심리에 출석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단념시키려고 시도하는 행위
- (3) 이 조의 목적상, 피고가 증인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가족 구성원이었다는 증거는 그러한 행동이 악의가 아니었다는 추정을 성립시킨다.

(b)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의 피해자였거나 또는 범죄에 대한 증인인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단념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공공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 (1) 치안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집행관, 또는 집행유예 집행관, 가석방 집행관 또는 교도관, 또는 기소 기관 또는 판사에게 그러한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행동
- (2) 불만, 기소, 정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위반을 조사 또는 기소하게 하고, 그러한 기소를 돕는 행동
- (3) 그러한 범죄 피해와 관련된 사람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게 하는 행동

(c)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 이상에서 고의적 및 악의적으로 (a) 또는 (b)항에 기술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 (1) 증인, 피해자 또는 제3자, 또는 증인,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해 힘, 또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 모의를 촉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이 조 또는 이 조의 전신인 법률을 위반하거나, 또는 기소된 행위가 이 주에서 저지르는 경우 이 조의 위반에 해당될 연방법이나 다른 주의 주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 (4)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다른 보수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 이러한 거래의 모든 당사자는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d) 힘, 또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을 사용하여, 판사, 배심원, 검사, 공선변호인, 또는 치안관이 범죄 혐의자의 체포, 기소, 재판 또는 공정한 판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단념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e) 힘, 또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이 경단, 마약, 또는 다른 조직 범죄 활동에 대응하여 경단 활동 금지 명령 또는 불법 방해 중지 과정을 신청, 승인 또는 시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이 발생하는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단념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f) 힘, 또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을 사용하여, (a), (b), (d) 또는 (e) 항에 따라 보호 받는 형사

또는 민사 소송 절차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보복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g) (a), (b), (c) 및 (d)항에 기술된 행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시도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범죄의 시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실제로 협박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조에 의한 기소에 대해 항변이 되지 않는다.

(h) 피해자가 상당히 심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이 조의 어느 조항도 심한 신체 상해에 대해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i) (c)항에 기술된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힘을 사용하는 것은 제1170조 (b)항에 의해 형량을 부과할 때 범죄를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간주된다.

제5.6조. 제11166.6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11166.6조. (a) 각 카운티는 아동 학대 혐의를 조사 및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기관(아동 학대 피해자에게 의료 서비스와 후속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포함)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동옹호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센터의 목적은 특히 지방검사, 아동 복지 소셜 워커, 법집행관, 의료 요원의 활동을 조정하여 고통스러운 면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아동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연령에 적합한 질문을 하여 상반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줄임으로써 기소를 지원하는 것이다.

(b) (1) 아동옹호센터 참여 기관은 최소한 지방검사실, 보안서, 경찰서, 아동 보호 서비스의 대표자로 구성되고, 의료 및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2) 지역 아동옹호센터 참여자들은 아동 법정 면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에는 위험 평가, 아동 학대(특수한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포함)의 심리 역학, 성적 아동 학대 및 아동에 대한 성폭행, 그리고 법적으로 건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면담 및 조사 기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이 조에 의해 아동옹호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옹호센터 기금을 설치한다. 이 기금으로부터 책정되는 자금은 위기관리국을 통해서 공공 또는 민간의 비영리 기관에 제공되어 이 조에 명시된 종합적인 아동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옹호센터의 설립 또는 유지(또는 2가지 모두)를 위해 사용된다.

제5.7조. 형법 제146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4조. (a) (1)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거리 범죄가 만연성과 잔인성을 통해서 숙련된 제공자로부터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확인 및 선언한다. 또한, 운전자 교육 벌금 부과 기금에 할당된 자금은 더 이상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벌금 부과에 의해 발생하는 이러한 자금은 피해자 서비스와 법집행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제8권 12장(제76000조부터 시작)을 적용하여, 법원이 차량법 또는 차량법에 따라 채택된 지방정부 시행령 조항의 위반을 포함하는 모든 형사 범죄(제1463조 (i)항에 정의된 주차 위반은 제외)에 대해 부과 및 징수하는 모든 벌금 또는 몰수금에 대해 매 십 달러(10달러) 또는 십 달러(10달러)의 일부분에 대해 십 달러(10달러)의 금액을 주정부 벌금으로 부과한다.

(3) 제1269b 조에 따라 채택된 보석금 명세표 또는 차량법 제40310조에 따라 사법 위원회가 채택한 보석금 명세표에는 직접 출두가 의무가 아니고 보석금이 주로 벌금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공탁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이 조와 정부법 제8권 12장(제76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제정된 벌금과 제1465.7조에 의해 승인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

(4) 이 조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손해배상 벌금
- (B) 정부법 제8권 12장(제76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벌금
- (C) 차량법 제17편 1장 제3절(제40200조부터 시작)이 적용되는 주차 위반
- (D) 제1465.7조에 의해 승인된 주정부 추징금
- (b) 복수의 범죄가 관련된 경우, 주정부 벌금은 각 사건에 대한 벌금 또는 보석금의 합계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주정부 벌금은 그러한 정지에 비례하여 감액한다.

(c)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 그리고 법원에 출두하는 것이 의의가 아닌 범죄에 대해 보석금을 공탁하는 경우, 보석금을 공탁하는 사람은 또한 몰수된 보석금에 대한 이 조에 규정된 주정부 벌금을 포함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보석금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납부된 주정부 벌금도 또한 반환된다.

(d)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수감되는 경우, 판사는 주정부 벌금의 납부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그 직계 가족에게 고난을 준다고 판단될 때 그러한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 법원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한 후에, 법원 서기는 벌금을 징수하여 카운티 출납국으로 송금한다. 이러한 벌금 중에서 정부법 제8권 12장(제76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된 부분은 해당되는 카운티 기금에 예치되고, 그 다음에 잔액의 70퍼센트는 주정부 출납국으로 송금되어 이 조에 의해 설치되는 주 벌금 기금에 예치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카운티 일반기금에 예치된 채로 남겨둔다. 주정부 출납국에 대한 송금은 카운티가 주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한 벌금을 송금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f)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1) 전월 동안에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주정부 벌금 자금의 0.3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어류 및 염조류 보존 기금으로 이전한다. 단 어류 또는 염조류의 보호 또는 번식과 관련된 주법 위반에 대해 주정부가 부과하는 벌금 또는 몰수금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자금은 어류 및 염조류국의 목표와 일치하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국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

(2) 전월 동안에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주정부 벌금 자금의 ~~32.02~~ 30.21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손해배상 기금으로 이전한다. 이러한 자금은 정부법 제13967조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3) 전월 동안에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주정부 벌금 자금의 ~~23.99~~ 32.44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치안관 교육 기금으로 이전한다.

(4) 전월 동안에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주정부 벌금 자금의 ~~25.70~~ 0.67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운전자 교육 벌금 부과 기금으로 이전한다.

(5) 전월 동안에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주정부 벌금 자금의 ~~7.88~~ 13.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1회 교정 교육 기금으로 이전한다. 교정 교육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계속 책정되지 않고 예산법에 책정된다.

(6) 전월 동안에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주정부 벌금 자금의 ~~0.78~~ 1.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제11503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정부 검사 및 공선번호인 교육 기금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이전하는 금액은 한 회계연도에 팔십오만 달러(850,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팔십오만 달러(850,000달러)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손해배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7) 전월 동안에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주정부 벌금 자금의 ~~8.64~~ 16.94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1회 피해자-증인 지원 기금으로 이전한다.

(8) (A) 전월 동안에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주정부 벌금 자금의 0.6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1회 복지 및 시설법 제4358조에 따라 설치된 외상성 뇌손상 기금으로 이전한다. 그러나 1996 - 97 회계연도에 외상성 뇌손상 기금으로 이전되는 자금의 금액은 오십만 달러(500,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후에는 자금을 이 조의 요건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 법률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7 - 98, 1998 - 99 및 1999 - 2000 회계연도에 외상성 뇌손상 기금으로 이전된 자금은 현 회계연도 또는 차후의 한 회계연도에 주정부 정신건강부가 외상성 뇌손상 기금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기존의 프로젝트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또는 이 2가지 모두를 위해 지출할 수 있다.

(B) 복지 및 시설법 제5편 1부 6.6장(제5564조부터 시작) 이 폐지된 날짜 이후에 차량법 제27315조 (i)항에 따라 부과되어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이 항의 (1)에서 (8)목(포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9) 전월 동안에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주정부 벌금 자금의 1.81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정부법 제13974.6조 (a)항에 따라 설치된 피해자 외상 회복 기금으로 이전한다.

(10) 전월 동안에 주정부 벌금 기금에 예치된 주정부 벌금 자금의 1.89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제11166.6조 (c)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센터 기금으로 이전한다.

제5.8조. 형법 제140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27조. 법무장관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들이 증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에 대한 상환을 신청하는 절차

(b) 지방정부 기관에 ~~대해 요구되는~~ 이 제공하는 자금을 대한 ~~25퍼센트~~ 적절한 수준의 상응 자금. 또한 법무장관은 적절한 경우 지방정부의 필수 상응 자금을 면제하는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갱단 및 거리 범죄에 대한 처벌

제6.1조. 형법 제59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4조. (a)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과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주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물 파손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1) 낱서나 다른 새기는 도구로 표면을 더럽힘

(2) 손상

(3) 파괴

어떤 사람이 부동산, 차량, 표지판, 설비, 가구 또는 정부법 제 811.2조에 정의된 공공 조직체, 또는 연방정부에 속하는 재산과 관련하여 이 항을 위반할 때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러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추론을 허용한다.

(b) (1) 더럽힘, 손상 또는 파괴의 금액이 사백 달러(400달러) 이상인 기물 파손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일만 달러(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받고, 더럽힘, 손상 또는 파괴의 금액이 일만 달러(10,000달러) 이상인 기물 파손은 오만 달러(5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금과 수감을 병과할 수 있다.

(2) (A) 더럽힘, 손상 또는 파괴의 금액이 사백 달러(400달러) 미만인 기물 파손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일천 달러(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과 수감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 더럽힘, 손상 또는 파괴의 금액이 사백 달러(400달러) 미만이고, 피고가 제594, 594.3, 594.4, 640.5, 640.6 또는 640.7조에 따라 기물 파손 또는 낱서를 하거나 다른 새기는 도구를 부착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러한 기물 파손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오천 달러(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과 수감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연속된 12개월 내에 2회 이상 기물 파손을 저지르고 그러한 기물 파손이 공동 모의, 목적 또는 계획의 결과였던 경우에는 (1) 및 (2)목의 목적으로 각 처벌을 병과할 수 있다.

(c) 어떤 사람이 이 조에 의해 낱서나 다른 새기는 도구로 재산을 더럽히는 것으로 구성된 기물 파손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b)항에 의해 부과되는 처벌에 추가하여 피고에게 손상된 재산을 본인이 청소, 수리 또는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피고(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손상된 재산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지정된 재산을 최대 1년 동안 낱서가 없이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부모나 보호자의 참여가 피고에게 해롭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독신 부모인 경우, 이 조는 이러한 부모나 보호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d) 미성년자가 이 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해 부과된 벌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벌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벌금 또는 벌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 이 조에서 사용되는 "낱서 또는 다른 새기는 도구"라는 용어에는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쓰거나, 표시하거나, 새기거나,

글자, 그림, 케인트로 칠한 무단히 새긴 글자, 단어, 그림, 표시 또는 디자인이 포함된다.

(f) 법원은 (c)항 (1)목에 따라 지역사회 봉사 또는 낙서 제거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g) 이 조는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6.2조. 차량법 제108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51조. (a) 본인의 소유가 아닌 차량을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리고 차량을 훔치려는 의도의 유무에 상관 없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에 대한 법적 권리나 소유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그러한 차량을 운전 또는 탈취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 탈취하거나, 훔치는 행위의 당사자, 방조자 또는 공모자인 사람은 공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카운티 구치소 또는 주 교도소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오천 달러(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과 수감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 차량이 (1) 제165조 (a)항에 정의된 구급차, (2) 분명하게 표시된 법집행 기관 또는 소방서 차량, ~~어떠한 차량이나 구급차가 비상소집 상태에 있고, 차량을 운전 또는 탈취하는 사람, 또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 탈취하거나, 훔치는 행위의 당사자, 방조자 또는 공모자인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동안 탈취된 차량, 또는~~ (3) 상이군인이나 다른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해 개조했고, 제 22511.5 또는 22511.9조에 따라 발급된 확실히 구별되는 번호판과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이러한 차량을 운전 또는 탈취하는 사람, 또는 이러한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 탈취하거나, 훔치는 행위의 당사자, 방조자 또는 공모자인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차량인 경우, 이러한 범죄는 중죄로서,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일만 달러(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과 수감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 (a) 또는 (b)항의 위반에 대해 기소 과정에서, 소유자가 전에 같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 또는 탈취하는 것을 승낙했다는 이유로, 이번 경우에도 소유자가 차량을 운전 또는 탈취하는 것을 승낙했다고 추정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d) (b)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기소 진술에서 주장해야 하고, 피고가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또는 사실의 판단자(tryer of fact)가 유죄 문제를 심리하는 배심원단 또는 유죄 인정 또는 불합평 답변에 의해 유죄를 증명하는 법원에 의해, 또는 배심원단 없이 개정하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사실이라고 판결해야 한다.

(e) 이 조를 위반한 한 번 이상의 이전 중죄, 또는 형법 제487조 (d)항, 이전의 형법 제487조 (3)항(1993년 법률의 제1125장 4조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조항), 또는 형법 제487h조를 위반한 중죄 중대 차량 절도도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은 형법 제666.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f), (g), (h), (i) 또는 (j)항, 또는 형법 제 666.5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정보 또는 기소~~ 기소 진술에서 주장해야 하고, 피고가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또는 사실의 판단자(tryer of fact)가 유죄 문제를 심리하는 배심원단 또는 유죄 인정 또는 불합평 답변에 의해 유죄를 증명하는 법원에 의해, 또는 배심원단 없이 개정하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사실이라고 판결해야 한다.

(f) 이 조는 199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f) 보수를 받거나 차량 또는 부품을 운송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을 탈취하는 범죄 행위의 주범 또는 중범으로서 (a)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처벌에 추가하여 주 교도소에 추가로 1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g) 차량을 탈취하여 그 차량을 회수하기 전에 중죄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의 주범 또는 중범으로서 (a)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처벌에 추가하여 주 교도소에 추가로 1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h) 차량을 사용하여 중죄를 저지르기 위한 의도로 차량을 탈취하는 범죄 행위의 주범 또는 중범으로서 (a)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처벌에 추가하여 주 교도소에 추가로 1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i) 차량을 탈취하여 그 차량을 회수하기 전에 제2800.1, 2800.2, 2800.3 또는 2800.4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려고 시도하는

주범 또는 중범으로서 (a)항을 위반하여 중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처벌에 추가하여 주 교도소에 추가로 1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j) 차량을 탈취하여 그 차량을 회수하기 전에 충돌 사고와 관련된 주범 또는 중범으로서 (a)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처벌에 추가하여 주 교도소에 추가로 1년 동안 수감되고, 그 충돌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개인적인 부상을 입은 각 사람(중범 제외)에 대해 주 교도소에 추가로, 그리고 연속해서 1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제6.3조. 형법 제666.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6.5조. (a) 차량법 제10851조에 대한 ~~중과~~ 위반, 또는 형법 제487조 (d)항 또는 이전의 형법 제487조 (3)항(1993년 법률의 제1125장 4조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중과~~ 중대 절도, 또는 이전의 제487h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제 496d조에 대한 ~~중과~~ 위반에 해당되는 형법 제415에 정의된 자동차, 차량법 제630조에 정의된 트레일러, 차량법 제565조에 정의된 특수 건설 장비, 또는 항공기 및 항해법 제21조에 정의된 선박과 관련된 ~~중과~~ 중대 절도를 저질러 전에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범죄로 전에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후에 다시 그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모든 사람은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일만 달러(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과 수감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 이 조의 목적상 “특수 건설 장비”와 “선박”이라는 용어는 모터를 장착한 차량과 선박만을 의미한다.

(c) 어떤 사람에게 (a)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정보 또는 기소~~ 기소 진술에서 주장해야 하고, 피고가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또는 사실의 판단자(tryer of fact)가 유죄 문제를 심리하는 배심원단 또는 유죄 인정 또는 불합평 답변에 의해 유죄를 증명하는 법원에 의해, 또는 배심원단 없이 개정하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사실이라고 판결해야 한다.

(d) 이 조에 의한 처벌의 적용을 받고, 전에 (a)항에 열거된 2건 이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법 절차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드문 경우에 한해서 집행유예를 승인 받을 수 있다. 이 항에 의해 집행유예가 승인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사법 절차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을 기록에 명시하고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6.4조. 제707.005조를 다음과 같이 복지 및 시설법에 추가한다.

제707.005조. 제707조 (b)항의 목적상, 어떤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그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그가 형법 제186.2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를 제602조에 기술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미성년자는 소년법원이 증거에 근거하여 그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의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고, 제707조 (b)항에 기술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보호,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에 순응할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소년법원법에 따라 처분할 적절하고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추정된다. 그 미성년자가 소년법원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경우, 그는 제731 및 731.1조에도 불구하고 교정재활부 청소년 시설국의 개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6.5조. 형법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a) 중죄를 저지른 후에, 그러한 중죄의 주범이 그러한 중죄를 저질렀거나, 그러한 중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범이 체포, 재판, 유죄판결 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중죄의 중범으로 간주된다.

(b) 제186.22조에 기술된 범죄적인 거리 경단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과 관련하여 저지른 중죄, 또는 제 667.5조 (c)항에 기술된 중죄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사실들에 관해 치안관이나 검사에게 고의적으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다음의 모든 항목이 사실인 경우 그러한 중죄에 대한 중범이 된다.

(1) 허위 진술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은 그 중죄의 주범 또는 중범이 아니었다.

(2) 주범이 체포, 재판, 유죄판결 또는 처벌을 피하거나 면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그러한 진술을 했다.

(3) 그 사람은 상기 주범이 그러한 중죄를 저질렀다는 것, 또는 기본적인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c) (b) 항의 조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허용 진술에 대한 기소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6.6조. 형법 제186.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22조. (a) 범죄적인 거리 쟁단의 단원들이 어떤 형태의 범죄적인 쟁단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쟁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쟁단의 단원에 의한 중한 범죄 행동을 고의적으로 조장, 촉진 또는 지원하는 사람은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또는 주 교도소에 16개월, 2년 또는 3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b) (1) (4) 및 (5)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적인 거리 쟁단의 단원에 의한 범죄적인 행동을 조장, 촉진 또는 지원하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 쟁단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과 관련하여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나 이를 시도하는 자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크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크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중죄 또는 중죄 시도에 대해 부과된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기간 동안 연속해서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A) (B) 및 (C)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람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추가 기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B) 해당 중죄가 제1192.7조 (c)항에 정의된 중한 중죄인 경우, 그 사람은 5년의 기간 동안 추가로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C) 해당 중죄가 제667.5조 (c)항에 정의된 폭력적인 중죄인 경우, 그 사람은 10년의 기간 동안 추가로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2) (1)목에 기술된 기본적인 중죄를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직업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정 또는 1,000피트 이내에서 그 시설이 수업 또는 학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위해 열려 있거나, 미성년자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간 동안 저지르는 경우, 이러한 사실은 (1)목에 따라 형량을 부과할 때 범죄를 가중시키는 상황이 된다.

(3) 법원은 가중 또는 경감되는 상황이 있지 않은 한 중죄 정도와 강화된 형기를 부과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은 그러한 강화된 형기를 선택한 이유를 형량 선고 시에 기록에 명기해야 한다.

(4) 범죄적인 거리 쟁단의 단원에 의한 범죄적인 행동을 조장, 촉진 또는 지원하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 쟁단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과 관련하여 이 목에 열거된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나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크 중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중신형과 함께 다음 중 더 오랜 기간으로 계산되는 부정기형의 최소 기간을 선고 받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형량 강화 또는 처벌 조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A) 이 목의 (B) 또는 (C)에 열거된 범죄들 중 하나인 경우, 기본적인 유죄판결에 대해 제1170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된 형기(제2편 제7부 4.5장(제1170조부터 시작)에 의해 적용 가능한 형량 강화 포함) 또는 제3046조에 규정된 기간

(B) 중죄가 제213조 (a)항 (1)목 (A)를 위반하는 주거 침입 강도, 제215조에 정의된 차량 강탈, 제246조를 위반하는 중죄, 제12022.55-12034조를 위반하는 중죄인 경우, 주 교도소에 15년에서 무기 수감 수감

(C) (B) 중죄가 제519조에 정의된 금품 갈취, 또는 제136.1조에 정의된 피해자, 증인, 판사, 배심원, 검사, 공선변호인 또는 치안관에 대한 협박인 경우, 주 교도소에 7년에서 무기 수감 수감

(5) (A) (4)목과 아래의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교도소에 무기 수감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를 저질러 이 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소한 15여년을 복역할 때까지 가석방되지 않는다.

(B) 위의 (A)에 기술된 중죄에 대해서, 이 항의 (1)목에 규정된 처벌이 더 긴 형기를 부과하는 경우, (A)에 규정된 처벌 대신에 그 형기를 적용한다.

(c) 법원이 (a)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b)항에 열거된 형량 강화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경우에 대해 피고에게 부과된 형기의 집행유예 또는 집행 정지를 승인하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소한 180일 동안 복역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d) 범죄적인 거리 쟁단의 단원에 의한 범죄적인 행동을 조장, 촉진 또는 지원하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 쟁단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중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공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나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또는 주 교도소에 1년, 2년

또는 3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으나, 단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는 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수감되어야 하고, 180일 동안 복역할 때까지 형기 종료, 가석방 또는 다른 기준에 의해 석방될 자격이 없다. 법원이 피고에게 부과된 형기의 집행유예 또는 집행 정지를 승인하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피고가 카운티 구치소에서 180일 동안 복역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 이 장에서 사용되는 “범죄적인 쟁단 활동의 유형”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범죄 중 2건 이상을 저지르거나, 이를 시도, 모의 또는 권유하거나, 소년 청원을 인정 받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의미하나, 단 이러한 범죄들 중 최소한 1건이 이 장의 발효일 이후에 발생했고, 이러한 범죄들 중 마지막 범죄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후 3년 이내에 발생했고, 이러한 범죄들을 별개의 경우에, 또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저지른 경우로 제한된다.

(1) 제245조에 정의된 심한 신체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나 힘을 사용하여 공격

(2) 제1편 8부 4장(제211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강도

(3) 제1편 8부 1장(제187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살인

(4) 보건안전법 제11054, 11055, 11056, 11057 및 11058조에 정의된 규제물질을 판매, 판매하기 위해 소지, 운반, 제조, 또는 이에 대한 판매 제의 또는 제조 제의

(5) 제246조에 정의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총격

(6) 제12034조의 (a) 및 (b)항에 정의된 자동차로부터 총기를 발사하거나 발사하는 것을 허용

(7) 제13부 1장(제45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방화

(8) 제136.1조에 정의된 증인, 피해자, 판사, 배심원, 검사, 공선변호인 또는 치안관에 대한 협박 또는 위협

(9) 제487조 (a) 또는 (c)항에 정의된 중대 절도

(10) 총기, 차량, 트레일러 또는 선박에 대한 중대 절도

(11) 제459조에 정의된 주거 침입

(12) 제261조에 정의된 성폭행

(13) 제463조에 정의된 약탈

(14) 제186.10조에 정의된 돈세탁

(15) 제207조에 정의된 유괴

(16) 제203조에 정의된 신체 상해

(17) 제205조에 정의된 중 신체 상해

(18) 제206조에 정의된 고문

(19) 제518 및 520조에 정의된 중죄 금품 갈취

(20) 제594조 (b)항 (1)목에 정의된 중죄 기물 파손

(21) 제215조에 정의된 차량 강탈

(22) 제12072조에 정의된 총기의 판매, 제공 또는 이전

(23) 제12101조 (a)항 (1)목을 위반하는 사람의 몸에 숨길 수 있는 일반 권총, 연발 권총 또는 다른 총기의 소지

(24) 제422조에 정의된 사망 또는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협박

(25) 차량법 제10851조에 정의된 차량에 대한 절도, 불법 탈취 또는 운전

(26) 제484e조에 정의된 접근 카드 또는 계좌 정보에 대한 중죄 절도

(27) 제484f 조에 정의된 접근 카드의 위조, 디자인, 사용, 사용 시도

(28) 제484g조에 정의된 접근 카드 또는 계좌 정보에 대한 중죄 도용

(29) 제530.5조에 정의된 신용, 상품, 서비스 또는 의료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개인 신원 정보의 불법 사용

(30) 제529.7조에 정의된 차량국 문서를 불법 입수

(31) 제12021조를 위반하는 금지된 총기 소지

(32) 제12025조를 위반하는 은닉 총기 휴대

(33) 제12031조를 위반하는 탄환이 장전된 총기 휴대

(f) 이 장에서 사용되는 “범죄적인 거리 쟁단”이라는 용어는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e)항 (1)에서 (25)목(포함), 또는 (31)에서 (33)목(포함)에 열거된 범죄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저지르는 것이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나 조직을 나타내는 표식 또는 상징물을 가지고 있고, 조직 구성원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어떤 유형의 범죄적 쟁단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해 온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3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협회 또는 그룹을 의미한다.

(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조에 규정된 형량 강화를 위한 추가 처벌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사법 절차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이례적인 경우에 대해 법원이 이러한 처분이 사법 절차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을 기록에 명시하고 의사록에 기재하는 경우, 경범죄에 대해 최소 수감 형량을 부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h)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a) 또는 (b)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청소년 교도시설육에 수감된 각 사람에 대해, 이러한 범죄는 복지 및 시설법 제912.5조에 따라 주정부가 청소년 교도시설구의 1인 당 교도 비용의 100퍼센트 비율을 지불하는 1년으로 간주된다.

(i) 검사는 유죄판결을 확보하거나 소년 청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a)항에 따라 그 사람이 본인의 모든 또는 상당한 부분의 시간 또는 노력을 범죄적인 거리 쟁단 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범죄적인 거리 쟁단의 단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범죄적인 거리 쟁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j) 쟁단 활동의 유형은 (e)항 (26)에서 (30)목(포함)에 열거된 범죄 중 하나 이상을 저지르는 것과, (e)항 (1)에서 (25)목(포함), 또는 (31)에서 (33)목(포함)에 열거된 범죄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저지르는 것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쟁단 활동의 유형은 단지 (e)항 (26)에서 (30)목(포함)에 열거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없다.

(k) (1) 제166조 (a)항 (4)목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479조에 따라 이 조에 정의된 범죄적인 쟁단이나 그 단원에 대해 발부된 금지명령을 고의적,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법원 모독죄나 경범죄를 구성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일천 달러(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과 수감을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다.

(2) 전에 (1)목에 기술된 명령을 위반한 후 7년 이내에 두 번째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3) 전에 (1)목에 기술된 명령을 2회 위반한 후 7년 이내에 3회 또는 차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또는 주 교도소에 1년, 2년 또는 3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으나, 단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는 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수감되어야 한다. 법원이 피고에게 부과된 형기의 집행유예 또는 집행 정지를 승인하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피고가 카운티 구치소에서 180일 동안 복역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4) (d)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 또는 조항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항의 처벌이 적용된다.

(1) 제32조의 의미 내에서, 중죄에 대한 중범으로서 유죄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러한 중죄가 범죄적인 거리 쟁단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과 관련하여 저질렀다는 것을 진술 및 증명하는 경우, 다른 법률 조항 또는 조항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승인하지 않는 한, 그 중죄에 대해 주범에게 부과되는 처벌의 2분의 1이 적용된다.

제6.7조. 형법 제186.22a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22a조. (a) 제186.22조 (e)항에 기재된 범죄, 또는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 주거 침입 또는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적인 거리 쟁단의 단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 또는 장소, 그리고 쟁단원들의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 또는 장소는 불법 방해에 해당되고, 이러한 불법 방해는 공적 또는 사적 불법 방해를 막론하고 금지, 제거 및 방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b) (a)항에 따라 제기하는 금지 명령 또는 제거에 대한 소송 (법무장관이 제기하는 소송 포함)은 건강안전법 제10편 10장 3절 (제11570조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진행되나, 다음의 모든 사항이 예외로 적용된다.

(1) 불법 행위에 대해 모르고 있었거나 알 필요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2) 퇴거 또는 폐쇄 명령을 발부하지 않는다.

(3) 모든 금지명령은 주민이나 일반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거나 추가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발부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4) 불법 사용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한 30일 간의 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수령 증명서 반환, 우편요금 산납 우편으로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보낼 때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 불법 방해를 구성하는 쟁단 활동을 제거하기 위해 (a)항 또는 민법 제3479조에 따라 금지명령을 발부할 때마다,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기소하는 시 변호사는 그러한 불법 방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또는 이웃을 대신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재정된 손해배상금은 범죄적인 거리 쟁단이나 그 단원들의 자산으로부터 지불 또는 징수한다. 불법 방해의 발생, 유지, 또는 그러한 발생 및 유지에 기여한 범죄적인 거리 쟁단의 단원들만이 재정된 손해배상금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 항에 따라 제기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변호사는 불법 방해에 의해 지역사회나 이웃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의 증언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항에 따라 회수한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분리된 기금에 예치한 후 해당 지역사회나 이웃이 있는 곳에 하부 행정기관이 있는 시나 카운티의 관리 기구에 지급해야 하고, 그 관리 기구는 그러한 자산을 단지 불법 방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나 이웃에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d) 통상적인 주의와 기술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 또는 정부 조직체는 (a) 및 (b)항에 따라 제거되지 않는다.

(e) 이 장의 어떤 조항도 교통을 당한 사람이 법에 규정된 다른 구제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f) (1) 범죄적인 거리 쟁단원이 제186.22조 (e)항에 기재된 범죄들을 저지르거나, 또는 주거 침입 또는 성폭행을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 또는 소지하는 총기, 총기에 사용하는 탄약, 또는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는 법집행 기관이나 치안관이 압수할 수 있다.

(2) 법집행 기관이 이 항에 따라 압수한 총기, 탄약, 또는 치명적인 무기를 반환하면 범죄적인 거리 쟁단의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물건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반환할 것인지 또는 불법 방해를 선언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상급법원에 청원을 제기해야 한다.

(3) 총기, 탄약 또는 치명적인 무기는 합법적인 소유자의 신원과 주소를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소유자에게 적절하게 통지한 후에 판매 또는 파괴해야 한다. 법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소유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통지서를 보내고, 그 소유자가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 서기에게 응신하여 그가 심리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응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한 총기, 탄약 또는 치명적인 무기를 몰수하는 결석명령이 발부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4) 그 사람이 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 서기는 그러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리 날짜를 정해야 한다. 법원 서기는 그 사람, 관련 법집행 기관 및 지방검사에게 심리가 열릴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5) 심리에서, 증거에 우세에 의해 압수한 물건이 범죄적인 거리 쟁단의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물건을 반환하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입증 책임은 법집행 기관 또는 치안관에게 있다. 반환되는 모든 총기는 제12021.3조의 적용을 받는다.

(6) 그 사람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심리를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합법적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집행 기관은 압수한 총기, 탄약 또는 치명적인 무기를 불법 방해라고 선언하기 위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물건들이 불법 방해라고 선언되는 경우, 법집행 기관은 제12028조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물건들을 폐기할 수 있다.

제6.8조. 제186.22b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186.22b조. (a) 범죄적인 거리 쟁단에 대해서는 그러한 쟁단이 가지고 있거나 알려진 이름으로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범죄적인 거리 쟁단에 대한 소송 절차의 사본을 그 쟁단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자연인에게 소송 절차에 대한 송달로 직접 전달하면 범죄적인 거리 쟁단에 대한 유효한 송달을 구성한다. 송달 목적의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노력을 했으나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 또는 판사는 소송 절차의 사본을 범죄적인 거리 쟁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명령에 지정된 3명 이상의 범죄적인 거리 쟁단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범죄적인 거리

경단에 대한 송달을 완료하라는 명령을 발부한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전술한 명령에 추가하여 범죄적인 거리 경단에게 실제로 통지서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명령된 방법으로 수행한 송달은 범죄적인 거리 경단에 대한 유효한 송달을 구성한다.

제6.9조. 형법 제186.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26조. (a) 제186.22조 (f)항에 정의된 범죄적인 거리 경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186.22조에 (c) 항에 정의된 범죄적인 거리 경단 활동의 한 유형에 참여하게 할 의도로, 또는 범죄적인 거리 경단원들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조장, 촉진 또는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이러한 범죄적인 거리 경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사람은 주 교도소에 16개월, 2년 또는 3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b) 제186.22조 (f)항에 정의된 범죄적인 거리 경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요, 유도 또는 권유하기 위한 의도로, 특정한 30일의 기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다른 경우에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사람은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c) 다른 사람을 제186.22조 (f)항에 정의된 범죄적인 거리 경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요, 유도 또는 권유하거나, 그 사람이 범죄적인 거리 경단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 교도소에 3년, 4년 또는 5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d) (a), (b) 또는 (c)항에 따라 권유, 모집, 강요, 또는 협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항들의 폭력에 대해 규정된 처벌에 3년의 형기를 연속적으로 추가한다.

(e) (a), (b) 또는 (c)항에 따라 권유, 모집, 강요, 또는 협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항들의 폭력에 대해 규정된 처벌에 5년의 형기를 연속적으로 추가한다.

(f) (b) 또는 (c)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가 권유, 모집, 강요, 또는 협박하는 대상자가 저지르는 차후의 중죄에 대해 주범이 된다.

(1) 그 대상자가 범죄적인 거리 경단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과 관련하여 중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2) 그러한 중죄가 이 조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마지막 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g) 이 조의 어떤 조항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기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6.10조. 형법 제186.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30조. (a) (1) (b) 항에 기술된 사람은 그가 거주하는 시의 경찰서장, 또는 그가 비법인화 지역 또는 경찰서가 없는 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안관에게 수감에서 석방된 후 10일 이내, 또는 그 시, 카운티, 또는 시 겸 카운티에 거주하기 위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에서 더 빨리 발생하는 날짜, 그리고 그 후 매년 및 거주지가 변경될 때 등록해야 한다.

(2) 등록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 주소가 1개 이상인 경우, 그는 그 거주지들에서 지내는 낮과 밤의 수에 상관없이 (1)목에 따라 그가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들의 각 관할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주소가 같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등록 당국에 그가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의 모든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b) (a)항은 이 주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소년법원에서 청원을 인정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1) 제186.22조 (a)항

(2) 제186.22조 (b)항에 명시된 형량 강화가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된 범죄

(3) 법원이 신고 또는 처분 시에 경단과 관련되었다고 확인한 범죄

(c) (1) 이 조에 의해 경범죄 유죄판결 또는 소년 범죄 신고에 근거하여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 조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이 조에 의해 중죄 유죄판결 또는 소년 범죄 신고에 근거하여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 조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범죄로 전에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차후에

고의적으로 이 조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죄에 해당되어 주 교도소에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집행유예가 승인되거나 형량의 부과 또는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사람은 그러한 집행유예 또는 집행 정지의 조건으로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소한 90일 동안 복역해야 한다. 이 목에 기술된 처벌은 그 사람이 가석방에 의해 석방되었거나, 또는 가석방이 해제된 것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d) 이 조와 제186.32조의 목적상, 등록 요건의 부과는 등록자가 신고를 받은 날, 또는 등록자가 수감되지 않은 경우 소년법원에서 처분된 날부터 발효되며, 등록자가 수감된 경우에는 수감으로부터 석방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e) 등록 요건은 등록자가 차후에 수감되지 않은 경우 발효된 날로부터 5년 후에 종료되고, 차후에 수감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등록 요건을 중단하거나 수감에서 석방될 때 이에 대한 한 가지 조건으로 경단 등록을 재부과할 수 있다.

제6.11조. 제186.34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186.34조. 2009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법무부는 매월 캘리포니아 주 형사 사법 기관들이 제186.22조 (a)항 위반으로 유죄판결 또는 신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또는 제186.22조 (b)항에 따라 신고에 대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제출하는 처분 자료를 조사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경단 등록 부서 웹사이트에서 캘리포니아 주 형사 사법 기관들에게만 전자식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그 사람의 성과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각 유죄판결 또는 신고에 대해, 수감 기관, 체포 또는 입건 기관이 포함되며, 이러한 정보는 법무부에 제출되는 처분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도까지 제공된다.

제6.12조. 보건의전법 제1137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77조. (a) 법률이 승인하는 경우와 제11375조 (b)항,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9장 7절(제4211조부터 시작)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되고, 마약이 아니거나, (2) 제11054조 (d)항((d)항 (13), (14), (15) 및 (20) 목은 제외)에 명시되었거나, (3) 제11056조 (c)항 (11)목에 명시되었거나, (4) 제11054조 (f)항 (2) 또는 (3)목에 명시되었거나, 또는 (5) 제11055조 (d), (e) 또는 (f)항에 명시된(이 주에서 개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사, 치과의사, 족병의사 또는 수의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제외) 규제 물질을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으나, 단 제11055조 (d)항 (2)목에 명시된 규제 물질을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b) (1) 제11056조 (f)항에 명시된 규제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지하여 (a)항을 위반하는 사람, 그리고 제11056조 (f)항에 명시된 규제 물질과 관련된 위반으로 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된다.

(2) 제11056조 (g)항에 명시된 규제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지하여 (a)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된다.

(c) (b)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에 추가하여, 판사는 (a)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칠십 달러(7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벌금으로부터 얻는 수입금은 형법 제1463.23조에 따라 사용된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고, 피고가 이 항에 의해 허용하는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거부하지 않는다.

제6.13조. 보건의전법 제1137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78조.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9장 7절(제4211조부터 시작)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 (a)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되고, 제11056조 (g)항을 제외하고 마약이 아니거나, (2) (b)제11054조 (d)항((d)항 (13), (14), (15), (20) (21), (22) 및 (23)목은 제외)에 명시되었거나, (3) (c)제11056조 (c)항 (11)목에 명시되었거나, (4) (d) 제11054조 (f)항 (2) 또는 (3)목에 명시되었거나, 또는 (5) (e) (d), (e) 또는 (f)항 (제11055조 (e)항 (3)목 및 (f)항 (2)목 (A) 및 (B)는 제외)에 명시된 규제 물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으나, 단 제11055조 (d)항 (2)목에 명시된 규제 물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의 기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제6.14조. 보건안전법 제1137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79조. (a) (b)항과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9장 7절(제4211조부터 시작)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 스케줄 III, IV 또는 V로 분류되고, 제11056조 (g)항을 제외하고 마약이 아니거나, (2) 제11054조 (d)항((d)항 (13), (14), (15), (20) (21), (22) 및 (23)목은 제외)에 명시되었거나, (3) 제11056조 (c)항 (11)목에 명시되었거나, (4) 제11054조 (f)항 (2) 또는 (3)목에 명시되었거나, 또는 (5) 제11055조 (d) 또는 (e)항((e)항 (3)목은 제외), 또는 (f)항 (1)목 (A)에 명시된(이 주에서 개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사, 치과의사, 족병의사 또는 수의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제외) 규제 물질을 운반, 이 주로 수입, 판매, 공급, 투여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또는 운반, 이 주로 수입, 판매, 공급, 투여 또는 무료로 제공할 것을 제외하거나, 또는 이 주로 수입, 또는 운반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의 기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으나, 단 제11055조 (d)항 (2)목에 명시된 규제 물질을 운반, 이 주로 수입, 판매, 공급, 투여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또는 운반, 이 주로 수입, 판매, 공급, 투여 또는 무료로 제공할 것을 제외하거나, 또는 이 주로 수입 또는 운반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주 교도소에 3년, 4년 또는 5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b) (a)항의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규제 물질을 판매하기 위해 이 주 내의 한 카운티에서 인접하지 않은 다른 카운티로 운반하는 사람은 주 교도소에 3년, 6년 또는 9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제6.15조. 제12022.52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12022.52조. (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중죄 유죄판결 또는 소년 범죄에 대한 선고 때문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은 제12025 또는 12031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때 다음의 2가지 상황 중 하나를 진술 및 증명하는 경우 교도소에서 추가로 10년을 복역하는 처벌을 받는다.

(1) 범죄자가 전에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았다.

(A) 제12021 또는 12021.1조에 기술된 총기 소지와 관련된 중죄 위반

(B) 보건안전법 제10편(제1100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중죄에 해당되는 금액의 규제 물질을 제조, 판매, 판매 목적으로 소지 또는 운반

(C) 제243 또는 245조에 기술된 치안관에 대한 공격 또는 구타와 관련된 중죄 위반

(D) 제667.5조 (c)항에 기술된 폭력적인 중죄

(E) 제186.22조 (a) 또는 (b)항 위반을 구성하는 중죄 갱단 범죄

(F) 범죄자가 직접 총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진술하고 증명한 중죄 (2) 제12025 또는 12031조 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음 항목이 적용되는 경우.

(A) 범죄자가 중죄 집행유예, 가석방, 보석에 의한 석방, 선고 대기 중이었거나, 또는 중죄 구속 영장을 적용 받았다.

(B) 범죄자가 중죄에 해당되는 규제 물질을 소지하고 있었다.

(C) 범죄자가 중죄에 해당될 정도로 치안관을 공격 및 구타했다.

(b) 이 조는 제12022.53조에 따라 부과하는 총기를 사용하여 치안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를 뒷받침하는 동일한 사실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이중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6.16조. 형법 제12022.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22.53조. (a) 이 조는 다음의 중죄에 적용된다.

(1) 제187조 (살인)

(2) 제203 또는 205조 (신체 상해)

(3) 제207, 209 또는 209.5조 (유괴)

(4) 제211조 (강도)

(5) 제215조 (차량 강탈)

(6) 제220 조 (특정한 중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공격)

(7) 제245조 (d)항 (치안관이나 소방대원을 총기로 공격)

(8) 제261 또는 262조 (성폭행)

(9) 제264.1조 (방조에 의한 성폭행 또는 성기 삽입)

(10) 제286조 (남색)

(11) 제288 또는 288.5조 (아동에 대한 음란한 행위)

(12) 제288a조 (구강 성교)

(13) 제289조 (성기 삽입)

(14) 제460조 (a)항 (1급 주거 침입)

(15) 제4500조 (무기수에 의한 공격)

~~(15)~~ (16) 제4501조 (수감자에 의한 공격)

~~(16)~~ (17) 제4503조 (수감자가 인질을 잡음)

~~(17)~~ (18) 사형 또는 주 교도소 종신 수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죄.

~~(18)~~ (19) 공격을 이 조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공격 제외)

(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중죄를 저지룰 때 총기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주 교도소에 추가로 10년 동안 연속해서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총기는 작동하지 않거나 탄약이 장전되지 않았더라도 이 형량 강화의 적용을 받는다.

(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중죄를 저지룰 때 총기를 직접 의도적으로 발사하는 사람은 주 교도소에 추가로 20년의 기간 동안 연속해서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 제246조 또는 제12034조 (c) 또는 (d)항에 명시된 중죄를 저지룰 때 총기를 직접 의도적으로 발사하고 공범이 아닌 사람에게 제12022.7조에 정의된 심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주 교도소에 추가로 25년에서 종신형의 기간 동안 연속해서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e) ~~(1)~~ 이 조에 규정된 형량 강화는 다음의 두 항목이 진술 및 증명되는 경우 이 조에 따른 주장이 포함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주범으로 기소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A) 크 사람이 제186.22조 (b)항을 위반했다.

(B) 범죄의 주범이 (b), (c) 또는 (d)항에 명시된 행위를 저질렀다.

(2) 제1편 7부 11장(제186.2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범죄적인 커라 평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형량 강화는 크 사람이 범죄를 저지룰 때 총기를 직접 사용했거나 직접 발사하지 않은 한, 이 형에 따라 부과되는 형량 강화에 추가하여 크 사람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f) 이 조에 의한 추가 수감 기간은 각 범죄에 대해 사람 당 단 한 번 부과된다. 이 조에 의한 형량 강화가 사람 당 두 번 이상 적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그 사람에게 가장 긴 수감 기간을 제공하는 형량 강화를 부과한다. 제12021.5, 12022, 12022.3, 12022.4, 12022.5 또는 12022.55조에 명시된 총기와 관련된 형량 강화는 이 조에 따라 부과되는 형량 강화에 추가하여 그 사람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제12022.7, 12022.8 또는 12022.9조에 정의된 중한 신체 상해와 관련된 형량 강화는 (d)항에 따라 부과되는 형량 강화에 추가하여 그 사람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g)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조항들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승인하지 않고, 형량의 집행 또는 부과를 정지하지 않는다.

(h) 제1385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조에 의한 주장이나 어떤 사람이 이 조의 조항들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조사 결과를 기각하지 않는다.

(i) 제3편 1부 7장 2.5절(제29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제4019조나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지급하는 크레딧의 총량은 이 조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는 피고에 대해 부과되는 총 수감 기간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j) 이 조의 처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b), (c) 또는 (d)항이 요구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소 진술에서 주장해야 하고, 피고가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또는 사실의 판단자가 사실이라고 판결해야 한다. 이 조에 명시된 형량 강화가 인정되었거나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 법원은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한 형량 강화가 더 중한 처벌이나 더 긴 수감 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승인된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이 조에 따른 형량 강화에 대한 처벌을 부과한다.

(k) 어떤 사람이 이 조에 따른 혐의를 포함하는 범죄를 저지룰 때 총기를 사용 또는 발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총기를 그 사람, 동참자 또는 공모자가 소유하는 경우, 법원은 그 총기를 불법 방해로 간주하고 제12028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명해야 한다.

(l) 이 조에 명시된 형량 강화는 공무원이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또는 어떤 사람이 제197, 198 및 198.5조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자기 방어, 다른 사람에 대한 합법적인 방어, 또는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방어를 위해서,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용 또는 발사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17조. 제12022.57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12022.57조. (a) 어떤 사람이 제12022.52조를 위반하거나 총기 사용과 관련된 중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범죄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차 내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총기 또는 그 사람과 총기가 자동차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들이 적용된다.

(1) 범죄자가 해당 자동차를 소유, 운전 또는 관리하는 경우, 차량국은 적용 가능한 다른 처벌에 추가하여 차량법 제13350조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그 범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특권을 취소한다.

(2) 범죄자가 해당 범죄의 결과로 수감되거나, 보호 감독 치료를 받거나, 자택에 감금되는 경우에는 그 범죄자가 수감에서 석방될 때까지 (1) 목에 기술된 자동차 운행 특권의 취소가 중단된다.

(3) 주체의 차량이 범죄자 또는 그 범죄의 다른 주범에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동안 압수할 수 있다.

(b) (a)항에 의해 제거 및 압수된 차량의 등록 및 법적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차량법 제22852조에 따라 보관의 유효성을 결정하거나 그러한 보관에 수반되는 경감 사유를 고려하기 위한 보관 심리에 대한 기회를 갖는다.

제6.18조. 제2933.25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2933.25조. (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교도소에 종신 수감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 장, 제4019조 또는 품행 크레딧 단축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품행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다.

(b) 이 조에서 사용되는 “종신 수감”이라는 용어에는 가석방 유무에 상관없이, 그리고 가석방 자격을 얻기 전에 필요한 특정한 최소 수감 기간의 유무에 상관없이, 범죄 또는 형량 강화에 대해 종신형을 최대 형기로 부과하는 모든 선고가 포함된다.

(c) 이 조는 이 조가 발효되는 날짜 이후에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19조. 형법 제653.7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3.75조. 제6031.4조에 정의된 지역 구치 시설, 또는 제4504조에 정의된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공공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범죄는 공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이 조, 또는 제4505조의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6.20조. 제653.77 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653.77조. (a)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착된 전자식 장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또는 다른 감시 장치가 형사 선고, 소년법원의 처분,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부착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장치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키는 사람은 공공 범죄에 대한 유죄에 해당된다.

(b) (1) 경범죄 유죄판결에 근거하거나, 또는 청소년 경범죄 선고에 근거하여 전자식 장치, GPS 또는 다른 감시 장치를 적용 받는 사람이 (a)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되고, 카운티 구치소에 최대 1년 동안 수감되거나, 최대 일천 달러(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감과 벌금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식 장치, GPS 또는 다른 감시 장치를 경범죄 유죄판결에 근거하거나, 또는 청소년 경범죄 선고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착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부착된 이러한 장치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키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되고, 카운티 구치소에 최대 1년 동안 수감되거나, 최대 일천 달러(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감과 벌금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 (1) 중죄 유죄판결에 근거하거나, 청소년 중죄 선고 또는 중죄에 대한 가석방에 근거하여 전자식 장치, GPS 또는 다른 감시 장치를 적용 받는 사람이 (a)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죄에 해당되고, 주 교도소에 16개월, 2년 또는 3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식 장치, GPS 또는 다른 감시 장치를 중죄 유죄판결에 근거하거나, 또는 청소년 중죄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착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부착된 이러한 장치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키는 사람은 중죄에 해당되고, 주 교도소에 16개월, 2년 또는 3년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d) 이 조의 어떤 조항도 제594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더 중하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e) 이 조는 의사, 응급 의료 서비스 테크니션, 또는 다른 긴급 대응 요원이나 의료 요원이 전자식 장치, GPS 또는 다른 감시 장치를 적용 받는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자식 장치, GPS 또는 다른 감시 장치를 제거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이, 또는 전자식 장치, GPS 또는 다른 감시 장치를 이러한 사람에게 부착하거나, 그 때 전자식 장치, GPS 또는 다른 감시 장치를 모니터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집행행,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당국이나 다른 조직체가 전자식 장치, GPS 또는 다른 감시 장치를 제거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승인 또는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6.21조. 형법 제450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04조. 이 장의 목적상:

(a) 어떤 사람이 법률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의해 교정재활부 또는 소년교정국에 수감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의해 제5003조에 명시된 권한이 있는 교도소와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그 사람은 그러한 수감의 목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러한 수감을 지시하는 명령의 유효성에 상관없이, 그러한 명령을 무효화하는 관할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 될 때까지 “주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간주된다.

(b)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때 작업에 차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재판을 받는 동안 지역 교정시설에 수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수감자가 임시로 교도소 울타리나 경계 외부에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다른 목적으로 임시로 교도소 울타리나 경계 외부에 있는 사람은 “수감”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6.22조. 제4505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4505조. (a) 제186.22조에 정의된 범죄적인 거리 경단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과 관련하여 중죄를 저지르는 수감자는 그 중죄에 대해 달리 규정된 처벌의 2배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는다(다른 법률 조항에 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b) 수감자에게 (a)항에 기술된 중죄에 사용되는 무기, 휴대폰 또는 다른 반입 금지 물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러한 무기, 휴대폰 또는 다른 반입 금지 물품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다라도 제31조에 정의된 주범으로 간주되어 그 수감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제7조. 상충되는 처벌에 관한 의도

경단 범죄, 총기 범죄 및 다른 특정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처벌 및 통제하는 법률들을 강화 및 개선하는 것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도이다. 또한 이 법의 어떤 조항이 더 중한 처벌이나 더 긴 수감 기간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 더 엄격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도이다.

제8조. STEP 형에 대한 변경사항에 관한 의도

(a) 대체 최소 형기 계산 절차를 삭제하고 형기 계산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형법 제186.22조 (b)항 (4)목에 대한 개정은 종신형의 최소 형기를 계산하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이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에 규정된 대체 최소 형기 계산 절차를 폐지하는 개정은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이러한 조항들이 발효 중인 동안 범죄를 저질렀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b) 제12022.55조에 대한 참조와 제12034조를 추가하는 참조를 삭제하는 형법 제186.22조 (b)항 (4)목 (B)에 대한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총기를 발사하는 것과 관련된 경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이 조항의 이전 판이 발효 중인 동안 범죄를 저질렀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c) 법원이 형량 강화를 위한 추가 처벌을 취소하는 것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제186.22조 (g)항에 대한 개정은 제1385조에 의한 법원의 권한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

제9조. 조건부 석방 및 재진입

제9.1조. 제667.21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667.21. (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667.5조 (c)항에 기술된 폭력적인 중죄 또는 제186.22조 (a) 또는 (b)항을 위반하는 경단 관련 중죄로 기소되는 사람이 혐의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때에 미국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재판을 받는 동안 보석에 대한 자격이 없고 자신의 서약에 의해 석방되지 않는다. 피의자를 구급

중인 카운티의 보안관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의 체포와 기소에 대해 연방 이민범죄 집행국(ICE)에 통지해야 한다.

(b) 이 조는 단지 피의자의 외국인 신분이나 연방 이민법 위반에 근거하여 그 사람에 대한 체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c) 각 카운티의 보안관, 지방검사 및 심리 법원은 중죄로 기소, 입건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신분을 기록하고, 법무부에 보고하여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을 포함시킴으로써(CLETS) 연방정부가 수감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9.2조. 형법 제13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9조. (a) 제667.5조 (c)항에 기술된 폭력적인 중죄, 또는 제1192.7조 (c)항에 기술된 심한 중죄로 체포된 사람은 치안관사나 판사가 주재하는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열릴 때까지, 그리고 검사가 이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 사건에 대해 심문할 적절한 기회를 가질 때까지 자신의 서약에 의해 석방될 수 없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조항은 제825조에 따라 부당한 지연이 없이 치안관사나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피고의 권리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b) 제667.5조 (c)항에 기술된 폭력적인 중죄로 기소된 피고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그가 전에 중죄로 기소된 적이 있고, 그러한 기소가 계류 중인 동안 고의로, 그리고 법원의 허가 없이, 요구되는 법원 출두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자신의 서약에 의해 석방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이 조에 의한 석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피고에 대해 계류 중인 중죄 영장이 있는지 여부
- (2) 제1318.1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정보. 법원이 피고를 본인의 서약에 따라 석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할 때, 제1318.1조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러한 석방을 방해하지 않는다.
- (3) 검사가 제출하는 기타 정보

(c) 이 조에 따라 어떤 사람을 본인의 서약에 따라 석방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판사나 치안판사는 제825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그러한 결정을 한 이유를 기록에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법원의 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18.1조 (b)항에 따라 조사 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그 특정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제9.3조. 형법 제1319.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9.5조. (a) (b)항에 기술된 사람이 새로운 범죄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치안관사나 판사가 주재하는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열릴 때까지 본인의 서약에 의해 석방될 수 없다.

- (b) (a)항은 다음 사람에게 적용된다.
 - (1) 현재 중죄로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에 있는 사람
 - (2) 명령에 따라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이전에 체포되기 전 3년 동안 세 두 번 이상 영장이 발부되었고(차량법 위반으로 인한 법률 위반은 제외), 다음의 범죄에 대해 체포된 사람:
 - (A) 중범죄.
 - (B) 캘리포니아 주 거리 테러리즘 집행 및 방지법(제1편 7부 11장(제186.20조부터 시작)) 위반
 - (C) 제1편 8부 9장(제240조부터 시작) (공격 및 구타) 위반
 - (D) 제484조 (절도) 위반
 - (E) 제459조 (주거 침입) 위반
 - (F) 피고가 총기로 무장을 했거나 직접 총기를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는 범죄

제9.4조. 제3044.5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3044.5조. (a) 성인 가석방 운영국 직원은 가석방자가 다음과 같은 종류의 행동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경우, 이를 가석방 심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제667.5조 (c)항에 기술된 행동, 제1192.7조 (c)항에 기술된 행동, 또는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히는 공격적인 행동
- (2) 제12020조 (a)항에 명시된 총기, 화약 또는 석공의 소지, 관리, 사용 또는 접근, 또는 무기의 소지 또는 사용, 또는 칼날이 2인치보다 긴 단도(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15편 제2512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 (3) 일천 달러(1,000달러)가 넘는 금액이 관련된 사기 음모에 연루
- (4) 보건의전법 제10편(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마약이나 다른 규제 물질의 판매, 운반 또는 유통
- (5) 소재지를 알 수 없고 30일 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가석방자

(6) 성인 가석방 운영국 직원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다른 행동 또는 다른 유형의 행동(반복적인 가석방 위반과 범죄 행동 증가 포함)

(7) 제290조에 따라 그 사람이 등록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법무부가 요구하는 양식에서 서명하기를 거부

(8) 특정한 범죄자가 석방되기 전에 검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제295조에서 300.3조까지 규정된 2건의 혈액 검체, 1건의 타액 검체, 오른손 엄지손가락 타액 지문, 그리고 각 손의 손바닥 전체 지문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

(9) 가석방자에게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제290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 행동

(10) 가석방 조건에 서명하지 않는 행동

(11) 제186.22조 (e)항에 열거된 교도소 갱단, 방해 그룹, 또는 범죄적인 거리 갱단의 단원과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조건을 위반(그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12)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15편 제2513조 (e)항에 정의된 교도소 갱단, 방해 그룹, 또는 범죄적인 거리 갱단의 단원과 관계를 맺거나, 갱단 활동과 관련된 갱단 색깔, 표식, 상징물 또는 장비를 착용 또는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조건을 위반(그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13) 갱단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조례 또는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을 위반(그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14) 가석방자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어 향후에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

(15) 제2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가석방자에게 부과되는 제3003.5조에 기술된 주거 제한에 대한 위반

(b) 제667.5조 (c)항, 또는 제1192.7조 (c)항에 기술된 범죄를 저지르는 가석방자에 대해서, 성인 가석방 운영국은 가석방자의 행동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행동이 포함된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a)항에 열거된 행동
- (2) 총기와 관련된 폭력적, 공격적 및/또는 범죄적인 행동
- (3) 알코올성 음료를 삼가야 한다는 조건의 위반
- (c) (a) 및 (b)항에 열거된 필수 보고 요건은 가석방 집행관, 단위 감독자 또는 구역 관리자가 보고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는 행동을 재량에 의해 보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그러한 행동이 법원에 기소 중인 것 여부에 상관없이).
- (d) 위원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 조가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를 전자식으로 전송하고, 갱단, 총기 및 폭력적인 중죄와 관련된 보고서는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9.5조. 제5072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5072조. (a) 이 조에 의해 가석방자 멘토링 및 인력 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정재활부 장관이 지급하는 주 출납국 가석방자 재진입 기금을 설치한다. 수령자는 가석방자에게 특정한 멘토링, 인력 및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고안, 관리, 감독 및 평가하는 것에 대해 효과적인 수감자 재진입 프로그램 모델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문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 수령자는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b)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흔히 발생하는 수감, 석방 및 교도소 복귀의 사이클과 관련된 재범률, 고비용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지원 및 준비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가석방 중인 범죄자들에게 지원, 기회, 멘토링,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 프로그램들은 가석방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로 인력에 귀속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2) 이 프로그램들은 케이스 관리 구성요소를 통해서 가석방자들에게 중요한 지원 서비스와 주택, 중독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의뢰를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멘토링 구성요소를 통해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 (3) 교정재활부 장관은 특히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석방자 참여자들의 일일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일일 체크인 GPS 시설, 장치, 성문(voiceprint), 또는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승인할 수 있다.

(c) 이천만 달러(20,000,000달러)의 금액을 2009 - 10 회계연도와 그 후 매년 일반기금으로부터 가석방자 재진입 기금에 책정하고, 이러한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d) 가석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서 공공안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도이다. 교도소로부터 석방된 직후의 몇 개월 동안 범죄자들이 하는 행동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러한 행동이 보통 그 범죄자가 재수감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자들은 최소한 영장이 없이 조사를 실시하는 주정부의 권리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적용 받아야 한다. GPS, 직업 교육,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가석방자들을 감독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들은 상당한 약속을 제공하나, 가석방 집행관들은 일상적으로 집행관 당 100여 건의 담당 건수를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e) 따라서, 교정재활부는 이 법이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충분한 가석방 집행관들을 충원 및 교육하여 평균 담당 건수를 집행관 당 50 명 이하로 줄이고 성범죄자, 갇힌 범죄자 및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그룹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공공계획을 채택한다. 전반적인 담당 건수는 같은 정의를 적용하는 총 가석방자 수와 총 가석방 집행관 수, 그리고 2006 - 07 기준 연도에 실시한 가석방 기간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이 계획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완전히 시행한다.

제10조. 법집행 자원

제10.1조. 제30061.1조를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한다.

제30061.1조. (a) 이 조에 의해 이 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자금을 할당할 수 있는 주 출납국 공공안전 주민 옵션 기금(COPS)을 설치한다.

(b) 지역의 공공안전, 갇힌 범죄 방지 및 청소년 사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억 달러(500,000,000달러)의 금액을 2009 - 10 회계연도와 그 후 매년 일반기금으로부터 COPS 기금에 책정하고, 이러한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c) 회계감사원장은 COPS 기금에 책정된 금액 중에서 2분의 1을 각 카운티의 보충 법집행 서비스기금(SLESF)을 통해서 지역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제30061조에 의해 승인한 프로그램들을 2009 - 10 회계연도 동안과 그 후의 각 회계연도에 매년 지원한다.

(d) 회계감사원장은 COPS 기금에 책정된 금액 중에서 2분의 1을 2009 - 10회계연도 동안과 그 후의 각 회계연도에 매년 안전한 이웃 기금으로 이전하여 제30061.15조에 의해 새로 승인한 공공안전, 갇힌 범죄 방지 및 다른 프로그램들을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자금들은 이 조에 추가된 법의 조항에 따라 분배된다.

제10.2조. 제30061.15조를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한다.

제30061.15조. (a) 이 조에 의해 주 출납국 안전한 기금(COPS)을 설치한다. 이 기금의 자금들은 이 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분배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모든 자금은 달리 기술하지 않는 한 재무부가 매년 집계하는 인구 비례에 따라 분배한다.

(b) 이 조에 의해 범죄를 방지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지역의 법집행과 조기 개입 능력을 증대하고 주 전체 갇힌 범죄 방지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을 결합하여 지역 법집행 기관과 주 전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안전한 이웃 계획을 수립한다.

(1) 안전한 이웃 기금의 십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정복 법집행 기관에 할당하여 폭력, 갇힌, 총기 및 다른 거리 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자금은 재무부가 결정하는 각 시의 인구에 근거하여 비례에 따라 분배한다. 각 시에 할당되는 자금은 이 자금을 수령하는 시 내의 정복 법집행 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2) 안전한 이웃 기금의 십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카운티 지방감사에게 할당하여 폭력적 총포, 갇힌 및 차량 절도의 수직적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각 카운티의 SLESF에 예치한다. 수령 기관들은 이 항에 따라 수령하는 자금의 일부(수령 기관에 할당된 자금의 2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를 거리 테러리즘 집행 및 예방(STEP) 법을 갇힌을 기소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검사들을 교육하는 데 지출할 것을 권장한다.

(3) 안전한 이웃 기금의 육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공공안전

교육 및 정보국에 할당하여 다기관, 지역 갇힌 태스크포스와 사복 경찰관 및 보안관들을 위한 주 전체 갇힌 법집행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4) 안전한 이웃 기금의 팔 퍼센트는 매년 카운티 보안관과 현재 제30061조에 의한 일십만 달러(100,000달러)의 최소 보조금에 대한 자격이 없는 인구가 300,000명 미만인 중규모 시에 할당하여, 소규모, 중규모 및 급성장하는 지역사회에 흔히 발생하는 법집행 문제에 대처하고, 카운티, 지역 및 주 전체 법집행 활동과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A) 안전한 이웃 기금의 이와 백분의 삼십이 퍼센트는 카운티 보안관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분배한다.

(B) 안전한 이웃 기금의 오와 백분의 육십팔 퍼센트는 이 목에 정의된 중규모 시에 재무부가 결정하는 각 시의 인구에 근거하여 해당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5) 안전한 이웃 기금의 일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시민 갇힌 금지명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시에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안전 교육 및 정보국에 할당한다.

(6) 안전한 이웃 기금의 이십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참여 카운티 집행유예국에 할당한다.

(A) 안전한 이웃 기금의 이십 퍼센트는 기존의 집행유예 담당 건수를 완화하고 집행유예 중에 있는 성인 범죄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카운티 집행유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B) 안전한 이웃 기금의 육 퍼센트는 고위험 집행유예자 집행유예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는 태스크포스에 자금을 지원한다. 참여하는 각 카운티는 카운티 보안관, 카운티 내의 한 시의 최소한 1명의 경찰서장, 지방검사, 최고 집행유예 책임자로 구성된 무기 회수 관리를 통한 안전 증가 개발(DISARM) 팀을 설치하고, 집행유예 담당관들이 고위험 집행유예자들의 집행유예 조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총기를 제거하는 것을 지원하는 전략,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고위험 집행유예자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최소한 한 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i) 형법 제245조에 정의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
- (ii) 형법 제664조에 정의된 살인 미수
- (iii) 형법 제1편 8부 1장(제187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살인
- (iv) 형법 제211, 212, 213 및 214조에 규정된 강도
- (v) 형법 제186.22조에 기술된 범죄적인 거리 갇힌 범죄

(7) 안전한 이웃 기금의 일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할당하여 제13921조에 따라 승인된 캘리포니아 주 조기 개입, 재활 및 책임 위원회를 지원한다.

(8) 안전한 이웃 기금의 십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카운티 보안관들에게 할당하여 구치소의 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각 카운티의 SLESF에 예치한다.

(9) 안전한 이웃 기금의 사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법무부에 할당하여 형법 제14020조에 따라 설치된 캘리포니아 주 증인 보호 프로그램, 또는 이를 승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0) 안전한 이웃 기금의 이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공공안전 교육 및 정보국에 할당하고, 이 기관은 연방, 주 및 지방의 법집행 기관들이 갇힌 범죄를 표적으로 삼고 기소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갇힌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나 다른 캘리포니아 주 법집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의 주 Cal-Gang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 전체 갇힌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한다. 첫 년도 이후에, 공공안전 교육 및 정보국은 매년 이백만 달러(2,000,000달러)를 할당하여 이 시스템을 지원 및 유지하고, 매년 삼백만 달러(3,000,000달러)를 지역 갇힌 정보 자원 센터에 할당하여 이 자원 센터에 충원할 직원에 대한 비용을 상쇄하는 것을 지원한다.

(11) (A) 안전한 이웃 기금의 육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카운티들에 할당하여 갇힌 범죄자, 폭력 범죄자 및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고위험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추적 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다.

(i) 참여하는 카운티들은 카운티 보안관이나 집행유예국이 GPS 추적 장치를 구매 및 감시하기 위해 사용할 금액을 신청하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이 자금을 받으려는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5월 1일 이전에 회계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ii) 자금은 각 참여 카운티가 신청하는 금액 또는 참여하는 모든 카운티의 총 인구에 대한 각 카운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각 카운티에 분배한다.

(iii) 분배된 총 자금이 연간 할당 금액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은 최초 분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할당 금액이 소진되거나 모든 카운티에서 요청한 금액이 충족될 때까지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는 참여 카운티에 분배한다.

(B) 주정부 가석방 당국이 부과하는 조건에 의해 GPS 추적을 받는 범죄자를 감시하는 비용은 GPS 감시 기간 동안 주정부가 부담한다. 카운티나 지방정부가 그러한 범죄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요건은 완전히 상환 가능한 주정부의 명령을 구성한다.

(12) 안전한 이웃 기금의 사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대기관 마약 태스크포스에 할당하며, 특히 국경 금지명령에 중점을 두는 태스크포스에 높은 비중을 둔다. 적격 태스크포스(경찰 및 보안관)는 이 조에 의해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의 조직일 수도 있으나, 단 기관의 참여나 리더십 역할을 제한하지 않는 다관할권 태스크포스만이 자금을 받는다.

(13) 안전한 이웃 기금의 육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공공안전 교육 및 정보국에 할당하며, 형법 제14260조에 따라 형사 사법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확산시키고 공공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4) 안전한 이웃 기금의 사 퍼센트는 회계감사원장이 매년 공공안전 교육 및 정보국에 할당하며, 지방정부의 지출에 상응하는 자금을 법집행 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및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보안서, 경찰서, 또는 이러한 기관의 지역 협회는 스포츠, 교육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적격 프로그램은 치안관이 운영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동일한 금액의 상응 자금이나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상응 자금 요건은 지방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공무원 서비스의 가치 또는 자신 기부금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은 범죄의 위협에 처한 청소년 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적인 거리 쟁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보조금은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다.

제10.3조. 제30062.1조를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한다.

제30062.1조. (a) 1937년 연방주택법(연방법 제42편 1437f조) 제8조에 따라 발행된 주택 증표로 지불하는 주거용 주택 입주자가 같은 조에 따라 공표된 규정과 공적 자금을 위한 임대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증대하기 위해 이 조에 의해 안전한 이웃 준수 집행 기금을 주 출납국에 설치한다.

(b) 이 기금은 공공안전 교육 및 정보국(OPSE)이 운영하고, 이 기관은 규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정부 기관의 적격 지출 증가에 대한 상응 자금을 제공한다. 이 자금의 목표는 불법 쟁단, 마약 또는 다른 범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입주하는 공적 자금을 위한 점유를 제거하여 제한된 공공자원을 안전한 주택이 필요한 법을 지키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c) 이 조에 의해 천만 달러(10,000,000달러)의 금액을 2009 - 10 회계연도와 그 후 매년 일반기금으로부터 안전한 이웃 준수 집행 기금에 책정하고, 이러한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생계비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d) 1937년 연방주택법 제8조에 따라 주택 증표에 의한 입주 요건의 준수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정부 기관은 안전한 이웃 준수 집행 기금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상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2009년과 그 후 매년 3월 30일 이전에, 각 신청 기관은 공공안전 교육 및 정보국에 자격을 얻기 위해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A) 해당 기관의 규제 권한의 출처.

(B) 안전한 이웃 준수 집행 기금으로부터 받으려는 보조금과 동일한 달러 금액의 자금을 지출할 지방정부 기관의 신규 자금 또는 추가 동종 서비스의 금액과 출처

(C) 보조금에 의해 자금을 제공할 추가 직원, 장비 또는 준법 집행 절차

(D) 1937년 연방주택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 발급된 주택 증표의 수

(E) 해당 기관의 관할지역 내에 있는 제8조 임대권에 의한 모든 입주자에게 매년 최소한 한 번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그 기관의 절차

(2) (1)목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 (1) 공공안전 교육 및 정보국은 보조금 신청 마감일 이후, 2009년 6월 30일 이전과 그 후 매년 모든 신청 기관이 1937년 연방주택법 제8조에 따라 발급한 총 주택 증표 수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각 기관에 모든 신청 기관이 1937년 연방주택법 제8조에 따라 발급한 총 주택 증표 수에 대한 해당 기관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적 인자(퍼센트 비율)를 배정한다.

(2)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적시에 준수하는 각 기관은 연간 자금 책정의 최대 50퍼센트에 해당되고 (d)항에 따라 계산한 1937년 연방주택법 제8조에 따라 발급한 총 주택 증표의 관할지역별 비율(수적 인자)에 의해 그 기관이 수령할 금액과 동일한 상응 보조금을 제공한다.

(3) 사용 가능한 자금이 (d)항 (1)목에 따라 소진되지 않는 경우, (1)목에 의해 계산된 총 주택 증표에 대한 비율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려고 했던 각 기관은 2차 또는 그 이후의 풀(pool)에 참가해야 한다.

(f) 공공안전 교육 및 정보국은 총 자금의 최대 3퍼센트를 기금의 운영과 수령 프로그램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4조. 제4004.6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4004.6조. (a) 이 조는 다음과 같은 카운티에 적용한다.

(1)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연방법원 명령의 적용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부과한 인구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카운티

(2) 구치소 수용 능력의 90 퍼센트를 초과하는 과밀을 피하기 위해 수감자들을 조기에 석방하고 있는 카운티

(3) 각 6개월의 연속된 기간 동안 구치소 수용 능력의 9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가 1회 이상 있었던 카운티

(b) (a)항에 기술된 카운티의 보안관, 또는 마데라, 나파 및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감독 위원회 또는 교정국장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통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주거에 대한 지방정부의 건강안전법을 충족시키고, 임시 구치소나 치료 시설로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주거 시설을 사용 및 운영할 권한을 갖는다. 이 조의 어떤 조항도 이러한 시설을 임시 구치소나 치료 시설에서 근무할 카운티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법안화 지역 내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추가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1) 수감자는 단일 신고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시 구치소나 치료 시설에 수용할 수 없다.

(2) 수감자의 배치와 구치소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는 카운티 보안관만이 감독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이 법의 조항들은 보안관, 또는 마데라, 나파 및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감독 위원회 또는 교정국장이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승인된 조기 석방, 전자 장치에 의한 감시, 또는 외부 통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의해 승인되는 긴급 구치소 시설의 사용은 재량에 의한 행위이고, 보안관, 보안서, 또는 이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민사 책임의 근거를 형성하지 않는다.

(5) 임시 구치소 시설이나 다른 대안적인 주거 시설에서 도주하는 수감자는 현행법에 따라 제4532조에 대한 중죄 위반에 해당된다.

(c) 이 조에 의해 긴급상황을 구성하는 조건이 해소되고 해당 카운티 내의 구치소 수감자 총 인구가 12개월 연속해서 승인된 영구 수용 능력의 80 퍼센트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보안관, 또는 마데라, 나파 및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감독 위원회 또는 교정국장은 적절한 기간 내에 수감자들을 긴급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종료하거나, 또는 그러한 시설을 영구 수감자 수용 시설에 해당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시설로 변경해야 한다.

(d) 이 조의 목적상, 구치소 수감자 인구에는 교정재활부와의 계약에 의해 카운티 구치소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가석방 위반자들이 포함된다.

제10.5조. 형법 제14175조를 폐지한다.

제14175조. 이 조는 2009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고, 최후에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 삭제되거나 이 날짜까지 연장되지 않는 한, 2010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제10.6조. 형법 제14183조를 폐지한다.

제14183조. 이 조는 201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고, 최후에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 삭제되거나 이 날짜까지 연장되지 않는 한, 2011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제11조.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

다음과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2007년 예산법에 의해 수령한 자금 수준 이상의 자금을 제공 받는다.

- (1) 9210-105-0001 항목에 의해 설치된 구치소 효율성 기금
- (2) 0690-101-0001 항목에 의한 캘리포니아 주 다관할구역 메탐페타민 집행팀(CAL-MMET) 프로그램
- (3) 2005년 법률 제497장에 의해 설치된 센트럴 밸리 농촌 범죄 방지 프로그램
- (4) 2003년 법률 제18장에 의해 설치된 센트럴 코스트 농촌 범죄 방지 프로그램
- (5) 5225-101-0001 항목 명세표 1에 의한 청소년 집행유예 캠프 기금

제12조.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의도

안전한 이웃법의 채택을 통해서 주 전체의 우선 과제인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방지 및 범죄자 재활을 위한 법집행 및 보충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금 제공의 변동성을 제한하려는 것이 주민의 의도이다. 단기적인 재정 문제와 많은 경쟁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바람직한 범죄 방지 및 법집행 프로그램들이 종료되거나, 또는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에게 적절한 직원이나 장비가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너무 잦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찰관, 보안관 및 교정 담당관들은 가장 좋은 상황하에서도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담당 건수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의 공공안전 담당 기관에 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방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그러한 기관에 권한에 비례하는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메탐페타민 금지를 위해 싸우는 기관들에게 추가로 자원을 승인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그러한 자금의 수령 기관들이 거리 갱단 및 총기 위반과 자금을 잃는 경우 환상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과 자원을 모두 보호하고 열거된 모든 프로그램이 공공의 감시를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목표는 범죄 방지 및 법집행 모두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키고 그러한 참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13조. 교육 자금 제공 보장

이 법 내의 어떤 조항도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VI절 제8조에 의한 주정부의 최소 의무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또는 헌법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K - 14학교에 대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14조. 유권자가 승인하는 마약 치료에 대한 의도

이 법의 어떤 조항도 어떤 사람이 유권자가 승인하는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15조. 비-대체 조항

이 법에 의해 승인 및/또는 영구화되는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공공안전 담당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의 자원 및 능력을 강화하고 보충하므로, 주 또는 시, 카운티, 시 겸 카운티, 또는 다른 하부 행정기관이 수령 기관이 받는 자금의 수준을 2007 - 08 또는 2008 - 09 회계연도 동안에 받은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이하로 낮추어 이 법에 의해 승인된 강화된 자금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 또는 상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자금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

이 법의 어떤 조항도 주의회가 공공안전에 대한 자금 책정을 이 법에 의해 승인된 것보다 증가시키거나 추가로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17조. 미래의 자금 조항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 할당 및 책정되었으나 법에 규정된 해당 기간 내에 책정되거나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그 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와 함께 같은 계정에 귀속 및 유지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책정 및 지출한다. 수령 프로그램이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자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그러한 자금이 승인 후 2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적격 기관에 분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그러한 자금은 일반기금에 귀속된다.

제18조. 상충되는 투표 법안

폭력적인 범죄자와 범죄적인 거리 갱단원에 대한 교도소 형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우리의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이 법안, 또는 형사 처벌의 수준을 낮추거나 수감자의 조기 석방을 승인하는 다른 법안이 같은 선거에서 과반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법안이 그러한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안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앞에 언급된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의 상충되는 조항들은 무효가 되고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안이 과반수 유권자의 찬성 투표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이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지 못한 경우, 이 법안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제19조. 법률 참조

달리 표시되지 않은 한, 이 법 내에 포함된 법률에 대한 모든 참조는 2008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법률을 참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0조. 가분성 조항

이 법의 조항이나 일부분이 어떤 이유로 무효 또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은 분리가 가능하다.

제21조. 개정 조항

이 법의 조항들은 상하 양원에서 의사록에 기재된 호명투표에서 의원의 4분의 3이 찬성하여 통과된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유권자들이 승인할 때만 발효되는 법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회가 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의회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이 법의 규정된 처벌 또는 벌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의 의원들이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에 의해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발의안 제7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공공사업체법의 조항들을 개정하고, 공공자원법의 조항들을 개정 및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기존의 조항들은 ~~삭제~~ 회안을 그어 인쇄하고,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2008년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법

제1조. 명칭

이 법은 “2008년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법”이라고 칭한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현재 중대한 위기이다. 북극의 빙산이 녹고, 전 세계의 기온이 상승하고,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현저한 기후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는 환경의 변화가 신속하게 확산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이 증가하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는 시에라의 설원이 녹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우리의 주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가 필요하다.

B. 캘리포니아 주는 가뭄, 대기 오염, 낮은 수질과 다른 많은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특수이익집단들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자신의 힘으로 에너지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 오염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대안은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이다.

C. 캘리포니아 주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다.

D.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주민 발의안을 통해서 공기를 정화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더 건강하고 청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 우리의 전통적인 전력 공급원은 점점 가격이 비싸지고 신뢰성이 감소하는 화석 연료와 외국산 에너지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 주민발의안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캘리포니아 주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킬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기 요금을 3퍼센트 이상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더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지불하는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F.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법은 모든 전기 공익사업체가 2025년까지 태양열과 풍력 같은 청정 에너지원으로부터 50퍼센트의 전기를 생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를 에너지 자립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현재, 22퍼센트가 넘는 캘리포니아 주의 온실가스가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나,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는 약 10퍼센트에 불과하므로, 캘리포니아 주는 높은 에너지 가격, 중동의 정치적인 불안정, 대형 석유회사의 불모가 되는 되는 것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G.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법은 전기를 생산하는 신기술을 촉진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전지판으로부터 태양열 전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사막에 태양열 반사경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를 얻는 혁신적인 신기술도 있다. 이러한 반사경들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한 쪽이 11마일 정도 되는 넓은 사각형 면적에 배열하면 캘리포니아 주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사막은 우리에게 에너지 자립을 제공할 수 있다.

H. 현행법에는 20퍼센트의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에너지의 사용이 아직도 약 10퍼센트에 머물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와 새크라멘토에 있는 것과 같은 정부가 소유한 대형 공익사업체조차도 로비에 성공하여 법으로부터 이러한 요건을 면제 받고 있다.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법은 인센티브, 엄격한 기준, 그리고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I.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공급원을 생산할 설비와 그러한 전기를 운반하는 송전선 건설 공사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여 캘리포니아 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이 주의 경제를 강화할 것이다.

J. 지구 온난화와 화석 연료 및 외국산 에너지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지나친 의존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주 전체 기준을 시행하고,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송전 설비들을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절 5조에 사용된 용어처럼 “지방자치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 전체가 우려하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한다.

제3조. 목적 및 의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의도는 다음과 같다.

A.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석탄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위험에 처한 시에라 설원을 보호

B. 태양열,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및 소규모 수력발전과 같은 효과가 증명된 기술을 개발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주 전체에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목표를 달성

C.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와 같은 정부 소유 공익사업체 포함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의 공익사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전기를 획득하도록 요구:

- 1. 2010년까지 20퍼센트
- 2. 2020년까지 40퍼센트, 그리고
- 3. 2025년까지 50퍼센트

D.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 및 관련 송전 시설들의 개발에 대한 모든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모든 환경 보호 조치(사막보호법 포함)를 취할 것을 보장

E.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 및 관련 송전 시설들의 개발 및 건설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 제공

F. 재생가능 자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모든 공익사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공익사업체가 이러한 벌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금지

G.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의 시장성과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간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

H. 소비자 전기 요금의 인상을 3퍼센트 미만으로 제한. 연구 결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나타났다.

I. 공익사업체 위원회에 민간 소유 공익사업체에 대해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의 준수를 집행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공익사업체가 이러한 벌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

J. 캘리포니아 주정부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너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

1. 정부소유 공익사업체에 대해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의 준수를 집행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공익사업체가 이러한 벌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금지

2.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자원과 발전소 및 관련 송전 시설들의 개발에 대한 모든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모든 환경 보호 조치(사막보호법 포함)를 취할 것을 보장하는 규정을 채택

3.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의 생산 및/또는 송전을 위해 부동산 및 우선통행권을 사용 및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개인 재산 또는 우선통행권을 구입,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기존의 송전선을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할당, 그리고

4.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구역(주로 사막에)을 파악 및 지정

제4조. 공익사업체법 제38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 (a) 제9604조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의 각 운영 기관은 재생가능 자원을 촉진하는 한편, 이러한 기준이 요금, 신뢰성, 재정 지원 및 환경 개선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려는 주의회의 의도를 반영하는 이 절에 규정 및 정의된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을 시행한다 시행 및 집행할 책임이 있다.

(b) 각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는 매년 고객과 주정부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1) 제385조에 따라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위해 징수한 공익 자금의 지출. 이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지출 및 예상 또는 실제 성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연료 종류별 자원 혼합. 별도의 카테고리 분류되는 각종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이 제399.12조에 정의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기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크리한 전기가 소매 판매업자가 아니라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에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 이러한 전기는 크리한 전기가 소매 판매업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준수에 대한 자격을 얻을 때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3) 공익사업체가 (a)항에 따라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을 실행하고 있는 현황과 공익사업체가 이러한 기준을 실행한 후 목표를 달성하는 진척도.

제5조. 공익사업체법 제399.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9.25조. (a) ~~제1001조에서 1013조(포함)까지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새 송전 설비가 제16절(제399.1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재생가능 전력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전기회사는 제1003조에 의한 결정을 허가 위한 목적으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 송전 설비와 건설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b) (a) 에너지 위원회가 공익사업체법 제16절(제399.1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송전 설비 (a)항에 설명된 송전 설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책정한 송전 요금을 에너지 위원회가 책정한 소매 요금에 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타당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증거가 되는 기록이 뒷받침하는 경우, 그러한 송전 시설이 송전 네트워크에 이익이 되고, 제16절(제399.1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

(2) 발전기가 상호 연결된 공익사업체에 송전 설비와 연관된 비용을 일반적인 송전 요금을 통해서 회수할 것을 지시(이러한 지시에 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해당 법적 절차에서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대해 (1) 및 (2)목에 기술된 입장을 주장

(4) 위원회가 송전 비용이 제454조 (a)항에 따라 과다하지 않게 발생했다고 결정한 후에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그러한 비용을 송전 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승인 하지 않은 송전 설비를 건설한 결과로 ~~전기회사~~ 소매 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송전 비용 증가를 소매 요금에서 회수하는 것을 허용

(b) (a)항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업자는 송전 설비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송전 제정을 통해서 지불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제6조. 공익사업체법 제399.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9.11조. 주의회는 주민은 다음의 모든 사항들을 **확인** 확인 및 **선언** 선언한다.

(a) 2010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총 전기의 20퍼센트를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생산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총 전기의 40퍼센트를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생산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총 전기의 50퍼센트를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생산한다는 ~~목표를~~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위험에 처한 시에라 설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혼합이 제공하는 다양성, 신뢰성, 공중보건 및 환경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와 주정부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이 절에 기술된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것이 **주의회** 주민의 의도이다.

(b)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의존도가 증가하면 안정된 전기 가격을 유지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 가능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c)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러한 자원으로부터 생산한 전기를 캘리포니아 주의 고객들에게 공급하면 화석 연료의 연소 및 이와 관련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주 내에서의 화석 연료 소비를 줄임으로써 주 전체의 공기의 질 문제를 개선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위험에 처한 시에라 설원을 보호하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d)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은 공공자원법 제15편 8.6장(제257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치되었고, 주정부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시행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을 보충한다.

(e) 새롭고 변경된 송전 설비는 주의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제7조. 공익사업체법 제399.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9.12조. 이 절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도관 수력발전 설비”란 유익한 용도로 물을 분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존의 파이프, 도랑, 인공 수로, 사이펀, 터널, 운하 또는 기타 인공 도관의 수력발전 잠재력만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b) “공급된” 및 “공급”은 공공자원법 제25741조 (a)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c)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이란 공공자원법 제25741조에 규정된 “주 내 재생가능 전기 생산 설비”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설비를~~ 의미하나,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1) (A) 30메가와트 이하의 기존 소규모 수력발전 설비는 2005년 12월 31일의 시점에서 소매 판매업자가 그 설비를 소유했거나 그 설비로부터 전기를 획득한 경우에만 자격이 있다. 새 수력발전 설비는 물을 유입하는 유익한 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물이 흐르는 양이나 시기를 변화시키는 경우,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A)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을 시작한 30메가와트 이하의 도관 수력발전 설비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산을 시작한 30메가와트 이하의 도관 수력발전 설비는 물을 유입하는

유익한 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물이 흐르는 양이나 시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된다.

(2) 지방자치체의 고체 폐기물소각에 참여하는 설비는 스타니스슬라우스 카운티에 위치해 있고 1996년 9월 26일 이전에 운영되고 있었지 않은 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 “에너지 위원회”란 주정부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의미한다.

(e)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란 제9604조 (d)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f) “획득”이란 소매 판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전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공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절의 어떤 조항도 도매 거래에서 제3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것이 소매 판매업자가 이 절을 준수할 책임을 이행하는 선호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려고 의도하지 않는다.

(g)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이란 소매 판매업자가 이 절에 따라 획득해야 하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의 지정된 비율을 의미한다.

(h) (1)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이란 제399.13조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가 설치한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되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이 한 단위의 전기를 생산 및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의미한다.

(2)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에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재생가능 및 환경적 속성을 포함하나, 보건안전법 제40709조에 따라 발급되는 배출 감소 크레딧, 그리고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가스 연료의 이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 및 이의 처리 감소 혜택과 관련된 크레딧 또는 지불금은 제외된다.

(3)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의해 생산되나, 에너지 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소 수량을 초과하는 비재생가능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i) “소매 판매업자”란 주 내에 위치한 최종 고객들에게 전기를 소매로 판매하는 조직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1)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회사
- (2) 지역사회 선정 통합사업자. 위원회는 지역사회 선정 통합사업자가 전기회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 받아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3) 제218.3조에 정의된 전기 서비스 제공자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모든 전기 판매에 대해 적용된다. 위원회는 전기 서비스 제공자가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4) “소매 판매업자”란 주 내에 위치한 최종 고객들에게 전기를 소매로 판매하는 조직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1)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회사
- (2) 지역사회 선정 통합사업자. 위원회는 지역사회 선정 통합사업자가 전기회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 받아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3) 제218.3조에 정의된 전기 서비스 제공자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모든 전기 판매에 대해 적용된다. 위원회는 전기 서비스 제공자가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4) “소매 판매업자”란 주 내에 위치한 최종 고객들에게 전기를 소매로 판매하는 조직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1)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회사
- (2) 지역사회 선정 통합사업자. 위원회는 지역사회 선정 통합사업자가 전기회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 받아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3) 제218.3조에 정의된 전기 서비스 제공자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모든 전기 판매에 대해 적용된다. 위원회는 전기 서비스 제공자가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4) “소매 판매업자”란 주 내에 위치한 최종 고객들에게 전기를 소매로 판매하는 조직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A) 제218조 (b)항에 따라 열병합 발전 기술을 사용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법인이나 개인

(B) 수도법 제27편(제8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체 능력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수자원국

(C)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

제8조. 공익사업체법 제399.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9.13조. 에너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a) 제399.12조 (b)항에 기술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결정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인증
- (b) 소매 판매업자들이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가 이 주 또는 타주의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 한 번만 계산되는지 확인하고,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이 발생시키는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을 인증하고, 이 주 또는 타주에서 제기되는 소매 제품 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 시스템을 설치 및 시행에너지 위원회는 이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전기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이 절과 캘리포니아 주 공공기록법(정부법 제1권 7편 3.5장(제

625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라 소매 판매업자들의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에너지 위원회는 ~~전기회사~~ 소매 판매업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집행하는 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한다. 이 위원회는 ~~전기회사~~ 소매 판매업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에너지 위원회로 자료를 전송한다.

(c) 독립적인 감사 자료를 통해서 각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과 관련된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확인하고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을 여러 번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 추적 및 확인 시스템을 설치. 에너지 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른 서부 주 및 서부 전기 조정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d) 에너지 위원회가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매 판매업자들에게 ~~재생가능~~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의 요건을 준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에게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에 대한 자격을 인증

(1) 전기를 획득하는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가 제387조의 요건을 준수한다.

(2)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가 ~~전기회사~~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목표 제399.15조가 요구하는 연간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획득하고 있고,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을 다른 소매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킬 것이다.

(e)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가 제387조를 준수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 제정 절차를 정한다. 에너지 위원회는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와 관련된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 계획의 심사 및 채택, 융통성 있는 준수 규정의 제정,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가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연간 벌금과 관련된 제399.14 및 399.15조에 규정된 절차와 권한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위원회가 소매 판매업자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고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 위원회는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가 체결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 계약의 조건이나 가격을 승인 또는 거부할 권한, 또는 제2113조에 따른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제9조. 공익사업체법 제399.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9.14조. (a) (1) 위원회는 각 ~~전기회사~~ 소매 판매업자에게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3)목의 사항들이 포함된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 계획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다. 이 획득 계획은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위원회가 일반 획득 계획 절차의 일부로,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안, 심사 및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전기회사~~ 소매 판매업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만큼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 계획을 검토 및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한다.

(2) 위원회는 규정 제정에 의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채택한다.

(A) 제399.15조 (C)항에 따라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위원회는 ~~전기회사~~가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해 수행하는 경쟁 입찰의 마감일 이후에 특정한 시장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B) (A) 총비용에 기준하여 캘리포니아주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의 연간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적합한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선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절차. 이러한 절차에서는 필요한 송전 투자 및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통합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속적인 공익사업체 비용과 관련된 간접 비용에 대한 견적도 고려해야 한다.

(C) (B) (i) 소매 판매업자가 한 해의 초과 획득을 차후의 연도에 적용하거나, 또는 한해의 부적절한 획득을 향후 3년 이내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준 준수를 위한 융통성 있는 규정. 이러한 기준 준수를 위한 융통성 있는 규정은 소매 판매업자가 소매로 판매하는 총 전기의 최소한 20-50퍼센트를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부터 획득하는 전후의 수년을 포함하는 모든 연도에 적용해야 한다.

(ii) 기준 준수를 위한 융통성 있는 규정은 소매 판매업자가 불충분한 송전의 결과로 이 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불충분한 송전에 적용하려면 소매 판매업자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

(I) 융통성 있는 공급 지점을 활용

(II) 필요한 송전 능력의 가용성을 확인

(III) 소매 판매업자가 전기회사인 경우, 필요한 송전 설비를 건설

(IV) 이 소목의 어떤 조항도 제454.5조의 어느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D) (C)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전기회사~~가 소매 판매업자가 사용할 재생가능 발전기의 성능 요건을 포함하는 표준 조건.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이 생산하는 전기의 구매 계약에는 최소한 해당 계약에 명시된 전기 생산과 관련된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 조건에는 위원회가 이 절에 따라 체결하는 전기 구매 계약을 승인한 후 6개월 이내에 계약 당사자의 성명, 자원의 종류 및 프로젝트 용량과 같은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적합한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획득한다는 목표에 맞추어 ~~전기회사~~가 소매 판매업자가 제출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 계획에 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를 최고 소요, 송전 가능, 최저 소요, 확정 및 즉시 사용 가능 용량을 포함할 수 있는 공급 가능성 특성에 가장 적절하게 혼합시키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연간 또는 다년간의 포트폴리오 수요 및 공급 평가

(B) 위원회가 수립한 융통성 있는 기준 준수 메커니즘을 가능한 사용한다는 조항

(C)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해 필요한 각 공급 가능성 특성, 요구 온라인 날짜 및 선호하는 위치(해당되는 경우)를 기술한 입찰 권유서

(4) 각 ~~전기회사~~는 소매 판매업자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입찰 및 획득할 때 10-20년의 계약 기간을 제공해야 하나, 위원회가 더 짧은 계약 기간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간주된다.

(5) 각 ~~전기회사~~는 소매 판매업자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입찰 및 획득할 때 다수의 소수민족 또는 저소득층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확실히하고 증명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b) 위원회가 각 소매 판매업자에 대해 최소한 10-20년의 계약 기간을 통해서, 또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상업적 가동을 시작한 새 설비로부터 생산할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최소 수량을 확정할 경우에는 소매 판매업자가 10-2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c) 위원회는 ~~전기회사~~가 소매 판매업자가 이 절에 따라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을 시작하기 전에 각 ~~전기회사~~ 소매 판매업자의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 계획을 심사한 후에 승인,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다.

(d) 위원회는 ~~전기회사~~가 소매 판매업자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 입찰 결과를 심사한 후에 제안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과의 계약이 승인된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한다. 위원회가 입찰자 사이에 효과적인 경쟁이 부족하여 낙찰 가격이 높아졌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회사~~ 소매 판매업자에게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e) 전기회사가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 계획을 채택하라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13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이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399.15조에 따라 수립한 연간 획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다른 소매 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f) (1) 위원회는 획득 조직체가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에 대한 연간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소매 판매업자의 고객들을 대신하여 적격 재조정 에너지 자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획득 조직체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특정한 당사자가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획득 조직체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획득 조직체가 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타당한 운영 및 획득 비용을 획득 조직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획득으로부터 직접 혜택을 받는 최종 사용자 고객의 소매 요금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g) 이 절에 따라 ~~전력회사가 소매 판매업자가~~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해 체결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장기 계약과 관련된 운영 및 획득 비용은 2030년 1월 1일 이전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 제 399.15조 (c)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장 가격의 10퍼센트 이하가 그 자체로 적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소매 요금에서 회수한다.

(h) ~~제25742, 25743 또는 25751.5조에 따라 생산 인센티브 또는 자금을 제공 받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한 건설, 변경, 해체 또는 설치(생산 인센티브에 대한 자격을 얻거나, 이를 수령 및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 포함)는 노동법 제2편 7부 1장 (제172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토목공사"에 해당된다.

(i) 제399.15조에 따라 정한 연간 획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소매 판매업자에 대해 최대 부족 킬로와트시에 대해 킬로와트시 당 일 센트(0.01달러)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간 벌금을 부과한다.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해 소매 판매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다. 이 조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되는 모든 벌금은 매년 공공자원법 제25751.5조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가 운영하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송전 계정으로 지불 또는 이전하여 새 주 내 송전 및 재생가능 전기 생산 설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프로그램에 사용한다. 이 조에 따라 소매 판매업자가 납부 또는 이전하는 벌금은 그 소매 판매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기 요금에서 회수할 수 없다.

(j) (i)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소매 판매업자가 대체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 계획을 채택하라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위원회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위원회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체 재생가능 에너지 획득 계획을 채택하라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위원회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1) 행정 및 법적 소송, 판매자의 불이행,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 경쟁 입찰에 대한 불충분한 참가 및 효과적인 경쟁의 부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소매 판매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마감일이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2) 소매 판매업자가 향후에 현재 연도의 부족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조치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3) 프로젝트 마감일이나 주요 일정의 적시 완료를 방해하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4) 소매 판매업자가 부적절한 송전선으로 인해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부터 에너지를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역 공공 소유 전기 공익사업체가 2013년 12월 31일(포함)까지의 특정한 연도에 제399.15조에 규정된 연간 획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제 10조. 공익사업체법 제399.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9.15조. (a) 충족되지 않은 장기적인 자원 필요를 해결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위험에 처한 시에라 실원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연료 가격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회는 모든 전력회사 소매 판매업자에게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의 최소 수량을 매 연도에 소매 최종 사용자 고객에게 판매된 총 킬로와트시에 대해 지정된 비율로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을 제정 하며, 이러한 기준은 이 조에 의해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항에서 결정된 시장 가격을 초과하여 지불되는 비용 총액에 대한 제한의 적용을 받는 한다.

(b) 위원회는 각 소매 판매업자에 대한 연간 획득 목표를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 제45.4.5조에도 불구하고, 각각 소매 판매업자는 (a)항에 따라 최소한 연간 소매 판매에 ± 2 퍼센트를 추가하여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총 획득량을 증가시키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소매 판매의 20퍼센트를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부터 획득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소매 판매의 40퍼센트를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부터 획득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매

판매의 50퍼센트를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부터 획득한다. 특정한 연도에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부터 소매 판매의 20 퍼센트를 구매한 소매 판매업자에게는 크타음 해에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획득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연간 획득 목표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2001년에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부터 획득한 소매 판매의 실제 퍼센트 비율에 추가하여 제399.12조에 따라 조정할 수치에 따라 각 소매 판매업자의 최초 기준선을 정한다.

(3) 단지 이러한 목표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전력회사 소매 판매업자의 소매 판매를 계산하기 위해 수도법 제80100 조에 따라 수도국이 소매 고객에게 판매한 모든 전기를 포함시킨다

(4) 소매 판매업자는 (c)항에 따라 정한 시장 가격 이하인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의해 생산하는 전기에 대한 모든 쌍무적인 오퍼를 수락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판매업자가 이 항에 따라 정한 연간 목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획득한 연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쌍무적인 오퍼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소매 판매업자가 특정한 연도에 이 항에 따라 정한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획득하지 않는 경우, 차후의 연도들에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추가로 획득하여 부족량을 보상해야 하나, (d)항에 따라 정한 전력회사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c) 에너지 위원회 위원회는 규정 제정 절차에 의해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계약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전기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고려하는 방법론을 정한다 결정한다.

(1) 위원회가 승인한 전력회사 소매 판매업자의 일반적인 획득 활동에 따라 결정된 고정 가격 계약에 대한 장기적인 전기 시장 가격

(2) 장기적인 소유권, 운영, 그리고 새로운 발전 설비에서 생산되는 고정 가격 전기와 관련된 고정 가격 연료 비용

(3) 최저 소요, 최고 소요, 즉시 사용 가능 전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제품의 가치

(4) 투입 순서 자원을 포함하는 다른 자원의 획득에 사용하는 예측과 일관성이 있는 천연가스 가격 예측

(5) 위험 경감 가치와 탄소 배출 감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재생가능 자원의 가치와 이점

(6) 최저 소요량 발전의 가치와 이점

(d) 소매 판매업자는 2030년 1월 1일 이전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 (c)항에 따라 정한 시장 가격을 10퍼센트 초과하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운영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는 소매 판매업자가 연간 획득 의무를 (c)항에 따라 정한 시장 가격을 10 퍼센트 이하로 초과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양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균형 에너지 요금, 초과 에너지의 판매, 기존의 자원으로 부터 감소하는 생산, 또는 송전 계선을 포함하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구매와 관련하여 소매 판매업자에게 발생하는 간접 비용은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전기 요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전력회사에 대해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획득하여 이 조에 의해 정한 연간 획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항에서 정한 시장 가격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총비용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

(1) 이러한 비용 제한 금액은 공공자원법 제25743조 (b)항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 각 전력회사로 이전하는 자금의 금액과 2007년 1월 1일에 발효된 재생가능 에너지 공공시설 요금에 근거하여 2012년 1월 1일까지 전력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징수할 자금의 51.5 퍼센트에 해당된다.

(2) 전력회사가 선택된 계약의 위위 같은 시장 비용은 다음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비용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계산할 수 있다.

(A) 계약이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고 제399.14조 (d)항의 요건에 따른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택된 경우

(B) 계약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효한 경우

(C)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상업적 카동을 시작한 신규 또는 재가동 설비인 경우

(D) 재생가능 에너지 크레딧의 구입이 위의 시장 비용으로 간주될 자격이 없는 경우

(E) 계약에 대한 위의 시장 비용에 불균형 에너지 요금, 초과 에너지의 판매, 기존의 자원으로 부터 감소하는 생산, 또는 송전 계산과 같은 간접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전기회사에 대한 비용 제한이 (2)목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획득을 위해 (c)항에서 정한 시장 가격을 초과하여 지출한 총비용을 지원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위원회는 전기회사의 획득량을 (c)항에서 정한 시장 가격 이하로 획득할 수 있는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양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4) 이 조의 어떤 조항도 전기회사가 비용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계산되지 않는 위의 시장 가격으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획득할 것을 처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위의 시장 비용과 관련된 처벌적인 획득은 크리한 비용을 전기 요금에서 회수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의 제정은 위원회가 1978년 연방 공익사업체 규제 정책법(공법 95-617)을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 에너지 위원회 위원회는 에너지 위원회 공익사업체 위원회와 협의하여 (c)항에 의한 시장 가격을 계산한다. 크리한 에너지 위원회와 공익사업체 위원회는 상호 협의하여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정책을 제정한다.

제11조. 공익사업체법 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1조. 공공자원법 제15편(제25000조부터 시작)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 에너지 회사, 도시 철도회사, 가스회사, 전기회사, 전선회사, 전화회사, 수도회사, 하수도 시스템 회사가 주로 철도를 사용하는 철도회사는 먼저 위원회로부터 현재 또는 미래의 편의성과 필요성에 의해 이러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인증서를 받지 않고 ~~않고~~ 도시철도, 또는 라인, 발전소 또는 시스템, 또는 이를 확장하는 건설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절은 이러한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먼저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할 시 또는 시 검 카운티 내에서 연장하기 위해, 또는 도시철도, 또는 라인, 발전소 또는 시스템에 인접할 시 또는 시 검 카운티 내에 있고, 지금까지 동일한 특성을 가진 공익사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으로 연장하기 위해, 또는 이 회사가 일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필요하여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또는 그러한 지역으로 연장하기 위해 그러한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송전선, 발전소 또는 시스템을 건설 또는 연장하는 공익사업체가 이미 건설된 다른 공익사업체의 송전선, 발전소 또는 시스템, 또는 공공기관의 수도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위원회는 유해할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익사업체나 공공기관의 불만에 대해 심리를 할 후, 송전선, 발전소 또는 시스템의 위치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조건을 규정한다.

제12조. 공공자원법 제2510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107조. “송전선”이란 주 내에 위치한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상호 연결되는 송전 시스템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운반하는 전력을 의미한다. “송전선”에는 기존의 사이트에서 기존의 전력을 그러한 기존의 전력과 동등한 전력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전도체, 절연체 또는 부속품을 이 편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거나 이 편에 의해 인증된 지지 구조물에 새로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공공자원법 제251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110조. “설비”란 송전선, 또는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 또는 송전선과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를 모두 의미하고, 또한 이 편의 조항들에 따라 규제를 받는 기존의 송전선에 대한 확장, 변경, 개량을 의미한다.

제14조. 제25137조를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에 추가한다.

제25137조.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란 풍력, 태양광 전지, 태양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 재생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소화가스, 지방자치체 고체 폐기물 전환, 매립지 가스, 해양 파도, 해양 온도차 발전, 또는 조류 기술을 사용하고, 3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 또는 3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 용량을 가진 설비, 그리고 이러한 설비에 부속된 설비를 의미한다. 탐사정, 개발정 및 생산정, 자원 전송선,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다른 관련 설비는 이 편의 목적상 부속설비가 아니다.

제15조. 공공자원법 제2550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02조. 열발전소,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 또는 송전선을 부지에 건설하려고 제안하는 각 사람은 위원회에 부지와

관련 설비 또는 설비들을 인증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의도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주로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제안된 부지의 적합성을 결정하고, 제안된 부지와 관련 설비들이 제25305조에서 25308조(포함)까지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의 기준 및 필요 평가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통지서는 위원회가 제정하는 양식에 작성하고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25516조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고 확인된 부지와 관련 설비는 이 장에 의해 통지서를 요구하는 추가 법적 절차 없이 인증 신청서를 검토 받을 자격이 있고 계속 그러한 자격을 유지한다.

제16조. 공공자원법 제255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17조. 제2550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 공익사업체가 열발전소,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 또는 송전선의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편에 규정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설로 분류되지 않는 현장 개량은 위원회가 인증을 거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복원해야 할 수도 있다.

제17조. 공공자원법 제255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22조. (a) 제25520.5 및 25550조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18개월 이내, 또는 위원회가 의도 통지서를 승인한 후 1년 이내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는 12개월 이내, 또는 위원회와 신청인이 상호 동의하는 더 늦은 시기에 신청서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부해야 한다.

(b)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날짜에 이 조의 목적상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가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의 불완전한 부분을 서면으로 명백하게 밝히고, 그 신청서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신청서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그러한 자료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자료가 신청서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충분한지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완전한 신청서를 만들기 위한 정보 요건이 명시된 규정을 채택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가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결정하는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나, 위원회가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가 신청서를 완전하게 만드는 추가 자료를 접수하는 마지막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8조. 공공자원법 제255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31조. (a) 부지 및 관련 설비 인증 신청서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사법 심사를 받아야 한다.

(b)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는 심사를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인증한 기록에 의해 결정 이유를 심리한다. 이러한 심사는 심사 대상인 지시나 결정이 미국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규정된 청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권한을 수행했는지 결정하는 것이 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사실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결론은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이며 심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문제에는 주요 사실, 확인 및 결론이 포함된다. 제25510, 25514, 25516 또는 25516.5조, 또는 제25520.5조 (b)항에 따라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나 승인은 사법 심사를 적용 받는 위원회의 결정을 구성하지 않는다.

(c)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권의 적용을 받는 이 주의 법원은 위원회의 법적 절차에서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었을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사건이나 논쟁을 심리 또는 결정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조항들의 준수를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을 중지 또는 지연시킬 권한이 없다.

(d) 민사절차법 제1250.370조에도 불구하고:

(1) 위원회가 제25528조 (a)항에 따라 부지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인증의 조건으로 신청인이 개발권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는 신청인이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 제기한 토지수용권 소송에서 민사절차법 제1240.030 및 1240.220조에 참조된 기초 사실을 확정적으로 성립시킨다.

(2) 위원회가 부지 및 관련 설비를 인증하는 경우, 이러한 인증은 부지와 관련 설비를 획득하기 위해 제기한 토지수용권 소송에서

민사절차법 제1240.030 및 1240.220조에 참조된 기초 사실을 확정적으로 성립시킨다.

(e) 제25516, 25522 또는 25523조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제25323조에 의해 금지된 공익사업체에 대해 특정한 공급 계획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19조. 공공자원법 제25540.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40.6조. (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도 통지서는 필요하지 않고, 위원회는 제25523조에 명시된 대로 발전소 및 관련 설비 또는 설비들에 대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12개월 이내에, 또는 위원회와 신청인이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동의하는 더 늦은 시기에 최종 결정서를 발부한다.

(1) 열병합 기술을 사용할 열발전소, 천연가스 연료 기술을 사용할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2) 기존 설비의 변경

(3) 에너지원 또는 그 가까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만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

(4) 최대 1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가진 열발전소

(5) 전에 상업적 규모로 구축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은 기술들을 개발 또는 시범하도록 설계된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 이러한 연구, 개발 또는 상업성 시범 프로젝트에는 재생가능 또는 대체 연료의 사용, 에너지 전환 효율의 개선, 또는 첨단 오염 방지 시스템의 사용이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설비는 위원회가 규정에 의해 더 큰 용량을 승인하지 않는 한 300 메가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524조는 이러한 발전소 및 관련 설비 또는 설비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b) 제(a)항 (1), (4) 또는 (5)목에 의한 의도 통지서 요건이 면제되는 프로젝트들에는 인증 신청서에 신청인의 부지 선정 기준, 신청인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고려한 선정 가능 부지들, 그리고 신청인이 제안한 부지를 선정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기존의 산업용 부지에서 수행되는 열병합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산업용 부지에서 수행되는 비열병합 프로젝트가 그 산업용 부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 가능한 다른 부지들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확인하는 경우,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서를 수락할 수도 있다.

제20조. 공공자원법 제255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41조. 위원회가 제안된 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이나 변경이 환경이나 에너지 자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경우, 위원회는 발전 용량이 최대 100메가와트인 열발전소, 10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용량을 추가하지 않는 기존 발전 설비에 대한 변경, 그리고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를 이 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공공자원법 제2554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41.1조. 자원 회수(폐기물에서 에너지 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한~~ 주민의 의도이다. 상업적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비화석 연료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이전에 제정된 인센티브는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와 동시에, 주는 고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원 회수 기술을 사용하는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어 2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a) 풍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비화석 연료로부터 전기를 생산

(b) 매립지 공간을 보존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

(c) 건강에 해로운 쓰레기 매립을 방지

더욱이, 자원 회수 설비의 개발은 새로운 그 설비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건설 일자리는 물론, 설비를 운영하는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

제22조. 제25542.5조를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에 추가한다.

제25542.5조. 에너지 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공익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이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확인하는 지리적 지역에 근거하여 매년 캘리포니아 주에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구역을 파악 및 지정하는 보고서를 발행한다.

제23조. 제25550조를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에 추가한다.

제25550조. (a) 제25522조 (a)항 및 제25540.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최초 심사에 근거하여, 이 프로젝트가 환경 또는 송전 및 배전 시스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설비에 대해 최종 인증서를 발부하는 절차를 제정한다. 이 조의 목적상, 제출이란 제25522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b)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은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설비는 제25520조의 요건, 그리고 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다른 필요한 정보를 충족시키며, 이러한 정보에는 제안된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설비에 대한 관할권(위원회의 전속 관할권은 제외)이 있는 각 주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 기관이 허가를 위해 요구하는 정보와 제안된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설비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각 연방정부 기관이 허가를 위해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c) 이 조에 의해 신청서를 수락한 후에, 위원회가 기록에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설비가 환경 또는 전기 시스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지거나 적용되는 법률, 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25522조 (a)항과 제25540.6조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새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다.

(d)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해 수락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제안된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설비에 대한 관할권(위원회의 전속 관할권은 제외)이 있는 모든 주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100일 이내에 최종 논평, 결정 또는 의견을 제공한다. 수도법 제7편 4장(제13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치된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는 적용되는 수질 기준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되는 최종 인증서에 통합된다.

(e)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설비의 신청인이 환경 또는 효율에 대한 뛰어난 성과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는다.

(f) 이 조에 의해 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은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설비에 대해, 신청인은 종합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발전소를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숙련공들을 적절히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g) 이 조에 의해 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은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설비에 대해, 신청인은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 설비가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규정(신청인이 정부법 제65040.12조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불균형한 영향을 해소하는 것을 보장하는)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h) 이 조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위원회는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법 제2편 3편 2부 3.5 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정부법 제11349.6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그 장의 목적상,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일반대중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적인 복지를 즉각적으로 보존하기 필요하지 여부에 대해 행정법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j) 이 조에 의해 인증을 받는 모든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는 노동법 제2편 7부 1장(제1720조부터 시작)의 조항을 적용 받는 공공 토목공사로 간주되고, 산업관계부는 노동법에 의한 것과 같은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이 조항을 집행한다.

제24조. 제6.6장(제25560조부터 시작)을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 제15편에 추가한다.

제25560조. 공익사업체법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회사는 전송선 또는 이에 대한 연장, 변경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공사가 일반대중의 현재 또는 미래의 편의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이라는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 장은 이러한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먼저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할 시 또는 시 검 카운티 내에서 연장하기 위해, 또는 도시철도, 또는 송전선 또는 시스템에 인접한 시 또는 시 검 카운티 내외에 있고, 지금까지 동일한 특성을 가진 공익사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으로 연장하기 위해, 또는 이 회사가 일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필요하여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또는 그러한 지역으로 연장하기 위해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송전선이나 시스템을 건설 또는 확장하는 공익사업체가 이미 건설된 다른 공익사업체의 송전선이나 시스템, 또는 공공기관의 수도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위원회는 유해할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익사업체나 공공기관의 불만에 대해 심리를 한 후, 송전선이나 시스템의 위치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조건을 규정한다.

제25561조. (a)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회계연도의 기록에 근거하여 사업 매출의 75퍼센트 이상을 주 밖에서 얻는 공익사업체가 송전선이나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연장하는 공사를 신청할 때, 위원회는 공익을 위해 그러한 공사에 대해 제25560조의 요건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주의 경계 밖에 위치한 송전선이나 시스템에 대한, 또는 이를 연장하는 공사에 대해 제25560조의 요건을 면제한다.

(b) 제(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a)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체가 위원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면제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원회가 이 9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송전선이나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연장하는 공사에 대해 제25560조의 요건이 면제된다.

(c) 위원회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공익사업체는 양자가 합의하는 경우 위원회가 면제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을 (b)항에 규정된 90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25562조. (a) 위원회는 제25560조에 따라 인증서를 승인하는 근거로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 (1) 지역사회의 가치
- (2)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역
- (3) 역사적 및 미적 가치
- (4) 환경에 대한 영향. 단, 타주에 위치한 송전선이나 시스템의 건설 또는 연장 공사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미국법 제42편 55장(제4321조부터 시작)) 또는 이와 유사한 타주의 주법에 따라 환경 심사의 적용을 받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공사로부터 배출 또는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이 주의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5)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근접성 및 이와 관련된 영향과, 다른 장소를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그 장소가 적절한지 여부

(6) 최저 소요 전력량 생산의 가치와 이점

(b)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송전하기 위해 건설, 변경 또는 개량해야 하고, 제15편(제25000조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송전선과 관련하여, 이러한 다른 인증서에 대한 승인 결정은 이에 의해 결정을 받는 모든 문제를 종결시키고, 위원회가 이 조의 (a)항에 규정된 6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하는 요건을 대체한다.

(c) 위원회는 제25560조에 따라 인증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1994년 캘리포니아 주 사막보호법(미국법 제16편(제410aaa 조부터 시작))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제25563조. 위원회는 제25560조에 따라 송전 설비에 대한 인증 신청서를 검토할 때, 목표 에너지 효율, 공익사업체법 제353.2조에 정의된 초청정 분산 발전, 그리고 수요를 감소시키는 다른 자원들과 같은 수요측 대안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전기를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고,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필요를 충족시키는 비용이 저렴한 다른 송전 설비를 검토해야 한다. 이 조의 조항들은 열발전소 또는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송전하기 위해 건설, 변경 또는 개량해야 송전선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5564조. 제6장(제25500조부터 시작)의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송전선의 신규 건설 또는 연장을 승인하는 인증서에 대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전기회사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엔지니어링 및 설계 정보. 이러한 설계 정보에는 송전선의 건설 또는 연장에 대한 운영 특성에 관한 예비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b)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프로젝트 실행 계획. 이 계획에는 모든 주요 작업을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고, 송전선의 건설 또는 연장의 각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설계, 시공, 준공 및 가동 일자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송전선의 건설 또는 연장과 관련된 자금 조달, 시공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예비 견적서를 포함하는 적절한 비용 견적서

(d) 전기회사는 송전선의 건설 또는 연장 공사가 전기요금 납부자, 주주, 그리고 이 회사의 차입자본 비용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건설 또는 연장되는 송전선의 추정 내용연수에 대한 비용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e) 계약 및 작업과 관련된 책임, 그리고 전기회사의 경영진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른 주요 당사자 사이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설계, 시공 관리 및 비용 관리 계획. 또한 이 계획에는 공정 진행 정보 시스템과 구체적인 비용 관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565조. 제6장(제25500조부터 시작)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송전선의 신규 건설 또는 연장을 승인하는 인증서에 대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전기회사는 다른 필수 정보에 추가하여 제25564조 (b), (c) 및 (e)항에 명시된 정보를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전기회사들은 제25564조에 명시된 다른 정보를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5566조. 이 장에 의해 신청서를 발급하기 전에, 모든 인증서 신청인들은 정관 또는 설립허가서의 등본을 위원회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인증서 신청인들은 적절한 카운터, 시 결 카운터, 시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필수 동의서, 특권 또는 허가서를 수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를 위원회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25567조. (a) 위원회는 심리 여부에 상관없이 요청한대로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계획된 송전선의 건설 또는 연장 공사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또는 권리나 특권의 부분적인 집행에 대해서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인증서에 의해 승인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대중이 특권이나 허가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들, 그리고 그러한 조항에 의해 획득하는 모든 권리, 그리고 관련 당국이 일반대중의 편의성과 필요성으로 인해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건설 또는 유지보수하는 모든 공사를 포함하는 조건을 첨부할 수 있으나, 단 위원회는 심리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적시에 신청한 심리를 통해서 제기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회 이상의 심리를 열어야 한다.

(b) 위원회가 송전선의 신규 건설 또는 연장 공사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그러한 인증서에 송전선 건설 또는 연장 공사의 운영 및 비용 특성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특성에는 송전선 건설 또는 연장 공사의 규모, 용량, 비용, 그리고 제25564 또는 25565조에 따라 전기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상충된 다른 모든 특성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c) 이 장의 다른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새 설비가 공익사업체법 제16절(제399.1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의 달성과 이 편의 제8.6장(제2574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제25564조에 의해 내린 결정이 목적으로 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새 송전 설비의 건설을 승인하는 인증서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제25568조. (a) 위원회가 전기회사에 추정 비용이 오천만 달러(5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송전선의 신규 건설 또는 연장, 변경 또는 개량 공사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때는 항상 인증서에 해당 설비에 대해 타당하고, 과다하지 않다고 결정된 최대 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예상 공사 비용을 추정하고, 프로젝트 설계, 예상 공사 기간,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알려진 엔지니어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 비용을 결정한다.

(b) 인증서가 발급된 후에, 전기회사는 위원회에 인증서에 명시된 최대 비용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최대 비용이 실제로 증가했고, 현재 또는 미래의 일반대중의 편의성과 필요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공사 비용이 증가했다고 확인 및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명시된 최대 비용의 증액을 승인할 수 있다.

(c) 공사가 시작된 후에, 전기회사는 위원회에 공사 중단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대중의 현재 또는 미래의 편의성과 필요성을 위해 더 이상 프로젝트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도 되고 발생한 공사 비용이 타당하고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전기회사가 충분히 증명할 후에, 위원회는 공사의 중단을 승인할 수 있고, 공익사업체

위원회는 공사를 승인한 위원회가 타당하고 과다하지 않다고 결정한 공사 비용의 회수를 승인할 수 있다.

(d) 공익사업체 위원회가 타당하고 과다하지 않은 송전선의 신규 건설 또는 연장, 변경 또는 개량 공사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회사에 대한 요금을 결정할 때, 공사를 승인한 위원회가 추가 및 연장된 설비를 사용했고 그러한 설비가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 및 결정하는 경우, 공익사업체 위원회는 공사를 승인한 위원회가 명시한 실제 공사 비용이 최대 비용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25조. 공공자원법 제2574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40조. 적격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의 양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간 소매로 판매되는 총 전기의 20퍼센트, 2020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간 소매로 판매되는 총 전기의 40퍼센트, 2025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간 소매로 판매되는 총 전기의 50 퍼센트로 증가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위험에 처한 시에라 설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주의화 주민의 의도이다.

제26조. 제25740.1조를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에 추가한다.

제25740.1조.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에 대한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송전 설비의 건설이 새 재생가능 자원 제정에 자금을 제공한 모든 클래스의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제27조. 공공자원법 제257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43조. (a) 위원회는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새 재생가능 자원 제정으로부터 지급한 모든 생산 인센티브를 종료하나, 2007년 1월 1일부터 전기 생산을 시작한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b) (1) 위원회는 2008년 3월 1일까지 새 재생가능 자원 제정에 책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금을 재생가능 에너지 공공시설 요금의 적용을 받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회사에 이전한다.

(2) 공익사업체 위원회는 각 전기회사가 (1)목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새 재생가능 자원 제정에 자금을 제공한 모든 클래스의 고객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할당하는 것을 보장한다. 각 전기회사가 제안하는 할당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고, 제25740.1조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할당을 처리하는 공익사업체 위원회는 이 추가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또는 변경 송전 설비 공사를 위해, 또는 이러한 공사를 보충하기 위한 지불을 목적으로 자금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최우선순위를 둔다.

(c) 이 조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노동법 제2편 7부 1장(제1720조부터 시작)의 조항을 적용 받는 공공 토목공사로 간주되고, 산업관계부는 노동법에 의한 것과 같은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이 조항을 집행한다.

제28조. 제25745조를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에 추가한다.

제25745조. 에너지 위원회는 이 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로부터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자원, 설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치 및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9조. 제25751.5조를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에 추가한다.

제25751.5조. (a) 이 조에 의해 재생가능 자원 신탁 기금 내에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송전 계정을 설치한다.

(b)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공익사업체법 제399.8조 (d) 항에 따라 채택된 총 연간 조정 자금은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송전 계정에 할당된다.

(c)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송전 계정의 자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1) 제8.9장(제25790조부터 시작)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을 사용하여 부동산 또는 우선통행권을 구입

(2) 이 추가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또는 변경 송전 설비 공사, 또는 이러한 공사를 보충하기 위한 지불

(d) 이 조에 의해 전체 비용을 지불하는 부동산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소유권은 위원회에 귀속된다. 이 조에 의해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부동산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소유권은 그러한 부동산이나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 중에서 위원회가 지불한 비용에 비례하여 부분적으로 위원회에 귀속된다.

(e) 태양열 및 청정 에너지 송전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c)항에 의해 승인된 목적으로 기존의 주정부 자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된다.

(f) 이 조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노동법 제2편 7부 1장(제1720조부터 시작)의 조항을 적용 받는 공공 토목공사로 간주되고, 산업관계부는 노동법에 의한 것과 같은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이 조항을 집행한다.

제30조. 제8.9장(제25790조부터 시작)을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 제15편에 추가한다.

제25790조. 에너지 위원회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부동산, 개인 재산 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구입하여 차후에 판매,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에게 임대, 교환, 세분, 이전, 할당, 지당, 책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임대 또는 판매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 및/또는 송전을 위해 부동산을 개발 및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5791조. 이 장에 의한 임대 또는 판매는 입찰을 실시할 필요는 없고, 단지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제31조. 가분성

이 법의 조항들은 분리가 가능하다. 이 법의 어떤 조항이나 부분이 어떤 이유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해 무효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제32조. 개정

이 법의 조항들은 이 법의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 주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의 찬성 투표로 승인을 받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33조. 상충되는 법안

(a) 이 법안은 종합적인 법안으로 의도되었다. 이 법안, 그리고 이 법안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다른 주민발의 법안이 같은 주 전체 선거 투표에 회부되는 경우,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의 조항들은 이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주민의 의도이다. 이 법안이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안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법안들의 모든 조항들은 무효가 되고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b) 이 법안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법률에 따라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른 상충되는 법안에 의해 대체되었고, 그 상충되는 법안이 차후에 무효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이 법안의 조항들은 자동으로 발효되고 법률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34조. 법적 이의 제기

이 법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발의안 제8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한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명백하게 개정한다. 따라서,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제1조. 명칭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결혼 보호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7.5조를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I 절에 추가한다.

제7.5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을 받는다.

발의안 제9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한 조를 개정하고 형법의 조들을 개정 및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기존의 조항들은 취소안을 그어 인쇄하고,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2008년 피해자 권리장전법: Marsy 법

제1조. 명칭

이 법은 “2008년 피해자 권리장전법: Marsy 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 범죄 피해자는 사법 및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들의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단계에서 통지를 받고 의견을 말할 권리, 형사 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사법 절차에서 적절한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이 사실 확인 및 선언에 기술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사법 자체가 부적절한 자원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형사 사법 시스템에 적절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사 범죄자들을 신속하고 정당하게 처벌할 권리.

2.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2008년 피해자 권리장전법: Marsy 법”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 법안은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21살의 U.C. 산타바바라 대학 4학년 학생이었던 Marsy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그녀는 1983년 11월 30일에 살해되었다. Marsy 법은 종종 마치 권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를 대신해서, 그리고 너무 자주 피해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부여하지 못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과 좌절을 겪었던 수십만 명의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격려를 받아 작성되었다.

3.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982년에 발의안 제8호로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피해자 권리장전 주민발의 법안이 요구하는 이러한 기본권을 부여하도록 의도된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이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범죄 피해자들은 계속 사법 및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거부 당하고 있다.

4. 비능률적이고, 과밀하고, 난해한 형사 사법 시스템은 적절한 교도소 및 구치소를 구축하지 못했고, 법원 절차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형사 범죄자들의 신고와 처벌을 신속하게 종결 짓지 못했다. 이러한 형사 범죄자들의 신고와 처벌을 신속하게 종결 짓지 못했기. 이러한 형사 범죄자들은 판사가 적절하다고 부과하고 결정된 형기의 겨우 10퍼센트를 복역한 후에 수감으로부터 석방되고 있다.

5. 매년 유죄판결을 받고 중신형을 선고 받은 수백 명의 살인자들이 가석방을 얻어 주 교도소에서 석방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도소에서 석방하기 위한 가석방 절차”는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매년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자들에게 주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를 제공하고, 이러한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자들은 매년 종종 가석방 심리를 받는다.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가 석방되면 다시 한 번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6. Charles Manson의 추종자이고 여러 건의 무자비한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포악한” 수감자 Bruce Davis와 Leslie Van Houghton은 지난 30년 동안 38건의 가석방 심리를 받았다.

7. 대부분의 살인 피해자가 그렇듯이, Marsy는 살해될 당시에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으나, 전 남자친구가 자살을 하겠다고 속여 그녀를 부모의 집에서 불러내었다. 그는 자살을 하는 대신에 그의 자살을 막기 위해 그의 집으로 들어간 그녀의 생명을 산탄총으로 잔인하게 빼앗았다. Marsy의 어머니는 딸을 살해한 범인이 체포된 후에 그를 다시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났을 때 너무나 놀랐고, 그가 Marsy의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녀의 가족이 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할 기회도 없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 그가 유죄판결을 받고 “중신형”을 선고 받은 지 몇 년 후에 그의 석방에 대한 가석방 심리가 시작되었다. 첫 가석방 심리에서, Marsy의 어머니는 그의 석방에 반대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 이후로 Marsy의 가족은 잦은 가석방 심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Marsy를 살해한 범인이 석방될 것이라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9. 이러한 경험은 Marsy 가족만이 겪는 것이 아니다. 수천 명의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마르시 가족과 같은 경험을 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형사 범죄자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중요한 심리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그들에게 의견을 말하거나 심리에 참석할 기회를 주지 않고, 범죄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정당한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범죄자들에 의해 받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종료하는 조치를 확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3조. 목적 및 의도에 대한 진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 주민발의 법안을 제정한다.

1. 피해자에게 사법 및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2. 살인 피해자의 가족들이 장기간 동안 불필요한 시련을 겪지 않고,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살인자에 대한 가석방 심리를 금지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자들이 가석방 심리를 3년 이상의 간격으로 받게 하고, 후속 가석방 심리를 15년 동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제4조. 피해자 권리장전

제4.1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절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a)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의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 범죄 활동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형사 기소에 대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주 전체가 증대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2) 범죄 피해자는 형사 사법 시스템이 범죄를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호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보호 수단을 포함하고 범죄 피해자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보장하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권리장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조항과 법률의 이러한 제정은 증대한 주 전체의 관심사 공적인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공공안전이 범죄 활동에 의해 위태로워질 때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정부의 적절한 기능, 형사 사법 시스템, 그리고 이 조에 기술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신속한 집행에 의존하고 있다.

(3) 피해자의 권리는 범죄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해 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기재를 포함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모든 분야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b)항의 (1)에서 (17)목까지에 기술되어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집행 가능한 권리들이 포함된다.

(4) 또한 피해자의 권리에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선출, 임명 및 공적으로 고용된 공무원들의 성실한 노력과 조치를 통해서 집행 가능한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집단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에는 중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적절히,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하게 수감하고, 타주에서 체포되었다고 캘리포니아 주 법원으로 압송하고, 법원에서 적시에 재판 및 선고를 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권장하기 위해 충분히 처벌을 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공유하는 기대가 포함된다.

(5)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부과하는 선고의 방법과 기간 모두에 있어서 충분히 처벌할 것을 기대하는 집단이 공유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법원이 부과하는 수감 형태의 처벌 및 억제 효과를 연방 헌법의 조항이나 주의 법률들이 범죄에 대한 처벌 또는 교정을 위해 이 주의 교도소나 다른 수감 시설에서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수감자에 권리와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약화시키거나 축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6) 범죄 피해자는 형사 사건의 최종적 처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형사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항소와 판결 후 절차, 형사 범죄자들을 석방하겠다고 위협하는 빈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가석방 심리, 형사 범죄자들이 감형을 받을 것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이 범죄가 저질러진 후에도 오랫동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한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오랜 고통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

(7) 이러한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공공안전에 대한 권리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학교 생활을 할 권리를 보유하는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사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교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8) 이러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사 사법 과정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을 개정하여 범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에 대한 절차상의 대우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처분 및 선고에 대해 이러한 광범위한 개혁은 범죄 행위와 사람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혼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

(b) 사법 및 적법 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공정성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를 받고 형사 또는 청소년 사법 과정의 전체 과정에서 협박, 괴롭힘 및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2) 피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3) 피고의 보석 금액 및 석방 조건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4)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찾거나 괴롭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병원 치료 또는 상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눈 비밀 대화를 공개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보호를 받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비밀 정보나 기록을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

(5)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면담, 선서 증언 또는 강제 발표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면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건을 정할 권리

(6)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의 체포(기소자가 알고 있는 경우), 기소된 혐의, 피고를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고 기소 기관과 적절하게 협의할 권리, 그리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처분을 하기 전에 통지와 정보를 받을 권리

(7) 피고와 기소자가 출석할 권리가 있는 모든 공적 절차(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모든 가석방 또는 다른 유죄판결 후 석방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고, 그러한 모든 절차에 출석할 권리

(8)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모든 법적 절차(체포 후 석방 결정, 진술, 선고, 유죄판결 후 석방 결정과 관련된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또는 피해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법적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

(9)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최종 판결 및 사건과 관련된 판결 후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

(10) 신고 전 조사를 수행하는 집행유예국 담당관에게 해당 범죄가 피해자와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에 대한 선고를 하기 전에 선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11)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에게 신고 전 보고서를 제공할 때 이 보고서를 받을 권리(법에 의해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부분은 제외)

(12)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수감 장소 및 시간, 또는 피고에 대한 다른 처분, 피고의 석방 예정일, 피고가 수감으로부터 석방 또는 도주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13) 손해배상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

(A) 범죄 행위의 결과로 손실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일으킨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확보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명백한 의도이다.

(B) 범죄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모든 사건에서 강력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량이나 처분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명명해야 한다. 주의회는 이 조를 채택한 다음 6년 동안에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한 조항들을 채택해야 한다.

(C)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금전적 지불금, 금전 및 재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4)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권리

(15) 모든 가석방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받고, 가석방 과정에 참여하고, 가석방 당국이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범죄자의 가석방 또는 다른 석방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16) 가석방 또는 다른 판결 후 석방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일반대중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17) (1)에서 (16)목까지 열거된 권리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c) (1) 피해자, 피해자가 고용한 변호사,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검사(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재판이나 항소법원에서 권리에 대한 문제로서 (b)항에 열거된 권리들을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조는 주정부, 주정부의 하위 행정기관, 주정부나 그 하위 행정기관의 간부,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법원의 간부 또는 직원에 대해 보상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소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d) 피해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가 소유한 다른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법원은 선고를 할 때 재량에 따라 피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견을 제공할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가석방 당국은 가석방 심리를 할 때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견을 제공할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e) 이 조에서 사용된 "피해자"라는 용어에는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시도한 결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직접 입었거나 이에 대한 협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라는 용어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보호자가 포함되고, 사망자, 미성년자 또는 신체적, 정신적 무능력자인 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도 포함된다. "피해자"라는 용어에는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람, 피고, 또는 법원이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f) 피해자가 (c)항에 의해 직접 집행 가능한 (b)항에 열거된 권리에 추가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공유하는 추가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집단적으로 보유하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안전한 학교에 대한 권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정에서 생활할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보유한다.

(2) 증거의 진실성에 대한 권리. 이후에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의원 3분의 2의 찬성 투표를 얻어 제정된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공하고, 관련성이 있는 증거는 소년법원 또는 성인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에 상관없이 재판 전 및 유죄판결 후 명령 신청과 심리를 포함하는 형사 절차, 또는 청소년이 저지른 형사 범죄에 대한 재판이나 심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조의 어떤 조항도 특권증거나 전문증거, 또는 증거법 제352, 782 또는 1103 조와 관련된 증거에 대한 기존의 법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의 어떤 조항도 언론에 대한 기존의 법률 또는 헌법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공공안전 보석. 범죄자는 사실이 분명하고 주정이 정당한 경우, 중죄를 제외하고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하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 과도한 보석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판사나 치안판사가 보석금을 정하거나, 줄이거나, 거부할 때는 일반대중에 대한 보호, 피해자의 안전, 기소된 범죄자의 심각성, 피고의 이전 범죄 기록, 범죄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나 심리에 출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안전과 피해자의 안전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범죄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자신의 서약에 의해 석방될 수 있으나, 보석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심각한 중죄를 저질러 커소된 사람은 자신의 서약에 의해 석방될 수 없다.

심각한 중죄를 저질러 체포된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하기 전에 일반판사나 치안판사가 주재하는 심리를 열 수 있고, 검사와 피해자는 이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 받는다.

일반판사나 치안판사가 범죄자 자신의 서약에 의한 보석이나 석방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에 대한 사유를 심리 기록에 기재해야 하고 법원 의사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이전 유죄판결의 사용. 범죄자가 이전의 형사 절차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성인 또는 청소년에 상관없이, 차후에 다른 형사 절차에서 선고를 소추 또는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없이 사용해야 한다. 이전의 중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중죄 범죄의 한 요소인 경우에는 공개법정에서 재판관에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5) 선고의 진실성.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선고는 법원의 선고 명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고, 수감시설의 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조기 석방 정책에 의해 상당히 단축되어서는 안된다. 사법부는 수감자들을 법률에 의해 승인된 크레딧에 의해 형기를 단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형기 동안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6) 가석방 과정 개혁. 현행 가석방 심리 과정은 특히 피고자 살인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 과도하다. 가석방 심리 과정은 범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

(g) 이 조에서 사용하는 “심각한 중죄”라는 용어는 **형법 제 1192.7(c)조 (c)항**, 또는 이를 승계하는 법률에 정의된 범죄를 말한다.

제5조. 가석방 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제5.1조. 형법 제304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41.5. (a) 가석방에 대한 수감자의 적합성을 검토하거나, 또는 가석방 날짜를 정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모든 심리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1) **형법** 가석방 심리 위원회가 심리를 열기 최소한 10일 전에, 수감자는 이 위원회가 심사할 자신의 파일을 검토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 파일에 들어 있는 자료에 대해 서면 답변을 기재할 기회를 갖는다.

(2) 수감자는 심리에 출석하고, 질문 및 답변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진술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사는 제3043조 (b)항에 따라 심리에 출두하는 사람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없다.

(3) 어떤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변호사가 요구되지 않는 한, 교정부가 지정한 사람이 출석하여 가석방 결정과 관련된 모든 사실 (필요한 경우, 교정부의 절차 또는 다른 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실 문제에 대한 반대 주장 포함)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4) 수감자와 제3043조 (b)항에 기술된 사람은 모든 법적 절차의 속기록을 요청 및 수령하는 것이 허용된다.

(5) 이러한 심리가 가석방 날짜를 연기 또한 취소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수감자는 제2932조 (c)항 (3) 및 (4)목에 기술된 권리를 보유한다.

(6) 위원회는 수감자를 가석방에 의해 석방하는 것에 대한 의미있는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감자를 가석방에 의해 석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재심리할 날짜를 정한다.

(b) (1) 가석방 날짜를 정한 회의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는 수감자에게 그의 가석방 날짜, 그가 정해진 날짜에 석방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기재된 서면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2) ~~제3041조 (b)항에 기술된 이유로~~ 가석방 날짜를 정하지 못한 회의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는 수감자에게 가석방 날짜를 정하지 못한 이유 또는 이유들이 기재된 서면 설명서를 보내고, 그가 참여할 수 있고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에게 이익이 될 활동을 제안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크~~ 후 매년 각 케이스를 심리해야 하니, 위원회카 다음과 같은 기간 이내에 다음 심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해자의 견해와 이익을 고려한 후에 아래와 같이 다음 심리를 정해야 한다.

(A) 위원회가 다음 해 동안에 열리는 심리에서 가석방이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그러한 판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가석방이 거부된 심리가 열린 후 2년. 위원회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제3041조 (a)항에 열거된 가석방 날짜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기준에 근거하여 일반대중과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수감자를 추가로 10년 동안 복역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지 않는 한, 가석방이 거부된 심리가 열린 후 15년

(B) 위원회가 다음 해들 동안에 열리는 심리에서 가석방이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그러한 판정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가석방이 거부된 심리가 열린 후 최대 5년. 위원회가 심리를 5년 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부커머서너가 3년 이내에 그 수감자의 주요 파일을 검토하고 심리를 1년 이내에 열도록 제시할 수 있다. 수감자는 부커머서너의 결정에 대해 서면 통지를 받는다. 위원회는 2년과 5년 사이에 심리 날짜를 정하는 기준과 관련된 절차를 채택한다. 위원회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제3041조 (a)항에 열거된 가석방 날짜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기준에 근거하여 일반대중과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수감자를 추가로 7년 동안 복역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지 않는 한, 가석방이 거부된 심리가 열린 후 10년

(C) 제3041조 (a)항에 열거된 가석방 날짜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기준에 근거하여 일반대중과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수감자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복역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추가 7년의 기간보다 더 오래 복역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 가석방이 거부된 심리가 열린 후 3년, 5년, 또는 7년

(4) 위원회는 피해자의 견해와 이익을 고려한 후에 상황의 변동 또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 일반대중과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3)목에 규정된 수감자를 추가 기간 동안 복역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타당한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재량에 따라 (3)목에 의해 정한 심리 날짜를 더 이른 날짜로 앞당길 수 있다.

~~(3)~~ (5) 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이전에 정한 가석방 날짜가 연기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후 10일 이내에 수감자에게 새 가석방 날짜와 그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 또는 이유들이 기재된 서면 설명서를 보내고, 수감자에게 그러한 조치를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6) 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이전에 정한 가석방 날짜가 취소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는 수감자에게 그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 또는 이유들이 기재된 서면 설명서를 보내고, ~~12개월 이내에~~ (2)-(3)목에 따라 그 수감자의 다음 심리 날짜를 정해야 한다.

(c)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가석방 심리를 새로운 심리로 수행해야 한다. 이전의 가석방 심리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도달한 결론들은 고려될 것이나, 차후의 수감자 석방 심리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변경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재심리를 적용한다. 위원회는 심리를 수행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또는 피해자나 증인이 사망하거나 증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기록 또는 제출된 증언이나 진술을 인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심리에서 제3041조 (a)항 (3)목에 기술된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d) (1) 수감자는 공공안전을 고려할 때 수감자를 추가 기간 동안 복역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타당한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정보가 기술된 서면 요청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통지서(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및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위원회가 재량권을 사용하여 (a)항 (3)목에 따라 정한 심리 날짜를 더 이른 날짜로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해자의 견해와 이익을 고려한 후에 (1)목에 따라 제출된 서면 신청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유일한 관할권을 보유하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명백한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만 일반판사 또는 치안판사의 검토를 받는다. 위원회는 이 항의 조항들을 따르지 않거나,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b)항 (4)목에 기술된 조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1)목에 요구된 상황의 변동이나 새로운 정보를 기술하지 않은 신청을 약식으로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3) 수감자는 각 3년의 기간 동안 (1)목의 조항에 따라 단 한 번의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1)목에 따라 제출한 신청이 약식으로 거부되거나, 또는 (a)항에 기술된 심리 후에 위원회가 가석방 날짜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수감자는 약식 거부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a)항에 따라 다른 심리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다.

제5.2조. 형법 제30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43조. (a) (1) **형법** 가석방 심리 위원회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석방의 적합성 또는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 날짜를 정할 것을 검토 또는 고려하기 위한 심리에 대한 통지서를 심리가 열리기 최소한 ~~30~~ 90일 전에 수감자가 저지른 ~~한~~ 어떤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게 보내야 하며, 이러한 범죄에는 수감 범죄, 수감자가 가석방을 받은 확정 범죄, 그리고 수감자가 피해자에게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중죄 또는 범죄가 포함된다. 요청하는 당사자는 그의 현재 우편주소를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2) 피해자 이외에 심리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심리를 열기로 선정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전에 그가 심리에 참석할 의사, 그와 동행할 심리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신원 확인 정보를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위원회는 심리를 열기로 선정된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전에 심리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리가 열리는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

(b) (1) 피해자, 가까운 친척, 피해자 ~~각각~~ 가족 구성원 ~~2명~~, 또는 그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카 사망했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

가까운 친척이 특정한 심리를 열거 전에 그 심리에 대해 이 항의 (2) 목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2명의 대리인은 직접 또는 변호사의 대리를 통해 심리에 출석하고, 수감 범죄, 수감자가 가석방을 받은 확정 형기 수감 범죄, 그리고 수감자가 피해자에게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중죄 또는 범죄, 앞에 열거된 범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열거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범죄와~~ 사람, 가석방에 대한 수감자의 적합성이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수감자와 사건에 관한 그 또는 그들의 견해를 적절하고 타당하게 제시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외하고~~

(2) 피해자나 가까운 친척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출하는 어떤 어떤 진술서에는 해당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의견을 포함시킬 수 있다. 피해자나 가까운 친척이 가석방 승인에 관한 추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는 어떤 주제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들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 가까운 친척이 지정한다. 이러한 대리인들은 특정한 심리가 열리기 전에 그 심리에 대해 지정된다.

(c) 이 조의 목적상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지정한 대리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선정한 어떤 성인도 될 수 있다.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카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특정한 심리에 출석하고, 심리에서 증언하고, 또는 그리고 피해자, 가까운 친척, 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심리에 출석하는 경우더라도, 또는 그리고 피해자, 가까운 친척, 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제3043.2 조에 규정된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였더라도, 제3043.2 조의 조항에 따라 심리에 포함될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 이 조의 어떤 조항도 피해자, 가까운 친척, 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이 조에서 다루는 심리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 가까운 친척, 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서면, 오디오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에 의한 진술을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자의 대리인이 이러한 심리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의도하지 않는다.

(e) 위원회는 수감자를 가석방에 의해 석방할 것인지 결정할 때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 가까운 친척, 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가까운 친척이 지정한 대리인이 이 조에 따라 작성한 완전하고 중단되지 않은 진술서를 고려하고, 수감자가 가석방에 의해 석방되는 경우, 공공 안전을 위협할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에 대해

(e) 2명이 넘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이 조에서 다루는 심리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계 가족 구성원들이 출석하는 것을 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허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제한할 수 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손녀 및 조부모.

이 조의 조항들은 상하 양원에서 의사록에 기재된 호명투표에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여 통과된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유권자들이 승인할 때만 발효되는 법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회가 개정할 수 없다.

제5.3조. 제3044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3044조. (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심리 위원회 또는 이의 이해관계를 승계하는 기관은 가석방을 주관하는 주정부 기관이 되고 가석방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가석방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의 발효일 이후에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후 캘리포니아 주의 교정 시설로부터 가석방된 사람은 그러한 가석방이 취소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 절차상의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없다.

- (1) 가석방자는 가석방 위반으로 체포된 후 15일 이내에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가석방자는 가석방 위반으로 체포된 후 45일 이내에 증거에 의한 취소(evidentiary revocation)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3) 가석방자는 자신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이 위원회의 심리 담당관이 이러한 요청을 사안별로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정부 비용으로 변호사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A) 가석방자가 빈곤층인 경우, 그리고

(B) 기소와 변호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또는 가석방자의 정신적 또는 교육적 능력 때문에, 가석방자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호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4) 사안별로 심사되는 가석방자의 변호사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거부의 근거를 심리 기록에 간결하게 기재해야 한다.

(5) 가석방 취소는 가석방 집행관, 치안관 또는 피해자가 제공하는 서류증거, 직접 증언, 또는 전문증거를 포함하는 심리에서 인정되는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6) 피해자 또는 지각 능력이 있는 증인의 녹음 또는 전문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심리에서 증인과 대치할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b) 위원회는 피해자와 일반대중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공정하고, 독자적이고, 편견이 없이 결정을 해야 하고, 정당한 결정과 관련된 주정부의 비용이나 부담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이를 비교 검토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편견이 없는 심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독자적인 법률 및 행정 직원들을 보유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에게 보고한다.

제6조 피해자 권리장전에 대한 통지

제6.1조. 제679.026조를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한다.

제679.026조. (a)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절 28조에 규정된 헌법과 주의 법률들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통지 받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시행하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도이다.

(b) 모든 범죄 피해자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절 28조에 의해 인정되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 리스트를 무료 또는 무비용으로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Marsy 권리”라고 칭한다.

(c) (1)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모든 법집행 기관과 범죄 행위를 기소하는 모든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 최초 접촉 시, 후속 조사를 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조사관이나 검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3) 및 (4)목에 기술된 “Marsy 권리” 카드를 각 범죄 행위 피해자에게 무료 또는 무비용으로 제공하거나 입수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이 조에 의해 요구되는 피해자 공개는 형법 제14260조에 따라 승인된, 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Marsy 페이지”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일반대중에게 제공된다.

(3) 법무장관은 “Marsy 권리” 카드를 디자인하여 (1)목에 기재된 모든 기관에 “.pdf” 또는 다른 이미지 포맷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 카드에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절 28조 (b)항에 기술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범죄 피해자가 (2)목에 기술된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해당 지역의 피해자 지원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4) 국제법 제501조 (c)항 (3)목에 의해 비영리 단체로 분류되는 단체가 법무장관이 승인한 “피해자의 생존 및 자원 안내서” 팸플릿 및/또는 비디오를 범죄 활동을 조사하는 모든 법집행 기관 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기관은 이 팸플릿을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 및 입수 가능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의 생존 및 자원 안내서” 팸플릿과 비디오에는 승인된 “Marsy 권리” 카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기관, 비영리 피해자 권리 옹호 단체, 지원 단체 및 지역 자원 리스트, 그리고 법무장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다른 정보들이 포함된다.

(5) (1)목에 기술된 기관은 재량에 따라 (4)목에 기술된 자료에 추가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법무장관으로부터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체적인 피해자 생존 및 자원 안내서와 비디오를 디자인 및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기존 법률과의 상충

이 법의 어떤 조항이 범죄 피해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제공하는 기존의 법률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후자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도이다.

제8조. 가분성

이 법의 어떤 조항이나 부분, 또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 또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무효성 또는 위헌성이 무효 또는 위헌 조항이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법의 나머지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의 조항들은 분리가 가능하다.

제9조. 개정

이 법의 법적인 조항들은 상하 양원에서 의사록에 기재된 호명투표에서 의원의 4분의 3이 찬성하여 통과된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유권자들이 승인할 때만 발효되는 법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회가 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의회는 이 법의 법적인 조항들을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권리를 인정하거나, 또는 상하 양원의 의원들이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에 의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 소급 적용

이 법의 조항들은 이 법이 발효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시행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적용된다.

발의안 제10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공공자원법에 조항들을 추가한다. 따라서,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법.

제1조. 명칭.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캘리포니아 주는 석유 제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경제 및 우리의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

B. 교통은 캘리포니아 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우리는 교통 필요의 압도적인 96퍼센트를 석유 기반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 의존도는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고, 근로자, 소비자 및 기업체를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의 가격 급등에 취약하게 만든다.

C. 획기적인 2006년 캘리포니아 주 지구 온난화 해결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1990년까지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다.

D. Schwarzenegger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승용차 연료의 탄소 강도를 2020년까지 최소한 10퍼센트 줄일 혁신적인 저탄소 연료 기준을 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이 주의 재생가능 연료 시장을 3배로 확대하고, 이 주의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체 연료 승용차나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숫자를 20배나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 정부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대체 연료 공급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F. 종합적인 대체 에너지 전략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3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재생가능 전기 생산, 교통용 청정 대체 연료, 에너지 효율 및 보존.

G. 천연가스, 셀룰로오스 에탄올, 바이오디젤, 수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가정용 청정 연료를 자동차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H. 태양열, 풍력, 지열, 조력을 포함하는 청정 및 재생가능 가정용 에너지원을 전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I. 효과적인 청정 에너지 전략은 장기 및 단기 목표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청정 에너지 기술과 청정 대체 연료를 이용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청정 에너지 기술과 연료에 투자해야 한다. 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은 이 전략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J. 일반대중이 발전된 컴퓨터화 모니터 및 제어 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 엔진과 같은 새로운 청정 에너지 대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음으로써 에너지 보존이 증가할 것이다.

K. 지방정부들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대체 에너지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일반대중에게 대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L. 캘리포니아 주의 기술혁신 및 기업이 정신의 역사, 에너지 효율 촉진에 대한 국제적인 리더십, 다수의 세계 제일의 학술기관, 환경 지킴이에 대한 미국에서의 리더십은 캘리포니아 주가 재생가능 에너지와 청정 대체 연료의 시대를 주도할 자격을 부여한다.

제3조. 목적 및 의도.

이 법안을 제정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A. 캘리포니아 주의 에너지 자립을 향상시키고, 외국산 석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줄이고, 2006년 캘리포니아 주 지구 온난화 해결법을 시행하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오십억 달러(5,000,000,000달러)를 투자한다.

B. 태양열, 풍력, 지열, 조력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엔지니어링, 설계 및 건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설비를 구매 또는 리스하거나 그러한 설비를 설치하는 개인 및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D.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구동 차량을 포함하는 청정 대체 에너지 차량을 구입하는 개인 및 기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자금은 대체 연료 차량의 시험 및 인증과 저탄소 연료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제공한다.

E. 지역사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시범 프로젝트와 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한다.

F. 학생들에게 청정 및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 종합대학, 단과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G. 소비자에게 재생가능 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H. 재생가능 포트폴리오 기준, 온실가스 배출 기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기준과 같은 캘리포니아 주의 중요한 장기 목표와 이 법에 기술된 우리 주의 석유 소비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주의 자원과 기술혁신 능력을 충분히 사용한다.

I. 이 법안이 제공하는 수입을 측정 가능한 장단기 성과를 달성하고 연구와 신기술을 지원하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에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을 보장하고,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필수 독립 감사와 연례 진척도 보고서를 요구한다.

제4조. 공공자원법에 제26410조부터 시작되는 제16.6편을 추가. 제16.6편(제26410조부터 시작)을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에 추가한다.

제16.6편.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법 제1장. 일반 조항

제26410조. 이 편은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6411조. 제26416조 (a)항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 기금 제정으로부터 책정된 자금을 관리 또는 지출하기 위해 이 편에 의해 지정된 각 주정부 기관은 다른 권한, 의무 및 책임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a) 공채 수입금 또는 정부기관이나 기금 제정의 다른 자원으로부터 제공된 기금으로부터 책정된 제정 자금을 이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관리 및 지출한다. 전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26419조 (a)항에 의해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기금에 남아 있고 이 법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그 기관에 책정된 추가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b) 해당 기관이 법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주요 일정을 채택한다. 이 항의 목적상, “주요 일정”이란 이 법의 시행으로부터 예상되는 성격, 수준, 진행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해당 기관이 정한 중간 목표를 의미한다.

(c) 해당 기관의 운영에 대한 연례 독립 재무 감사의 완료와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지출과 프로그램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기관의 활동에 대한 공적 보고서의 발행을 보장한다.

(d) 정부법 제1100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기증, 유증, 로열티, 이자 및 책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 수입, 부동산 및 사유재산을 받아들인다. 제5장

(제26426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기증자는 자신의 기증을 이 법이 승인한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책정할 수 있다.

(e) 가능한 경우, 연방정부의 상용 기금을 신청한다.

(f)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모든 연구 보조금에는 지적 재산권 계약서를 적용하여 캘리포니아 주가 특허, 로열티 및 라이선스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회와 그러한 연구가 이러한 지적 재산권 계약서에 의해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않을 필요 사이에 균형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g) 해당 기관이 이 법에 의해 제공하는 보조금, 용자금, 용자금 보증, 신용, 바이다운, 리베이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한 절차, 기준 및 양식을 제정하여 적용되는 모든 조건과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재무 및 성과 감사가 포함되는 정기 보고 등이 있다.

(h)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절차법(정부법 제2권 3편 1부 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른 규정을 채택한다.

제2장. 정의

제26412조.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바이다운”이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입하는 개인 소비자 및 조직체에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청정 대체 연료”란 Schwarzenegger 주지사의 행정 명령 S-01-07에 포함된 탄소 강도를 최소한 10퍼센트 감소시키는 천연가스 및 연료를 의미한다.

(c) “청정 대체 연료 차량”이란 청정 대체 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해당되는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고, 석유 사용에 비해 대기 오염(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배기가스와 공기의 질 오염물질 포함), 수자원 오염, 또는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고 알려진 다른 물질의 중대한 순증가를 일으키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해당 안전 인증 및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문자 생산 부착 방식으로, 또는 소규모 제조회사가 생산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d)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이란 바이오메탄, 전기, 수소, 천연가스, 프로판 또는 이러한 연료들을 혼합한 연료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나, 주로 디젤 압축 사이클 엔진을 시동하기 목적으로 10퍼센트 이하의 디젤을 사용할 수 있는 (c)항에 정의된 청정 대체 연료 차량을 의미한다.

(e) “에너지 효율 기술”이란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방법을 의미한다.

(f) “전체 연료 주기 평가”란 “유정-차량 분석”이라고도 하며, 연료 생명 주기의 각 단계에서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전체 영향을 평가 및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공급 재료 생산, 추출, 운송 및 저장
- (2) 연료 생산, 분배, 운송 및 저장
- (3) 차량 작동(연료 보급, 연소, 또는 변환 및 증발 포함)

(g) “기금”이란 제26413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 기금을 의미한다.

(h) “대형 차량”이란 차량의 총중량이 25,000파운드 이상인 차량을 의미한다.

(i) “중대형 차량”이란 차량의 총중량이 14,000파운드 이상인 차량과 차량의 총중량이 25,000파운드 미만인 차량을 의미한다.

(j) “고연비 차량”이란 미국 환경청이 결정한 고속도로에서 갤런 당 45마일 이상의 혼합연비를 달성할 수 있고 주 대기 자원 위원회의 대기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문자 생산 부착 방식으로, 또는 소규모 제조회사가 생산하는 소형 차량을 의미한다.

(k) “소형 차량”이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도록 승인된 총중량이 8,500파운드 미만인 차량을 의미한다.

(l) “중대형 차량”이란 차량의 총중량이 8,500파운드 이상인 차량과 차량의 총중량이 14,000파운드 미만인 차량을 의미한다.

(m) “최초 구입자”란 새 가정용 청정 대체 연료 공급 시스템을 구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체, 또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인증하는 주문자 생산 부착 방식으로, 또는 소규모 제조회사가 생산하는 청정

대체 연료 차량 (새 차량 또는 엔진 교체 차량)을 구입하는 개인 소비자 또는 민간(정부가 아닌) 조직체를 의미한다. 제26419조에 의한 청정 대체 연료 차량(새 차량 또는 엔진 교체 차량)과 연관된 리베이트 목적상의 최초 구입자에는 2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차량을 리스하는 임차인이 포함된다.

(n) “석유 사용 감소”란 캘리포니아 주에서 에너지 효율 증가, 청정 대체 연료,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총 석유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o) “리베이트”란 제26419조에 따라 청정 대체 연료 차량,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 고연비 차량, 최고연비 차량 또는 가정용 청정 대체 연료 공급 시스템의 최초 구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p)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이란 에너지 생산 기법, 제품 또는 시스템, 분배 기법, 제품 또는 시스템, 운송 기계 장치, 제품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러한 모든 기술은 자연적으로 단기간 동안에 재생되고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으로(열, 광화학 물질 및 광전자 등), 태양으로부터 간접적으로(풍력, 수력발전 시설, 바이오매스에 저장된 광합성 에너지 등), 또는 다른 자연의 운동이나 환경 메커니즘으로부터(지열, 파도력, 조력 에너지) 전달되는 에너지 자원만을 이용한다.

(q) “엔진 교체 차량”이란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인증하는 시스템에서 운행하도록 개조했고, 청정 대체 연료만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인증하는 주문자 생산 부착 방식으로, 또는 소규모 제조회사가 생산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의미한다.

(r) “최고연비 차량”이란 미국 환경청이 결정한 고속도로에서 갤런 당 60마일 이상의 혼합연비를 달성할 수 있고 주 대기 자원 위원회의 대기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문자 생산 부착 방식으로, 또는 소규모 제조회사가 생산하는 소형 차량을 의미한다.

제3장.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 기금
제26413조.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 기금을 설립한다.

제26414조. 이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이 편에 기술된 목적과 금액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6415조. 이 편에 명백하게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에 의해 기금으로부터 책정된 자금을 관리 또는 지출하도록 지정된 정부기관이 자금을 할당 또는 승인한 특정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완료될 수 없거나, 또는 책정, 할당, 승인된 금액이 필요한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각 정부 기관은 그러한 자금을 이 편에 조항과 일치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필요에 재책정할 수 있다.

제4장. 자금의 할당

제26416조. (a)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 기금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

- (1) 십이억 오천만 달러(1,250,000,000달러)는 이 기금에 설치된 태양열, 풍력 및 재생가능 에너지 제정에 할당한다.
- (2) 삼십사억 이천오백만 달러(3,425,000,000달러)는 이 기금에 설치된 청정 대체 연료 제정에 할당한다.
- (3) 이억 달러(200,000,000달러)는 이 기금에 설치된 시범 프로젝트 및 대중교육 제정에 할당한다.
- (4) 일억 이천오백만 달러(125,000,000달러)는 이 기금에 설치된 교육, 훈련 및 지원 제정에 할당한다.

(b) (a)항에 의해 설치된 제정에 할당된 자금 중에서 어떤 회계연도에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같은 제정에 남겨둔다.

(c) (a)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 제정에 예치된 자금은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청정 대체 연료 및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연구, 기술 개발, 직업 교육 및 배치에 대한 기존의 주정부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한다.

(d) 각 제정의 자금 중 1퍼센트 이하는 이 법의 시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26417조. 제26418조에 기술된 기준에 근거하여, 태양열, 풍력 및 재생가능 에너지 제정의 자금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주로 전통적인 전기 생산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열, 풍력 및 다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에 대해 책정 및 지출한다.

(a) 이억 오천만 달러(250,000,000달러)의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양열, 지열, 파도력 및 조력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매 또는 리스하거나 그러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재래식, 저이자 및 무이자 융자금, 융자금 보증, 신용, 바이다운, 보조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b) 십억 달러(1,000,000,000달러)의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전기 생산 에너지원의 비용과 온실가스 함량을 낮추고, 주정부의 온실가스 감소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단 재생가능 전기 생산 기술의 연구, 개발, 건설 및 생산을 위한 보조금 및 다른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이 항의 목적상, “첨단 기술”이란 현재의 기술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있는 전기 생산 또는 저장 능력에 대한 기술 발전을 의미한다. “첨단 기술”에는 대규모 태양열, 태양열 전지, 에너지 저장, 바이오가스, 파도력 및 조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에너지 저장” 및 “저장 기술”은 전기 수요가 피크가 아닌 시간 동안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 수요가 피크인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제26418조. 태양열, 풍력 및 재생가능 에너지 계정 자금 지출 기준.

(a)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경제적 생존 능력을 개선하고 태양열, 풍력, 지열, 파도력 및 조류와 같은 재생가능 전기 에너지 자원의 상업화를 가속화한다는 목표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제 26417조에 따라 자금을 지출한다.

(b) 자금은 태양열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안서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이 계정에 예치된 총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이러한 태양열 기술에 사용한다. 그 후에는 비교적 풍부한 재생가능 전기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고, 기술 발전의 가능성이 가장 많고, 변동 및 고정 오율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안서에 우선순위를 둔다.

(c) 제26417조 (b)항에 의한 모든 지출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수립한 경쟁 선정 과정에 근거한다. 이 위원회는 최소한:

(1) 자금이 재생가능 전기 에너지 기술 또는 전기 에너지 효율 기술 연구에 지출되는 것을 보장한다.

(2)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보건의안전법 제26편 5부 8.9장(제 44270조부터 시작) 11절(제44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의회가 승인 또는 책정하는 자금을 대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3) 연구 제안서의 질, 이러한 자금 지출이 상업화 또는 재생가능 전기 에너지 기술 및 자원의 상당한 영구적인 배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러한 결과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상당한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목표 달성의 일정을 평가한다.

(4) 이러한 자금의 지출이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채택한 해당 전략 계획과 일치하는 것을 보장한다.

(d) 제26417조 (a)항에 의한 모든 자금은 인센티브의 지급을 증명 및 확인하기 위해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 기준, 양식에 따라 지출한다.

제26419조. 제26420조에 기술된 기준에 근거하여, 청정 대체 연료 계정의 자금은 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외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에 대해 책정 및 지출한다.

(a) 이십팔억 칠천오백만 달러(2,875,000,000달러)의 금액은 청정 대체 연료 계정에 설치된 대체 연료 차량 리베이트 부속계정에 할당되고, 제26420조 (a)항에 의해, 또는 그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리베이트로 지출된다.

(1) 이천 달러(2,000달러)의 금액을 새 고연비 차량의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 일억 일천만 달러(110,000,000달러)를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한다.

(2) 사천 달러(4,000달러)의 금액을 새 최고연비 차량의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 이억 삼천만 달러(230,000,000달러)를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한다.

(3) 일만 달러(10,000달러)의 금액을 소형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 (새 차량 또는 엔진 교체 차량)의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 오억 오천만 달러(550,000,000달러)를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한다.

(4) 이만 오천 달러(25,000달러)의 금액을 중소형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새 차량 또는 엔진 교체 차량)에 대한 첫 5,000명의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하고, 일만 오천 달러(15,000달러)의 금액을 이러한 차량에 대한 그 후의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한다. 첫 5,000명의 최초

구입자는 주정부 조세형평국이 리베이트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이 기관이 결정한다. 삼억 일천만 달러(310,000,000달러)를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한다.

(5) 삼만 오천 달러(35,000달러)의 금액을 중대형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새 차량 또는 엔진 교체 차량)에 대한 첫 10,000명의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하고, 이만 오천 달러(25,000달러)의 금액을 이러한 차량에 대한 그 후의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한다. 첫 10,000명의 최초 구입자는 주정부 조세형평국이 리베이트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이 기관이 결정한다. 육억 오천만 달러(650,000,000달러)를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한다.

(6) 오만 달러(50,000달러)의 금액을 대형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새 차량 또는 엔진 교체 차량)에 대한 첫 5,000명의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하고, 사만 달러(40,000달러)의 금액을 이러한 차량에 대한 그 후의 5,000명의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하고, 삼만 달러(30,000달러)의 금액을 이러한 차량에 대한 그 후의 각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한다. 첫 5,000명의 최초 구입자와 그 후의 5,000명의 최초 구입자는 주정부 조세형평국이 리베이트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이 기관이 결정한다. 십억 달러(1,000,000,000달러)를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한다.

(7) 이천 달러(2,000달러)의 금액을 새 가정용 청정 대체 연료 공공 장치의 최초 구입자에게 지급한다. 각 구입자는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청정 대체 연료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달러)를 이러한 카테고리에 할당한다.

(b) 오억 오천만 달러(550,000,000달러)를 청정 대체 연료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에 설치된 청정 대체 연료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 부속계정에 할당하고, 이러한 자금은 주 대기 보존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관리 및 지출한다.

(1) 일억 달러(100,000,000달러)의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청정 대체 연료와 고효율 차량 기술을 혼합한 차량의 개발 또는 시범(또는 두 가지 모두)을 위해 재래식, 저이자 및 무이자 융자금, 융자금 보증, 신용, 보조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2) 사억 달러(400,000,000달러)의 금액은 액체와 기체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를 능률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 금액 중에서, 이억 달러(200,000,000달러)는 액체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해 지급하고, 이억 달러(200,000,000달러)는 기체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해 지급한다.

(3) 오천만 달러(50,000,000달러)의 금액은 청정 대체 연료 전용 차량의 시험 및 인증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을 위해 재래식, 저이자 및 무이자 융자금, 융자금 보증, 신용, 보조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제26420조. 청정 대체 연료 계정 지출 기준.

(a) 제26419조 (a)항에 따라 승인된 리베이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리베이트는 자금이 대체 연료 차량 리베이트 부속계정에 할당된 후에만 지급한다. 전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자격 구입 또는 리스는 자금이 대체 연료 차량 리베이트 부속계정에 할당된 후 신속하게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리베이트에 대한 자격이 있는 차량의 유면허 딜러는 구입 또는 리스를 하기 전에 최초 구입자에게 이러한 자격 및 리베이트를 받는 것과 관련된 옵션, 단계 및 요건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3)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최초 구입자는 주정부 조세형평국으로부터 리베이트 전액을 직접 받을 수 있고, 또한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할 때 차량의 유면허 딜러에게 서면 동의서를 제공하여 리베이트를 받을 권리를 딜러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4) 리베이트를 주정부 조세형평국으로부터 반기로 결정한 최초 구입자나 최초 구입자의 양수인은 거주지에 대한 증빙, 구입 또는 리스에 대한 증빙, 이 차량이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빙,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 차량 등록을 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 조세형평국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정과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5) 유면허 딜러가 구입 또는 리스 시에 최초 구입자가 리베이트를 받을 권리를 양도 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초 구입자가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정부 조세형평국에 판매 또는 리스를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주정부 조세형평국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주정부 조세형평국은 판매 또는 리스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리베이트 금액을 딜러에게 송금하거나 딜러의 세금 선불 제정에 크레딧을 제공한다. 주정부 조세형평국은 이 조항을 관리하고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6) 주정부 조세형평국은 차량의 판매 또는 리스에 적용되는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제26419조 (a)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리베이트를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차량 구입 또는 리스 가격에 대해 계산한다.

(7) 제26419조 (a)항에 따라 특정한 차량에 대해 단 1건의 리베이트를 허용한다.

(b) 제26419조 (b)항에 의한 지출과 관련하여, 주 대기 자원 위원회는 석유 소비율을 줄이고, 캘리포니아 주의 석유 소비량을 2020년까지 20퍼센트 이상, 그리고 2030년까지 30퍼센트 이상, 영구적 및 장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에 적합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출한다. 또한 이러한 지출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수립한 경쟁 선정 과정에 근거한다. 이 위원회는 최소한:

(1)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이러한 지출이 캘리포니아 주의 석유 소비 감소에 대한 기존의 주정부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충하는 것을 보장한다.

(2)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보건안전법 제26편 5부 11절(제 44125조부터 시작) 및 8.9장(제442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의회가 승인 또는 책정하는 자금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3) 자금 지원(민간 상용 자금의 가용성 포함)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러한 지출의 결과로 달성할 것이 예상되는 주 내의 석유 감소 수준 포함)에 대해 제안서의 질을 평가한다. 상당한 사업 걸음을 거치고 사모 주식 자금으로부터의 레버리지 또는 민간 자금원으로부터의 후순위 채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안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우대하여 제안서의 시장 생존 능력을 확립한다.

(4) 제안서가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 제공 기간 이후에도 상당한 소비자 또는 기업체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지 가능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 기술 또는 기술들을 개발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이러한 자금의 지출이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채택한 해당 전략 계획과 일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26421조. 제26422조의 기준에 근거하여, 시범 프로젝트 및 대중교육 제정의 자금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관리 및 지출하여,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적 장소에서 학생, 주민 및 방문하는 일반대중에 대해 이러한 기술 및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체 및 재생가능 에너지의 실제 사용을 촉진하고 시범을 보이기 위한 자본 프로젝트와 운영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지방정부들에 대해 다음의 금액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a)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금액을 로스앤젤레스 시에 제공한다.

(b)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금액을 샌디에고 시에 제공한다.

(c)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금액을 롱비치 시에 제공한다.

(d)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금액을 어바인 시에 제공한다.

(e)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금액을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 제공한다.

(f)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금액을 오클랜드 시에 제공한다.

(g)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금액을 프레즈노 시에 제공한다.

(h)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금액을 새크라멘토 시에 제공한다.

제26422조. 시범 프로젝트 및 대중교육 제정 자금 지출 기준:

(a)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26421조에 규정된 목적을 따르고 이와 일치하도록 제안된 자본 프로젝트 및/또는 운영 비용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이 위원회는 제26421조에 기재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할당한다.

(b) 제26421조에 기재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유치원 및 1-12학년(포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의 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26423조. 제26424조에 기술된 기준에 근거하여, 교육, 훈련 및 지원 제정의 자금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책정 및 지출한다.

(a)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 종합대학, 단과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직원 개발, 교육 보조금,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경제적 생존 능력을 개선하고, 건물, 설비, 전기 생산 및 차량과 관련된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 및 청정 대체 연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

(2) 저소득층 학생, 전직 화석 연료 에너지 근로자 및 공인 차량 정비사가 건물, 설비, 전기 생산 및 차량과 관련된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태양열, 지열, 풍력, 파도력, 조력 기술 등), 청정 대체 연료 및 에너지 효율 기술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료를 지원

(b)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금액을 청정 대체 연료 및 청정 대체 연료 차량, 에너지 절약형 장치 및 기술과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 가용성 및 접근성에 관한 공공정보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c)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과 의도를 이 법의 목표에 맞추어 촉진하기 위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 제26424조. 교육, 훈련 및 지원 제정 자금 지출 기준.

(a)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건물, 설비, 전기 생산 청정 대체 연료 및 청정 대체 연료 차량과 관련된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태양열, 지열, 풍력, 파도력, 조력 기술 등), 또는 에너지 효율 기술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에 맞추어 제26423조에 따라 자금을 지출한다.

(b)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책정하는 제26423조에 의한 모든 지출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수립한 경쟁 선정 과정에 근거한다.

제26425조. 주의회는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5장. 제정 조항

제26426조. 제26435조에 따라 상환용 공채 금액이 포함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발행할 수 있는 총액이 오십억 달러(5,000,000,000달러)인 공채를 이 편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정부법 제 16724.5조에 따라 일반 보증 공채 경비 회전 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판매 및 발행할 수 있다.

제26427조. 공채 수입금은 제26413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 기금에 예치된다. 판매된 공채는 캘리포니아 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공채를 구성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한의 성실성과 신용으로 지불 기일이 도래하는 공채 원금과 이자를 정시에 지불할 것을 서약한다.

제26428조. 이 편에 의해 승인된 공채는 주 일반 보증 공채법(정부법 제2권 4장 3부 4장(제1672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준비, 집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해야 하며, 이 법의 모든 조항은 공채와 이 편에 적용된다. 단, 정부법 제16727조에 기술된 제한사항은 공채와 이 편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6429조. (a) 단지 이 편에 의해 승인된 공채를 주 일반 보증 공채법에 따라 발행 및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 재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편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주 재생가능 에너지 및 청정 대체 연료 재정위원회는 주 일반 보증 공채법에서 정의 및 사용되는 "위원회(committee)"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재정국장, 출납국장, 또는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출납국장은 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위원회 전체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이 장의 목적상, 자원부장관은 주 일반 보증 공채법에서 정의 및 사용되는 "위원회(board)"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제26430조. 이 위원회는 이 편에 명시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 편에 따라 승인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발행 및 판매할 공채의 금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채를 단계적으로 발행하도록 승인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전체 공채를 한 번에 발행 또는 판매할 필요는 없다. 이 위원회는,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제26419조 (a)항에 의해 설치된 대체 연료 차량 리베이트 부속계정에 자금을 할당한다.

제26431조.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공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주정부의 경상 수입에 추가하여 매년, 그리고 다른 주정부 수입을 징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또는 같은 시기에 징수해야 한다. 추가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실행 및 수행하는 것은 수입 징수와 관련된 법적 직위가 부여된 모든 공무원의 의무이다.

제26432조.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편의 목적상, (a) 이 편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에 대해 지불 기일이 도래하는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 그리고 (b) 제26433조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책정되는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정부 재무부의 일반 기금으로부터 책정한다.

제26433조. 이 편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재정국장은 이 편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미판매 공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한 금액은 이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이 조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인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금에 예치되었을 공채 판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부터 이 금액이 공동 자금 투자 계정에 있었다면 연었을 이자를 더하여 일반 기금에 반납해야 한다.

제26434조. 판매한 공채에 대한 프리미엄과 발생 이자로부터 획득하여 기금에 예치한 모든 자금은 기금에 비축하여 공채 이자 지출에 대한 크레딧으로 일반 기금에 이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26435조. 이 편에 의해 발행 또는 판매된 공채는 정부법 제2권 4편 3부 4장 6절(제16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환용 공채를 발행하여 상환할 수 있다. 공채 발행에 대한 이 주 유권자의 승인에는 원래 발행된 공채 또는 이전에 발행된 상환용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채에 대한 승인이 포함된다.

제26436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 편에 의해 승인된 공채의 판매로부터 얻는 수입금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 B절에 사용된 용어인 “세금의 수입금”이 아닌 한, 이러한 수입금의 지출은 그 절이 부과하는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및 선언한다.

제6장. 책임

제26437조. 이 법이 요구하는 다른 보고서에 추가하여,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주 대기 자원 위원회, 감사원장은 각각 주지사, 주의회 및 일반대중에 대해 이 법과 관련된 이러한 기관들의 활동과 성취 및 향후의 프로그램 추진 방향이 기술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각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보조금, 융자금, 융자금 보증, 신용, 바이다운, 리베이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인센티브의 숫자와 달러 금액, 전년도의 인센티브 수령자, 이 법과 관련된 관리 비용, 장래성 있는 새 연구 분야와 기술 혁신을 포함하는 연구 결과 요약, 인센티브 지급과 해당 전략 계획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

제5조. 경쟁 규제 대안.

A. 이 법안에 들어 있는 조항이나 요건과 다른 점이 있거나, 또는 이를 보충하는 조항이나 요건을 채택 또는 부과하려고 하는 다른 법안 (“경쟁 법안”)이 이 법안과 같은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경우, 유권자들은 이 법안과 경쟁 법안이 모두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얻고, 이 법이 경쟁 법안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얻는 경우, 각 법안의 특정한 법안이 서로 직접 상충되는 것에 상관없이 이 법안의 전체 조항이 경쟁 법안 대신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그들의 의도를 이에 명백하게 선언한다.

B. 이 법안과 경쟁 법안이 모두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얻고, 경쟁 법안이 이 법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얻는 경우, 이 법은 경쟁 법안을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이 법의 조항들은 Yoshizato 대 상급법원 (1992년) 2 Cal.4th 978에 따라 각 법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조항들이 “조항 대 조항”으로 서로 직접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채택된다.

제6조. 개정. 이 법의 조항들은 그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 주의회 상하 양원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 투표를 하여 승인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7조. 가분성. 이 법의 어떤 조항 또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 또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무효성이 무효 조항 또는 적용이 없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의 조항들은 분리가 가능하다.

발의안 제11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조들을 개정 및 추가하고 정부법에 조들을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기존의 조항들은 ~~황선~~을 그어 인쇄하고,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제1조. 명칭.

이 법은 “유권자 우선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목적.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현행법 하에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선거구 경계를 정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 경계를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중대한 이해의 상충이다. 이것이 최근의 선거에서 현직 정치인들의 99퍼센트가 자신들이 경계를 정한 선거구에서 재선되는 이유이다.

(b) 정치인들은 지역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거구 경계를 정한다. 예를 들면, 롱비치, 산호세, 프레즈노와 같은 시들은 현직 주의회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에 이성한 형태를 가진 선거구로 구분되어 있다. 많은 지역사회의 유권자들은 현직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4개나 되는 다른 선거구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지역사회를 한데 모아 모든 사람이 대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

(c) 이러한 개혁은 권력을 가진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도록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공개한다. 또한 동수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현행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무소속 유권자들의 전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이러한 개혁은 새 선거구 재조정 계획에 대해 민주당원, 공화당원 및 무소속 유권자들의 지지를 요구한다.

(d) 독자적인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공정한 대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엄격하고, 초당파적인 규정에 기준하여 선거구 경계를 정한다. 이러한 개혁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주의회의 당파 싸움으로부터 회수하고, 선거구 재조정이 공개 모임에서 개방적으로 토의되는 것을 보장하고, 모든 의사록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된다. 이러한 과정의 모든 측면은 일반대중과 언론이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e) 현행 과정에서는 유권자들이 진정한 선택권을 갖는 대신에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유권자들이 권한을 되찾게 할 것이다.

제3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에 대한 개정.

제3.1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XXI 절.

상원, 하원, 연방의회 및 조세청평국 선거구 ~~재배정~~ 재조정.

제3.2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 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매 10년이 시작될 때마다 연방의회의의 주도에 따라 전국 인구조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해에, 주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및 과정에 따라 ~~상원, 하원, 연방의회 및 조세청평국~~ 연방의회 선거구의 경계선을 조정한다.

(a) ~~상원, 하원, 연방의회 및 조세청평국~~의 각 의원은 단일 의원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b) 특정된 종류와 모든 연방의회 선거구의 인구는 적절하게 동일해야 한다. 주의회는 이 기준을 따른 후에 제2조 (d)항 (2), (3), (4) 및 (5)목에 기술되었고 우선순위가 결정된 기준에 따라 경계선을 조정해야 한다. 주의회는 최종 지도를 작성한 후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 보고서에 최종 지도 작성에 사용된 용어와 기준의 정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c) 각 선거구는 인접해 있어야 한다.

(d) (c) 각 종류의 선거구 연방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 주의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남쪽 경계선에서 끝나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e) 시, 카운티, 또는 시 겸 카운티, 또는 어떤 지리적 지역과 지리적 통일성은 이 조의 다른 항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까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f) 주의회는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와 협조하여 공동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일반대중이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주의회는 정부법 제8253조 (a)항 (1), (2), (3), (7)목 및 (b)항, 또는 법률의 승계 조항들의 공청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3.3호. 제2조를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2조. (a)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주 상원, 하원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에 대해 새 선거구 경계선을 정한다(“선거구 재조정”이라고도 함). 이 위원회는 2010년과 그 후에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해야 한다.

(b)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함): (1) 선거구 경계선을 정하는 것에 대한 일반대중의 의견을 완전히 고려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수행하고, (2) 이 절에 명시된 선거구 재조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 경계선을 정하고, 그리고 (3) 이러한 직무를 완전무결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c) (1) 위원회 선정 과정은 주의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주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대표하는 주정부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제정해야 한다.

(2)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최대 정당에 등록된 5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두 번째 최대 정당에 등록된 5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앞의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4명.

(3) 각 위원회 위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계속 같은 정당에 등록했거나 정당에 등록하지 않았고, 위원 임명 날짜 직전의 5년 이상 동안 정당을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이어야 한다. 각 위원회 위원은 신청 직전의 마지막 3번의 주 전체 총선거에서 2번 투표를 했어야 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를 승계하는 위원회의 첫 위원을 임명하는 날짜에 종료된다.

(5) 이 위원회는 9명의 의원이 정족수를 이룬다. 9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 투표를 하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건의 최종 지도는 최소한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2대 정당 중 하나에 등록된 각 3명의 위원의 찬성 투표와 이러한 2대 정당 중 하나에 등록하지 않은 3명의 위원의 찬성 투표를 포함하는 최소한 9명의 찬성 투표에 의해 승인해야 한다.

(6) 각 위원회 위원은 편파적이 아니고 선거구 재조정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절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이 주에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수준의 선출직 공직을 보유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연방, 주 또는 지방의 임명직 공직을 보유하거나, 주의회 또는 개별 의원의 유급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또는 이 주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로비스트로 등록할 수 없다.

(d)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기술된 다음의 기준을 사용하는 지도 작성 과정에 따라 상원, 하원 및 조세형평국에 대한 단일 의원 선거구를 제정한다.

(1) 선거구는 연방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원, 하원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는 같은 공직에 대한 다른 선거구와 동일한 적절한 인구를 보유해야 하나,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못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선거구는 연방 투표권법(42 U.S.C. 제1971조 이하)을 준수해야 한다.

(3)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한다.

(4) 이해관계가 있는 시, 카운티, 시 겸 카운티, 이웃 또는 지역사회의 지리적 통일성은 진솔한 항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까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에는 정당, 현직 의원 또는 정치 입후보자와의 관계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5)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그리고 위의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선거구 경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인구를 포함시키기 위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인구를 우회하지 않도록 지리적으로 밀집시킬 것을 권장하도록 정해야 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그리고 위의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각 상원 선거구는 2개의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인접한 하원 선거구로 구성되고, 각 조세형평국 선거구는 10개의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인접한 상원 선거구로 구성된다.

(e) 현직 의원 또는 정치 입후보자의 거주지 지도 작성에 고려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직 의원, 정치 입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계를 정하지 않는다.

(f) 연방의회 상원, 하원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 주의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남쪽 경계선에서 끝나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g) 2011년과 그 후 1로 끝나는 각 연도의 9월 15일까지, 위원회는 상원, 하원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경계선을 별도로 표시한 3건의 최종 지도를 승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3건의 승인된 최종 지도를 총무처장관에게 인증해야 한다.

(h) 위원회는 3건의 최종 지도와 함께, 위원회가 (d)항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 보고서에 각 최종 지도 작성에 사용된 용어와 기준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i) 인증된 각 최종 지도는 제 II절 9조에 따라 법률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최종 지도를 총무처장관에게 인증한 날짜는 제 II절 9조의 목적상 제정일로 간주되어야 한다.

(j) 위원회가 최소한 필수 찬성 투표에 의해 최종 지도를 승인하지 않거나, 또는 유권자들이 주민투표에서 인증된 최종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즉시 대법원에 (d), (e) 및 (f)항에 기술된 선거구 재조정 기준 및 요건에 따라 그 지도의 경계선을 조정할 특별 재판관의 임명을 지시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 재판관이 조정한 지도를 승인하고, 그 지도를 총무처장관에게 인증하면 그 지도는 해당 종류의 선거구에 대해 인증된 최종 지도가 된다.

제3.4호.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에 추가한다.

제3조. (a) 위원회는 인증된 최종 지도에 대한 소송에 대응할 유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제공된 자금이나 다른 자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의회에 이를 통지한다. 주의회는 인증된 지도에 대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이나 위원회가 고용한 다른 변호사가 인증된 지도에 대한 변호를 할 것인지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b) (1) 대법원은 인증된 최종 지도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제1심 관할권과 전속 관할권을 갖는다.

(2) 이 주의 등록 유권자는 위원회가 최종 지도를 총무처장관에게 인증한 후 45일 이내에 제출된 지도가 이 주의 헌법, 연방 헌법, 또는 연방법이나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총무처장관이 이 지도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무효 영장 또는 금지 영장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3) 대법원은 (2)항에 의해 제기된 무효 영장 또는 금지 영장에 대한 청원을 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법원이 이 주의 헌법, 연방 헌법, 또는 연방법이나 주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정부법에 대한 개정.

제4.1호. 제3.2장(제8251조부터 시작)을 다음과 같이 정부법 제 2권 1편에 추가한다.

제3.2장.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제8251조.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일반 조항.

(a) 이 장은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관리와 위원 선정 과정을 제정하여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을 시행한다.

(b) 이 장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용어를 정의한다.

(1) “위원회”란 주정부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2) “날짜”란 역일(calendar day)을 의미하며, 법을 수행해야 하는 특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짜로 연기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심사 위원회”란 신청인 심사 위원회를 의미한다.

(4) “적격 독립 감사인”이란 현재 캘리포니아 주 회계 위원회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신청인 심사 위원회의 임명을 받기 전에 최소한 10년 간 독립 감사인으로 개업해 온 감사인을 의미한다.

(c) 주의회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장을 개정할 수 없다.

(1) 위원회는 이 장의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 최종 지도를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같은 위원들의 찬성 투표를 받아 이 장의 개정을 추천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제출하는 개정안의 정확한 문안은 상하 양원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 투표를 하여 승인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된다.

(3) 위원회가 제출하는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주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10일 전에 인쇄된다.

(4)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개정안은 0 또는 1로 끝나는 연도에는 주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제8252조. 주민 선거구 주정부 위원회 선정 과정.

(a) (1)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월 1일까지, 주정부 감사인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개방되는 신청 과정을 다양하고 자격이 있는 신청인 풀(pool)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

(2) 주정부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이해의 상충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신청인 풀에서 제외시킨다.

(A) 신청인 또는 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신청일 직전의 10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경우:

(i)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공직에 임명, 선출되었거나, 또는 임후보한 경우

(ii) 정당,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선출직 공직 임후보자의 캠페인 위원회에 간부,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재직한 경우

(iii) 정당 중앙 위원회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위원으로 재직할 경우

(iv)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등록 로비스트로 활동한 경우

(v) 연방의회, 주의회 또는 조세형평국의 유급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vi) 어떤 연도에 이천 달러(2,000달러) 이상을 연방의회,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직 임후보자에게 기부한 경우.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가격 지수 또는 이를 승계하는 지수의 누적 변동치에 따라 10년마다 조정해야 한다.

(B) 주지사, 주의회 의원, 연방의회 의원 또는 주정부 조세형평국 위원의 직원 및 컨설턴트, 그러한 사람과 계약을 맺은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직계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자격이 없다. 이 항에서 사용된 그러한 사람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란 그 사람이 혈통 또는 법적 관계를 통해서 성립된 성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b) 주정부 감사인은 3명의 적격 독립 감사인들로 구성된 신청인 심사 위원회를 설립하여 신청인을 선별한다. 주정부 감사인은 주정부가 고용했고 캘리포니아 주 회계 위원회에서 면허를 받은 모든 감사인들로 구성된 풀에서 3명의 적격 독립 감사인의 이름을 무작위로 추천한다. 주정부 감사인은 정당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최대 정당에 등록된 1명, 정당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두 번째 최대 정당에 등록된 1명,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1명을 포함하는 3명의 감사인 이름을 추천할 때까지 추천을 계속한다. 주정부 감사인은 추천을 완료한 후에 이름이 추천된 3명의 적격 독립 감사인에게 그들이 심사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통지한다. 3명의 적격 독립 감사인 중에서 심사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주정부 감사인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3명의 적격 독립 감사인들이 심사 위원회 위원이 되기로 동의할 때까지 무작위 추천을 계속해야 한다. 심사 위원회 위원은 (a)항 (2)목에 기술된 이해의 상충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c) 주정부 감사인은 신청인 풀에서 이해의 상충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킨 후에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8월 1일까지 신청인 풀에 포함된 사람들의 이름을 발표하고, 그들의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 심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d) 신청인 심사 위원회는 신청인 풀에서 60명의 가장 적극적인 신청인들을 선정하며, 이러한 신청인들에는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최대 정당에 등록된 20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두 번째 최대 정당에 등록된 20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20명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속 풀은 관련 분석 능력, 공평하게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다양한 인구 구성과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기준하여 구성된다. 심사 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위원회가 추천 신청인 풀을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주정부 조세형평국 위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연방의회 의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지명 과정이나 신청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 신청인 심사 위원회는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0월 1일까지 추천 신청인 풀을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상원 의장 대행, 상원 소수당 원내 총무, 하원 의장 및 하원 소수당 원내 총무는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1월 15일까지 20명으로 구성된 각 부속 풀에서 각각 최대 2명의 신청인을 제외시킬 수 있고, 따라서 각 부속 풀에서 총 8명이 제외될 수 있다. 주의회 지도자들이 제외권을 행사한 후에,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총장은 나머지 신청인 이름으로 구성된 풀을 주정부 감사인에게 공동으로 제출한다.

(f) 주정부 감사인은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1월 20일까지 나머지 신청인 풀로부터 8명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무작위로 추천한다: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최대 정당에 등록된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3명, 정당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두 번째 최대 정당에 등록된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3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2명. 이 8명의 개인들은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g)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2월 31일까지, 8명의 위원들은 신청인 풀에 포함된 나머지 이름들을 심사하여 6명의 신청인을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임명한다: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최대 정당에 등록된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2명, 정당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두 번째 최대 정당에 등록된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2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2명. 이 6명의 임명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최소한 5명으로부터 찬성 투표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 중 각 정당에 등록된 위원들 중 최소한 2명의 찬성 투표, 그리고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위원들 중 최소한 1명의 찬성 투표. 이 6명의 임명 위원들은 민족, 인종, 지리적 특성 및 성별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주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특정한 비율을 적용하려고 의도하지는 않는다. 또한 신청인들은 관련 분석 능력과 공평하게 처리하는 능력에 기준하여 선정된다.

제8252.5조.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공식, 해임, 사임, 불참.

(a) 위원회의 위원이 재임 중에 상당한 직무 태만이나 중대한 부정 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주지사는 해당 위원회에게 이와 관련된 통지서를 전달하고 응답할 기회를 제공한 후에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재임 중에 상당한 직무 태만이나 중대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견되면 법무장관에게 의뢰하여 형사 기소를 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b) 14명의 위원직에 해임, 사임, 또는 불참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풀을 구성한 연도의 11월 20일 현재 공석이 된 피지명자와 같은 유권자 등록 카테고리에 남아있는 신청인 풀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이러한 남아있는 신청인 중에서 아무도 위원직을 수락하지 않으면 주정부 감사인은 제8252조에 따라 같은 유권자 등록 카테고리에 대해 새 풀을 구성하여 공석을 채워야 한다.

제8253조.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기타 조항.

(a)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 위원회는 Bagley-Keene 공개회의법(제2권 3편 1부 1장 9절(제11120조부터 시작)), 또는 이를 승계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위원회는 각 회의에 대해 최소한 14일 전에 공지해야 하나, 1로 끝나는 연도의 9월에 열리는 회의는 예외로서, 3일 전에 공지하고 회의를 열 수 있다.

(2)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과 위원회가 검토하는 모든 자료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일반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게시해야 하는 공공기록이다.

(3)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들은 공청회 외부에서 어떤 사람과도 선거구 재조정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수하지 않는다. 이 절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가 고용하는 직원, 변호사, 컨설턴트 사이에 공청회 외부에서 Bagley-Keene 공개회의법 또는 이를 승계하는 법률이 달리 허용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4)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XXI 절 2조 (c)항 (5)목에 규정된 투표 과정에 의해 위원 중 1명을 의장으로, 다른 1명을 부의장으로 선임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정당이 달라야 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 직원, 변호사 및 컨설턴트를 고용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개인들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통신 프로토콜, 행동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원을 고용할 때 제8252조 (a)항 (2)목에 열거된 이해의 상충을 최대한 적용해야 한다. 총무처장관은 위원회의 직원과 사무실이 완전히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지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가 고용하는 개인들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VII 절의 공무원 요건이 면제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고용하는 변호사들 중 최소한 1명이 1965년 연방 투표권법(42 U.S.C. 제1971조 이후)의 시행 및 집행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원, 변호사 및 컨설턴트의 채용, 해고 또는 계약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 중 하나에 등록한 각 3명의 위원의 찬성 투표와 이러한 2대 정당 중 하나에 등록하지 않은 3명의 위원의 찬성 투표를 포함하는 9명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어야 한다.

(6)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고용인의 출석 또는 예정된 출석을 이유로 그 고용인에 대해 해고, 해고한다는 위협, 협박, 강요 또는 보복을 해서는 안된다.

(7) 위원회는 일반대중의 의견 제시 및 검토를 위한 공청회 과정을 제정 및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공청회 과정은 공지 요건의 적용을 받고 선거구 재조정 검토 과정에 대한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권유하는 철저한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해야 한다. 공청회 과정에는 위원회가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일반대중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위원회 지도의 작성 및 게시 이후에 열리는 공청회가 포함된다. 또한 공청회는 일반대중이 검토 과정을 참관하고 참여할 기회를 더욱 증가시키기에 적합한 다른 활동들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지도를 가장 광범위한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 일반대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일반대중의 의견은 지도를 공공 장소에 게시한 날짜로부터 최소한 14일 간 청취해야 한다.

(b) 주의회는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완전하고 정확한 컴퓨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지도 작성을 위한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일반대중이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의회는 위원회를 설립한 후 해체할 때까지 이러한 활동을 위해 위원회와 협조해야 한다.

제8253.5조.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보수.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한 각 날에 대해 삼백 달러(300달러)의 요율로 보수를 받는다. 이후의 각 위원회에 대해서는, 보수의 요율을 9로 끝나는 각 연도에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가격 지수 또는 이를 승계하는 지수의 누적 변동치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와 신청인 심사 위원회 위원들은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 경비를 상환 받을 자격이 있다. 위원의 거주지는 경비 상환 목적상 위원의 직무 수행 장소로 간주된다.

제8253.6조.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대한 예산 및 재정 감독.

(a) 2009년과 그 후 9로 끝나는 각 연도에,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IV 절 제 12 조에 따라 주의회에 제출하는 주지사 예산에 주정부 감사인,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총무처장관에게 제공되는 자금의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러한 금액은 각 관련 공무원 또는 조직체가 이 법이 요구하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이러한 과정에 대한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권유하는 주 전체 현장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3년 간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정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또한 주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적절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주의회는 예산법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고, 이러한 예산은 전체 3년의 기간 동안 책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산에는 삼백만 달러(3,000,000달러)와 이 항에 따라 즉시 진행되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지출되는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고, 이 항에 따라 직전에 예산을 책정한 날짜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가격 지수 또는 이를 승계하는 지수의 누적 변동치에 따라 이러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주의회는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연도에 대해 추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b) 재무부로부터 재정 감독을 받는 이 위원회는 구매 및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VII 절의 공무원 요건이 면제되는 직원과 컨설턴트(법률 대리 포함)를 고용할 수 있다.

제5조. 상충되는 투표 법안.

(a) 상원, 하원, 연방의회 또는 조세형평국 선거구의 재조정과 관련된 이 법안과 다른 법안(들)이 같은 선거에서 과반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법안이 그러한 다른 법안(들)보다 더 많은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안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법안(들)은 무효가 되고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안이 과반수 유권자의 찬성 투표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다른 법안(들)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지 못한 경우, 이 법안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b) 이 법안의 조항들이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고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는 다른 상충되는 법안의 조항들에 의해 폐지되고, 이러한 상충되는 법안이 차후에 무효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이 법안의 조항들은 자동으로 발효되고 법률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6조. 가분성.

이 법은 분리가 가능하다. 이 법의 어떤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무효성이 그러한 무효 조항 또는 적용이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의안 제12호

2007-2008 정기회기의 하원 법안 1572(2008년 법률 제122장)에 의해 발의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XVI 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법안은 현역 및 재향군인법에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법안

제1조. 제5x절(998.400조부터 시작)를 다음과 같이 현역 및 재향군인법 제4편 6장에 추가한다.

제5x 절. 2008년 재향군인 공채법

제998.400조. 이 법은 2008년 재향군인 공채법이라고 인용할 수 있다.

제998.401조. (a) 이 절에 의해 발행이 허가된 공채의 발행, 판매 및 상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규정의 시행을 위해 주 일반

보증 공채법(정부법 제2권 4편 3부 4장(제16720조부터 시작))을 채택하되, 이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 절에 포함된 이 법의 조항들은 이 조에 완전히 기술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절에 사용된 “이에”라는 말은 이 절 및 이 법을 의미한다.

(b) 주 일반 보증 공채법의 목적상, 재향군인 원호처를 주무 부처로 지정한다.

제998.402조.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주무 부처”란 재향군인 원호처를 의미한다.

(b) “공채”란 주 일반 보증 공채 발행법의 조항을 채택한 이 절에 의해 발행되는 주 일반 보증 공채인 재향군인 공채를 의미한다.

(c) “공채법”이란 주 일반 보증 공채의 발행을 허가하고 주 일반 보증 공채법을 참조로 채택하는 이 절을 의미한다.

(d) “위원회”란 제991조에 의해 설립된 1943년 재향군인 재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e) “기금”이란 제988조에 의해 설립된 1943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건축 기금을 의미한다.

제998.403조. 1974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입법(제3.1절(제987.50조부터 시작)), 그리고 이 법을 개정하고 보충하는 모든 법에 따라 재향군인에게 농장과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차환하는 공채를 포함하여 총액이 구역 달러(\$9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부채 또는 부채들 또는 채무 또는 채무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998.404조. (a) 이 절에 의해 허가된 모든 공채는 이 조에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판매되고 전담되면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일반 채무를 구성하며,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한의 성실성과 신용으로 지불 기일이 도래하는 공채 원금과 이자를 정시에 지불할 것을 서약한다.

(b) 다른 주의 세입이 징수되는 것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이 조에 규정된 공채의 원리금을 지불하는데 충분한 일정 금액을 주의 정규 세입에 추가하여 매년 징수하며, 주의 세입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된 모든 공무원들은 이 추가 금액을 징수한다.

(c) 각 회계 연도에 정부법 제16676조에 따라 부채 상환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하는 날짜에, 그 때까지 만기가 되어 지불해야 하는 부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전된다. 송금일에 이전된 자금이 만기가 되어 지불해야 하는 부채보다 적으면, 미지불로 남아있는 잔액은 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반년마다 공채 이자와 같은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는 송금일에서 지불할 때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일반 기금에 이전해야 한다. 이와 상반되는 다른 모든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은 이 장에 따라 모든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입 공채법에 적용된다. 이 항은 이러한 기금이나 그에 속한 자금을 이 절에 의해 발행된 공채의 소유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부채 지불”이란 원금(만기, 회수 또는 조기 회수), 해당되는 프리미엄, 또는 일련의 공채에 대해 특정일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그러나, 차환하는 공채의 수입금으로 지불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98.405조. 이 절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두 항목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반 기금에서 책정된다.

(a) 이 절의 규정에 의해 발행하고 판매한 공채의 원리금이 지불 만기가 됨에 따라 이를 지불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

(b) 회계 연도에 상관없이 책정해야 하는 제998.406조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제998.406조. 이 절의 목적을 위해, 재무국장은 행정 명령에 의해 이 절에 따라 판매하도록 위원회가 승인한 공채 중에서 미판매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인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인출한 모든 금액은 재향군인 기금에 예치된다. 이 조에 의해

주무 부처에 제공되는 모든 자금은 이 절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한 공채 수입으로부터 그러한 자금이 공동 자금 투자 제정에 있었다면 발생했을 이자를 추가하여 일반 기금에 반환한다.

제998.407조. 주무 부처는 이 절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법 제16312조에 따라 공동 자금 투자 제정에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금액은 위원회가 이 절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도록 결의안에 의해 승인한 미판매 공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무 부처는 대출금의 수령과 상환을 위해 공동 자금 투자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다. 모든 대출 금액은 재향군인 기금에 예치되고 이 절에 따라 주무 부처가 할당한다.

제998.408조. 주지사가 승인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한 주무 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주무 부처의 사업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절에 의해 허가된 공채를 발행한 것인지를 결정하고, 발행이 결정되면 공채의 발행 및 판매 금액을 결정한다. 이 사업 계획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공채의 후속 발행을 허가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으며, 모든 공채를 한 번에 발행 또는 판매할 필요는 없다.

제998.409조. 이 절에 의해 허가된 공채가 발행되어 있는 한, 재향군인 원호처장은 각 회계 연도의 말에 농장 및 주택 구입부의 재정 상태와 사업 전망을 명성이 있는 독립 공인 회계사를 통해서 조사해야 한다. 각 조사와 전망의 결과는 공인 회계사가 재향군인 원호처장, 캘리포니아 주 재향군인 위원회, 상원과 하원에서 재향군인 원호 업무를 취급하는 예산 책정 정책 위원회 및 재향군인 재정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농장 및 주택 구입부는 재무국장에게 예치한 자금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공인 회계사의 용역 대금을 지불한다.

제998.410조. 위원회는 재무국장에게 이 절에 의해 허가된 공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국장이 정한 때에 판매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위원회가 공채의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부법 제167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에게 발행된 공채를 액면가 이하로 판매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채에 대한 할인은 액면가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998.411조. 이 절의 조항에 따라 실현한 첫 공채 판매 대금으로 정부법 제16724.5조에 규정된 목적으로 지출된 모든 금액을 이 조에 의해 설치된 일반 보증 공채 경비 회전 기금에 재예치하되, 이 자금은 공채를 추가로 판매할 때마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 및 상환할 수 있다.

제998.412조. 이 절에 의해 발행 및 판매된 모든 공채는 정부법 제2권 4편 3부 4장 6절(제16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이 절에 의한 공채 발행에 대한 유권자의 승인에는 최초로 발행한 공채 또는 이전에 발행된 상환용 공채를 상환하기 위한 공채 발행에 대한 승인이 포함되어 있다.

제998.413조. 공채 발행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출납국장이 이 절에 의해 공채를 판매하고 공채 전문 변호사가 그러한 공채에 대한 이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 상 총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재무국장은 공채 수입금의 투자와 그러한 수입금의 소득에 대한 제정을 별도로 만들고, 그러한 수입금이나 소득을 리베이트, 벌금, 또는 연방법이 요구하는 기타의 지불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공채의 면세 자격을 유지하거나 이 주의 기금을 대신해서 연방법 하에서 다른 이익을 얻는데 필요한 경우, 공채 수입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연방법이 요구 또는 허용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98.414조. 주 의회는 이 절에 의해 승인된 공채의 판매 수입금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 B절에서 사용된 용어와 같은 “과세 수입금”이 아닌 한, 이 수입금의 지출은 제XIII B절에 부과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에 확인 및 선언한다.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로 제작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

총무처장관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에 대해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대형 활자체 또는 오디오 카세트 버전을 주문하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vig_altformats.htm을 방문하거나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1-866-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버전을 원하시면 www.voterguide.sos.ca.gov/audio/를 방문하십시오.

수입을 얻으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 . . 선거일에 선거관리인으로 봉사하십시오.

선거관리인은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는 것 이외에도 선거일에 제공하는 가치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외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선거관리인(poll worker)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권자, 또는
- 다음과 같은 고등학교 학생:
 - 미국 시민권자
 - 봉사하는 날에 16세 이상 된 학생
 - 평균 성적(GPA)이 2.5 이상인 학생, 그리고
 - 품행이 방정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학생

선거 관리인이 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해당 지역의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연락하거나 1-866-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주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서에 적절히 통지하고, 감독자가 그러한 신청을 승인하면 직장을 결근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선거관리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

유권자 등록을 하는 데는 단 몇 분 밖에 안 걸리고, 전국 유권자 등록법(NVRA)의 덕택으로, 주 전체의 많은 장소에서 등록 양식을 쉽게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NVRA는 1993년에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Clinton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차량 유권자”법이라고도 하는 NVRA는 차량국과 다른 많은 정부 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유권자 등록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캘리포니아 주 주민이어야 하고, 선거일에 18세 이상 되어야 하며,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1-866-575-1558로 전화하거나,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NVRA, 그리고 정부기관과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이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총무처장관의 활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sos.ca.gov/elections/를 방문하십시오.

유권자의 권리

1. 유효한 등록 유권자는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 유권자란 이 주의 주민이고,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이 아니며, 현재의 거주지 주소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를 말합니다.
2. 유권자의 이름이 투표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잠정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유권자는 투표소가 폐장되기 전에 투표소에 와서 줄을 서있는 경우,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유권자는 위협을 받지 않고 비밀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잘못 표시한 투표용지를 새 투표용지로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재(우편) 투표자들도 잘못 표시한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를 폐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반납하면 새 투표용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권자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투표에 대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유권자는 작성한 부재자 투표용지를 카운티의 모든 선거구로 반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에 제작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주민이 있는 경우, 선거 자료를 다른 언어로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구 위원회와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선거 절차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거나, 또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담당관을 소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질문 때문에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위원회나 선거 관리 담당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10. 유권자는 불법 또는 사기 행위를 지역 선거 관리 담당관이나 총무처장관에게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선거 사기나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핫라인 1-866-575-1558로 전화 주십시오.

선거 관리 담당관은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를 사용하여 투표소의 위치와 투표용지에 기재될 쟁점 및 입후보자 같은 투표 과정에 대한 공식 정보를 유권자에게 보냅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유권자 정보는 총무처장관의 결정에 따라 선거, 학술, 언론, 정치 또는 정부와 관련된 목적으로 공직 입후보자, 투표 법안 위원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에 기재된 운전면허증 번호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유권자의 서명은 이러한 목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정보를 악용한다고 의심되어 신고하기를 원하시면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1-866-575-1558로 연락하십시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특정한 유권자들은 비밀 유권자 신분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무료 전화 1-877-322-5227로 총무처장관의 Safe at Home (가정 안전) 프로그램에 연락하거나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Election Division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NONPROFIT
U.S. POSTAGE
PAID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캘리포니아 주 총선거

www.voterguide.sos.ca.gov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잊지 말고 투표하십시오!
2008년 11월 4일 화요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10월 6일
우편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신청하는 첫날

10월 20일
유권자 등록 최종일

10월 28일
선거 관리 담당관이 유권자의 우편투표용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최종일

11월 4일
우편투표용지를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
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는 최종일

다음의 언어로 작성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가 더
필요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English: 1-800-345-VOTE (8683)

Español/Spanish: 1-800-232-VOTA (8682)

日本語 /Japanese: 1-800-339-2865

Việt ngữ /Vietnamese: 1-800-339-8163

Tagalog: 1-800-339-2957

中文 /Chinese: 1-800-339-2857

한국어 /Korean: 1-866-575-1558

TDD: 1-800-833-8683

주의회는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와
카운티가 같은 성을 가진 유권자가 두 명 이상 거주하는 주소에
이 안내서를 한 부만 우송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연락하거나 1-866-575-1558로
전화하시면 추가 사본을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